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4호
2024. 7. 25.(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218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24-21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 고 시

제2024-28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2
제2024-360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15
제2024-36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7
제2024-36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4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2024-363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69
제2024-364호	역촌역세권(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70
제2024-365호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127
제2024-366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155
제2024-367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8
제2024-36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3

◆ 공 고

제2024-213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3
제2024-21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213
제2024-214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15
제2024-2144호	측량업 등록 공고	218
제2024-214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19
제2024-2152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221
제2024-2154호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222

제2024-2155호	마곡지구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227
제2024-2156호	인의동 48-25 나라키움 복합청사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228
제2024-215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29
제2024-2164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231
제2024-216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233
제2024-21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37
제2024-2168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40
제2024-217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243
제2024-2172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250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6호	2024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293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274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1
------------	---	-----

◆ 구 공 고

제2024-1535호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서구)	307
제2024-1374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08
제2024-1348호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영등포구)	309
제2024-1470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324
제2024-160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서초구)	328
제2024-16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330

◆ 기 타

제2024-28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32
------------	------------------------------	-----

제2024-28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33
제2024-28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34
제2024-29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35

◆ 정 정

제2024-369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336
제2024-217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정 공고	338
제2024-15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정정)(강동구)	341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8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 신설 및 직위명 변경

- 비전전략특보(2급 상당) 신설, 비전특보 → 메시지수석(4급 상당)
-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직제순 변경

나. 한강교량 투신 예방 관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 명확화

-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업무 명시

다. 서울아리수본부 대규모 시설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 직제순 변경

- (기존) 누수대응과 - 시설건설과 - 시설관리과 - 공간정보과
- (개정) 시설건설과 - 누수대응과 - 시설관리과 - 공간정보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생, 정무, 정책, 비전전략,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문화, 디지털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무수석, 미디어 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의2제4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76조제6항 중 “누수대응과·시설건설과·시설관리과·공간정보과”를 “시설건설과·누수대응과·시설관리과·공간정보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략) ② <u>민생, 정부, 정책,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비전 수립, 디지털, 문화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부특보,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부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부특보,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부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 ① ~ ③ (생략) ④ <u>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4. (생략) <u><신설></u>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민생, 정부, 정책, 비전전략,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문화, 디지털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부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부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부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부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⑤ ~ ⑧ (생 략) 제76조(과의 설치) ① 삭 제 ② ~ ⑤ (생 략) ⑥ 시설부에 <u>누수대응과 · 시설</u> <u>건설과 · 시설관리과 · 공간정보</u> <u>과</u>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과의 설치)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시설건설과 · 누수대</u> <u>응과 · 시설관리과 · 공간정보과</u>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조1교대 전환 확대를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8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주·야간 동일 지휘체계(3조1교대) 구축 및 단장급 인력 확보를 위한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령 +16, 소방사 △16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l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령	200	28		172		
-----	-----	----	--	-----	--	--

별표 2의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사	3,650	25		3,625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 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 관
(생략)							(현행과 같음)						
소방령	184	28		156			소방령	200	28		172		
(생략)							(현행과 같음)						
소방사	3,666	25		3,641			소방사	3,650	25		3,62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	강북구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미아동 754번지 일대	17,716	

2. 권리기준산정일 : 2024. 7. 25.(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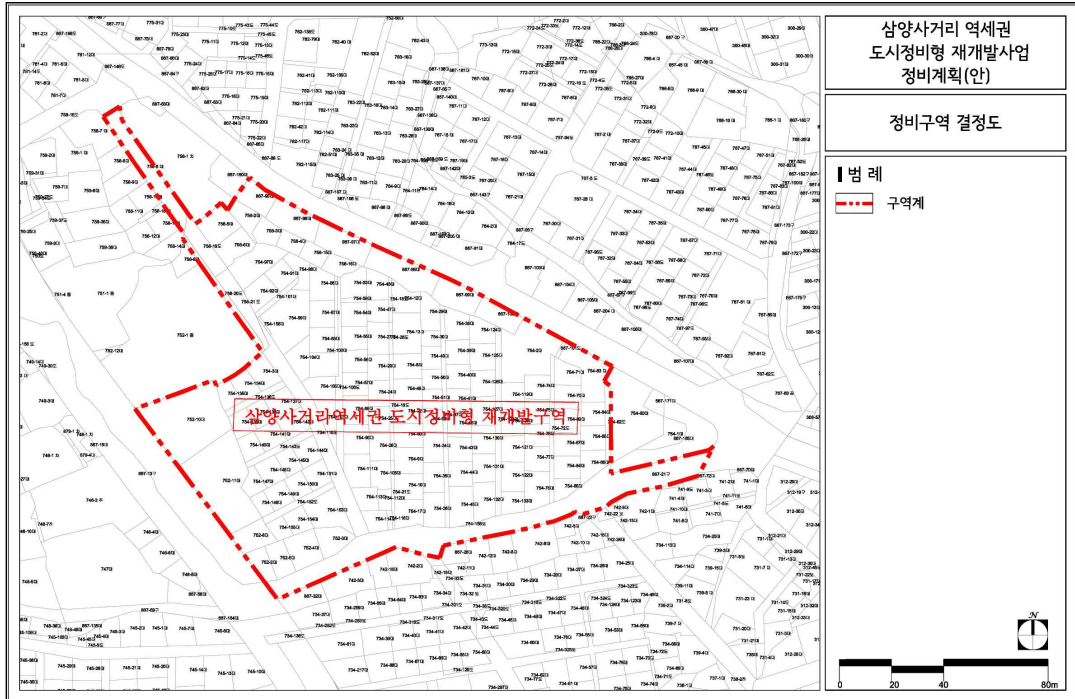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60)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54	

-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하고 있음
- ※ 그러나 당해 사업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24.4.12.)이 아닌 금일 고시문 게재됨에 따라, 불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을 당해 고시문 게재 시점으로 정하여 고시함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0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고시일: 2024. 7. 25.(목)
2. 고시방법: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3. 고시내용: ‘내부순환로’ 도로명 부여(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간정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2-2133-2838(FAX: 02-768-8842)

나. 주소: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공간정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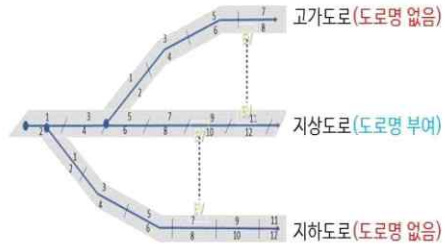
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참조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입체도로란?

-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체도로 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및 도로명 부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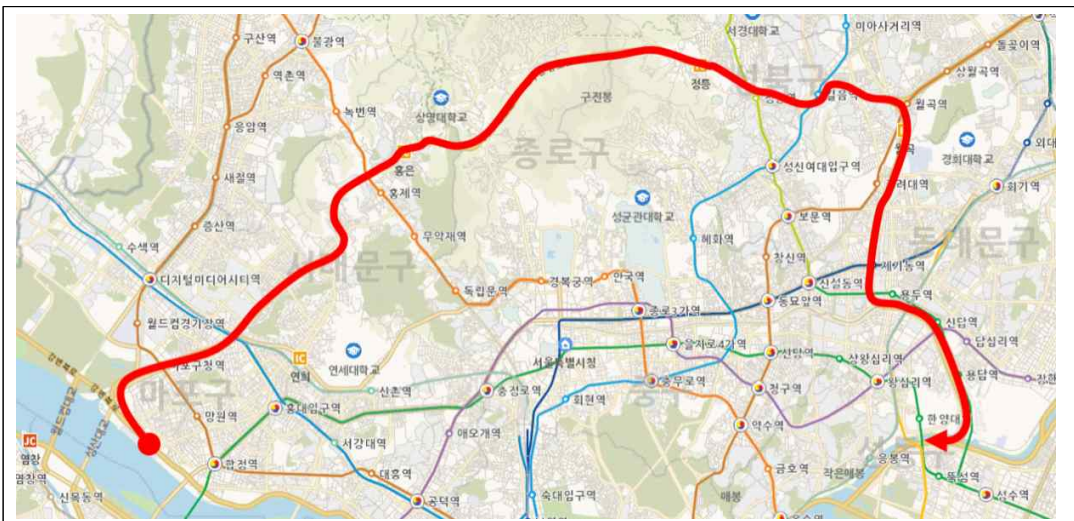


□ 내부순환로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 연장: (상행) 23,652m, (하행) 24,001m
- 도로명: 내부순환로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기초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내부 순환로	30년 이상 불려 온 명칭의 연속성과 도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물 명칭으로 부여	고가도로 + 터널 (혼재)	상행	서울 마포구 망원동 224-3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4-1	23,652	13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20	1~2,366
			하행			24,001	13			

○ 중심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	동대문구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8,004	

2. 권리기준산정일 : 2024. 7. 25.(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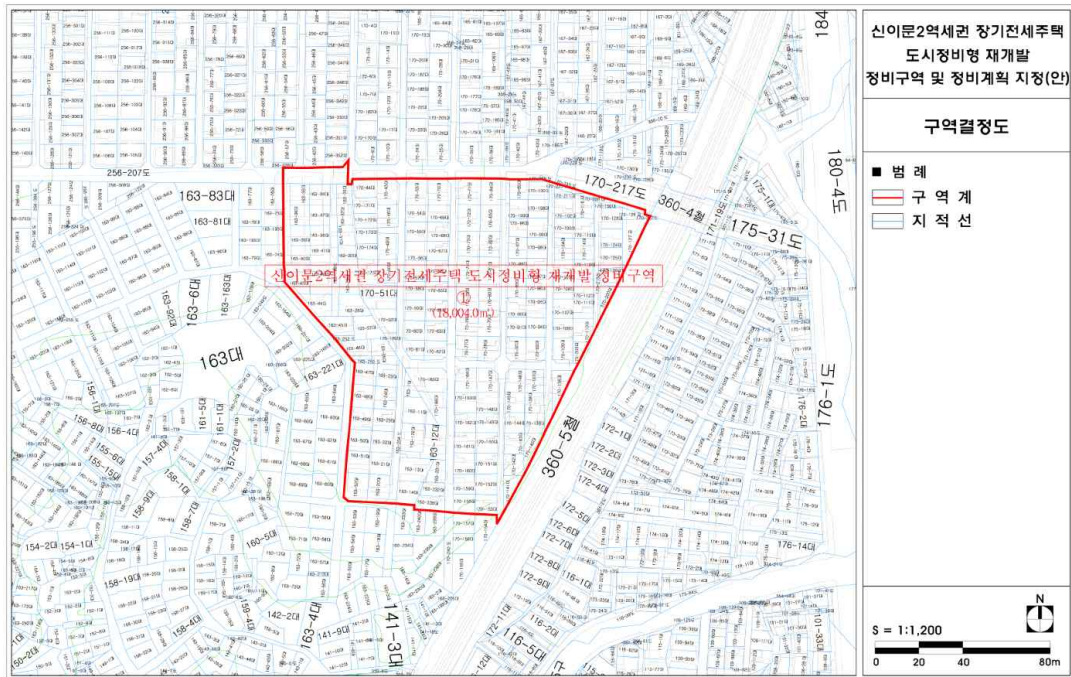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60)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693	

-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함에 따라 고시함
- ※ 그러나, 당해 사업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24. 7. 4.)이 아닌 금일 고시문 게재됨에 따라, 불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을 당해 고시문 게재 시점으로 정하여 고시함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4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7호(2023.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0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호(2024.02.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89.7	감) 183.4	1,127,106.3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총 계			1,127,289.7	감) 183.4	1,127,106.3	
촉진 구역	소 계 (11개 구역)		1,049,312.8	감) 183.4	1,049,129.4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121,634.0	-	121,634.0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84,248.0	-	84,248.0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1,362.0	-	91,362.0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감) 183.4	145,174.6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7,976.9	-	77,976.9	
		존치구역 존치시설	77,976.9	-	77,976.9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장위14구역)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일대	145,358.0	감) 183.4	145,174.6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장위14구역)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45,358.0	감) 183.4	145,174.6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8,846.0	증) 1,220.4	40,066.4	27.6	-
	공 원	7,623.0	감) 180.7	7,442.3	5.1	-
	도 로	19,724.0	증) 1,635.0	21,359.0	14.7	-
	주차장①	2,590.0	감) 181.4	2,408.6	1.7	-
	공공청사①	7,370.0	감) 1.5	7,368.5	5.1	-
	공공청사②	327.0	증) 0.5	327.5	0.2	
	공공공지①	340.0	증) 1.3	341.3	0.2	
	공공공지②	471.0	감) 36.8	434.2	0.3	
	공공공지③	401.0	감) 16.0	385.0	0.3	
택지 (획지)	소 계	106,512.0	감) 1,403.8	105,108.2	72.4	-
	14-1	105,972.0	감) 1,419.8	104,552.2	7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2	164.0	증) 2.1	166.1	0.1	종교시설
	14-3	209.0	증) 1.6	210.6	0.2	일반획지
	14-4	167.0	증) 12.3	179.3	0.1	

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장위14구역)

구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45,358.0	감) 183.4	145,174.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86.0	감) 29.4	23,256.6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7,640.0	감) 60.1	47,579.9	32.8
	제2종일반주거지역	74,432.0	감) 93.9	74,338.1	51.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갑) 29.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갑) 60.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갑) 93.9㎡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장위14구역)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장위로 원화차로 확보
변경	중로	1	515	20~23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 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소로	1	②	10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②	10~11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 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 722 (36.12.27)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15	중로 1-515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20m → 20m ~ 23m	• 진출입구 원화차로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소로 1-①	소로 1-①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장위로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및 회전교차로 구간 도로 확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②	소로 1-②	일부구간 도로 확폭 - 10m → 10m ~ 11m	부출입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주차장	장위동 231-47 일대	2,590.0	감) 181.4	2,408.6	-	-
변경	②	주차장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감) 1.5	7,368.5	-	공공시설 중복결정 (하부조성)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면적 변경 - 2,590.0㎡ → 2,408.6㎡ (감 181.4㎡)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주차장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감) 180.7	1,453,677.3 (7,442.3)	건고시2181 (66.02.0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0	오동 근린공원	면적 변경 - 7,623.0㎡ → 7,442.3㎡ (감 180.7㎡)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공지	장위동 233-596일대	340.0	증) 1.3	341.3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②	공공공지	장위동 233-542일대	471.0	감) 36.8	434.2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③	공공공지	장위동 233-678일대	401.0	감) 16.0	385.0	서고시302 (22.07.1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340.0㎡ → 341.3㎡ (증 1.3㎡)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471.0㎡ → 434.2㎡ (감 36.8㎡)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401.0㎡ → 385.0㎡ (감 16.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감) 1.5	7,368.5	서고시302 (22.07.14)	주차장② 충복결정
변경	②	공공청사	치안센터	장위동 233-436 일대	327.0	증) 0.5	327.5	서고시302 (22.07.14)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청사	공공 청사	•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 청사	치안 센터	• 면적 변경 - 327.0㎡ → 327.5㎡ (증 0.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장위동 233-552 일대	304.5	감) 84.3	220.2	-
	주민운동시설		2,000.0	감) 1,167.6	832.4	-
	어린이놀이터		2,600.0	감) 46.4	2,553.6	-
	주민공동시설		1,849.0	증) 5,255.0	7,104.0	-
	작은도서관		472.5	증) 165.7	638.2	-
	경로당		550.0	감) 27.3	522.7	-
	어린이집		850.0	감) 17.7	832.3	-
	다함께돌봄센터		150.0	감) 25.8	124.2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14 구역	145,358.0	장위동 233-552 일대	643	-	-	643	-	
변경		145,174.6		643	-	-	643	-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4구역	145,358.0	14-1	105,972.0	장위동 233-55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2.0 이하	16층 이하	• 2층:25층 (75m이하) • 2층(7층):14층 (45m이하)
			14-2	164.0	장위동 231-170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4-3	209.0	장위동 231-437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14-4	167.0	장위동 231-439일대					
변경	장위 14구역	145,174.6	14-1	104,552.2	장위동 233-55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1.6 이하	16층 이하	• 2층:25층 (75m이하) • 2층(7층):14층 (45m이하)
			14-2	166.1	장위동 231-170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4-3	210.6	장위동 231-437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14-4	179.3	장위동 231-439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예정세대수 : 2,490세대 (공동주택 : 439세대) - 전용면적 40㎡ 미만 : 374세대(15.02%) [공공 : 189세대] - 전용면적 40~50㎡ : 431세대(17.31%) [공공 : 203세대] - 전용면적 50~60㎡ : 456세대(18.31%) [공공 : 47세대] - 전용면적 60~85㎡ : 1,117세대(44.86%) - 전용면적 85㎡ 초과 : 112세대(4.50%)						
			변경	• 건립예정세대수 : 2,439세대 (공동주택 : 439세대) - 전용면적 40㎡ 미만 : 348세대(14.27%) [공공 : 189세대] - 전용면적 40~50㎡ : 403세대(16.52%) [공공 : 203세대] - 전용면적 50~60㎡ : 455세대(18.66%) [공공 : 47세대] - 전용면적 60~85㎡ : 1,139세대(46.70%) - 전용면적 85㎡ 초과 : 94세대(3.8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한천로 : 8m, 화랑로: 10m(단, 지하부는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동길, 장월로, 순환가로, 국지도로변: 6m							
공공보행통로 (변경없음)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공동주택 획지 내 남북측, 38m							

3) 용적률 계획(변경)

■ 기 정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시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 지	구역 외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및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건축물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145,358.0㎡	105,972.0㎡	38,519.0㎡	2,460.5㎡	14,746.0㎡	10,966.0㎡	21,038.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519.0㎡ + 2,460.5㎡ + 14,746.0㎡) - 10,966.0㎡ - 21,038.0㎡ = 23,721.5㎡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175.58%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임대주택)) = 175.58% × (1 + 1.3 × 0.08469 + 0.7 × 0.13915) = 212.0% * α(토지) = (토지 기부채납 + 대지지분)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38,519.0㎡ + 2,460.5㎡ - 10,966.0㎡ - 21,038.0㎡) / 105,972.0㎡ = 0.08469 * α(건축물, 임대주택)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14,746.0㎡ / 105,972.0㎡ = 0.13915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12.0%						

■ 변 경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시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 지	구역 외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및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건축물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145,174.6㎡	104,552.2㎡	40,066.4㎡	500.0㎡	14,747.8㎡	8,866.0㎡	23,138.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0,066.4㎡ + 500.0㎡ + 14,747.8㎡) - 8,866.0㎡ - 23,138.0㎡ = 23,310.2㎡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175.58%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임대주택)) = 175.58% × (1 + 1.3 × 0.08189 + 0.7 × 0.14105) = 211.6% * α(토지) = (토지 기부채납 + 대지지분)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40,066.4㎡ + 500.0㎡ - 8,866.0㎡ - 23,138.0㎡) / 104,552.2㎡ = 0.08189 * α(건축물, 임대주택)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14,747.8㎡ / 104,552.2㎡ = 0.14105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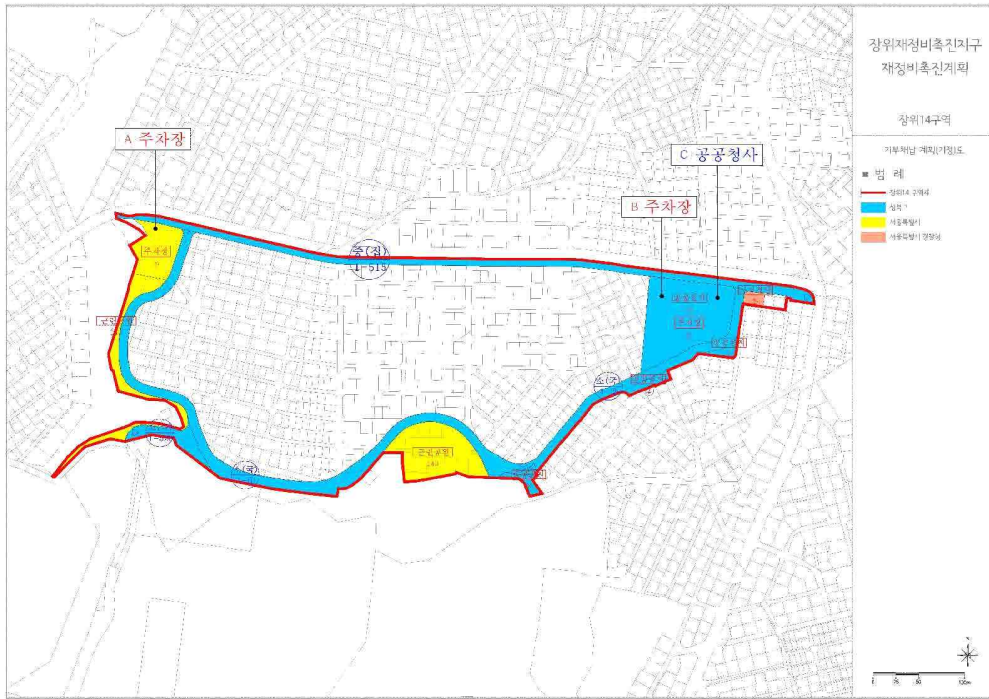
■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기정)

- － 기부채납시설은 준공인가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대로 3-40	• 대로 3-40호선 일부 개설 - 폭 25~31m, 연장 11,530m	서울특별시
	중로 1-523	• 중로 1-523호선 일부 개설 - 폭 14~19m, 연장 145m	성북구
	중로 1-515	• 중로 1-515호선 일부 개설 - 폭 20m, 연장 784m	성북구
	소로 1-520	• 소로 1-520호선 일부 개설 - 폭 10m, 연장 85m	성북구
	소로 1-①	• 소로 1-①호선 신설 - 폭 10~15m, 연장 673m	성북구
	소로 1-②	• 소로 1-②호선 신설 - 폭 10m, 연장 340m	성북구
공원	오동 근린공원	• 오동근린공원 일부 조성 - 면적 : 7,623㎡	서울특별시
주차장	주차장 ①	• 주차장①(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1-47번지 일대 - 토지면적 : 2,590㎡ / 건축면적 : 4,955㎡ - 세부용도 :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주차장 ②	• 주차장②(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66번지 일대 - 토지면적 : 7,370㎡ / 건축면적 : 14,080㎡ - 세부용도 :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공공청사 ①	• 공공청사①(복합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66번지 일대 - 토지면적 : 7,370㎡ / 건축면적 : 12,288㎡ - 세부용도 :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체육시설, 이모작 창업센터, 성북여성교실, 성북가족센터, 경로당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311번지 일대 - 대지지분면적 : 494.5㎡, 환산부지면적 : 202.8㎡, 세대수 : 13세대 - 세부용도 :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내용에 대하여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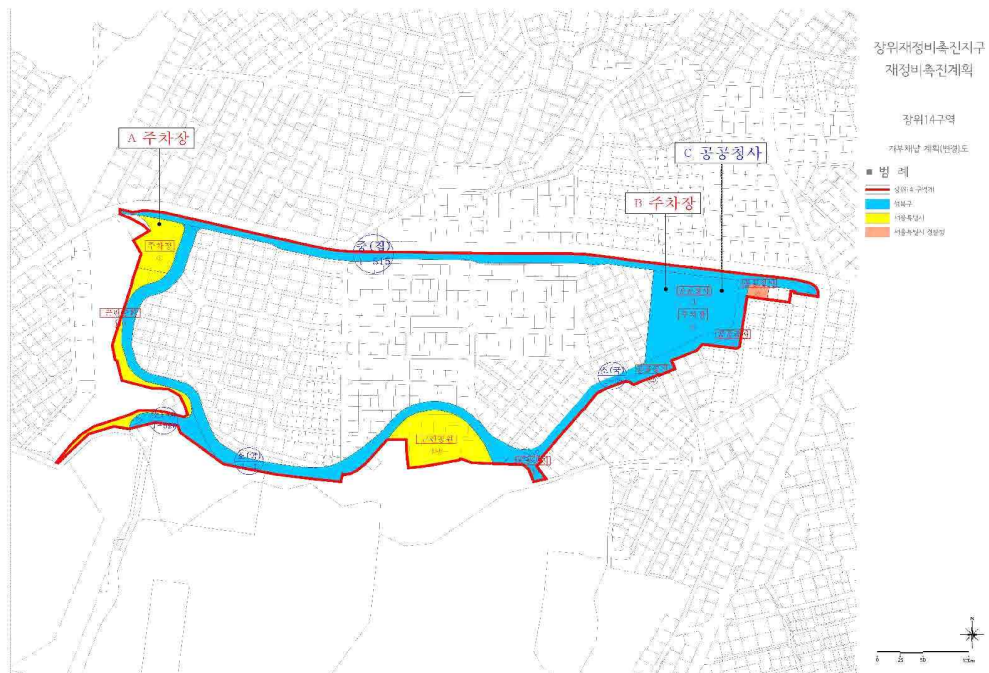
- － 기부채납시설은 준공인가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대로 3-40	• 대로 3-40호선 일부 개설 － 폭 25~31m, 연장 11,530m	서울특별시
	중로 1-523	• 중로 1-523호선 일부 개설 － 폭 14~19m, 연장 145m	성북구
	중로 1-515	• 중로 1-515호선 일부 개설 － 폭 20~23m, 연장 784m	성북구
	소로 1-520	• 소로 1-520호선 일부 개설 － 폭 10m, 연장 85m	성북구
	소로 1-①	• 소로 1-①호선 신설 － 폭 10~15m, 연장 673m	성북구
	소로 1-②	• 소로 1-②호선 신설 － 폭 10~11m, 연장 340m	성북구
공원	오동근린공원	• 오동근린공원 일부 조성 － 면적 : 7,442.3㎡	서울특별시
주차장	주차장 ①	• 주차장①(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1-47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 토지면적 : 2,408.6㎡ / 건축면적 : 4,955㎡ - 세부용도 : 공영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②	• 주차장②(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66번지 일대 - 토지면적 : 7,368.5㎡ / 건축면적 : 14,080㎡ - 세부용도 :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공공청사 ①	• 공공청사①(복합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66번지 일대 - 토지면적 : 7,368.5㎡ / 건축면적 : 12,288㎡ - 세부용도 :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체육시설, 이모작 창업센터, 성북여성교실, 성북가족센터, 경로당	성북구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233-311번지 일대 - 대지지분면적 : 500.0㎡, 환산부지면적 : 204.7㎡, 세대수 : 13세대 - 세부용도 :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내용에 대하여 결정도서에 합의를 첨부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4단계 (2011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현황 : 2,777세대 계획 : 2,490세대 감) 287세대	-	
변경	주택재개발	4단계 (2011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현황 : 2,777세대 계획 : 2,439세대 감) 338세대	-	

아.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4구역	105,972.0	-	26,221.1	40㎡미만	• 189세대(7.59%)	
					40~50㎡미만	• 203세대(8.16%)	
					50~60㎡미만	• 47세대(1.88%)	
					계	• 전체 : 439세대(17.63%)	
변경	장위 14구역	104,552.2	-	26,303.8	40㎡미만	• 189세대(7.75%)	
					40~50㎡미만	• 203세대(8.32%)	
					50~60㎡미만	• 47세대(1.93%)	
					계	• 전체 : 439세대(18.00%)	

※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공공주택 구분(변경없음)

구 분			세대수			비고
			전체	의무	기부채납	
기정	세대 규모 (전용)	40㎡미만	189세대	189세대	-	
		40~50㎡미만	203세대	202세대	1세대	
		50~60㎡미만	47세대	35세대	12세대	
		계	439세대	426세대	13세대	

자.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일대	145,358.0	감) 183.4	145,174.6	100.0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45,358.0	감) 183.4	145,174.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86.0	감) 29.4	23,256.6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7,640.0	감) 60.1	47,579.9	32.8
	제2종일반주거지역	74,432.0	감) 93.9	74,338.1	51.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감) 29.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60.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 93.9㎡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장위로 완화차로 확보
변경	중로	1	515	20~23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 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 (08.04.03)	일부구간 도로확폭
기정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변경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㉔	10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㉔	10~11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 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 722 (36.12.27)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15	중로 1-515	• 일부 구간 도로 확폭 - 20m → 20m ~ 23m	•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소로 1-①	소로 1-①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장위로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및 회전교차로 구간 도로 확폭
소로 1-②	소로 1-②	• 일부 구간 도로 확폭 - 10m → 10m ~ 11m	• 부출입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주차장	장위동 231-47 일대	2,590.0	감) 181.4	2,408.6	-	-
변경	②	주차장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감) 1.5	7,368.5	-	공공시설 중복결정 (하부조성)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 변경 - 2,590.0㎡ → 2,408.6㎡ (감 181.4㎡)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주차장	•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변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감) 180.7	1,453,677.3 (7,442.3)	건고시2181 (66.02.0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0	오동 근린공원	면적 변경 - 7,623.0㎡ → 7,442.3㎡ (감 180.7㎡)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공지	장위동233-596일대	340.0	증) 1.3	341.3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②	공공공지	장위동 233-542일대	471.0	감) 36.8	434.2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③	공공공지	장위동 233-678일대	401.0	감) 16.0	385.0	서고시302 (22.07.1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면적 변경 - 340.0㎡ → 341.3㎡ (증 1.3㎡)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공지	면적 변경 - 471.0㎡ → 434.2㎡ (감 36.8㎡)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	면적 변경 - 401.0㎡ → 385.0㎡ (감 16.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감) 1.5	7,368.5	서고시302 (22.07.14)	주차장② 중복결정
변경	②	공공청사	치안센터	장위동 233-436 일대	327.0	증) 0.5	327.5	서고시302 (22.07.14)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청사	공공 청사	•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 청사	치안 센터	• 면적 변경 - 327.0㎡ → 327.5㎡ (증 0.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획지	소계	106,512.0	감) 1,403.8	105,108.2	72.4	
	14-1	105,972.0	감) 1,419.8	104,552.2	7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2	164.0	증) 2.1	166.1	0.1	종교시설
	14-3	209.0	증) 1.6	210.6	0.2	일반획지
	14-4	167.0	증) 12.3	179.3	0.1	일반획지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	상한 (%)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m)		
기정	14-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50이하	212.0이하	16층 이하/ 25층(2중) 이하, 14층(2중 7층)이하	75m 이하, 45m 이하		
	210이하								
변경	14-1			150이하	211.6이하	16층 이하/ 25층(2중) 이하, 14층(2중 7층)이하	75m 이하, 45m 이하		
				210이하					
기정	14-2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기정	14-3, 14-4	관련 법령에 의함	관련 법령에 의함						

2)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변경없음)	한천로	8m
	화랑로	10m(지하부는 6m 완화적용)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6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 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공동주택 획지 내 남북측, 38m

2)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4구역	105,972.0	-	26,221.1	· 189세대(7.59%)	40㎡미만	-
					· 203세대(8.16%)	40~50㎡미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변경	장위 14구역	104,552.2	-	26,303.8	· 47세대(1.88%)	50~60㎡미만	-
					· 전체 : 439세대(17.63%)	계	
					· 189세대(7.75%)	40㎡미만	
					· 203세대(8.32%)	40~50㎡미만	
					· 47세대(1.93%)	50~60㎡미만	
					· 전체 : 439세대(18.00%)	계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공공주택 구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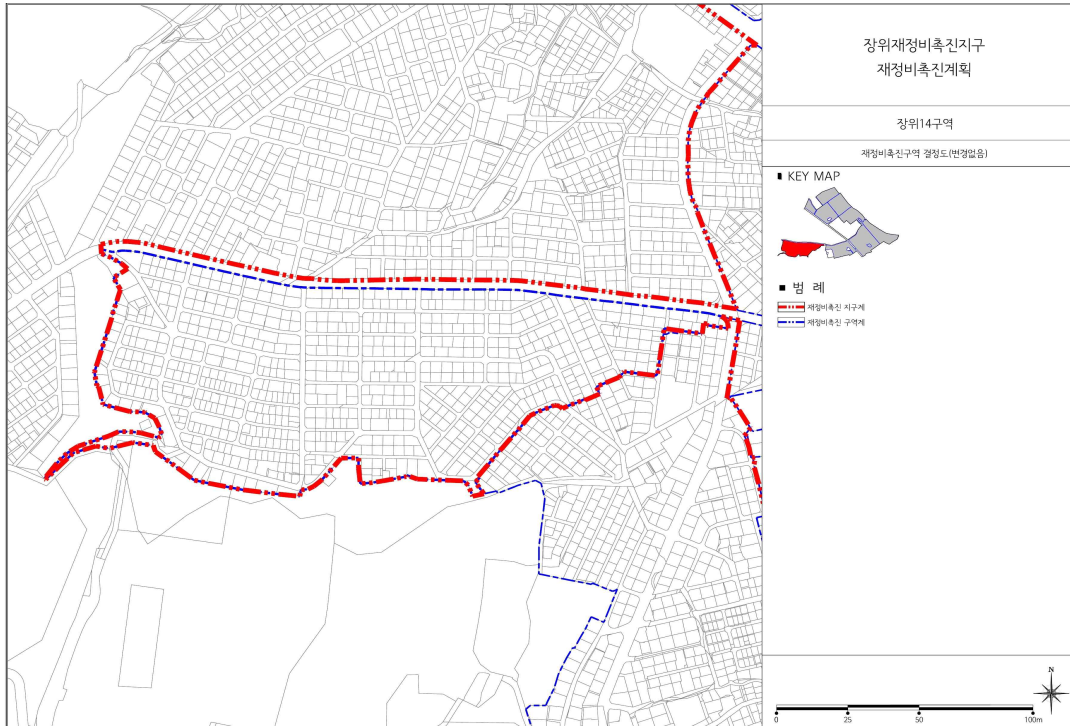
구 분			세대수			비고
			전체	의무	기부채납	
기정	세대 규모 (전용)	40㎡미만	189세대	189세대	-	
		40~50㎡미만	203세대	202세대	1세대	
		50~60㎡미만	47세대	35세대	12세대	
		계	439세대	426세대	13세대	

3)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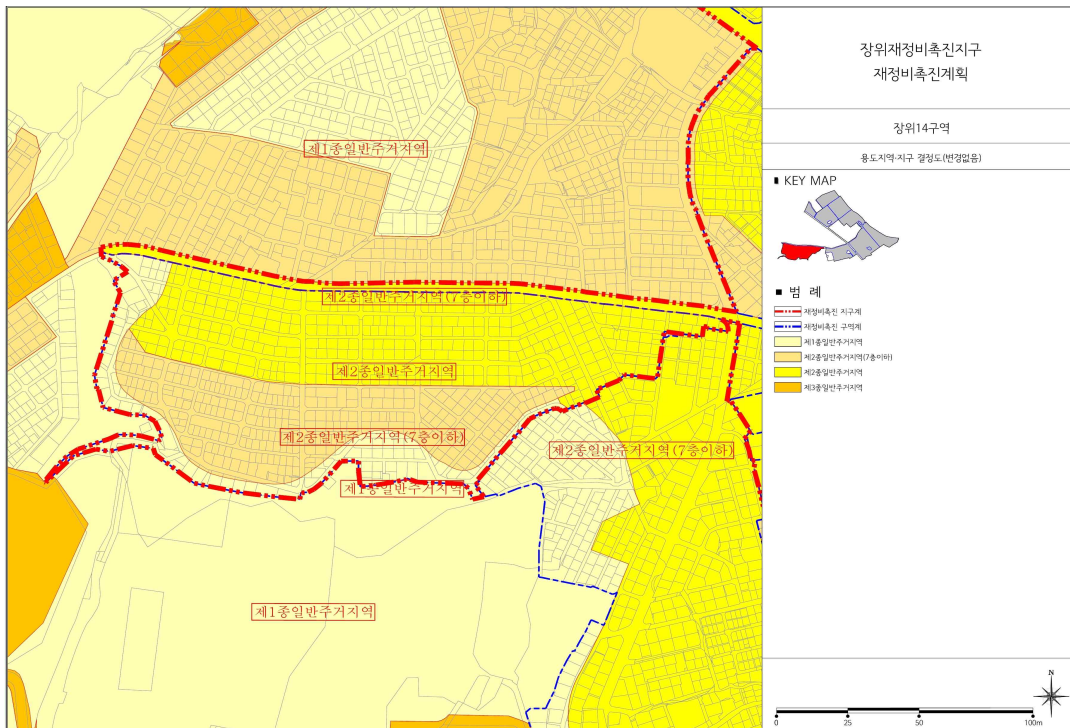
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불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고시) 및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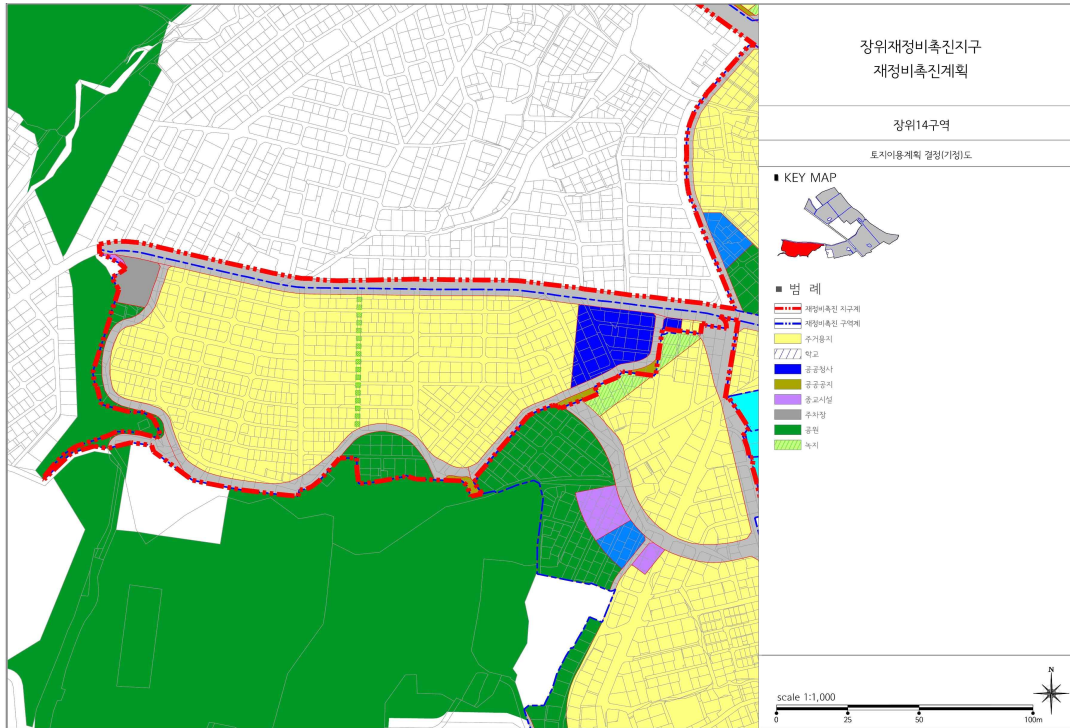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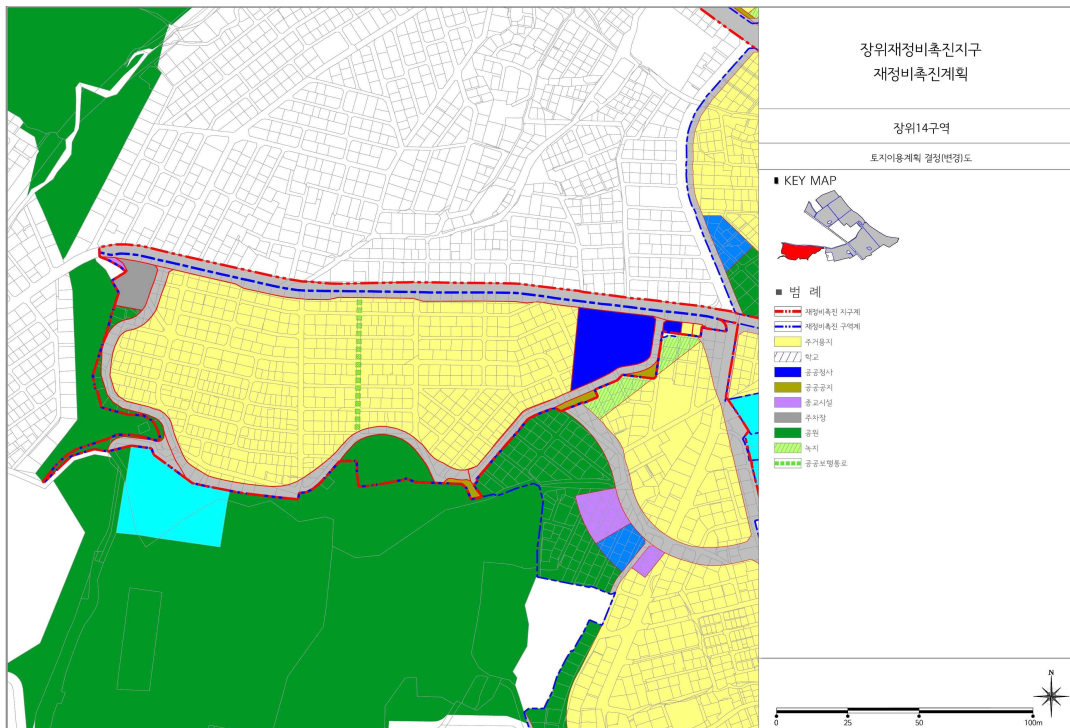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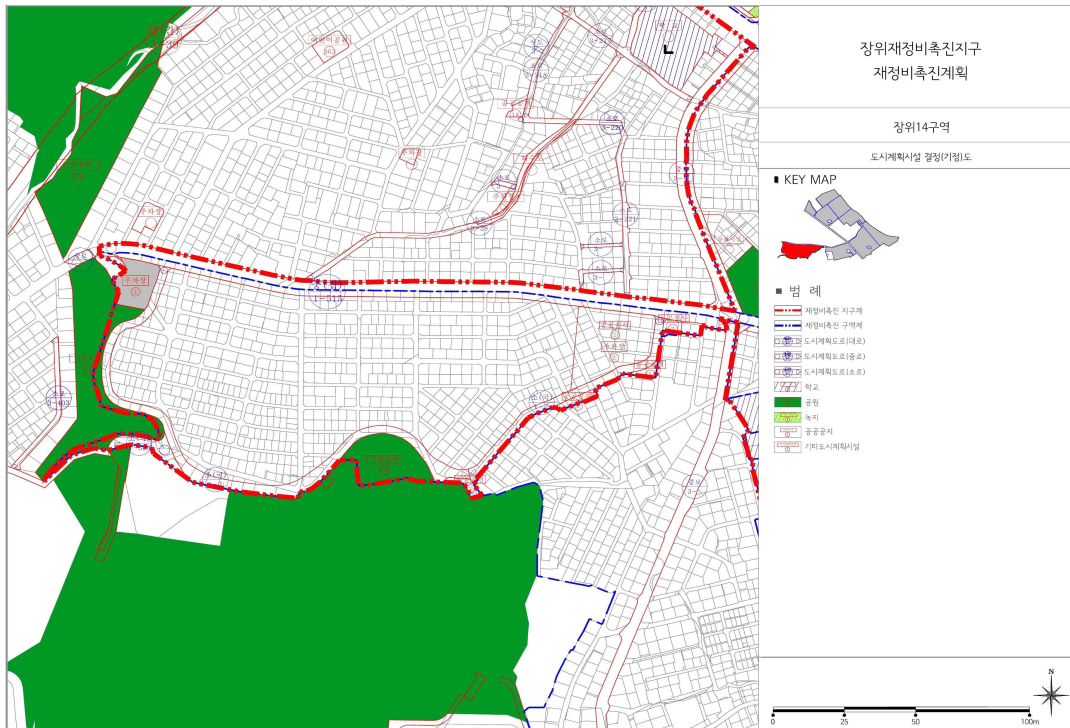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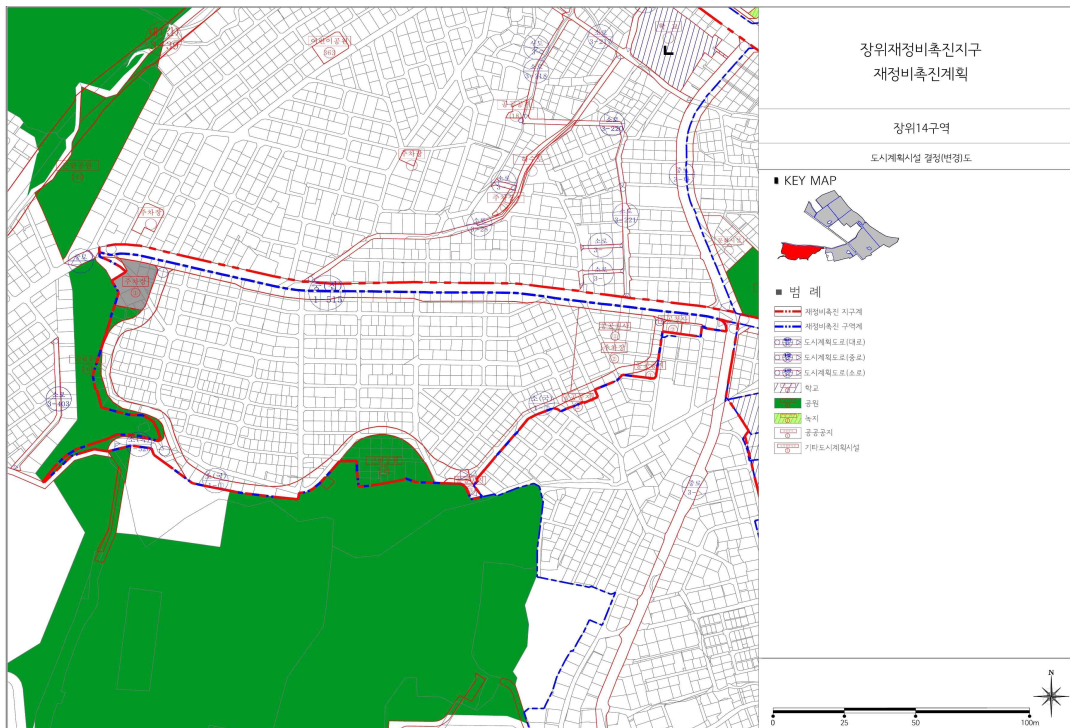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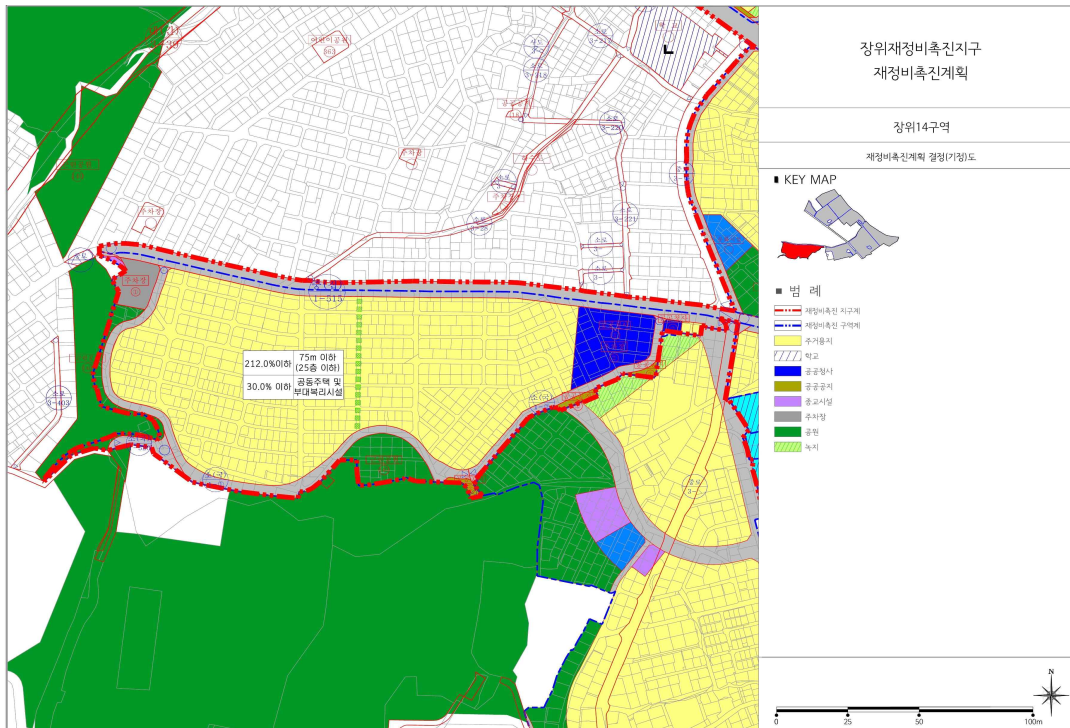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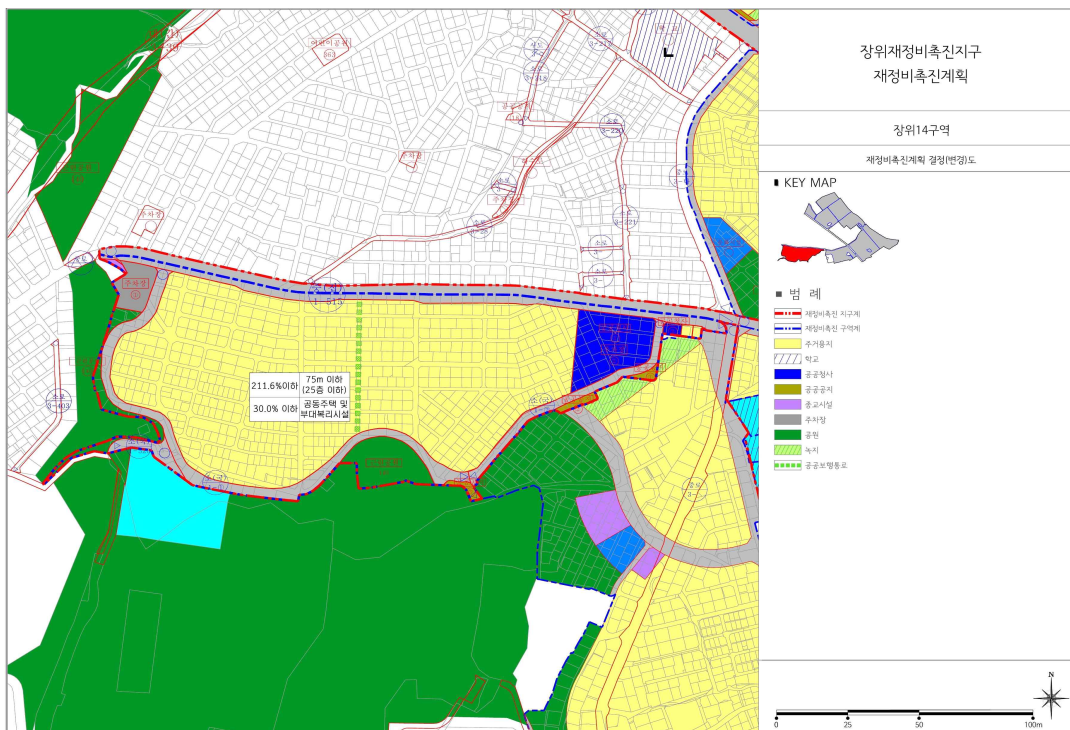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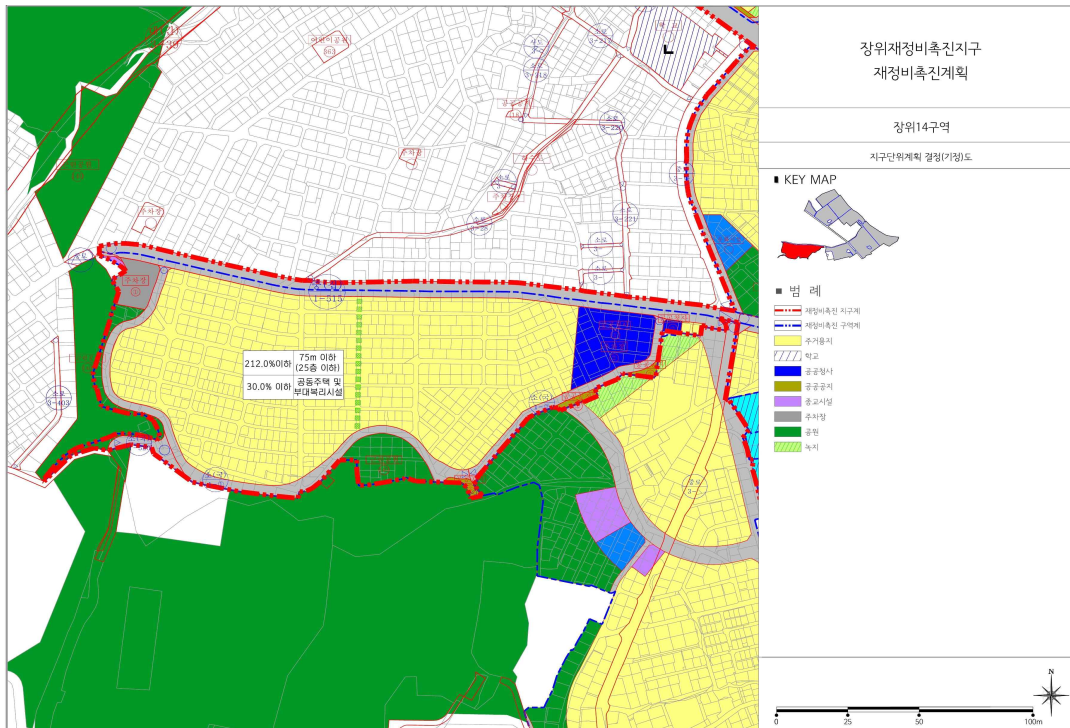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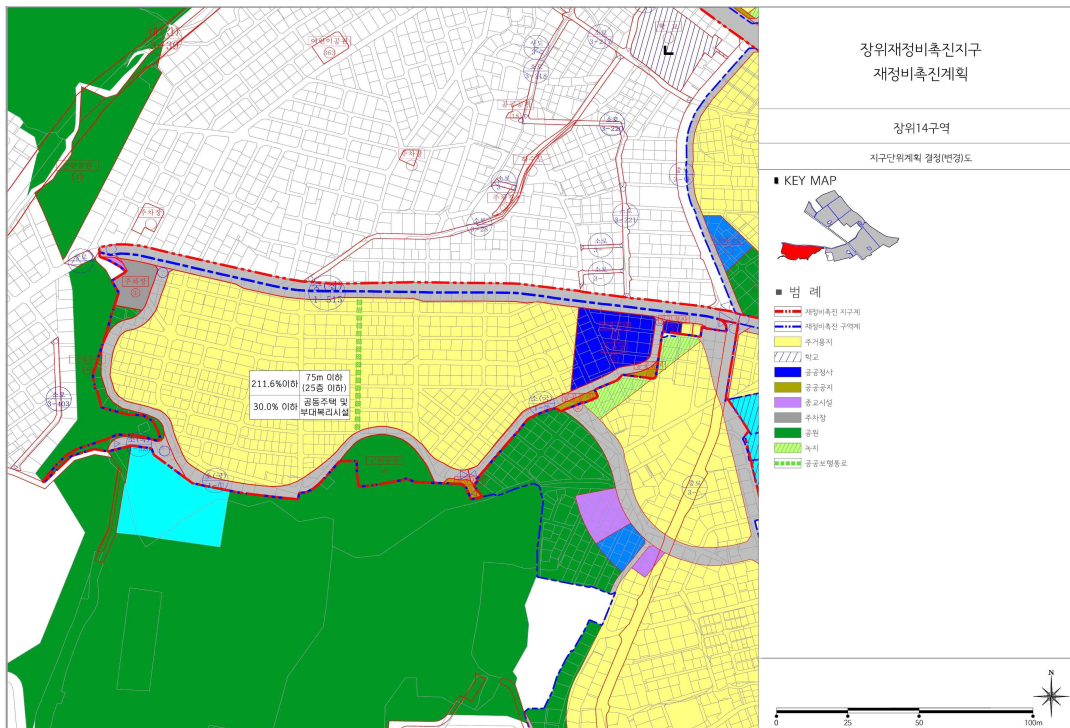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붙임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89.7	감) 183.4	1,127,106.3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30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127,289.7	감) 183.4	1,127,106.3	100.0	-
주거	소 계	741,599.5	감) 1,419.8	740,179.7	65.7	-
	공동주택	698,808.5	감) 1,419.8	697,388.7	61.9	-
	복합용지	41,945.0	-	41,945.0	3.7	-
	획 지	846.0	-	846.0	0.1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67,583.9	증) 1,220.4	368,804.3	32.7	-
	도 로	207,520.1	증) 1,635.0	209,155.1	18.5	-
	공 원	75,139.4	감) 180.7	74,958.7	6.7	-
	녹 지	16,776.7	-	16,776.7	1.5	-
	학 교	33,285.0	-	33,285.0	3.0	-
	공공공지	7,975.3	감) 51.5	7,923.8	0.7	-
	공공청사	14,500.4	감) 1.0	14,499.4	1.3	-
	주차장	2,590.0	감) 181.4	2,408.6	0.2	-
	사회복지시설	3,827.0	-	3,827.0	0.3	-
	문화시설	3,190.1	-	3,190.1	0.3	-
	청소년수련시설	2,779.9	-	2,779.9	0.2	-
기타	소 계	18,106.3	증) 16.0	18,122.3	1.6	-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종교시설	12,855.5	증) 2.1	12,857.6	1.1	-
	근린생활시설	4,332.8	-	4,332.8	0.3	-
	우체국	542.0	-	542.0	0.1	-
	기타	376.0	증) 13.9	389.9	0.1	-

※ 기타는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내 획지 14-3, 14-4 면적임

나.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변경)

구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비고
인구(인)	53,595	감) 137	53,458	-
세대수(세대)	19,850	감) 51	19,799	-

※ 변경인구(인) : 세대당 2.7인 적용

1) 구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미만	40 ~50㎡	50㎡ 초과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기정	계	19,850 (100%)	9,633 (48.5%)	9,038 (45.5%)	1,179 (6.0%)	4,105 (20.7%)	1,339	1,086	1,680	15,745 (79.3%)	5,808	8,758	1,179
변경	계	19,799 (100%)	9,578 (48.4%)	9,060 (45.7%)	1,161 (5.9%)	4,105 (20.7%)	1,339	1,086	1,680	15,694 (79.3%)	5,753	8,780	1,161
기정	1구역	939	356	556	27	162	71	69	22	777	194	556	27
기정	2구역	513	242	268	3	92	40	37	15	421	150	268	3
기정	3구역	1,078	216	432	430	184	84	79	21	894	32	432	430
기정	4구역	2,840	1,309	1,438	93	484	194	200	90	2,356	825	1,438	93
기정	5구역	1,562	660	756	146	276	123	117	36	1,286	384	756	146
기정	6구역	1,637	758	818	61	285	129	126	30	1,352	473	818	61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미만	40 ~50㎡	50㎡ 초과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기정	7구역	1,711	844	825	42	295	125	137	33	1,416	549	825	42
기정	8구역	2,846	1,777	999	70	784	144	-	640	2,062	1,052	940	70
기정	9구역	2,230	1,203	967	60	763	112	-	651	1,467	641	766	60
기정	10구역	2,004	1,007	862	135	341	128	118	95	1,663	686	842	135
기정	14구역	2,490	1,261	1,117	112	439	189	203	47	2,051	822	1,117	112
변경	14구역	2,439	1,206	1,139	94	439	189	203	47	2,000	767	1,139	94

※ 전용85㎡ 초과 주택수 1,161세대 5.9%로 기준 20%미만 충족

※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7%(4,105세대)로 기준 17%이상 충족

※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이하 173세대(공공 30세대) 미포함

※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위8,9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2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변경)

1)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학교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5,827.0	-	15,827.0	-
기정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8	17,458.0	-	17,458.0	-
기정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2)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3 일대	1,415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청사 통합배치 - 기정 : 1,007㎡ - 변경 : 1,415㎡ (증,408㎡)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1,800.0㎡
	복지시설 (장위2동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기정	공공청사 (장위우체국)	장위동 69-4	427	장위우체국	장위동 110-26	542	• 4구역 내 대체확보
기정	복지시설 (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복지시설 (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 장위8구역 편입에 따른 현황시설 존치
기정	청소년수련시설 (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696	청소년수련시설 (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779.9	장위1구역 • 성북청소년수련관 (지상4/지하2)
기정	-	-	-	문화시설	장위동 158-63 일대	1,090.1	장위1구역 • 1구역 문화시설 용지에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 (3구역)
기정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117-5	508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98-1	2,050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복지시설 (장위3동 경로당)	장위동 135-5	165				
기정	공공청사 (장위소방 차안센터)	장위동 34	419	공공청사 (소방차안센터)	장위동 270-172	986.9	장위6구역 • 장위동 소방차안센터 (지상3/지하1)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	-	-	공공청사 (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270-388	754.8	장위6구역
기정	-	-	-	공공청사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58-15	1,297.2	장위5구역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1,500.0㎡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9	1,000	장위3구역 • 복지센터 • 연면적: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기정	-	-	-	공공청사 (치안센터)	장위동 155-1	299.5	• 장위1구역 치안센터
기정	공공청사 (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	-	-	-
	복지시설 (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 (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	-	-	
기정	복지시설 (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공공청사 ①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 장위14구역 공공청사 내 경로당(연면적 200㎡)
변경	복지시설 (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공공청사 ①	장위동 233-631 일대	7,368.5	
기정	공공청사 (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 ②	장위동 233-436 일대	327.0	• 장위14구역 치안센터
변경	공공청사 (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 ②	장위동 233-436 일대	327.5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37-2 일대	1,840	장위8구역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신설 (연면적 4,350㎡)
기정	-	-	-	문화시설	장위동 238-83 일대	2,100	장위9구역 •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 (연면적 6,600㎡)

※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역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위 14구역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1)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 번호	명칭	면 적(㎡)			명칭의 유래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91,916.1	감) 180.7	91,735.4			
주제 공원	소 계		75,139.4	-	75,139.4			
	문화 공원	2개소	10,093.3	-	10,093.3			
		415	상길례문화공원	4,081.3	-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례’ 에서 공원명칭 부여	
		A	장위공원	6,012.0	-	6,012.0	예술문화가로(돌곶이로)를 연계하는 공원	
		소공 원	1개소	6,690.0	-	6,690.0		
A	소공원		6,690.0	-	6,690.0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		
생태·문화·근린공원 연계	근린공 원	3개소	39,396.0	감) 180.7	39,215.3			
		411	아랫말공원	22,625.0	-	22,625.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140	오동근린공원	7,623.0	감) 180.7	7,442.3	대성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A	근린공원	9,148.0	-	9,148.0	서울시문화재 김진흥가와 연계한 근린공원	
		3개소	18,960.1	-	18,960.1			
	어린이 공원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90.1	-	4,990.1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649.0	-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장위공원	-	-	-	장위초교 연계	
		소 계	16,776.7	-	16,776.7			
	녹지	연결 녹지	8개소	10,091.9	-	10,091.9		
			22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441.0	-	1,441.0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경축확보
			25 ~27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4,863.5	-	4,863.5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31 ~36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2,733.4	-	2,733.4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보행연결녹지	1,054.0	-	1,054.0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5개소			6,684.8	-	6,684.8			
경관 녹지		a	경관녹지	2,232.4	-	2,232.4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b	경관녹지	378.9	-	378.9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구분	시설 번호	명칭	면적(㎡)			명칭의 유래
			기 정	증 · 감	변 경	
	c	경관녹지	1,208.0	-	1,208.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d	경관녹지	2,651.5	-	2,651.5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e	경관녹지	214.0	-	214.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교통계획) 참고

바. 경관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경관계획) 참고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1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62-1	15.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9.0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8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8	-	장위동	85	12.2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9	-	장위동	238-83	8.4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1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5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 1단계(2009년부터), 2단계(2011년부터), 3단계(2012년부터), 4단계(2013년부터), 5단계(2014년부터), 6단계(2015년부터), 7단계(2023년부터)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 장위 1, 2, 5, 7구역 사업 완료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건축사업(해당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127,289.7	감) 183.4	1,127,106.3	-	
촉진 구역	소 계 (11개 구역)		1,049,312.8	감) 183.4	1,049,129.4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121,634.0	-	121,63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84,248.0	-	84,248.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1,362.0	-	91,362.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감) 183.4	145,174.6	주거정비형재개발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7,976.9	-	77,976.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7,976.9	-	77,976.9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 감	변 경	
계		1,127,289.7	감) 183.4	1,127,106.3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1,122,369.2	감) 183.4	1,122,185.8	99.6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51.0	감) 29.4	60,521.6	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6,590.5	감) 60.1	86,530.4	7.6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 감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933,963.5	감) 93.9	933,869.6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장위1구역 ~ 차) 장위10구역(변경없음)

카) 장위14구역(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5,358.0	감) 183.4	145,174.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86.0	감) 29.4	23,256.6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7,640.0	감) 60.1	47,579.9	32.8
	제2종일반주거지역	74,432.0	감) 93.9	74,338.1	51.2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10) 장위10구역(변경없음)

11) 장위14구역(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평균/ 최고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장위 14구역	14-1	105,97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50.0 210.0	212이하	16층이하/ 25층이하	75m이하	
		14-2	164.0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4-3	209.0	관련 법령에 의함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평균/ 최고층수	최고높이 (m)	
		14-4	167.0							
변경	장위 14구역	14-1	104,55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50.0 210.0	211.6이하	16층이하/ 25층이하	75m이하	
		14-2	166.1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4-3	210.6	관련 법령에 의함						
		14-4	179.3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소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1,048,732.8	1,048,549.4	80,316.6	25,344.0	66,011.0	153,501.0	88,765.7	105,136.9
분 담 륜 (%)		15.34%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296,614.8 (28.28%)	298,162.2 (28.43%)	39,663.2 (49.38%)	7,481.4 (29.52%)	13,330.0 (20.19%)	44,315.0 (28.86%)	31,071.7 (35.0%)	43,716.3 (41.59%)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86,048.8	82,948.8	23,782.0	627.0	607.0	5,237.0	12,382.6	19,018.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83,850.8	85,950.8	7,627.0	787.0	5,522.0	7,951.0	3,981.3	13,556.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33,040.4	31,076.2	-	-	1,399.0	2,185.6	999.0	-
	대지지분⑤	494.5	500.0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61,250.1	160,838.8	8,254.2	6,067.4	8,600.0	33,312.6	15,706.8	11,142.3

구 분		면 적(㎡)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87,635.6	121,634.0	84,248.0	90,782.0	145,358.0	145,174.6
분 담 륜 (%)		15.34%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22,861.9 (26.09%)	24,775.0 (20.36%)	11,892.3 (14.12%)	18,989.0 (20.92%)	38,519.0 (26.50%)	40,066.4 (27.60%)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4,613.7	4,188.0	2,985.5	642.0	10,966.0	8,866.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4,227.95	11,079.0	3,540.5	4,541.0	21,038.0	23,138.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	2,675.0	3,898.3	5,171.5	14,746.0 (공공청사 건축물 및 기부채납 공공주택) 1,966.0 (구역외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14,747.8 (공공청사 건축물 및 기부채납 공공주택)
	대지지분⑤	-	-	-	-	494.5	500.0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4,020.3	12,183.0	9,246.6	18,977.5	23,721.5	23,310.2

※ 14구역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환산면적은 장위8구역의 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하여 8구역이 부담함에 따라, 14구역에서 제외함

※ 기존 고시 오류 정정사항 포함

다.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미만	전용면적 40 ~ 50㎡ 미만	전용면적 50 ~ 60㎡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계
기정	장위 1구역	71(30)	69	22	-	162(30)
기정	장위 2구역	40	37	15	-	92
기정	장위 3구역	84	79	21	-	184
기정	장위 4구역	194	200	90	-	484
기정	장위 5구역	123	117	36	-	276
기정	장위 6구역	129	126	30	-	285
기정	장위 7구역	125	137	33	-	295
기정	장위 8구역	144	-	581	59	784
기정	장위 9구역	112	-	450	201	763
기정	장위10구역	128	118	75	20	341

구 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미만	전용면적 40 ~ 50㎡ 미만	전용면적 50 ~ 60㎡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계
기정	장위14구역	189	203	47	-	439
계(세대)		1,339(30)	1,086	1,400	280	4,105(30)
비율(%)		32.6	26.5	34.1	6.8	100.0

※ 장위1구역 ()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공주택임

파.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기타 계획(에너지순환,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더.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1,127,289.7	감) 183.4	1,127,106.3	100.0	
존치 관리 구역	소계	77,976.9	-	77,976.9	6.9	
	②	14,767.0	-	14,767.0	1.3	장위초등학교
	③	2,408.0	-	2,408.0	0.2	장위동교회
	⑤	4,215.0	-	4,215.0	0.4	공공공지 및 사회복지시설
	⑥	2,453.0	-	2,453.0	0.2	성북청소년수련관
	⑦	3,183.8	-	3,183.8	0.3	장석시장
	⑩	48,627.1	-	48,627.1	4.3	도로
	⑬	2,323.0	-	2,323.0	0.2	사랑제일교회 등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러.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10) 장위10구역(변경없음),

11) 장위14구역 : I-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

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89.7	감) 183.4	1,127,106.3	-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127,289.7	감) 183.4	1,127,106.3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1,122,369.2	감) 183.4	1,122,185.8	99.6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51.0	감) 29.4	60,521.6	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6,590.5	감) 60.1	86,530.4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933,963.5	감) 93.9	933,869.6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 변경사유 : 장위14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6)	한천로
기정	중로	1	A	20~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0	20~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장위로 완화차로 확보
변경	중로	1	515	20~23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23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1	18~20	집산 도로	366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78-1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41	장위동 143-38	장위동 89-7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4	18~23	집산 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295-25	일반 도로			샘터길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16-9	장위동 316-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 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5-2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3	520	12~15	국지 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 도로	364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 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 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317-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 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 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중로	2	-	20	집산 도로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 도로			장월로 (9구역)
기정	중로	3	-	12~15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장월로 (10구역)
기정	소로	1	S1	10	국지 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 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 도로	80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S6	10~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①	10~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소로	1	②	10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②	10~11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0	장위동 63-58	장위동 63-7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 도로		서고시406 (14.11.27)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2	B	8	국지 도로	8	장위동 156	장위동 157-9	일반 도로		서고시99 (20.03.12)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진출입로
기정	소로	2	C	8	국지 도로	52	장위동 75-462	장위동 279	일반 도로			김진흥가 진입로
기정	소로	2	D	6	국지 도로	200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8	장위동 205-17	장위동 270-214	일반 도로		서고시406 (14.11.27)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59	장위동 63-60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463	장위동 270-46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24	6~8	국지 도로	142	장위동 37-31	장위동 56	일반 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38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B	6		185	장위동 136-53	장위동 77-66	일반 도로		서고시88 (19.03.07)	
기정	소로	3	234	6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3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소로	3	C	4	국지 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15	중로 1-515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20m → 20m ~ 23m	•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소로 1-①	소로 1-①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장위로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및 회전교차로 구간 도로 확폭
소로 1-②	소로 1-②	• 일부구간 도로 확폭 - 10m → 10m ~ 11m	• 부출입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1-47 일대	2,590.0	감) 181.4	2,408.6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②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감) 1.5	7,368.5	서고시302 (22.07.14)	공공청사 중복결정 (하부조성)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면적 변경 - 2,590.0㎡ → 2,408.6㎡ (감 181.4㎡)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주차장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반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감) 180.7	1,453,677.3 (7,442.3)	건고시2181 (66.02.05)	-
기정	411	아랫말 공원	근린 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625.0	-	22,625.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A	근린공원	근린 공원	장위동 76-3일대	9,148.0	-	9,148.0	-	-
기정	A	소공원	소공원	장위동 238-38일대	6,690.0	-	6,690.0	-	-
기정	415	상갈레 공원	문화 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81.3	-	4,081.3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	-
기정	418	간대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90.1	-	4,990.1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9	장석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649.0	-	5,649.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A	-	문화 공원	장위동 69-36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0	오동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7,623.0㎡ → 7,442.3㎡ (감 180.7㎡)	• 소로1-①호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녹지(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3)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7-79	3,392.9 (103.9)	-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기정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319-1	572.4	-	572.4	서고시111 (08.04.03)	
기정	7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9.0	-	1,339.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9-18일대	750.0	-	75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282.0	-	282.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11.08.11)	
변경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596일대	340.0	증) 1.3	341.3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542일대	471.0	감) 36.8	434.2	서고시302 (22.07.14)	
변경	③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678일대	401.0	감) 16.0	385.0	서고시302 (22.07.14)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의미함

※ 시설번호(①, ②, ③)는 임시번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340.0㎡ → 341.3㎡ (증 1.3㎡)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471.0㎡ → 434.2㎡ (감 36.8㎡)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401.0㎡ → 385.0㎡ (감 16.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98-1일대	2,050.0	-	2,05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53	소방 치안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0-172일대	986.9	-	986.9	서고시111 (08.04.03)	
기정	54	장위3동 치안서비스 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0-388일대	754.8	-	754.8	서고시111 (08.04.03)	
기정	55	장위3동 커뮤니티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158-15일대	1,297.2	-	1,297.2	서고시111 (08.04.03)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5-18일대	299.5	-	299.5	서고시290 (11.09.29)	
기정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69-53일대	1,415.0	-	1,415.0	서고시240 (19.07.25)	
변경	①	공공청사	공공 청사	장위동 233-631일대	7,370.0	감) 1.5	7,368.5	서고시302 (22.07.14)	주차장② 중복결정
변경	②	공공청사	치안 센터	장위동 233-436일대	327.0	증) 0.5	327.5	서고시302 (22.07.14)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 면적 변경 - 7,370.0㎡ → 7,368.5㎡ (감 1.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청사	치안센터	• 면적 변경 - 327.0㎡ → 327.5㎡ (증 0.5㎡)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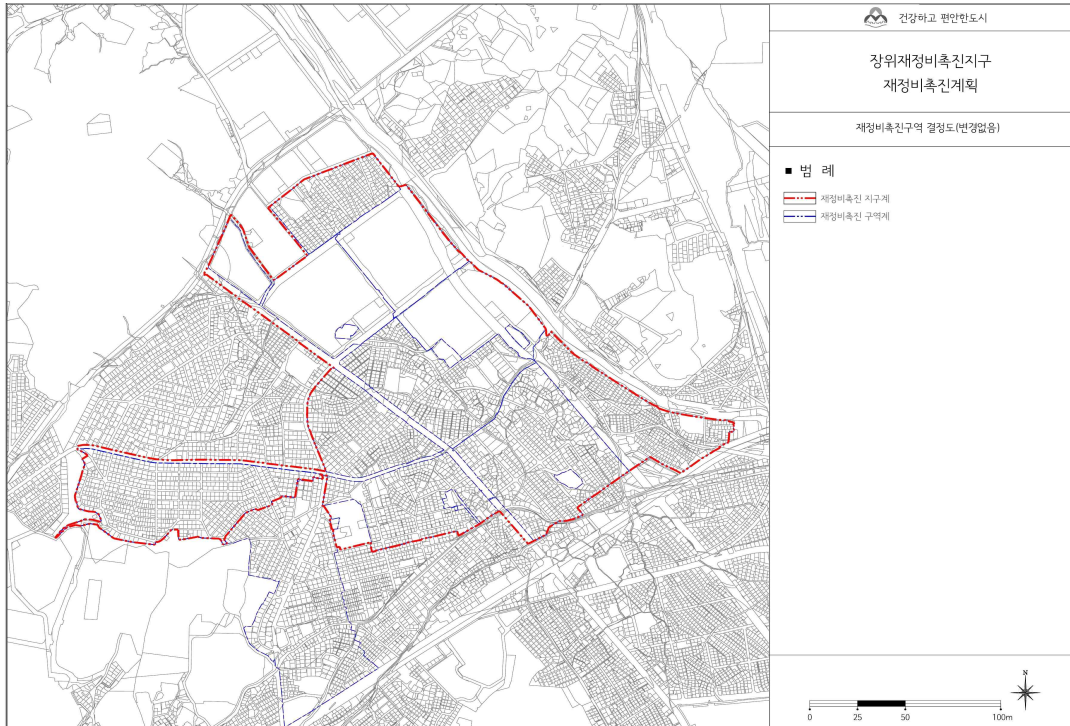
(2) 학교(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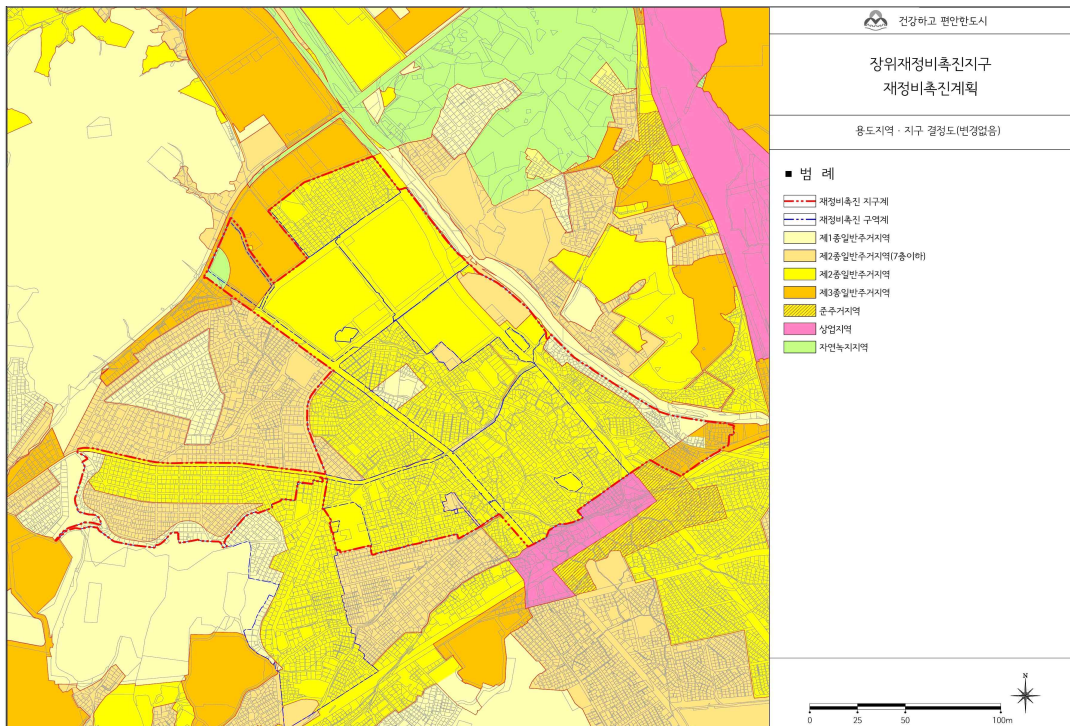
(4)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5) 문화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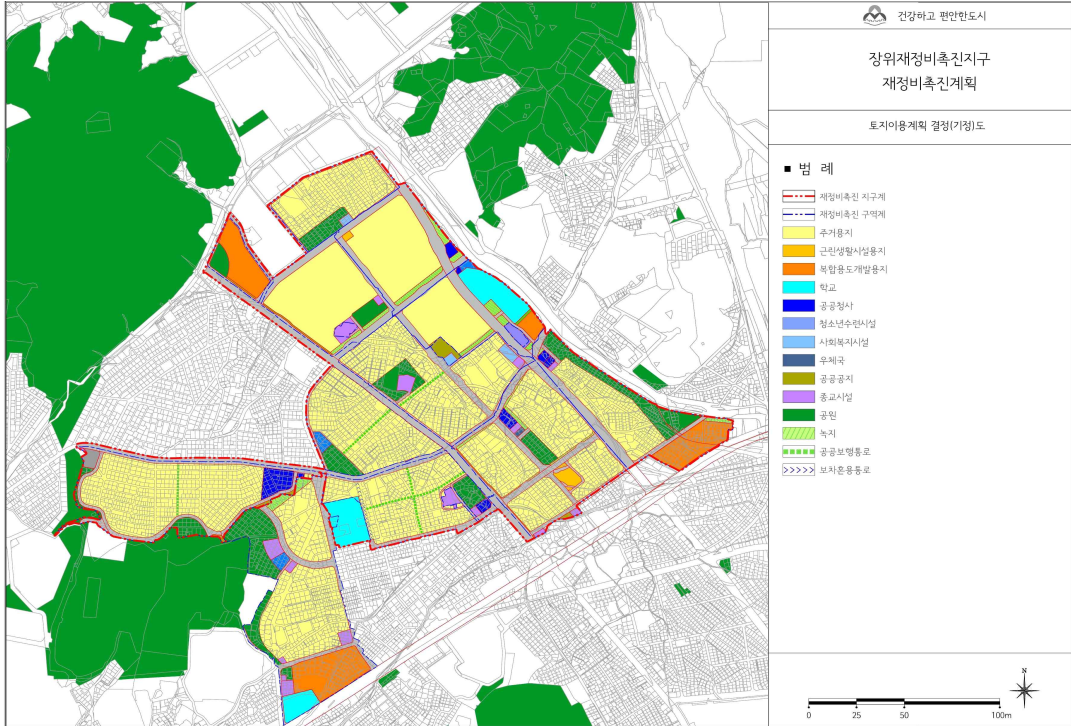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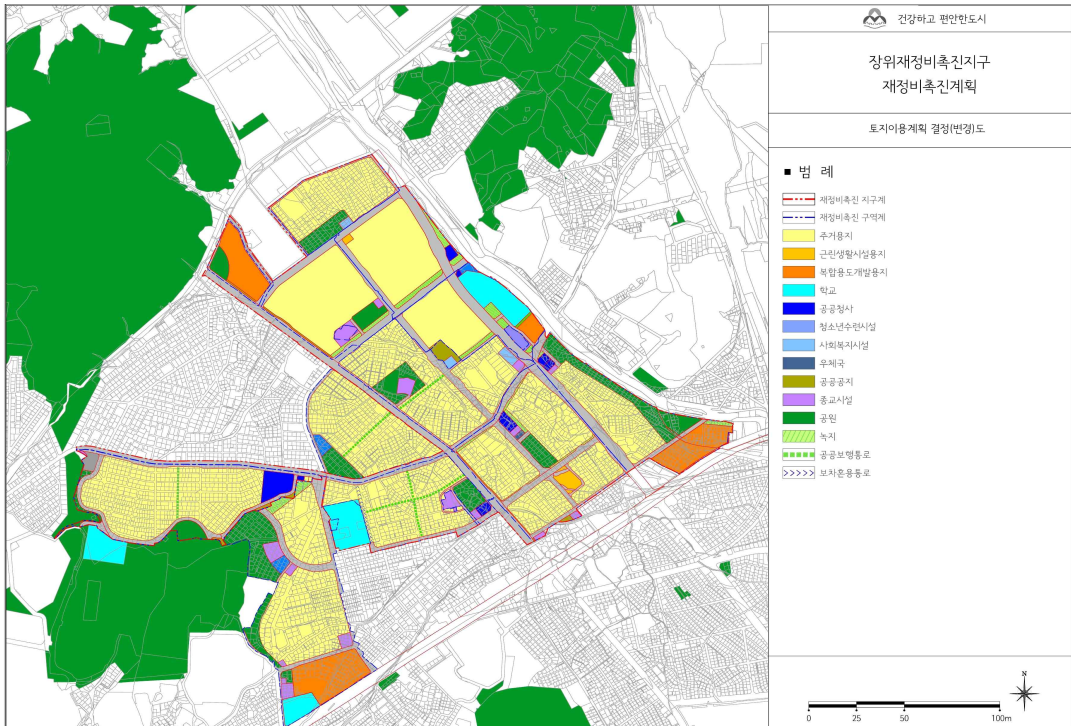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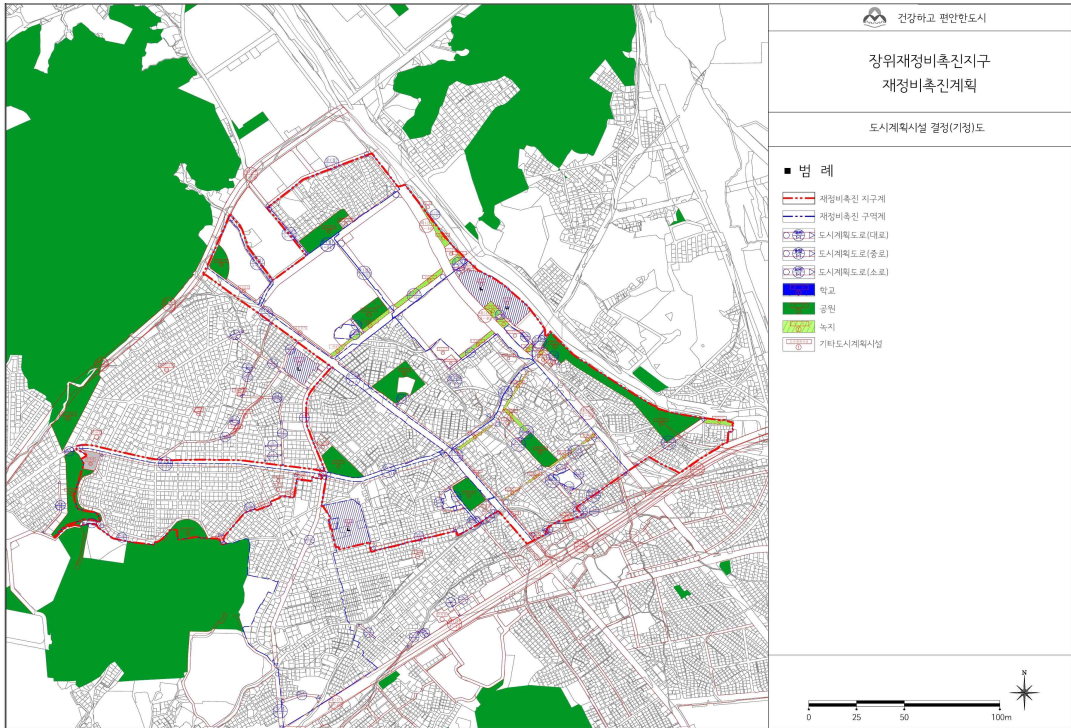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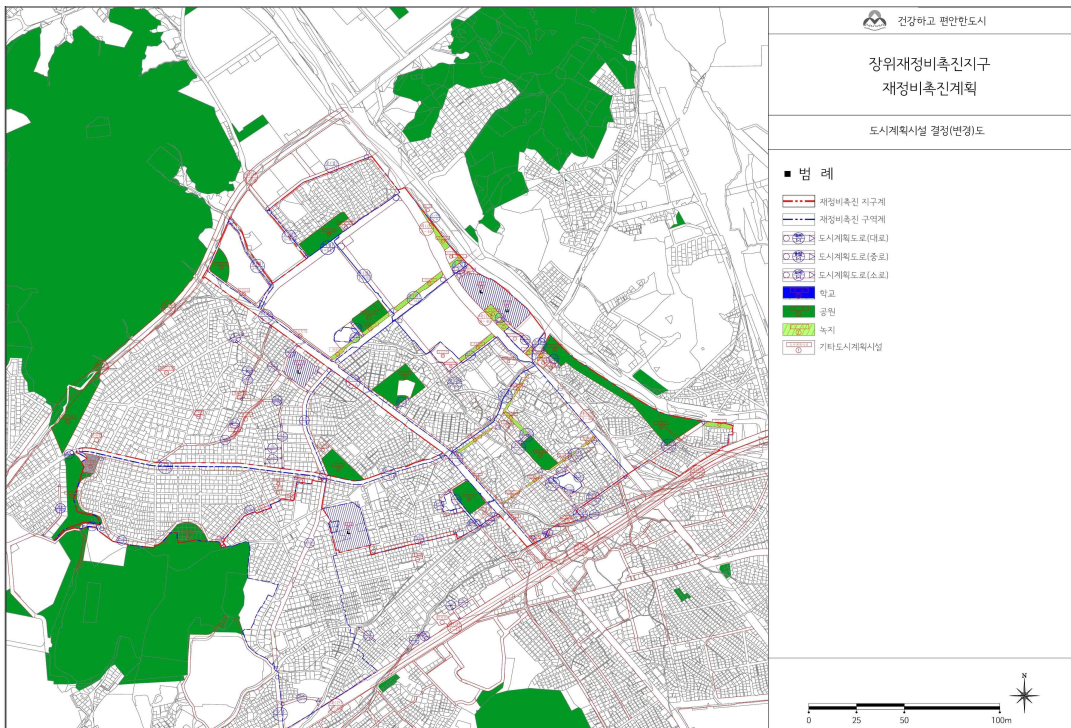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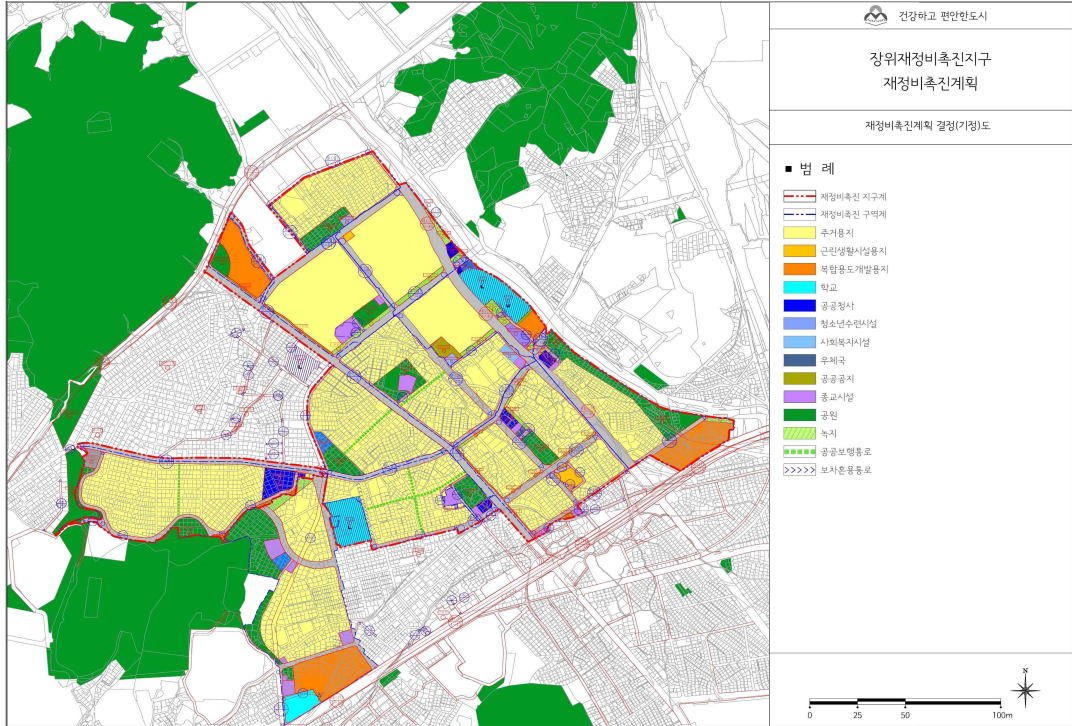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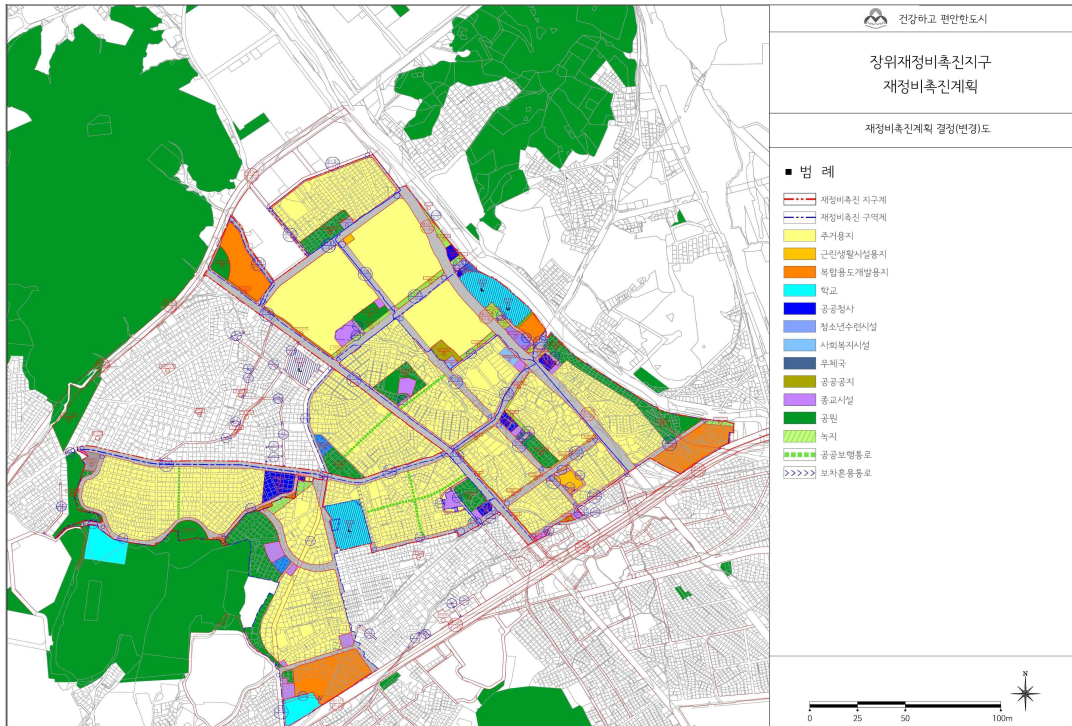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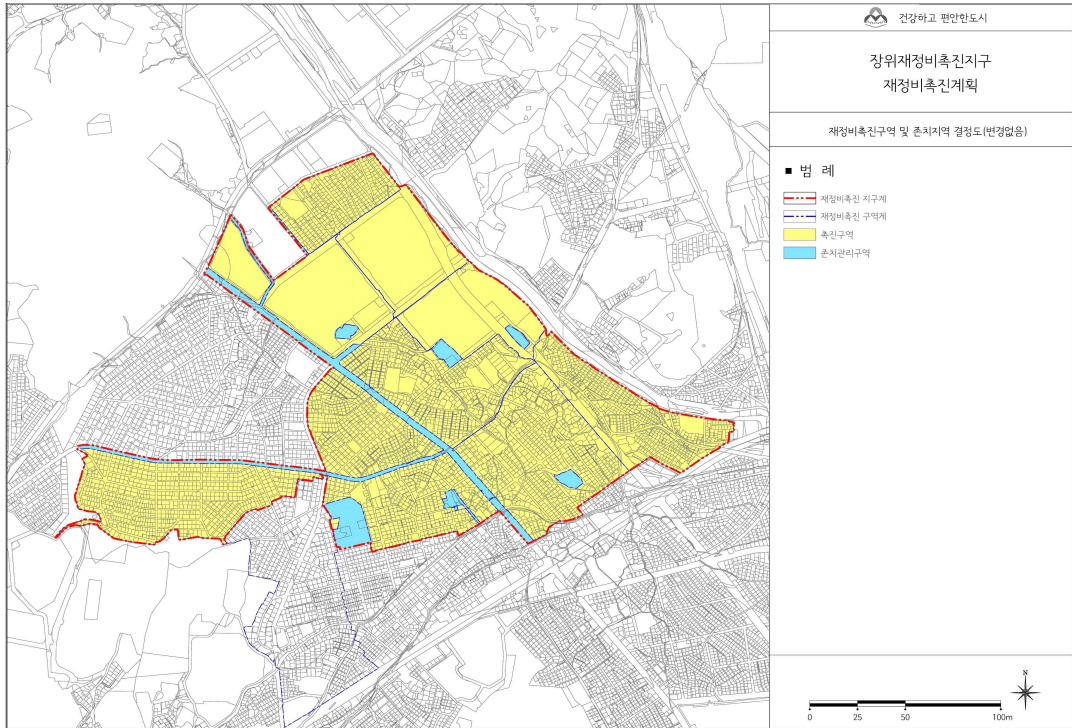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변경없음)]



이 하 여 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3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비고 (최초결정고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47,788	2026. 7. 24.까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 (2019.7.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기간(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으로부터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을 요청한 바, 역세권 주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7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4호
역촌역세권(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역촌역세권(대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1015호(2024.5.22.)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2004.2.2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75호(2006.3.9.)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0호(2018.3.29.) 결정(변경)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05(2001.6.21.)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03호(2011.4.28.)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38호(2023.4.20.)로 결정(변경)된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역촌역세권(대조동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	역촌역세권(대조동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	증) 37,274.5	37,274.5	-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7,274.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8,722.6	23.40	-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도로	4,682.6	12.56	-
	공원	4,040.0	10.84	-
획지	소계	28,551.9	76.60	-
	획지1	28,155.9	75.5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396.0	1.06	파출소

※ 상지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7,274.5	-	37,274.5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94.2	-	394.2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39.6	감)20,552.7	1,386.9	3.7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20.7	감)6,289.6	5,231.1	14.03	
	준주거지역	3,420.0	증)26,842.3	30,262.3	81.19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대조동 36-15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552.7	470.60 이하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	대조동 59-29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89.6	470.60 이하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4	5,840 (571)	162,144 (4,683)	-	-	-	-	-	-	4	5,840 (571)	162,144 (4,683)
대로	1	5,100 (41)	153,000 (144)	-	-	-	-	-	-	1	5,100 (41)	153,000 (144)
중로	3	740 (530)	9,144 (4,539)	-	-	-	-	-	-	3	740 (530)	9,144 (4,539)

주) ()안은 구역 내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28	28~30	보조간선도로	5,100	신영동	응암역	일반 도로			진흥로
변경	대로	3	228	28~30	보조간선도로	5,100 (41)	신영동	응암역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329 (125)	대조동 77-12	대조동 33-10	일반 도로	대촌길	1969.1.18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486 (276)	대조동 77-12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대촌길	1969.1.18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3	대조동 45-6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113	대조동 45-6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구간 확폭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41	대조동 38-27	대조동 33-65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51	대조동 33-59	대조동 64-11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0 (150)	대조동 3-82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1.18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55	대조동 179-14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1.18.	구역 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대조동 59-36	대조동 59-36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2	4~6	국지도로	83	대조동 59-55	대조동 59-61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19	4~6	국지도로	48	대조동 38-52	대조동 59-46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33	6	국지도로	135	대조동 59-51	대조동 3-59	일반 도로		1969.1.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34	6	국지도로	100	대조동 42-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1969.1.18	
폐지	소로	3		4	국지도로	166	대조동 36-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28	대로3-228	•일부구간 확폭 - B = 2~3m 확폭	•정비사업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로의 완화차로 확보
중로3-1	중로3-1	•연장 확대 - L : 329 → 486m	•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인접도로 대상지 구간으로 노선 연장
소로2-3	중로3-(2)	•일부구간 확폭 - B = 8 → 12m - L = 113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를 확폭
-	중로3-(3)	•도로 신설 - B = 12m 확폭 - L = 141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 도로를 확폭하고, 계획구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소로2-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2-2	소로2-2	•노선 축소 - L : 750 → 55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구역내 폭원 확장 및 인접 노선에 편입함으로써 기존 노선의 연장 축소
소로3-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2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19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3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4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류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①	어린이공원	대조동 59-85일대	-	증) 4,040.0	4,040.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①	어린이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4,040.0㎡	•인근 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 신설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대조동 59-85일대	54.0	감) 54.0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54.0㎡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설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대조동 59-1번지 일대	-	증)150.0	150.0	-
공동이용시설	소 계		-	증)3,900.0	3,900.0	
	경로당		-	증)400.0	400.0	필수
	주민운동시설		-	증)1,800.0	1,800.0	필수
	어린이놀이터		-	증)700.0	700.0	필수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다함께돌봄센터		-	증)100.0	100.0	필수
	어린이집		-	증)600.0	600.0	필수
	작은도서관		-	증)300.0	300.0	필수
커뮤니티 지원시설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	증)3,500	3,5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역촌역세권 (대조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37,274.5	획지1	28,155.9	대조동 59-1 일대	184	-	-	184	-	-
		획지2	396.0	대조동 38-10						

8.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역촌역세권 (대조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37,274.5	획지1	28,155.9	대조동 59-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기준 213.5 허용 435.4 상한 470.6 이하	120이하/ 35층이하	-
			획지2	396	대조동 38-10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주택공급계획 총 1,302세대(일반분양 725세대, 공공임대(장기전세) 358세대, 공공임대(재개발) 197세대, 공공임대(기부채납) 22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구분(전용면적)		합계 (비율)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합계		1,302세대 (100.0%)	725세대	358세대	22세대	197세대		
		공동 주택	60㎡이하	995세대 (76.42%)	463세대	313세대	22세대	197세대		
			60㎡~85㎡ 이하	243세대 (18.66%)	198세대	45세대	-	-		
85㎡초과	64세대 (4.92%)		64세대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3m : 획지1~도로변 획지 경계부(진흥로13길 남측구간 제외), 획지2~진흥로 변 획지 경계부 - 건축한계선 6m : 획지1~진흥로13길 남측구간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 통로	·중로3-1호선 ~ 진흥로 연결, 폭 6m 이상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	획지2 (이전대토) (㎡)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등 (공공임대주택)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계 (㎡)	도로 (㎡)	공원 (㎡)	계 (㎡)	환산 면적 (㎡)	토지 지분 (㎡)														
		37,274.5	28,155.9	396	8,722.6	4,682.6	4,040.0	848.27	423.01	425.26	2,924.5	3,937.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2,709.37㎡[종상향 면적(28,115.9㎡) 대비 9.64%] =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 공공시설등(공공임대주택)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8,722.6㎡ + 848.27㎡ - 2,924.5㎡ - 3,937.0㎡ = 2,709.37㎡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3.50% = (200㎡x20,552.7㎡+250%x6,289.6㎡+250%x1,313.6㎡)/28,155.9㎡= 213.50% ■ 허용용적률 : 435.40%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공급 : 완화된 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1/2 이상 = (435.40-213.50) × 1/2 = 110.95 [법정 31,238.97㎡(110.95%) < 계획 31,631.9㎡(112.35%)]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건축계획(안)</th></tr><tr><td rowspan="4">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td></tr><tr><td>커뮤니티 지원시설</td><td>●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및 지역갤러리 등 (기준 : 3,479.63㎡ 이상 < 계획 3,500.0㎡)</td></tr><tr><td>친환경 건축물</td><td>「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td></tr><tr><td>역사문화보존</td><td>●해당없음</td></tr></table>											구 분		건축계획(안)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및 지역갤러리 등 (기준 : 3,479.63㎡ 이상 < 계획 3,500.0㎡)	친환경 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역사문화보존	●해당없음
	구 분		건축계획(안)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및 지역갤러리 등 (기준 : 3,479.63㎡ 이상 < 계획 3,500.0㎡)																				
친환경 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역사문화보존		●해당없음																					
■ 상한용적률 : 470.60% 이하																							
상한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213.5%, 허용용적률 435.4%,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110.95% 이상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435.4% × (1 + 1.3 × 0.5845 × 0.0824 + 1.2 × 0.0152)] = 470.6% 이하 (계획 458.12%)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하는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722.6㎡+425.26㎡-2,924.5㎡-3,937.0㎡) / (28,155.9㎡-425.26㎡) = 0.0824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값의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산정 시, 기부채납 부지는 제외, 건축물·현금 환산부지 '미제외'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423.01㎡) ÷ (28,155.9㎡-425.26㎡) = 0.0152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54.52% ÷ 435.40% = 0.5845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
- ※ 사업대상지의 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및 서울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함

가. 공공임대주택 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소계	공공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재개발)	전체 비율
합계		1,302	100.0	577	358	22	197	100.0
공동주택	40㎡이하	105	8.07	95	-	-	95	16.46
	40㎡초과~50㎡이하	124	9.52	102	-	-	102	17.68
	50㎡초과~60㎡이하	766	58.83	335	313	22	-	58.06
	60㎡초과~85㎡이하	243	18.66	45	45	-	-	7.8
	85㎡초과	64	4.92	-	-	-	-	-

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기준	• 전체 세대수 : 1,302세대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197세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 1,302세대 × 15% = 195.3세대 ※ 197세대 계획 > 195.3세대
------	---

건립규모 (전용)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임대 주택	합계	197	15.13	100.0
	32.8㎡	95	7.3	48.22
	44.3㎡	102	7.83	51.78

다.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계획

기준용적률		• 213.50%			
허용용적률		• 435.40%			
임대주택 의무용적률	용적률 증가분	• $435.40\% - 213.50\% = 221.9\%$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	• $221.9\% \times 0.5 = 110.95\%$ • $28,155.9 \text{ ㎡} \times 110.95\% = 31,238.97 \text{ ㎡}$			
	의무 연면적	• 31,238.97㎡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	84.8㎡	313	26,542.4
		84.9㎡	113.1㎡	45	5,089.5
		합계		358	31,631.9
		비교 • 사회혼합 • 총 대지지분 : 7,210.43㎡ > 31,238.97㎡			

라. 공공임대주택(기부채납) 건설계획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	84.8㎡	22	1,865.6	※ 임대주택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부속토지지분 : 425.26㎡ -건축물의 환산부지면적 : 423.01㎡
	합계		22	1,865.6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연면적 등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시 조정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정면적 최대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 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 사업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내 동선체계 구축 - 비상시 보행자등선이 비상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로 유도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대상지내 분포하는 수목의 대부분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수목 또는 주택지내 조경수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재활용할 계획임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III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경관녹지, 공원 및 조정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 지 등 실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절성토비를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 환경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1.14%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 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 예상 ●생활오수 발생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기후 대기 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건축물 신축시(지하5층~지상35층) 기상(바람) 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 획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풍속의 변화를 최소 화할 계획임.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기 타	대기질,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발생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가로녹지를 35%	○	조경녹지 및 가로녹지 조성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지율 상승계획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일조	○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를 위한 보행동선 계획 및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및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소 설치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현황세대수 : 585세대 - 계획세대수 : 1,302세대 - 증가세대수 : 717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측 대은초등학교 입지	• 대상지 주변 초등학교는 대은초등학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 공사 시 발생하는 교육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계획	거리 200m 이상 이격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영역성 확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 색채 등을 달리하여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활동의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조경기준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① 역촌역세권(대조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결 정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대조동 59-1일원	-	증) 37,274.5	37,274.5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신설 -A = 37,274.5㎡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274.5	-	37,274.5	100.00	
주거 지역	소 계	37,274.5	-	37,274.5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94.2	-	394.2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39.6	감)20,552.7	1,386.9	3.7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20.7	감)6,289.6	5,231.1	14.03	
	준주거지역	3,420.0	증)26,842.3	30,262.3	81.19	

■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대조동 36-15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552.7	470.60 이하	●역촌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대조동 59-29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89.6	470.60 이하	●역촌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4	5,840 (571)	162,144 (4,683)	-	-	-	-	-	-	4	5,840 (571)	162,144 (4,683)
대로	1	5,100 (41)	153,000 (144)	-	-	-	-	-	-	1	5,100 (41)	153,000 (144)
중로	3	740 (530)	9,144 (4,539)	-	-	-	-	-	-	3	740 (530)	9,144 (4,539)

주) ()안은 구역 내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28	28~30	보조간선도로	5,100	신영동	응암역	일반 도로			진흥로
변경	대로	3	228	28~30	보조간선도로	5,100 (41)	신영동	응암역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329 (125)	대조동 77-12	대조동 33-10	일반 도로	대춘길	1969.1.18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486 (276)	대조동 77-12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대춘길	1969.1.18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3	대조동 45-6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113	대조동 45-6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41	대조동 38-27	대조동 33-65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51	대조동 33-59	대조동 64-11	일반 도로		1969.1.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0 (150)	대조동 3-82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1.18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55	대조동 179-14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1.18.	구역 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대조동 59-36	대조동 59-36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2	4~6	국지도로	83	대조동 59-55	대조동 59-61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19	4~6	국지도로	48	대조동 38-52	대조동 59-46	일반 도로		2006.3.9	
폐지	소로	3	33	6	국지도로	135	대조동 59-51	대조동 3-59	일반 도로		1969.1.18	
폐지	소로	3	34	6	국지도로	100	대조동 42-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1969.1.18	
폐지	소로	3		4	국지도로	166	대조동 36-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28	대로3-228	•일부구간 확폭 - B = 2~3m 확폭	•정비사업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로의 완화차로 확보
중로3-1	중로3-1	•연장 확대 - L : 329 → 486m	•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인접도로 대상지 구간으로 노선 연장
소로2-3	중로3-2	•일부구간 확폭 - B = 8 → 12m - L = 113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행도로를 확폭
-	중로3-3	•도로 신설 - B = 12m 확폭 - L = 141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행 도로를 확폭하고, 계획구간 도 시계획시설로 신설
소로2-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	소로2-2	•노선 축소 - L : 750 → 55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구역내 폭원 확장 및 인접 노선에 편입함으로써 기존 노선의 연장 축소
소로3-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2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19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3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4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류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①	어린이공원	대조동 59-85일대	-	증) 4,040.0	4,040.0	-	-

■ 결정 사유서

시설명	세분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①	어린이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4,040.0㎡	•인근 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 신설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대조동 59-36 일대	54.0	감) 54.0	-	-	-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4.0㎡	•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설 폐지

4)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 공공시설 부담기준(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구분	종상향 면적(㎡)	공공시설 부담기준	공공시설 확보면적(㎡)
제2종→준주거	20,552.7	2단계 상향시 (20%이상)	$20,552.7 \times 0.2 = 4,110.54$
제3종→준주거	6,289.6	1단계 상향시 (15%이상)	$6,289.6 \times 0.15 = 943.44$
준주거→준주거 ('91.5.11이후변경)	1,313.6	1단계 상향시 (15%이상)	$1,313.6 \times 0.15 = 197.04$
합계	28,155.9	-	5,251.02㎡(18.65%)이상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함 -종상향 면적(28,115.9㎡)대비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구분	공공시설 부담률	공공시설 부담기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임대주택)	2,709.37㎡	순부담 면적 (도로 4,682.6㎡, 공원 4,040.0㎡, 공공임대(기부채납) 848.27㎡ 중 국공유지 면적 6,861.5㎡ 제외)
공공임대주택 무상양여 지분 중 공공시설 부담률에 해당되는 면적	2,625.51㎡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 총 면적 7,210.43㎡
합계	5,334.88㎡ (18.95%)	기준 18.65% 이상 -종상향 면적(28,115.9㎡)대비

- 1)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020.10.13)」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허용용적을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으로 설치·제공한 비율의 1/2 한도까지 같음
- 2) 공공임대주택 지분면적은 현재 건축계획(안)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3)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함
- 4) 임대주택 22세대(전용 59㎡) 기부채납 포함

■ 임대주택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연면적	2,981.73㎡	전용 59㎡, 22세대
건축비	1,035,636원/㎡	1,139,200원/1.1
설치비용	3,087,984,691원	연면적 × 건축비
부지가액	7,300,000원	공시지가 2배
환산부지면적	423.01㎡	설치비용 / 부지가액
대지지분	425.26㎡	
제공면적	848.27㎡	환산부지 면적 + 대지지분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①	28,551.9	획지1	대조동 59-1 일대	28,15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대조동 38-10	396.0	공공업무시설 (파출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건축물 용도
신설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및 제2호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부대복리시설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신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둑 공공업무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용 도 지 역	건폐율	비고
신설	준주거지역	60% 이하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획지2

(2) 용적률 계획

구 분	획지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13.50% 이하	435.40% 이하	470.60% 이하	준주거지역
신설	획지2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건축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 (110.95% 이상) $= \{(\text{허용}) 435.40\% - (\text{기준}) 213.50\%\} \times 50/100 \approx 110.95\%$ $\Rightarrow$ 법정 : 법정 31,238.97㎡ (110.95%이상) < 계획 31,631.9㎡ (112.35%)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Rightarrow$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 및 지역갤러리 등 [법정 : 3,479.63㎡ 이상 < 계획 : 3,500.00㎡]
	친환경 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역사문화보전	●해당없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위 치	용적률 완화 사항		비 고
신설	획지1	상한 용적률	$\bullet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2 \times \alpha (\text{건축물})]$ $= 435.40\% \times (1 + 1.3 \times 0.5845 \times 0.0824 + 1.2 \times 0.0152)$ $= 470.60\%$ (완화용적률 : 35.2%) $\ast \alpha (\text{토지}) = \text{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text{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8,722.6 + 425.26 - 2,924.5 - 3,937.0) / (28,155.9 - 425.26)$ $= 0.0824$ $\ast \alpha (\text{건축물}) = \text{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 \text{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423.01 / (28,155.9 - 425.26)$ $= 0.0152$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건축물) 기부채납
		가중치	$\bullet \text{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text{사업부지 용적률}$ $= 254.52\% / 435.40\% = 0.5845$	

(3) 건축물 높이 계획

구 분	획지	높이기준	비 고
신설	획지1	120m 이하 / 35층 이하	
신설	획지2	관련 법령 따름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3m	획지1	도로변 획지 경계부	도면 참조
	획지2	진흥로 변 획지 경계부	
건축한계선 6m	획지1	진흥로13길 남측구간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획지1	$\bullet$ 대지 경계부 건축한계선(대지경계로부터 3m~6m)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3m 구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6m 구간은 도로측 1m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5m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bullet$ 전면공지 및 도로변 녹지대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향상시켜 가로환경 증진을 도모
	획지2	$\bullet$ 진흥로변 대지 경계부 건축한계선(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대지 내 공지	획지1	$\bullet$ 대지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여 중앙광장 및 휴식, 만남의 공간 조성하고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

2) 교통처리계획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획지1	•진흥로와 중로3-1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B = 6m 이상

(2)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간	획지1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1개소 외 차량출입불허
	획지2	•진흥로변 1개소
단지 내 차량동선	획지1	•주차시설은 지하로 계획하여 지상으로는 최소한의 긴급차량동선만 허용

3) 환경성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III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절성토비율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 환경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1.14%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 예상 •생활오수 발생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기후 대기 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건축물 신축시(지하5층~지상35층) 기상(바람) 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풍속의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대기질,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발생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기 타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식율 35%	○	•조경녹지 및 가로녹지 조성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식율 상승계획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보행자를 위한 보행동선 계획 및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및 보행안전에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소 설치	-

4)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
- ※ 사업대상지의 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및 서울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함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
				소계	공공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재개발)	전체 비율
합계		1,302	100.0	577	358	22	197	100.0
공동주택	40㎡이하	105	8.07	95	-	-	95	16.46
	40㎡초과~50㎡이하	124	9.52	102	-	-	102	17.68
	50㎡초과~60㎡이하	766	58.83	335	313	22	-	58.06
	60㎡초과~85㎡이하	243	18.66	45	45	-	-	7.8
	85㎡초과	64	4.92	-	-	-	-	-

②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지정	위치	면적(㎡)			최 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역촌동 17-1 일원	109,269	감) 15,426	93,8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 2. 2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축소 -A= 109,269㎡→ 93,843㎡ 감) 15,426㎡	역촌역세권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되는 대조동 일대 지역을 구역에서 제척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09,269.00	감) 15,426.0	93,843.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1.00	감) 1,272.0	579.00	0.62	
	제3종일반주거지역	62,528.09	감) 11,570.0	50,958.09	54.30	
	준주거지역	44,889.91	감) 2,584.0	42,305.91	45.0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	대조동 44-1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72.0	200%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대조동 43-5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570.0	250%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대조동 44-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2,584.0	400%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로 서울시 미관지구 해제로 구역 내 지정된 용도지구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4	14,084 (2,646)	33,977	-	-	-	6	7,443 (1,088)	18,170	18	6,641 (1,558)	15,807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대로	2	11,530 (770)	21,425	-	-	-	1	6,790 (435)	13,050	1	4,740 (335)	8,375
중로	2	599 (128)	962	-	-	-	-	-	-	2	599 (128)	962
소로	20	1,955 (1,748)	11,590	-	-	-	5	653	5,120	15	1,302 (1,095)	6,470

주) ()는 구역내 연장이고, 면적은 대상지 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2	30~33	주간선 도로	6,790 (435)	녹번동	응두리928 (창릉천)	일반 도로		1963.12.24	
기정	대로	3	33	25	보조 간선 도로	4,740 (335)	북가좌동	불광동	일반 도로		1966.06.21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51	대조동 33-59	대조동 64-11	일반 도로		1969.01.18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750	대조동 3-82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01.18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55	대조동 179-14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연장축소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29	대조동 77-12	대조동 33-10	일반 도로	대촌길	1969.01.18	구역 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486 (15)	대조동 77-12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대촌길		소로2-2→ 중로3-1편입
기정	소로	2	3	5~8	국지 도로	117	대조동 45-2	대조동 59-88	일반 도로		1969.01.18	서고 제268호 (20.06.25) 변영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13	대조동 45-6	대조동 59-14	일반 도로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87	녹번동 152-72	녹번동 152-15	일반 도로		2006.03.09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305	역촌1동 17-19	역촌1동 16-2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16	역촌1동 16-7	역촌동 16-14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90	녹번동 80-40	녹번동 152-15	일반 도로		1977.04.27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	대조동 59-36	대조동 59-36	일반 도로		2006.03.09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	4~6	국지 도로	83	대조동 59-55	대조동 59-61	일반 도로		2006.03.09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5	5	국지 도로	68	대조동 179-48	대조동 59-69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6	4~6	국지 도로	79	녹번동 144-57	녹번동 147-2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7	5~6	국지 도로	132	녹번동 146-4	녹번동 144-58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55	녹번동 144-29	녹번동 144-35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9	5	국지 도로	47	녹번동 80-2	녹번동 144-45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83	녹번동 80-30	녹번동 80-25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67	녹번동 80-34	녹번동 152-76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2	5	국지 도로	88	역촌1동 17-5	역촌1동 17-48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3	5	국지 도로	67	역촌1동 17-15	역촌1동 17-31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94	녹번동 153-39	녹번동 153-16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31	녹번동 153-21	녹번동 153-47	일반 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2	녹번동 162-2	녹번동 162-1	일반 도로		2006.03.09	
폐지	소로	3	19	4~6	국지 도로	48	대조동 38-52	대조동 59-46	일반 도로		2006.03.09	노선폐지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3	특수 도로	23	녹번동 144-21	녹번동 144-60	보행자 전용도로		2006.03.09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82	역촌1동 27-32	역촌1동 27-47	일반 도로		2006.03.09	
폐지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35	대조동 59-51	대조동 3-59	일반 도로		1969.01.18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4	6	국지 도로	100	대조동 42-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1969.01.18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254 (47)	녹번동 137-32	녹번동 146-2	일반 도로		1969.01.18	

주) ()는 구역내 연장이고, 면적은 대상지 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	소로2-2	•노선 축소 - L : 750m → 55m	•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및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 연장 축소
소로2-2 중로3-1	중로3-1	•폭원 확장 및 노선 연장 - B : 8m → 12m - L : 329m → 486m	•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 확장으로 인접도로 (중로3-1호선)와 노선 통합으로 기존 도로 노선 연장
소로2-3	중로3-2	•폭원 확장 - B = 5~8m → 12m - L = 117m → 113m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정비구역내 도로 폭원 확장 반영
소로2-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1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2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19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3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소로3-34	-	•도로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나) 주차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나)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대조동 59-36	54	감) 54	-	서고2018-90 (2018.3.29.)	제3종일반 주거지역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4.0㎡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설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 변경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A	A-1	-	대조동
	A-2	A-2	
	A-3	A-3	
	A-4	-	
	A-5	-	
	A-6	-	
B	B-1	B-1	역촌동
	B-2	B-2	
	B-3	B-3	
	B-4	B-4	
	B-5	B-5	
C	C-1	C-1	녹번동
	C-2	C-2	
	C-3	C-3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C-4	C-4	
	C-5	C-5	
	C-6	C-6	
	C-7	C-7	
	C-8	C-8	

주)A-1, A-4, A-5, A-6 :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2) 단위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3) 필지분할 :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위 치	개소	가구 번호	위 치	개소	
필지 분할	A-2	대조동 59-93	1	A-2	대조동 59-93	1	
	A-3	대조동 59-70, 58-4, 58-6	2	A-3	대조동 59-70, 58-4, 58-6	2	
	A-5	대조동 44-21, 42-5	2	-	-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 역에서 제척 및 필지분할계획 폐지
	A-5	대조동 44-21, 42-3, 42-5, 42-6	2	-	-	-	
	C-1	녹번동 144-21	1	C-1	녹번동 144-21	1	
	C-4	녹번동 80-3	1	C-4	녹번동 80-3	1	

* 기정 9개소 → 변경 5개소

(4) 공동개발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폐지	A-1	대조동 59-20	129.0	639.0	공동개발 지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대조동 59-21	136.0			
		대조동 59-50	162.0			
		대조동 59-51	212.0			
		대조동 60-18	102.0	119.0	권장	
		대조동 62-2	17.0			
		대조동 59-23	334.0	427.0	권장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대조동 59-7	93.0	224.0	권장	
		대조동 59-30	112.0			
		대조동 59-33	112.0	218.0	권장	
		대조동 59-34	102.0			
		대조동 59-6	116.0	355.0	권장	
		대조동 60-14	128.0			
		대조동 60-15	122.0			
		대조동 60-16	105.0			
기정	A-2	대조동 179-12	200.7	627.8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대조동179-13	427.1			
		대조동 179-16	159.7	516.1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대조동 179-17	116.7			
		대조동 179-18	116.7			
		대조동 179-19	123.0			
		대조동 179-43	176.2	355.2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대조동 179-44	179.0			
		대조동 179-14	199.0	280.0	권장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대조동 59-14	81.0			
		대조동 179-45	143.1	288.9	지정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대조동 179-40	145.8			
		대조동 59-42	16.0	159.1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179-45	143.1			
		대조동 59-43	15.0	160.8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179-40	145.8			
		대조동 59-48	332.0	521.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179-23	163.0			
		대조동 58-6	26.0			
		기정	A-2	대조동 179-30	446.6	486.6
대조동 179-55	10.0					
대조동 179-56	10.8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대조동 179-57	19.2			
기정	A-3	대조동 38-41	43.0	834.7	지정	●확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대조동 179-36	239.0			
		대조동 179-49	354.7			
		대조동 179-51	198.0			
		대조동 38-48	38.0	81.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38-41	43.0			
		대조동 38-50	101.0	412.0	지정	●소유자가 다른 확지단위개발 해제지 역
		대조동 58-1	218.0			
		대조동 58-5	93.0			
		대조동 58-3	3.0	104.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38-50	101.0			
		대조동 58-6	33.0	126.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58-5	93.0			
		대조동 45	250.0	402.0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대조동 59-69	152.0			
		대조동 59-70	129.0	156.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58-6	27.0			
		대조동 45	250.0	437.0	권장	●동일소유자 및 과소필지 해소
		대조동 58-4	155.0			
		대조동 58-6	32.0			
폐지	A-4	대조동 59-56	189.0	375.0	지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대조동 59-58	186.0			
폐지	A-5	대조동 43-8	169.0	228.4	권장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대조동 44-21	44.0			
		대조동 42-5	1.8			
		대조동 42-3	13.6			
		대조동 43-7	122	207.1	권장	
		대조동 44-21	14.1			
		대조동 42-5	1.8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대 조 동 42-3	36.0				
폐지	A-5	대 조 동 43-5	102.0	391.4	권장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대 조 동 43-6	109.0				
		대 조 동 44-21	26.1				
		대 조 동 42-6	42.0				
		대 조 동 42-8	2.0				
		대 조 동 44-21	33.3				
		대 조 동 42-5	35.0				
		대 조 동 42-6	42.0				
		대 조 동 59-52	122.0	258.0	지정		
		대 조 동 59-53	136.0				
		대 조 동 43-3	134.0	270.1	권장		
		대 조 동 43-4	116.0				
		대 조 동 44-21	20.1				
		대 조 동 43-1	18.0	142.0	권장		
		대 조 동 43-2	124.0				
폐지	A-6	대 조 동 38-52	36.0	147.0	권장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대 조 동 45-2	111.0				
		대 조 동 45-1	90.0	201.0	지정		
		대 조 동 45-2	111.0				
		대 조 동 59-46	126.0	285.0	권장		
		대 조 동 59-63	159.0				
기정	B-1	역촌동 16-26	225.8	454.6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역촌동 16-27	228.8				
		역촌동 16-18	88.9	267.4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역촌동 16-24	178.5				
기정	B-2	역촌동 17-323	189.7	379.4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역촌동 17-325	189.7				
		역촌동 17-326	282.0	405.4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역촌동 17-33	123.4				
기정	B-3	역촌동 17-5	86.6	217.5	권장	●당초 공동개발 지정 필지로 소유자가 달라 권장으로 변경	
		역촌동 17-6	130.9				
		역촌동 17-1	177.5	560.3	지정		●확지단위개발 해제지역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기정	B-4	역촌동 17-2	249.9	724.8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역촌동 17-14	132.9			
		역촌동 17-17	219.5			
		역촌동 17-20	182.0			
		역촌동 17-21	142.8			
기정	B-4	역촌동 17-22	180.5	560.3	권장	●간선부 대지 정형화
		역촌동 17-17	219.5			
		역촌동 17-18	170.2			
		역촌동 17-19	170.6	743.0	지정	●기 공동개발이 완료된 필지
		역촌동 17-27	181.5			
		역촌동 17-28	561.5	755.7	권장	●간선부 대지 정형화
		역촌동 17-16	601.7			
기정	B-5	역촌동 17-24	154.0	366.6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역촌동 27-1	141.2			
		역촌동 27-2	225.4			
		역촌동 27-3	248.9	829.7	권장	●소유자가 다른 획지단위개발(권장) 해제지역
		역촌동 27-5	346.8			
		역촌동 27-6	234.0			
		역촌동 27-7	273.7	480.0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역촌동 27-8	206.3			
		역촌동 27-21	124.3	253.9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역촌동 27-22	129.6			
		역촌동 27-32	117.0	238.7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역촌동 27-33	121.7			
		역촌동 27-38	187.4	329.5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역촌동 27-42	142.1			
기정	C-1	녹번동 144-59	197.0	372.0	권장	●소유자가 다른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녹번동 144-60	175.0			
		녹번동 144-61	137.0	269.0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녹번동 144-62	132.0			
		녹번동 144-21	35.0	172.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4-61	137.0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녹번동 144-21	51.0	222.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4-63	171.0			
		녹번동 144-44	185.0	360.0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녹번동 144-45	175.0			
		녹번동 144-43	73.0	258.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4-44	185.0			
		녹번동 144-1	238.0	314.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4-71	76.0			
		녹번동 144-57	204.0	373.0	권장	●간선부 대지 정형화
		녹번동 144-58	169.0			
기정	C-3	녹번동 146-2	160.0	596.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6-11	426.0			
		녹번동 148-24	10.0			
		녹번동 144-40	175.0	380.0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녹번동 147-7	205.0			
		녹번동 148-23	12.0	217.0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147-7	205.0			
		녹번동 144-41	174.0	374.0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녹번동 144-42	200.0			
기정	C-4	녹번동 144-69	397.0	483.8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80-2	86.8			
		녹번동 146-10	238.0	319.4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80-40	70.2			
		녹번동 80-3	11.2			
		녹번동 146-6	159	334.0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녹번동 146-7	175			
		녹번동 146-8	255	266.2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80-3	11.2			
		녹번동 144-50	159	351.0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녹번동 144-49	192			
기정	C-5	녹번동 152-74	248	261.8	권장	●과소필지 해소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공동개발 계획	비 고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녹번동 80-17	12.9			
		녹번동 80-18	0.9			
		녹번동 152-75	261	273.1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80-21	12.1			
		녹번동 152-76	311	313.9	권장	●과소필지 해소
		녹번동 80-38	2.9			
		녹번동 80-7	247.3	507.8	지정	●자율적 공동개발 반영
		녹번동 80-8	260.5			
기정	C-6	녹번동 80-27	157	314.0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녹번동 80-28	157			
		녹번동 80-30	190.7	537.4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녹번동 80-31	171.2			
		녹번동 80-32	175.5	410.9	지정	●획지단위개발 해제지역
		녹번동 80-33	172.9			
		녹번동 80-34	238			
기정	C-7	녹번동 153-21	1478.7	1,650.7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녹번동 153-22	172			
		녹번동 153-16	2,541.3	3,574.3	지정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
		녹번동 153-9	627.1			
		녹번동 153-19	193.7			
		녹번동 153-25	212.2			
기정	C-8	녹번동 161-1	148.8	483.0	지정	●과소필지 처리
		녹번동 161-2	334.2			

* 대조동 58-6, 59-93, 녹번동 144-21, 16-2, 80-3, 역촌동 17-17 등은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된 각 필지들의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측량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향후 측량 시 면적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2) 용적률 : 변경없음

(3)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높이 : 변경

구 분		가 구 번 호	최 고 높 이	비 고
준주거지역	간선부	A-2, A-3, B-1, B-3, B-4, B-5, C-1, C-4, C-5, C-6, C-7, C-8	50m 이하	제척구역내 가구번호 삭제
	이면부	A-2, A-3, B-1, B-3, B-4, B-5, C-2, C-4, C-6	30m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B-2, B-5, C-3, C-5, C-8	20m 이하	

주) A-1, A-4, A-5, A-6 :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한계선 : 변경

구 분	가 구 번 호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B-2, C-3, C-4	건축한계선 1m	제척구역내 가구번호 삭제
	B-1, B-5	건축한계선 1m, 1.5m, 3m	
	A-2, B-3, B-4, C-1, C-4, C-5, C-6, C-7, C-8	건축한계선 1m, 3m	
	A-3	건축한계선 1m, 3m, 8m	

주) A-1, A-4, A-5, A-6 :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 계획 : 변경없음

2) 대지 내 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 구 번 호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 공지	B-2, C-3, C-4	전면공지(폭원 1m)	제척구역내 가구번호 삭제
	B-1, B-5	전면공지(폭원 1m, 1.5m, 3m)	
	A-2, B-3, B-4 C-1, C-2, C-5, C-6, C-7, C-8	전면공지(폭원 1m, 3m)	
	A-3	전면공지(폭원 1m, 3m, 8m)	
썸지형 공지	A-3	썸지형 공지 (1개소)	변경없음
	B-1	썸지형 공지 (1개소)	
	C-1	썸지형 공지 (1개소)	
	C-4	썸지형 공지 (1개소)	

주) A-1, A-4, A-5, A-6 :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3)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4) 경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③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272-5번지 일대	179,203	감) 1,036	178,1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05호 (2001.06.21)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축소 -A=179,203㎡→178,167㎡ 감) 1,036㎡	●역촌역세권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되는 대조동 일대 지역을 구역에서 제척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9,203.0	감) 1,036.0	178,167.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6,363.0	감) 1,036.0	65,327.0	36.6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8,713.0	감) 268.0	18,445.0	10.36	
	준주거지역	47,650.0	감) 768.0	46,882.0	26.31	
상업 지역	소 계	112,840.0	-	112,840.0	63.33	
	일반상업지역	112,840.0	-	112,840.0	63.3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	대조동 31-27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68.0	200%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대조동 29-2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768.0	400%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18	2,642	39,156	3	631	18,553	2	400	3,391	13	1,611	17,212
대로	2	740	23,403	1	430	15,023	-	-	-	1	310	8,380
중로	2	356	4,557	1	132	2,821	-	-	-	1	224	1,736
소로	14	1,546	11,196	1	69	709	2	400	3,391	11	1,077	7,096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이며 프로그램(AutoCAD) 구적면적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39	주간선 도로	11,250 (430)	홍은동 (불광동 285-54)	신도읍 삼성리 (불광동 267-1)	일반 도로		건고 제177호 (1962.12.8)	통일로
기정	대로	3	33	25	보조 간선 도로	1,820 (310)	불광동 (대조동 13-1)	불광동 (대조동 26-23)	일반 도로		건고 제738호 (1963.12.24)	불광로
기정	중로	1	51	20	보조 간선 도로	132	불광동 276-14	불광동 281-44	일반 도로		건고 제738호 (1963.12.24)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29 (235)	대조동 77-12	대조동 33-10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1969.1.18)	대춘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29 (224)	대조동 77-12	대조동 33-10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1969.1.18)	대춘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5	국지 도로	69	대조동 14-21	대조동 14-149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50	대조동 3-82	대조동 80-2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1969.1.18)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50	대조동 15-46	대조동 15-178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17)	불광동 264-38	불광동 268-1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1969.1.18)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85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1969.1.18)	-
기정	소로	3	5	6~8	국지 도로	101	대조동 15-247	대조동 240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30	대조동 15-73	대조동 14-25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7	7	국지 도로	86	대조동 15-65	대조동 15-39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5	대조동 15-91	대조동 15-100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211	대조동 15-30	대조동 15-107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37	불광동 274-19	불광동 276-29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1	대조동 6-17	대조동 6-16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7	4	국지 도로	57	불광동 281-13	불광동 281-18	일반 도로		서고 제2001-205호 (2001.6.21)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7	대조동 15-178	대조동 15-13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32호 (2015.2.5)	-

주)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	중로3-1	- 구역내 연장 축소(표기정정) - L : 235m → 224m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으로 구역내 연장 축소 및 조서상 표기 정정

나) 철도 : 변경없음

다) 정거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가구 : 변경없음

(2) 공동개발(지정/권장) : 변경없음

(3) 자율적 공동개발 : 변경없음

(4)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없음

(2) 권장용도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2) 용적률 :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높이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형태 및 경관계획 등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바. 인센티브 운영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3) 높이 인센티브 계획

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2) 친환경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3)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아.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023년 제19차(2023.12.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9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가결	○건축계획 등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조1 주택재개발구역의 건축 배치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및 통경계획 등과의 조화를 면밀 고려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부정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조1주택재개발구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인접지역 일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추후반영
		○북서측(서오릉로8길) 및 북동측(진흥로13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폭원은 동일하게 조정하고, 대상지 반대측 저층주거지 연접부의 보도 폭원은 추가 확보할 것	○북동측(진흥로13길) 도로폭원을 10m→ 12m로 확폭하고, 북서측(서오릉로8길) 반대측 저층주거지 보도 폭원 2m → 2.5m, 북동측(진흥로13길) 반대측 보도 폭원을 2m → 3.0m로 확폭 낮은 턱 보도 설치하였음	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기정/변경)
 - 불광 지구단위계획(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1),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5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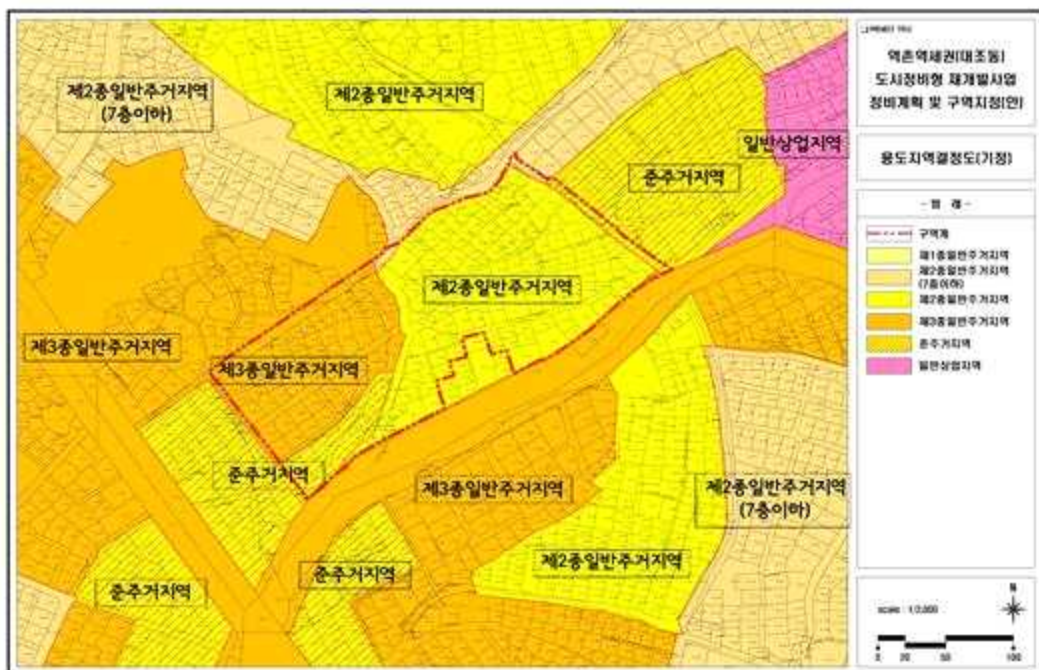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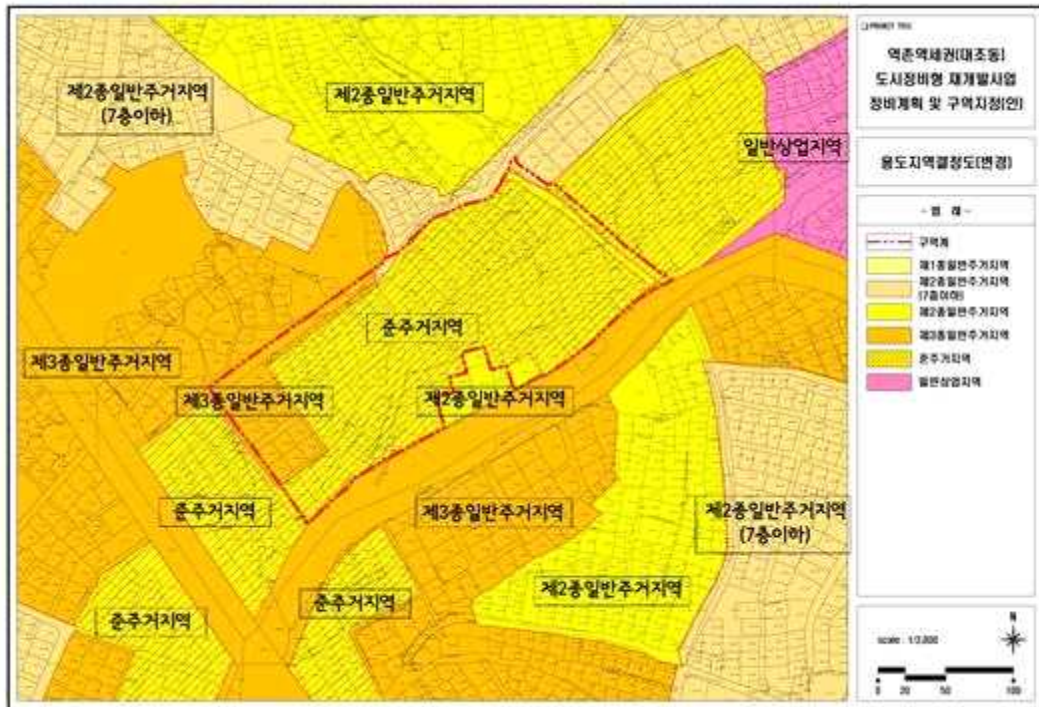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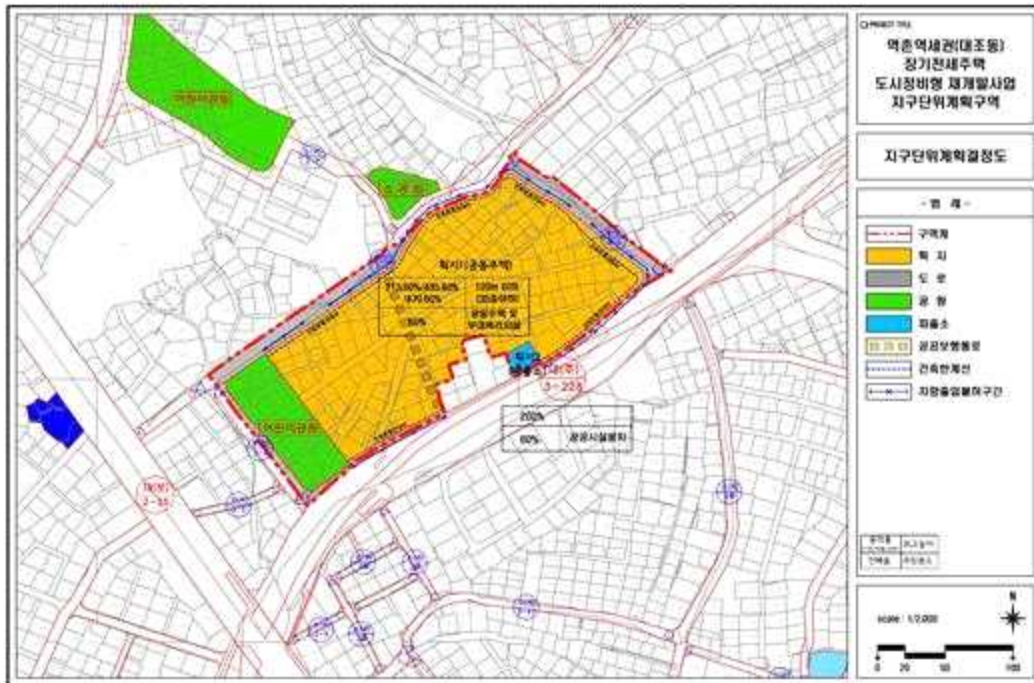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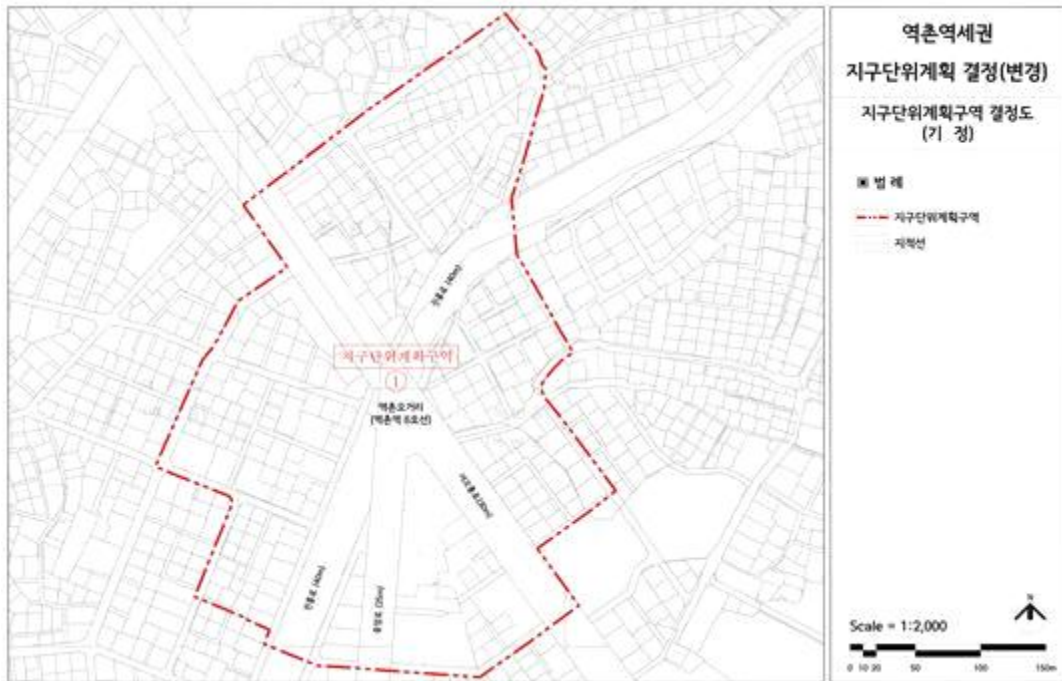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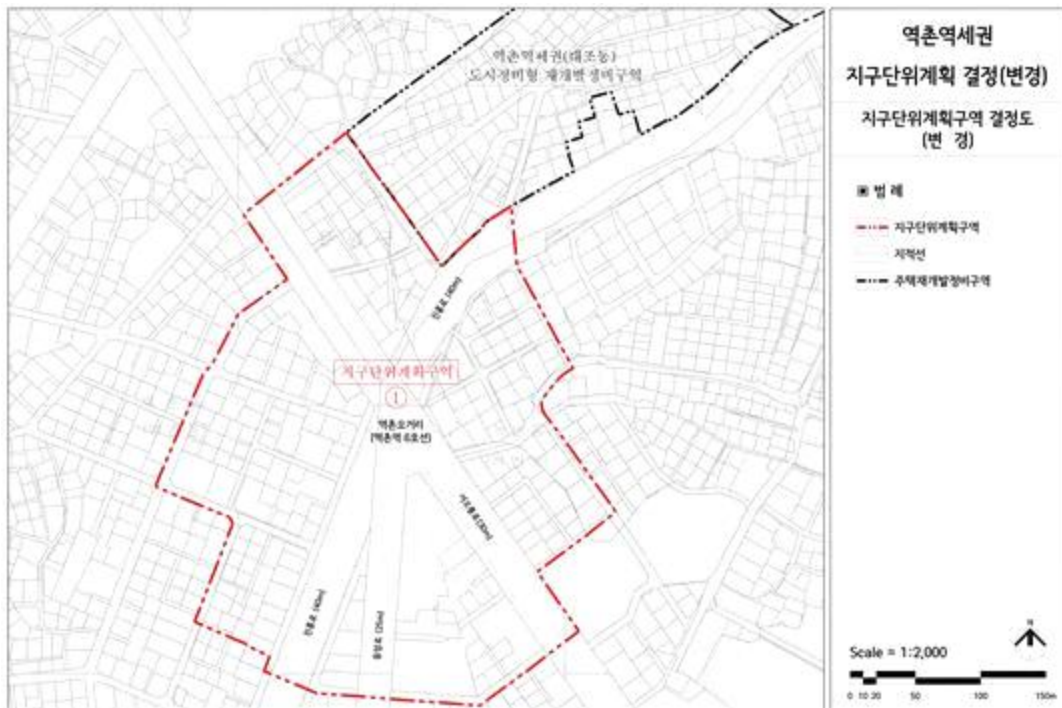


2)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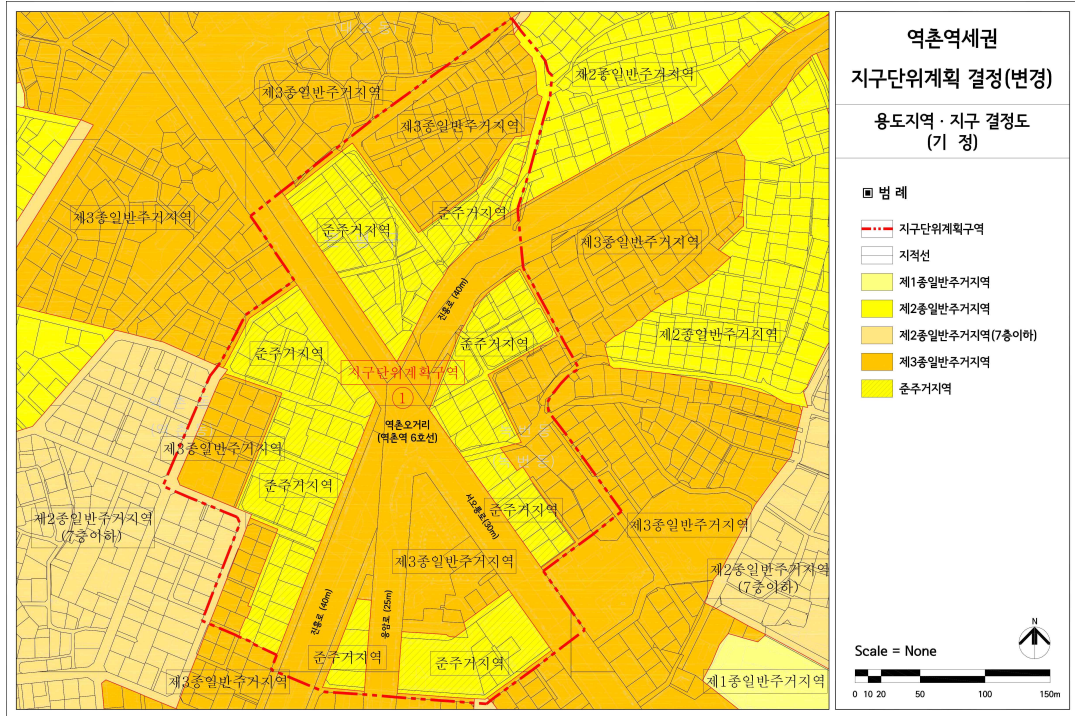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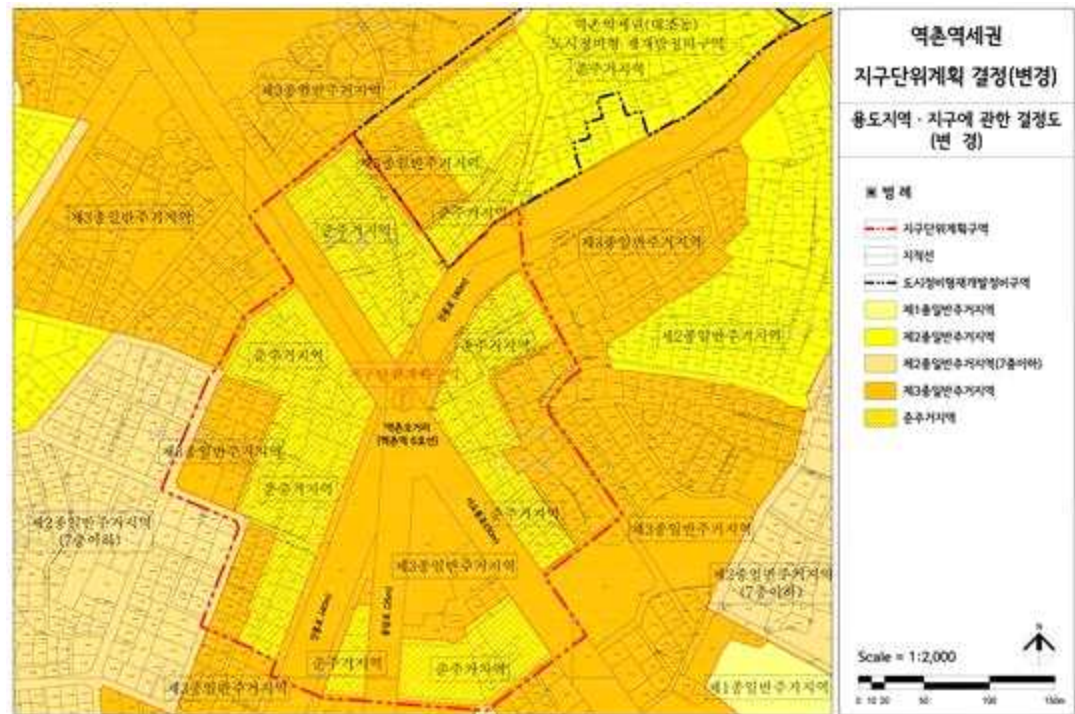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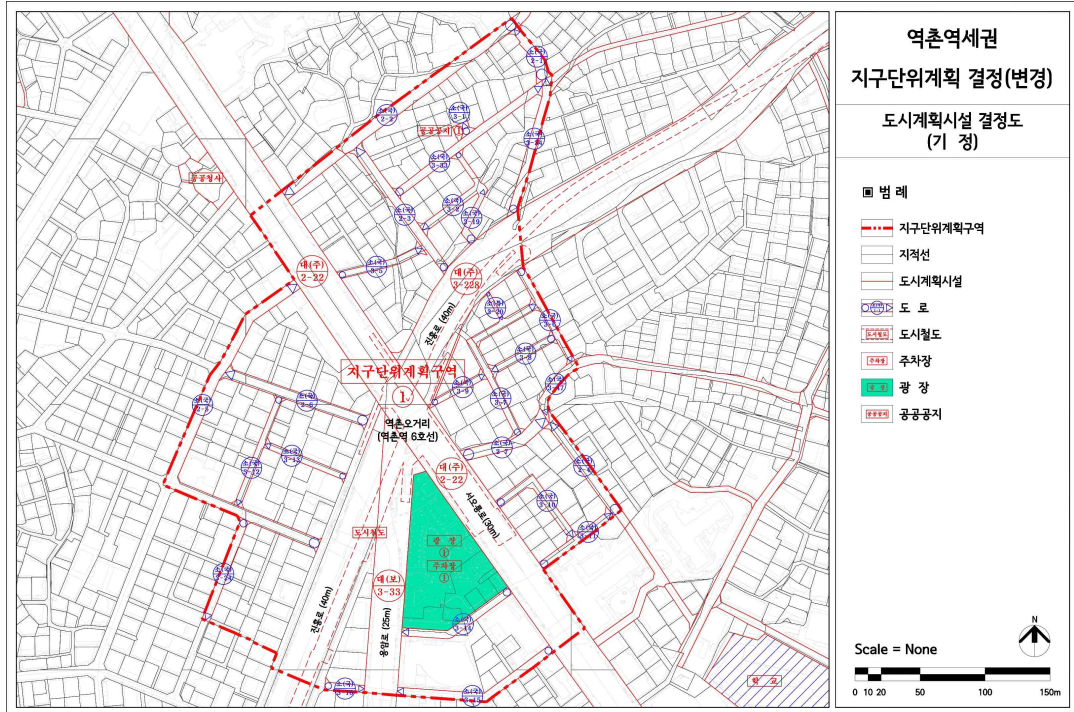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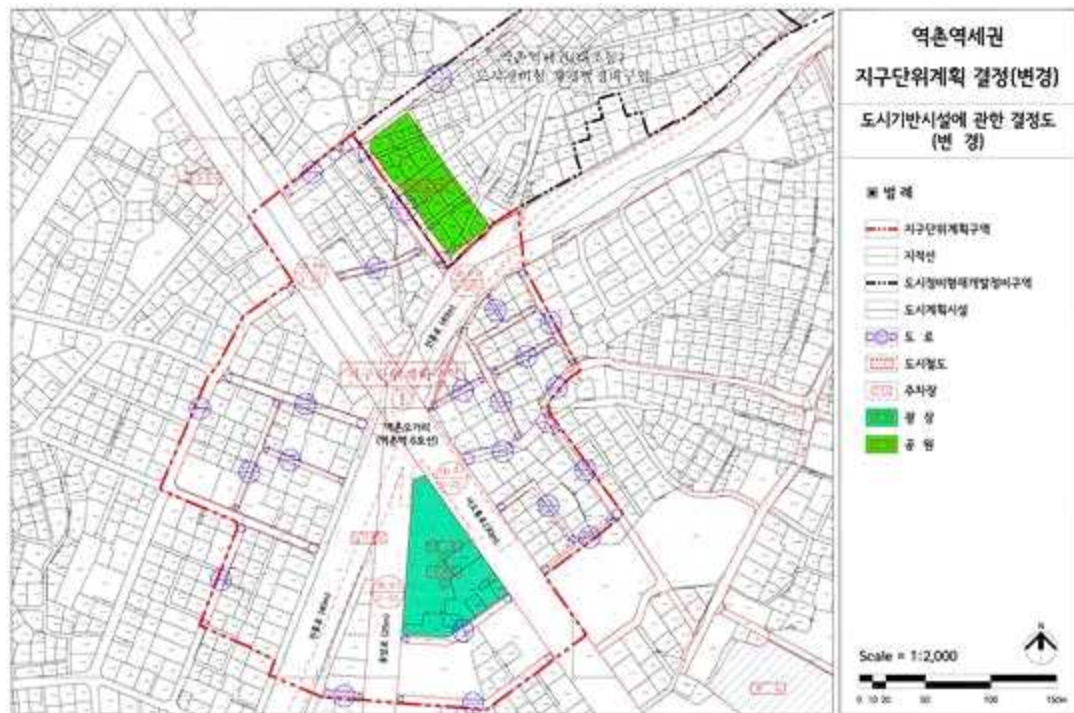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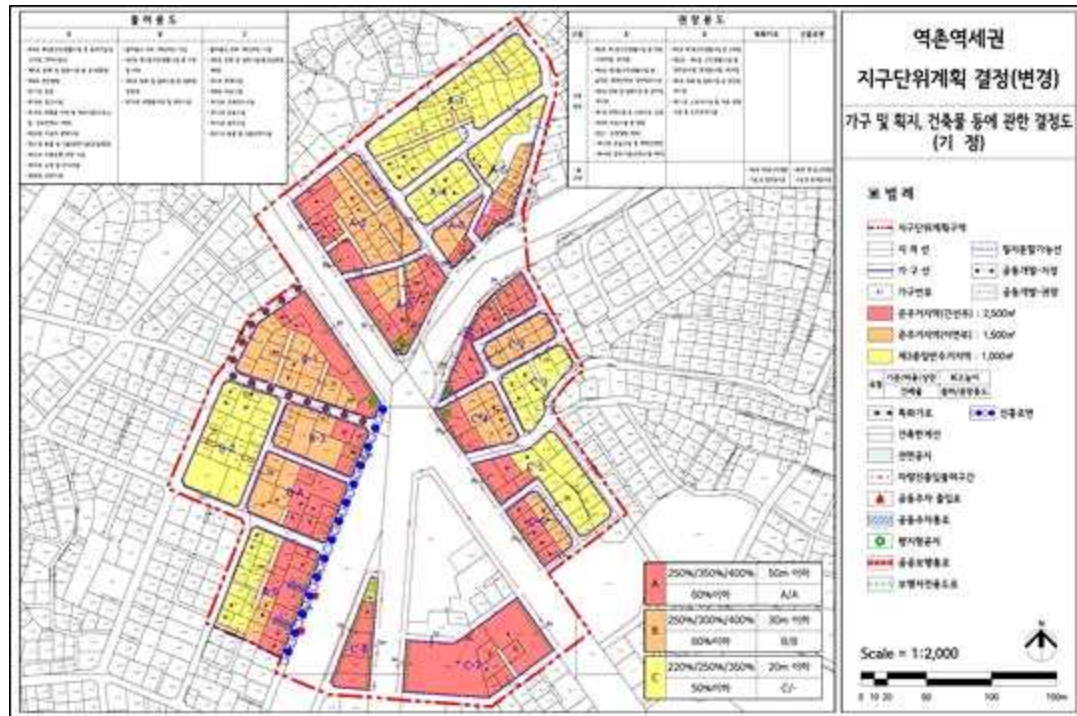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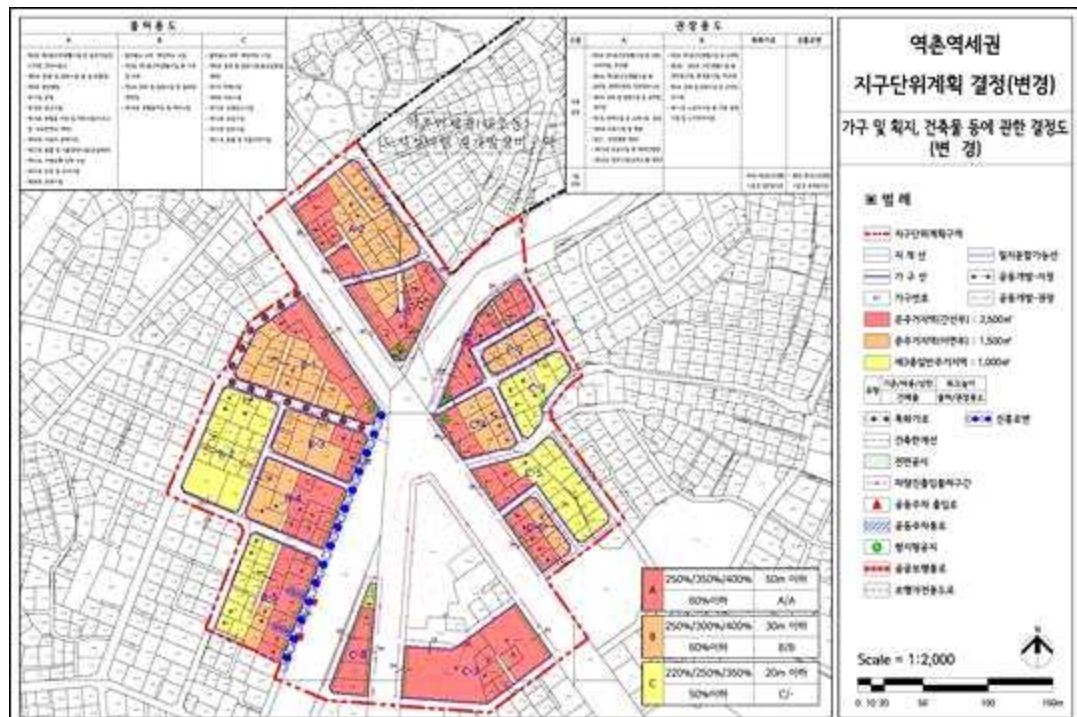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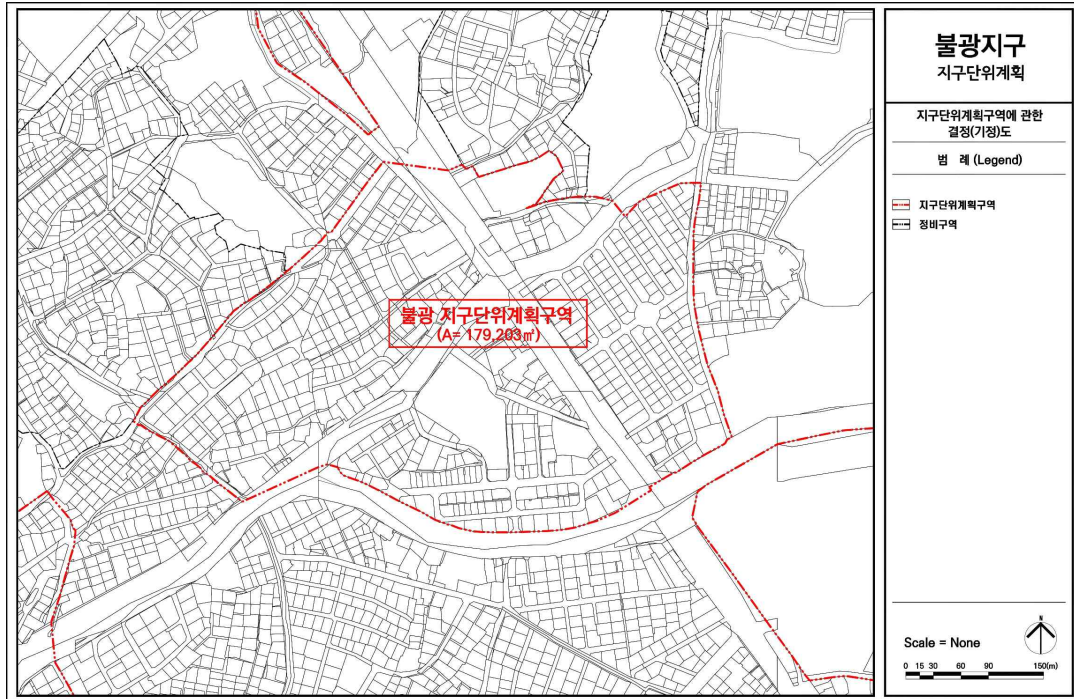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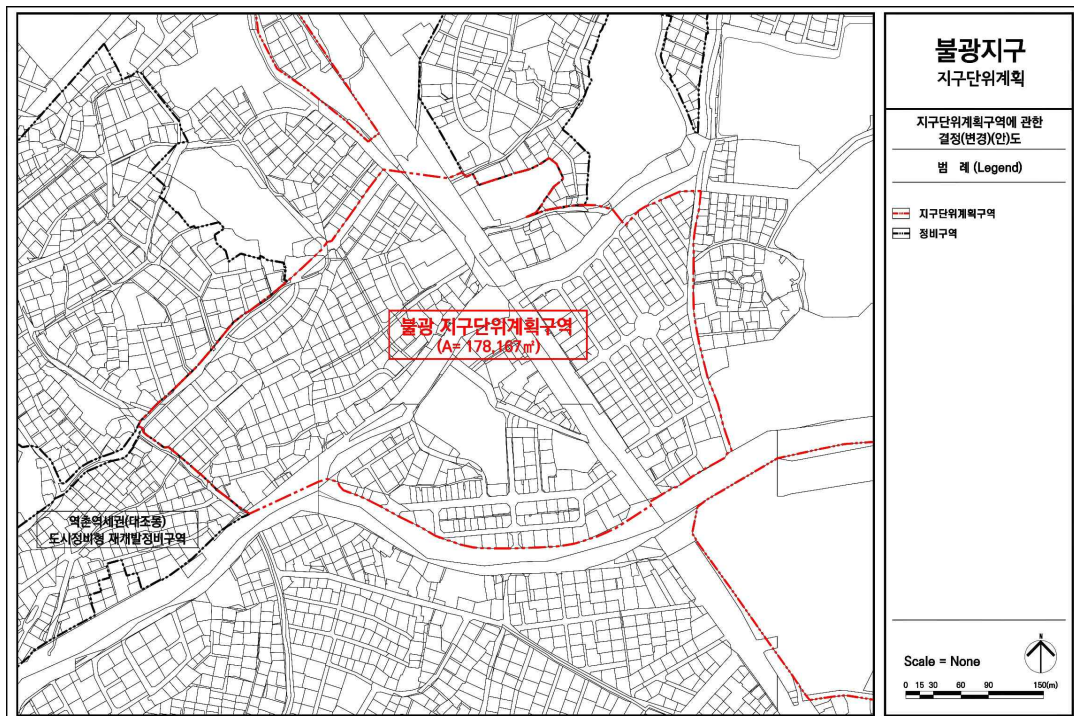


3) 불광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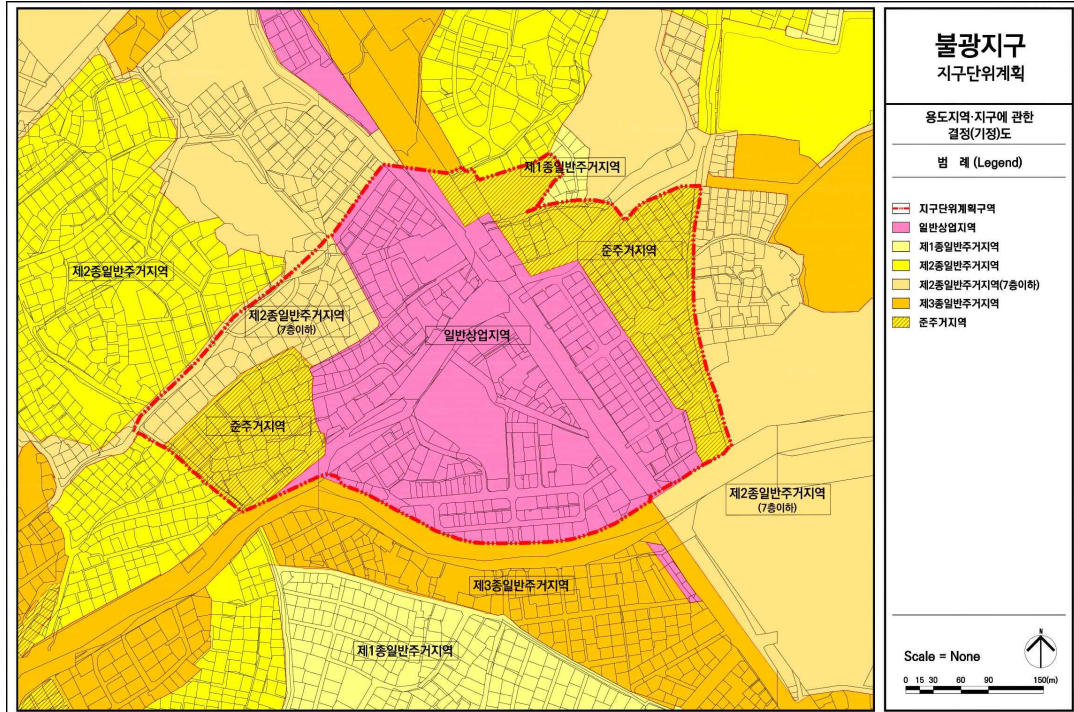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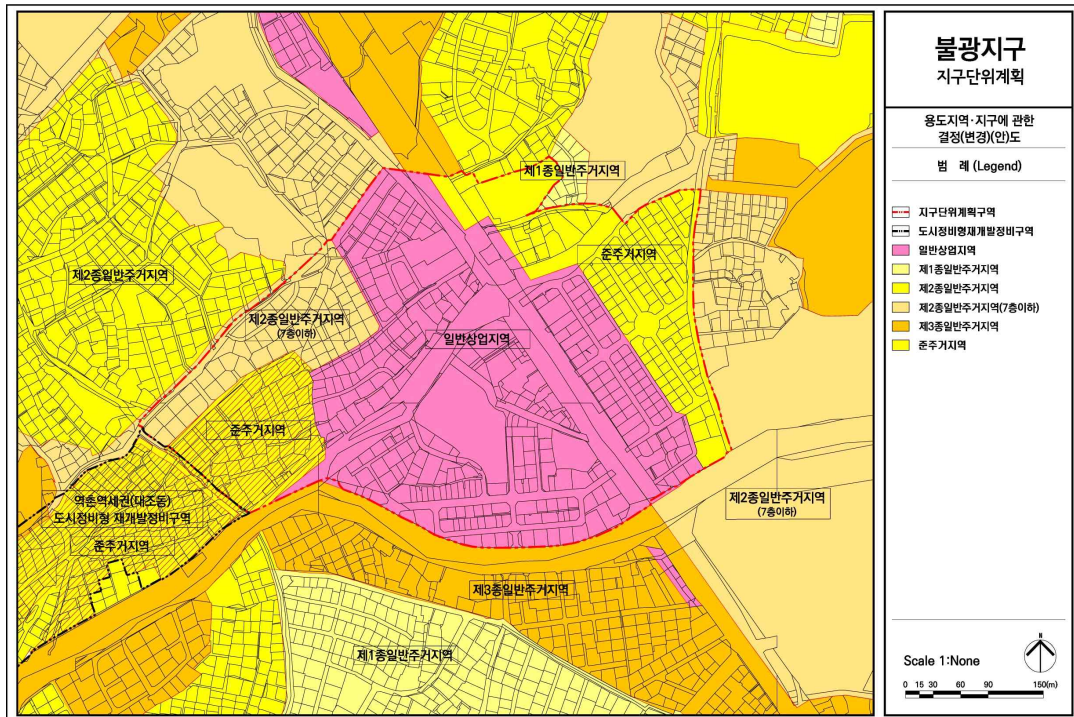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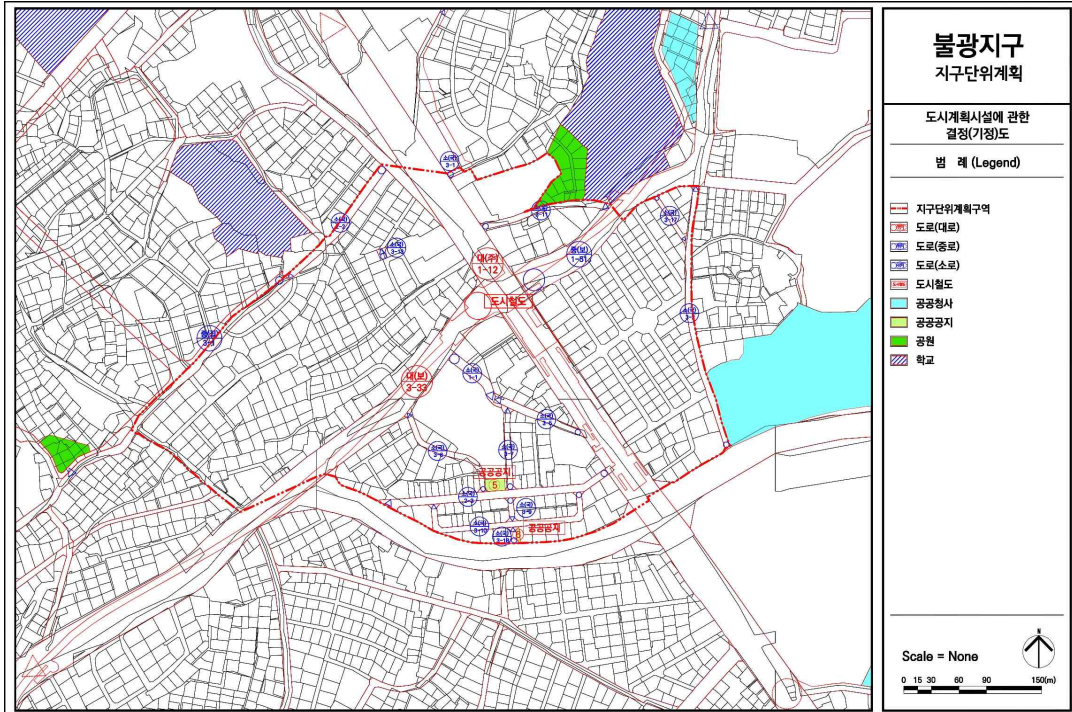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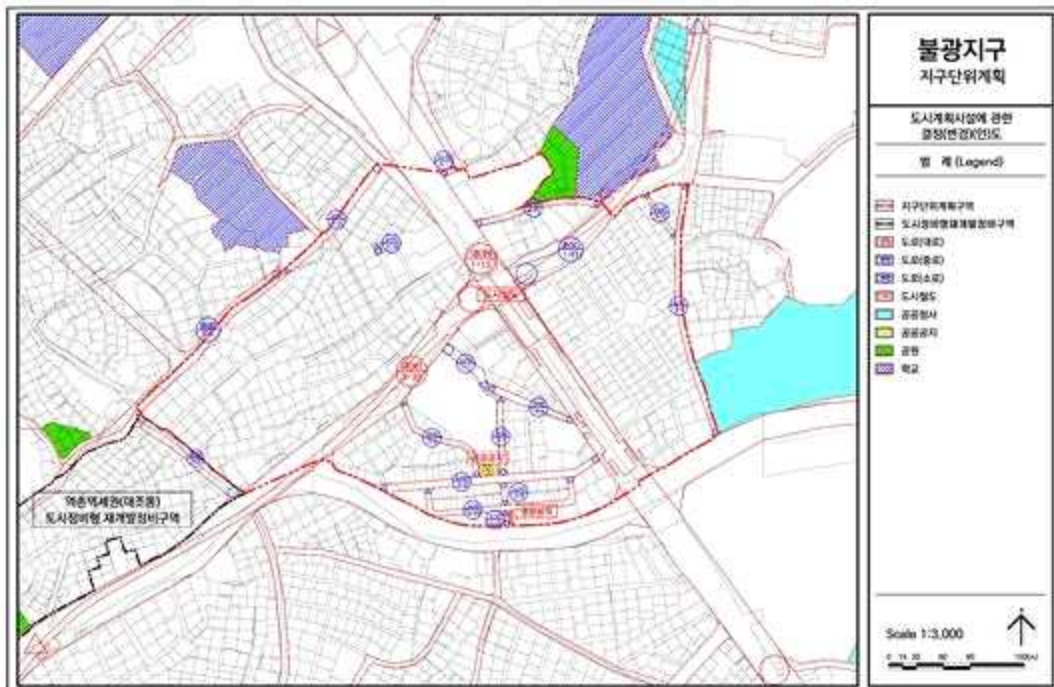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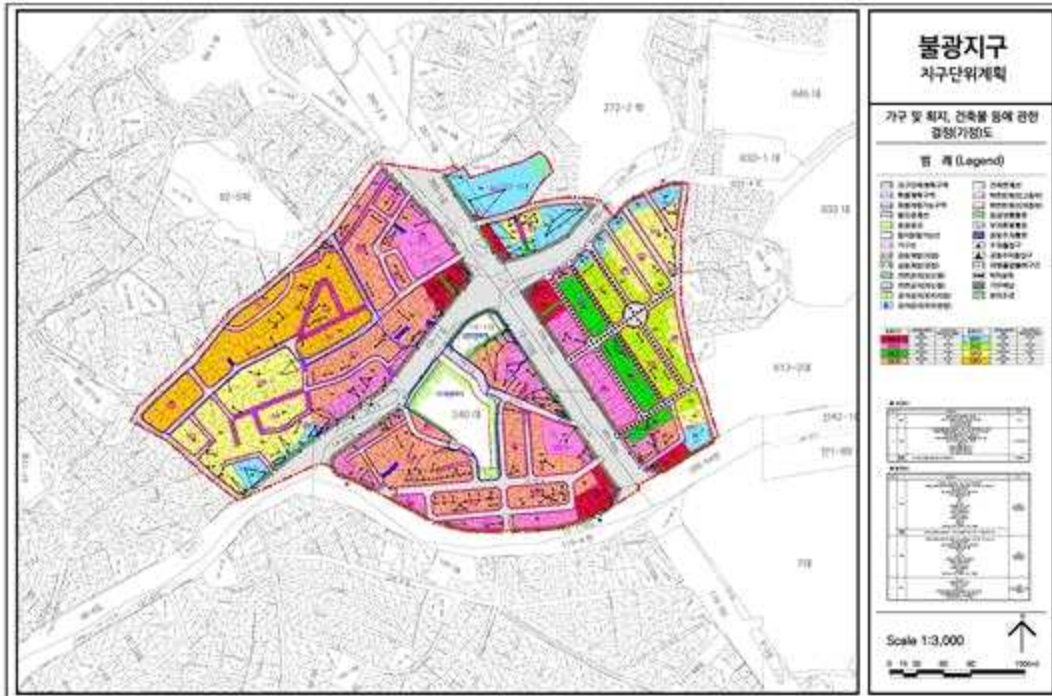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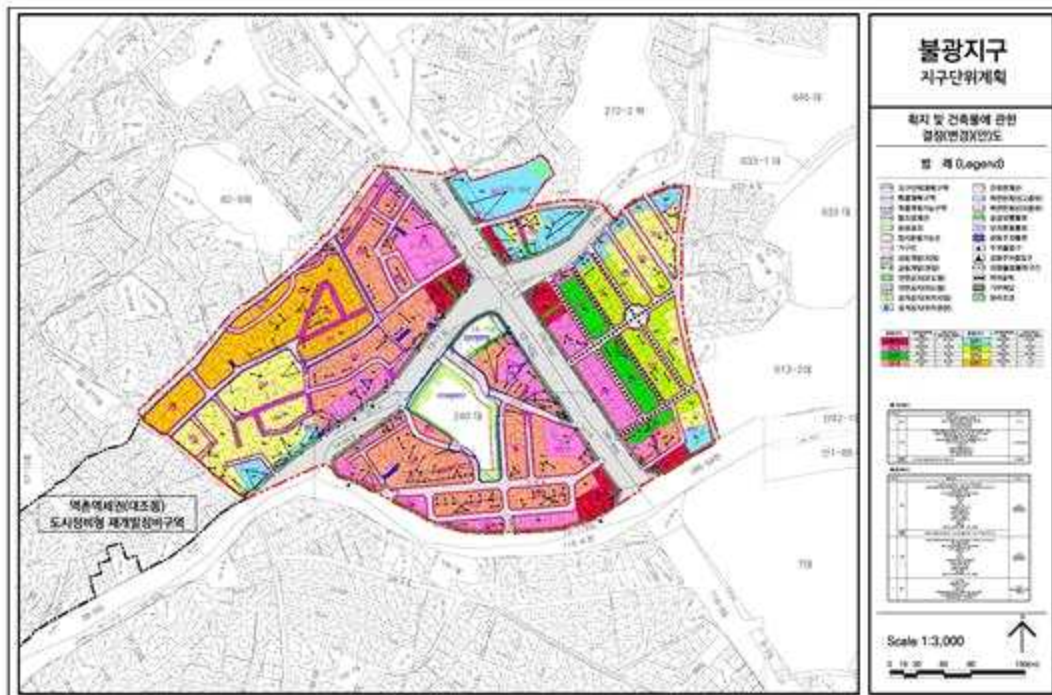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5호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1.17.)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	110,232.2	-

2.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10,232.2	110,232.2	100.0	-
공동주택 택용지	소계	-	증) 98,950.3	98,950.3	89.8	-
	획지1	-	증) 86,335.1	86,335.1	78.3	-
	획지2	-	증) 12,615.2	12,615.2	11.5	-
정비기 반시설	소계	-	증) 11,281.9	11,281.9	10.2	-
	도로	-	증) 1,143.4	1,143.4	1.0	-
	공원	-	증) 3,080.0	3,080.0	2.8	주차장 증복결정(연면적:15,858.0㎡)
	녹지	-	증) 4,240.3	4,240.3	3.8	-
	공공공지	-	증) 2,818.2	2,818.2	2.6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8.12%
⇒ (36,821억 - 13,978억) / 23,281억 × 100 = 98.12%

총 수입 추정	총 지출 추정	종전자산총액 추정
3,682,068,806,000원 (약 36,821억원)	1,397,761,657,000원 (약 13,978억원)	2,328,053,350,000원 (약 23,281억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오금현대아파트 타입별 종전자산 : 약식추정방식(감정평가법인 추정)

구분	세대수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세대당 평균가액(천원)
전유 84.98㎡형 (구 30.9평형)	364	84.98	50.9662	1,509,214
전유 130.93㎡형 (구 46.1평형)	658	130.93	78.5479	1,777,143
전유 134.98㎡형 (구 47.6평형)	14	134.98	80.9463	1,787,143
전유 170.32㎡형 (구 58.6평형)	280	170.32	102.1322	1,955,929

※ 상가 종전자산가액은 오금현대아파트 및 인근 공동주택 실거래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임.

- 오금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종전자산 : 약식추정방식(감정평가법인 추정)

층	호실수	전유면적 계(㎡)	종전자산 추정가액(천원)	전유면적당 평균단가(천원/㎡)
지하	80	2,770.055	67,174,000	24,250
1층	1	464.62	16,726,000	35,999
2층	9	425.7125	10,218,000	24,002
3층	2	447.7625	6,448,000	14,400

※ 상가 추정액은 오금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인근 단지 내 상가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임.

추정
분담금
산출

※ 인근 구분상가 거래사례

단지명	층	전유면적 (㎡)	거래금액 (천원)	전유단가 (천원/㎡)	거래시점	준공년도
미성맨션	1	10.8	500,000	46,300	2021.12.21	1985.01
	1	10.8	550,000	50,930	2023.04.17	1985.01
올림픽선수 기자촌 중심상가	1	9.9	1,250,000	126,260	2022.02.03	1988.06
	1	15.99	1,600,000	100,060	2022.02.10	1988.06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유 59.95㎡형 (구 25.0평형)	11.7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98.12%)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유 84.95㎡형 (구 34.2평형)	15.40억		
전유 114.90㎡형 (구 46.0평형)	18.00억		
전유 145.92㎡형 (구 58.2평형)	19.70억		
전유 198.62㎡형 (구 75.4평형)	25.50억		
상가 전유22㎡형 (평균단가 기준)	5.75억		

※ 상가는 총 전유면적 6,930㎡ 중 종전 상가 총 전유면적 4,108.15㎡만큼을 조합원 분양분으로 산정했으며, 상가 분양가는 총 상가 분양수입 1,941억원 중 조합원 분양분 1,074억원을 조합원 분 전유면적 4,108.15㎡로 나눈 단가(1,074억원 ÷ 4,108.15㎡)를 기준하였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점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0,232.2	-	110,232.2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232.2	감 12,615.2	97,617.0	88.6	-
	준주거지역	-	증 12,615.2	12,615.2	11.4	-

5.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07.6	-	1,607.6	100.0	-
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07.6	-	1,607.6	100.0	-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554	오금동 17-20	오금동 6-2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	20~23(3)	집산 도로	554(47)	오금동 17-20	오금동 6-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490	오금동 44-2	오금동 42-15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	15~22(7)	집산 도로	490(55)	오금동 44-2	오금동 42-15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1	-	10	국지 도로	271	오금동 43-2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	8	집산 도로	247	오금동 42-15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	8~13(5)	집산 도로	247(132)	오금동 42-15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 ()안에 내용은 구역 내 폭,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	중로 1-	• 구역내 도로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 20m → 20~23m(3)	• 방이역 교차로 유턴완화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중로 2-	중로 1-	• 구역내 도로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 15m → 15~22m(7)	• 교통대책으로 단지 주변도로 확폭
소로 1-	-	• 폐지	• 단지내 미개설 도로 폐지 후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 확보
소로 2-	중로 3-	• 구역내 도로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 8m → 8~13m(5)	• 교통대책으로 단지 주변도로 확폭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노외 주차장	소공원 하부	-	증) 3,080.0	3,080.0	-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면적 15,858.0㎡)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	- 신설 - 면적 : 15,858.0㎡	인근 노상주차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하부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오금동 43	-	증) 3,080.0	3,080.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신설 - 면적 : 3,080.0㎡	단지 내 개방감 확보 및 주변 중·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공원 배치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오금동 43-1	4,137.4	-	4,137.4	건고364호 (81.09.26.)	-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오금동 43-1	4,137.4	증) 102.9	4,240.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 완충녹지 단절부 연결 - 증) 102.9㎡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보행공간 조성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	오금동 43	-	증) 2,818.2	2,818.2	-	관리청 : 서울시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2,818.2㎡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획지1		획지2		비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법정면적	계획면적	
계		-	-	11,700.0㎡	-	4,510.0㎡	-
주민 공동 시설	구 분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00~1,000세대 미만 : (세대수x2.5㎡)x1.25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x2㎡))x1.25	5,567.5㎡ 이상	10,950.0㎡	1,434.4㎡ 이상	4,190.0㎡	-
	경로당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500㎡ 이상	600.0㎡	198.0㎡ 이상	230.0㎡	-
	어린이집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725.0㎡ 이상	1,050.0㎡	198.0㎡ 이상	450.0㎡	-
	작은도서관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298.0㎡ 이상	450.0㎡	108.0㎡ 이상	210.0㎡	-
	다함께 돌봄센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500세대이상의 경우 설치	66.0㎡ 이상	350.0㎡	-	150.0㎡	-
	주민 공동시설	-	-	4,000.0㎡	-	1,500.0㎡	-
	주민 운동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500세대이상의 경우 설치	-	2,000.0㎡	-	650.0㎡	-
	어린이 놀이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150세대이상의 경우 설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1,883.9㎡ 이상	2,500.0㎡	659.0㎡ 이상	1,000.0㎡	-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획지1		획지2		비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법정면적	계획면적	
		-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10\text{㎡} + (\text{총세대수} - 50) \times 0.05\text{㎡}$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106.35㎡ 이상	400.0㎡	30.45㎡ 이상	200.0㎡	-
	경비실	-	-	350.0㎡	-	120.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 시설 설치면적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오금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0,232.2	-	-	오금동 43번지 일원	24	-	-	24	-	-

9.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신설	오금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0,232.2	획지1	86,335.1	오금동 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2.92 이하	299.95 이하	105m (35층 이하)	-
			획지2	12,615.2	오금동 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0.00 이하	424.03 이하	110m (37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436세대 • 전체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공공임대)				
			계		2,436세대	100.0	407세대				
			공동주택	60㎡이하	587세대	24.1	298세대				
				60~85㎡이하	923세대	37.9	109세대				
85㎡초과	926세대	38.0	-								
심의완화사항			• 용적률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 획지1 상한용적률(242.92%) → 법적상한용적률(299.95%) 적용 - 획지2 상한용적률(230.00%) → 법적상한용적률(424.03%)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획지1	• 건축한계선 지정 - 오금로35길변으로부터 12m - 양재대로변 및 오금로변으로부터 8m - 마천로8길변으로부터 5.5m ~ 8m - 공공공지 및 공원 경계로부터 3m - 공공보행통로(12m) 경계로부터 6m							
			획지2	• 건축한계선 지정 - 양재대로변으로부터 8m - 마천로변으로부터 6m - 마천로8길변으로부터 5.5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획지1	• 통경축 확보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12m, 8m								
		획지2	• 통경축 확보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8m								
	전면공지	획지1	• 마천로8길변 2 ~ 5.5m(차도형) • 마천로8길변 3m(보도형) • 오금로35길변 3m(차도형) • 오금로35길변 4m(보도형)								
		획지2	• 마천로변 3m ~ 6m(보도형)								
	공개공지	획지2	• 마천로변 1개소(면적 : 310.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 공개공지는 추후 건축심의 시 위치, 유형, 형태, 면적 등을 결정함.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10,232.2㎡	98,950.3㎡	11,281.9㎡	1,600.0㎡	4,240.3㎡	2,611.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6,030.3㎡(5.47%)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1,281.9㎡ + 1,600.0㎡) - 4,240.3㎡ - 2,611.3㎡ = 6,030.3㎡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적용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 (준주거지역)			
	합계	15.00%	20.00%		-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10.00%	10.00%		-	
	열린단지	-	-		-	
	공개공지	-	5.00%		-	
	돌봄시설	5.00%	5.00%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시설)의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준주거지역)		
	• 정비계획용적률 = 242.92% = 허용용적률×(1+1.3×α(토지)+0.7×α(건축물)) = 225.00%×(1+1.3×0.0513+0.7×0.0185) α(토지)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공공시설부지면적) = 4,430.3㎡ ÷ (97,617.0 - 11,281.9) = 0.0513 α(건축물)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환산부지면적 ÷ (구역면적 - 공공시설부지면적) = 1,600.0㎡ ÷ (97,617.0 - 11,281.9) = 0.0185			• 정비계획용적률 = 230.00%		
법적상한용적률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준주거지역)		
	• 법적상한용적률 : 299.95%			• 법적상한용적률 : 424.03%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10.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주요내용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준주거지역)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 242.92% 이하		• 230.00% 이하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95%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 424.03%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99.95% - 242.92% = 57.03%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424.03% - 230.00% = 194.03%		
	건립 용적률(%)	• 57.03% × 0.5 = 28.515%		• 194.03% × 0.5 = 97.015%		
	의무 연면적(지상층)	• 24,618.45㎡ 이상 = 86,335.10㎡(대지면적) × 28.515%		• 12,238.64㎡ 이상 = 12,615.20㎡(대지면적) × 97.015%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59.95㎡	82.65㎡	298	24,629.70㎡	획지
		84.95㎡	112.95㎡	109	12,311.55㎡	
		합계		407	36,941.25㎡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계	2,436	100.0	2,029	407	16.7	100.0
59㎡	587	24.1	289	298	12.2	73.2
84㎡	923	37.9	814	109	4.5	26.8
114㎡	697	28.6	697	-	-	-
145㎡	220	9.0	220	-	-	-
198㎡	9	0.4	9	-	-	-

11.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아파트, 상업시설 등) 및 일 부 조경지가 분포하고 있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동 · 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 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비오름 유형 평가 2등급 및 3등급, 개별비오름 3등급 및 평가제외 지역으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생태면적률	30% 이상	○	●기 시가화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 장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물순환	30%	○	●기 시가화지역이 대부분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장상태 지역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 상 적용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을 고려하여 계획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 능토록 계획 및 신 · 재생에너지 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에너지 (대기질)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고 효율 기자재 사용 등 계획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주변 휴식 · 여가공간 부족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보행자 위한 공간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연결 성 강화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도로 계획	●오금로35길 방면 폭 1.5m 설치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일조	수인한도 만족	○	●대상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 인근: 준주거지역,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등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 시 인근 도로 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가정)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기존세대수 : 1,316세대 계획세대수 : 2,436세대 증) 1,120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오금중
(약 200m)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건설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억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구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 규제기준

구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 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효과를 높임

비고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분명한 시아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앴 •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독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II.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오금동 43번지 일원	-	증)110,232.2	110,232.2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0,232.2	-	110,232.2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232.2	감) 12,615.2	97,617.0	88.6	-
	준주거지역	-	증) 12,615.2	12,615.2	11.4	-

■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07.6	-	1,607.6	100.0	-
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07.6	-	1,607.6	100.0	-

나. 기반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554	오금동 17-20	오금동 6-2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	20~23 (3)	집산 도로	554 (47)	오금동 17-20	오금동 6-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490	오금동 44-2	오금동 42-15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	15~22 (7)	집산 도로	490 (55)	오금동 44-2	오금동 42-15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1	-	10	국지 도로	271	오금동 43-2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	8	집산 도로	247	오금동 42-15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	8~13 (5)	집산 도로	247 (132)	오금동 42-15	오금동 44-3	일반 도로	-	-	-

※ ()안에 내용은 구역 내 폭,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	중로 1-	• 구역 내 도로 폭원 변경 및 선형 변경 - 20m → 20~23m(3)	• 방이역 교차로 유턴 원화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확폭
중로 2-	중로 1-	• 구역 내 도로 폭원 변경 및 선형 변경 - 15m → 15~22m(7)	• 교통대책으로 단지 주변 도로 확폭
소로 1-	-	• 폐지	• 단지 내 미개설 도로 폐지 후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 확보
소로 2-	중로 3-	• 구역 내 도로 폭원 변경 및 선형 변경 - 8m → 8~13m(5)	• 교통대책으로 단지 주변 도로 확폭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노외 주차장	소공원 하부	-	증) 3,080.0	3,080.0	-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연면적 15,858.0㎡)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	• 신설 - 연면적 : 15,858.0㎡	• 인근 노상주차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 원 하부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오금동 43	-	증) 3,080.0	3,080.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원	- 신설 - 면적 : 3,080.0㎡	단지 내 개방감 확보 및 주변 중·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공원 배치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오금동 43-1	4,137.4	-	4,137.4	건고364호 (81.09.26.)	-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오금동 43-1	4,137.4	증) 102.9	4,240.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 완충녹지 단절부 연결 - 증) 102.9㎡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보행공간 조성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	오금동 43	-	증) 2,818.2	2,818.2	-	관리청 : 서울시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2,818.2㎡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A-1	-	86,335.1	1	송파구 오금동 43	86,33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2	-	12,615.2	2	송파구 오금동 43	12,61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신설	허용 용도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신설	준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가구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10% 이하	225% 이하	242.92% 이하	299.95%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 225.00%
							상한용적률 : 242.92%
							법적상한용적률 : 299.95%
신설	획지2	210% 이하	230% 이하	230.00% 이하	424.03%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 230.00%
							상한용적률 : 230.00%
							법적상한용적률 : 424.03%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가구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시설	
신설	획지1	10%	-	-	5%	15% 적용
신설	획지2	10%	-	5%	5%	20% 적용

■ 상한(법적상한) 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가구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신설	획지1	17.92%	57.03%	74.95%
신설	획지2	-	194.03%	194.03%

다) 높이 계획

구분	가구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5층이하 (최고높이 105m 이하)	-
신설	획지2	준주거지역	최고 37층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1	도면 참조	- 오금로35길변으로부터 12m - 양재대로변 및 오금로변으로부터 8m - 마천로8길변으로부터 5.5m ~ 8m - 공공공지 및 공원 경계로부터 3m - 공공보행통로(12m) 경계로부터 6m	-
	획지2	도면 참조	- 양재대로변으로부터 8m - 마천로변으로부터 6m - 마천로8길변으로부터 5.5m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획지1	도면 참조 (공공보행통로 12m)	•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 12m
		도면 참조 (공공보행통로 8m)	•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 8m
	획지2	도면 참조 (공공보행통로 8m)	•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 8m
전면공지	획지1	도면 참조	• 마천로8길변 2 ~ 5.5m(차도형) • 마천로8길변 3m(보도형) • 오금로35길변 3m(차도형) • 오금로35길변 4m(보도형)
	획지2	도면 참조	• 마천로변 3m ~ 6m(보도형)
공개공지	획지2	도면 참조	• 마천로변 1개소(310.0㎡)

※ 공개공지는 추후 건축심의 시 위치, 유형, 형태, 면적 등을 결정함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동선계획	북측 주진출입구(마천로) 북측 주진출입구(마천로8길) 동측 주진출입구(오금로35길)	• 5~6차로(B=23.0m, L=140.0m) • 3~4차로(B=13.0~13.5m(전면공지 포함), L=247.0m) • 4차로(B=18.0~22.0m(전면공지 포함), L=380.0m)
보행동선계획	대상지 주변도로	•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 설치(1개소)
주차계획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주차대수 확보

다.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주요내용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준주거지역)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 242.92% 이하			• 230.00% 이하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95%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 424.03%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99.95% - 242.92% = 57.03%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424.03% - 230.00% = 194.03%	
	건립 용적률(%)	• 57.03% × 0.5 = 28.515%			• 194.03% × 0.5 = 97.015%	
	의무 연면적(지상층)	• 24,618.45㎡ 이상 = 86,335.10㎡(대지면적) × 28.515%			• 12,238.64㎡ 이상 = 12,615.20㎡(대지면적) × 97.015%	
		• 36,857.09㎡ 이상 = 획지1 의무연면적 + 획지2 의무연면적 = 24,618.45㎡ + 12,238.64㎡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59.95㎡	82.65㎡	298	24,629.7㎡	획지
		84.95㎡	112.95㎡	109	12,311.55㎡	
		합계		407	36,941.25㎡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계	2,436	100.0	2,029	407	16.7	100.0
59㎡	587	24.1	289	298	12.2	73.2
84㎡	923	37.9	814	109	4.5	26.8
114㎡	697	28.6	697	-	-	-
145㎡	220	9.0	220	-	-	-
198㎡	9	0.4	9	-	-	-

5.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사업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아파트, 상업시설 등) 및 일부 조정지가 분포하고 있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 유형 평가 2등급 및 3등급, 개별비오톱 3등급 및 평가제외지역으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생태면적률	30% 이상	○	●기 시가지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물순환	30%	○	●기 시가지지역이 대부분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장상태 지역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을 고려하여 계획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한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송파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에너지 (대기질)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계획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보행자를 위한 공간 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 강화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도로 계획	●오금로35길 방면 폭 1.5m 설치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일조	수인한도 만족	○	●대상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 인근: 준주거지역,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등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III.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조건사항)	반영계획
제1차 도시계획위 원회	수정 가결	○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주민제안(안) 상의 주민동의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정합성에 대해 재확인하여 결정·고시되도록 할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할 경우 가능하며 오금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60.7%, 토지면적의 58.3%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주민제안 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23.11.03.), 동별소유주간담회(' 23.12.24.), 우편등기발송(' 23.11.07.) 등 여러 차례 설명 및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알렸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24.03.16.)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음.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수정가결(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 검토를 받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정비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할 것.	○ 향후 정비계획 결정·고시 시 내용에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겠음.
◎ 공공기여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조정할 것.			
제1차 도시계획위 원회	수정 가결	○ 전체 순부담률은 타 공공기여(동축 도로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조정, 공영주차장 확대 등) 추가를 통해 5.47% 이상으로 조정할 것	○ 수정가결(안) 4.74%에서 지하주차장 추가 확보하여 순부담률 5.47%로 변경하였음. (추가 순부담률 : 지하주차장 0.73%) -소공원 하부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 (지하6층, 연면적 : 15,858.0㎡, 환산부지면적 : 1,600.0㎡)
		○ 신설 계획한 소공원은 ' 21년 수립한 공공기획(안) 상의 공원 위치(오금중 서측)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조지계획(안)은 인근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기준(250m) 및 주변 저층 주거지 생활공간 내 공원(주차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형평성을 높임. ○ 공공공지와 소공원(주차장)을 인접 배치하여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이용성 향상을 도모함. ○ 의명유치원 이설계획에 따라 소공원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성함(접근거리 최소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 공공공지 신설계획은 서울시 및 송파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리청을 명확히 결정·고시할 것.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계획 시 기부채납 시설은 서울시에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공지 관리청은 서울시로 결정하였음.
		○ 공개공지계획(2개소)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개공지는 효용성이 미흡한바, 삭제하고, 이와 연계하여 허용용역을 인센티브 계획을 조정할 것.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2%) 삭제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역을 17% → 15%로 하향하여 조정하였음.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조건사항)	반영계획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 적정성을 검토할 것			
제1차 도시계획위 원회	수정 가결	○ 양재대로 변 적정 가로경관 형성 및 가로 활성화 등 측면에서 건축 배치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로경관 형성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축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임대주택 배치계획은 제3종 및 준주거지역 간 적정하게 분산배치되도록 조정할 것.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임대주택을 제3종 및 준주거지역 간 적정하게 분산배치 되도록 조정하겠음.
		○ 대지조성계획은 양재대로 변 적정 가로경관 및 연접 도로변 단차 발생 최소화 측면에서 조정하고, 신설 계획한 소공원의 지반 고도 연접 도로와의 단차 발생이 없도록 조정할 것.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양재대로 변은 완충녹지와 단지 내 보행공간을 도로 고·저차에 따라 조성하여 단차 없이 대로변의 가로경관에 위화감이 없도록 하겠으며, 연접 도로변은 단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겠음.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소공원은 연접 도로와의 단차 발생이 없도록 조정하겠음.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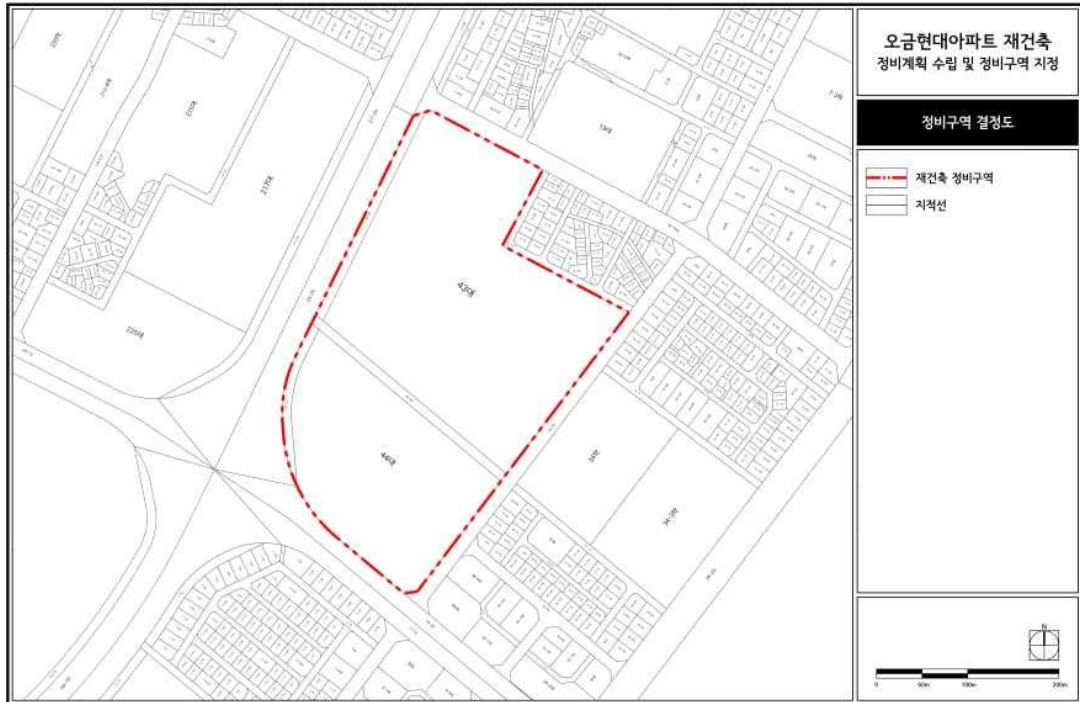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896)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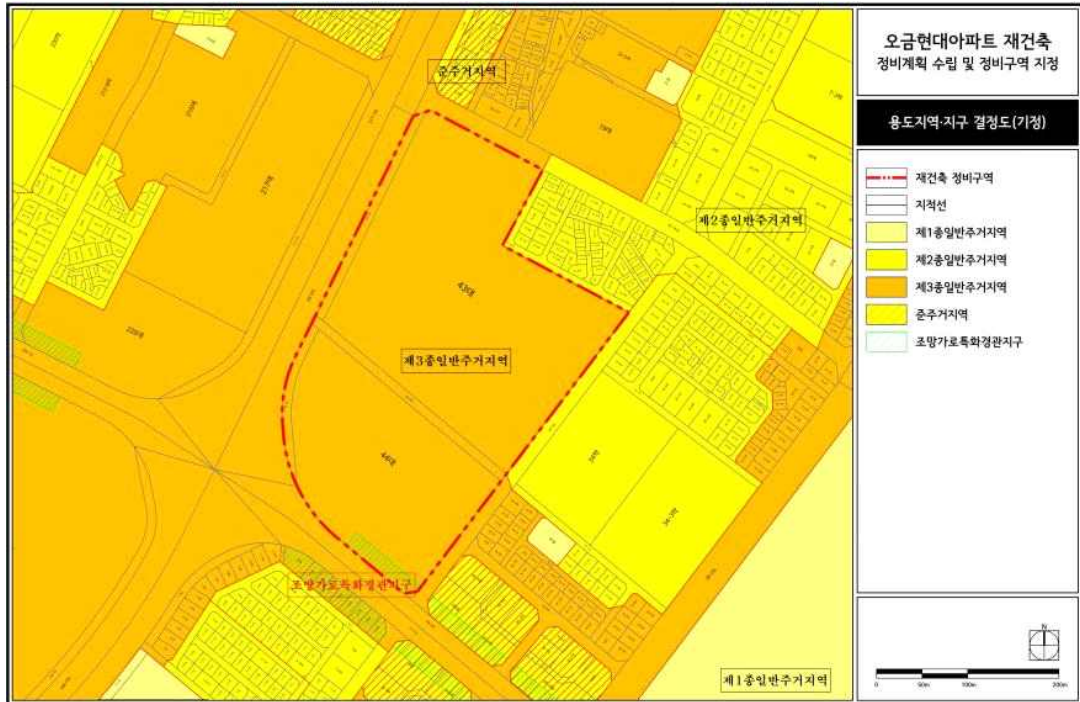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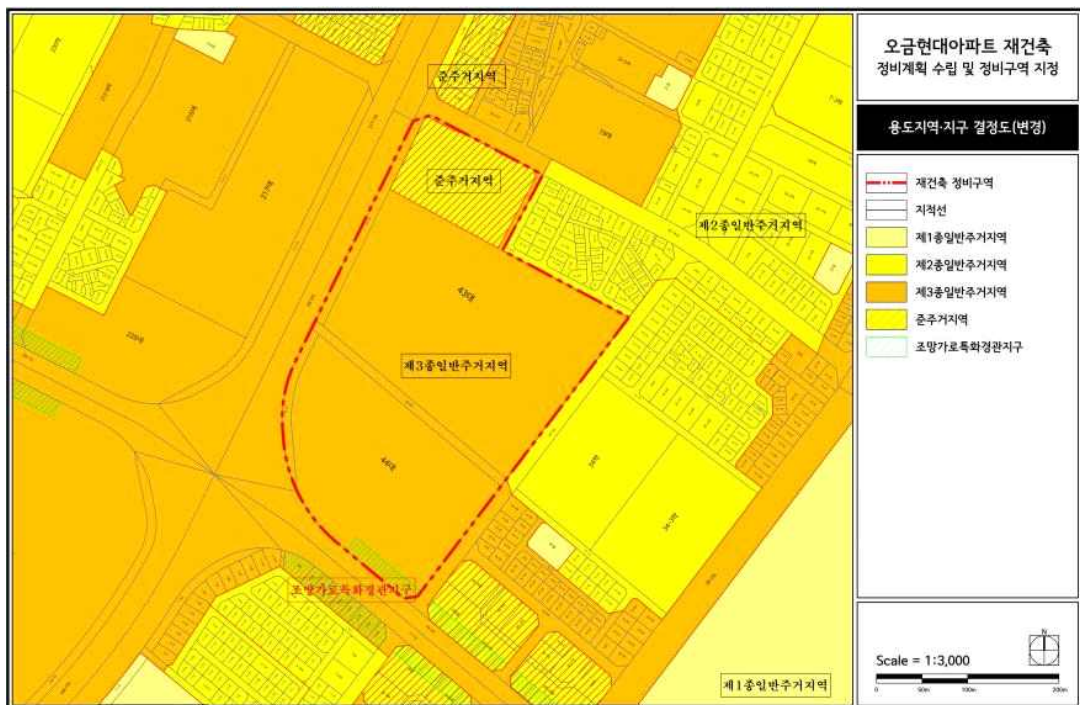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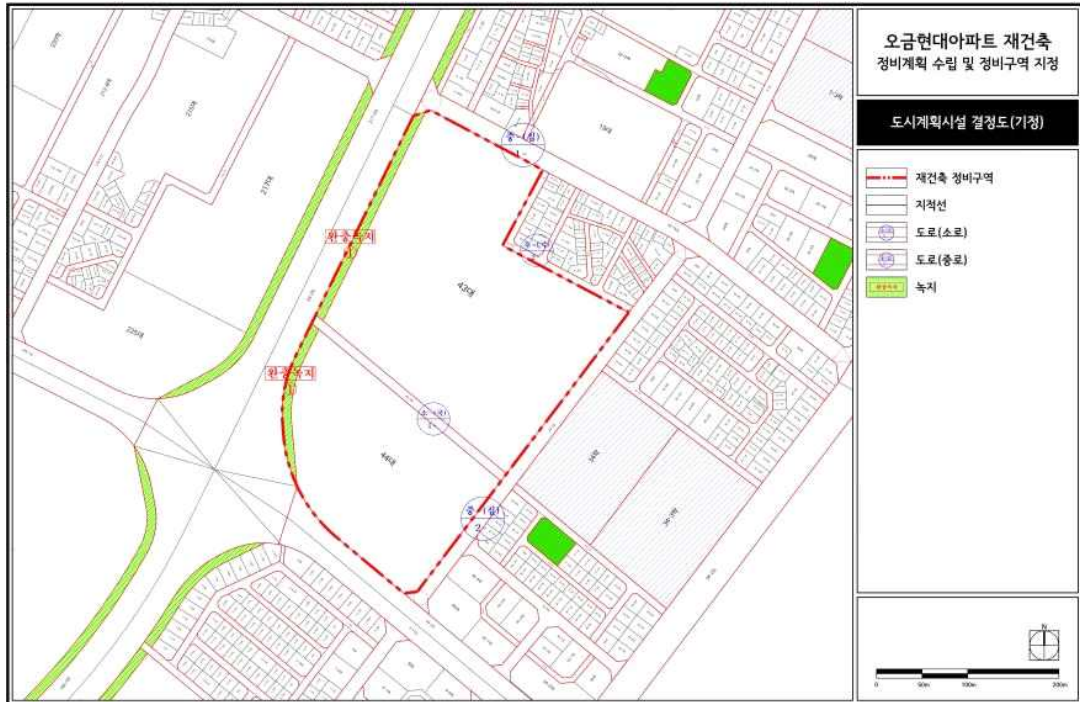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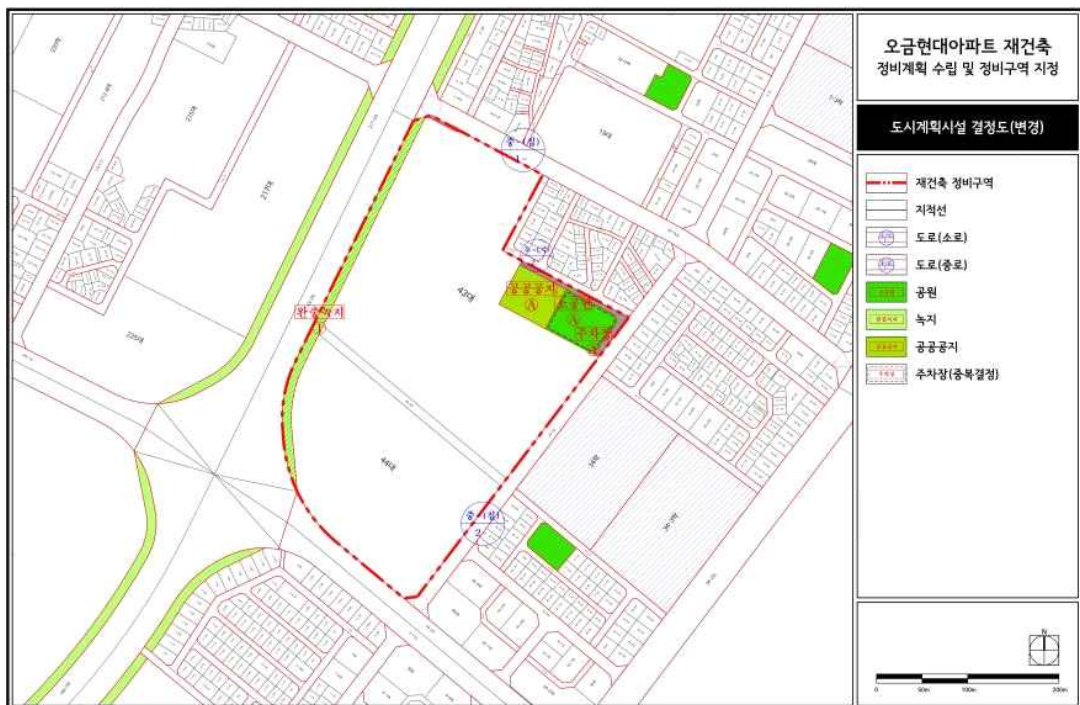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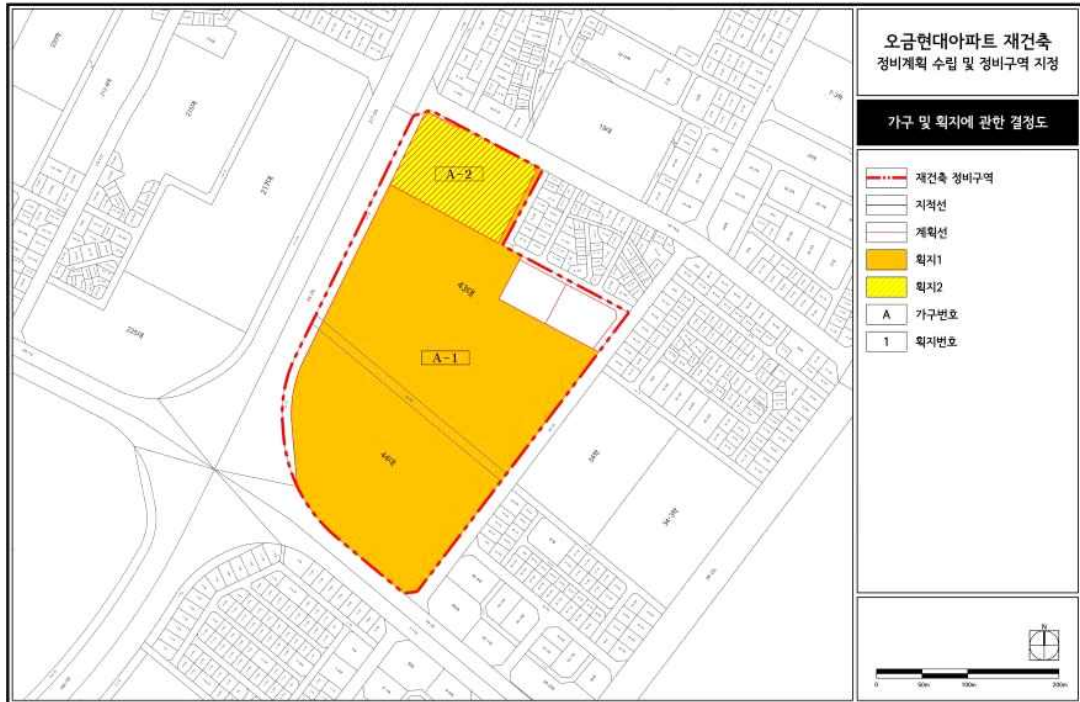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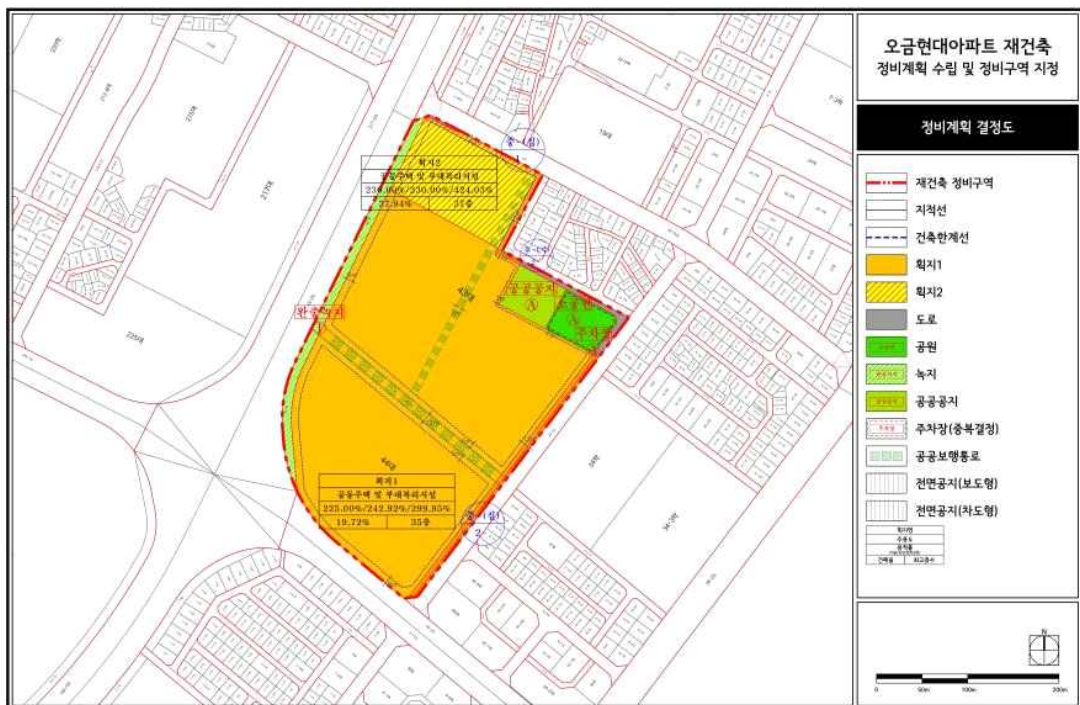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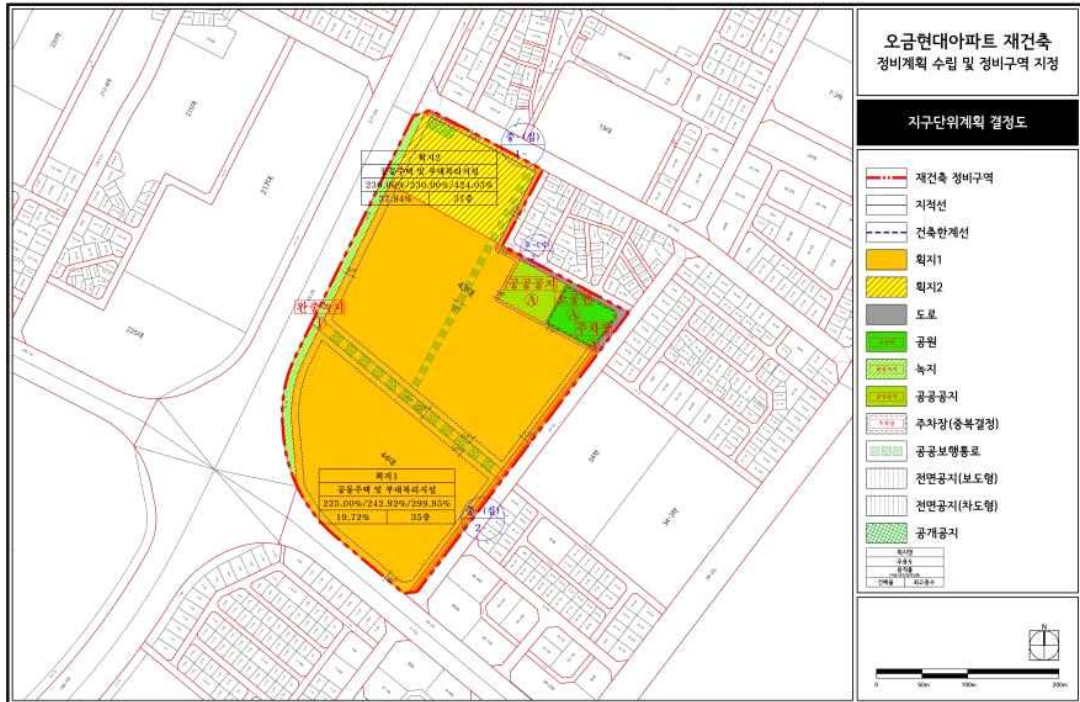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6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개요
가. 지정 대상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5호	백자 청화 운룡문 호 (白磁靑畫雲龍文壺)	1점	높이 59, 입지름 16, 굽지름 18.3	조선 후기	마포구 (금성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6호	태교신기 (胎敎新記)	1책	25.4×17.0	1821년 (순조 21) 序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7호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洛村先生文集木板, 歸巖先生文集木板, 靜齋先生文集木板)	498장	27.6×53.7×3.5	1937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정 사유

【백자 청화 윤통문 호】

조사대상은 구연부가 낮은 원통형으로 직립하며 어깨가 곡선으로 벌어졌다가 동체 중단에서 좁아들어 저부로 연결되는 입호(立壺)이다. 항아리의 동체에는 청화기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오조(五爪)의 용 두 마리가 장식되었으며, 두 마리의 용 사이에는 영기(靈氣)가 피어오르는 여의주를 비롯하여 만자형(卍字形)과 영지형(靈芝形)의 구름이 시문되었다. 어깨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위쪽을 향하는 여의두문이 배치되었으며, 하부에는 규문(圭文), 규형(圭形) 연판문(蓮瓣文), 산문(山文) 등으로 불리는 보조 문양이 자리한다. 하부의 보조 문양은 청색과 백색으로 내외부를 교차로 채색하였다.

조사대상은 높이 59cm에 달하는 크기의 입호(立壺)로, 오조(五爪)의 용문이 장식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문화유산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한다. 형태와 문양의 세부 표현 및 구성, 유색과 번조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조선 후기 관요(官窯)에서 제작한 이후 왕실의 의례에 활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태교신기】

『태교신기(胎敎新記)』는 태교(胎敎)에 관하여 저자가 경험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저작이다. 임산부였던 사주당 이씨가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로써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주당 이씨(師朱堂李氏, 1739~1821)가 태교에 관하여 한문으로 1800년에 저술하였고, 그 아들 유희(柳僖)가 1801년에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붙였다. 그리고 1821년에는 신작(申緯)이 서문을 붙이고, 1930년에는 현손 근영(近永)이 쓴 발문과 1936년 정인보(鄭寅普)의 음의서략(音義序略)이 각자의 필체로 들어가 있는 원본 자료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 『태교신기』는 상태가 깨끗하고, 조선 순조 때 사주당 이씨가 1800년에 쓴 한문 원본에 아들 유희가 언해한 필사본 원본이다. 『태교신기』는 조선 후기 여성학자의 실학적 저술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쓴 한문 원문을 아들인 유희가 1년 뒤인 1801년에 언해하였고, 신작과 유근영, 정인보 등 당대 저명한 학자들이 친필로 쓴 서문과 발문이 남아 있어 자료의 전래 과정 역시 분명하여 자료적 가치 역시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본 유물은 이도장(李道長, 1603~1644), 이원정(李元禎, 1622~1680), 이담명(李聃命, 1646~1701) 3대의 문집 『낙촌집(洛村集)』, 『귀암집(歸巖集)』, 『정재집(靜齋集)』의 목판이다. 세 문집은 17세기 영남 남인의 문집이다. 이원정은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투옥되었다가 옥사하였으며, 사후 1689년 관작을 회복하고 증직되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관직이 추탈되고, 1712년 복관되었다. 1871년에 와서야 뒤늦게 시호를 받았다. 이담명 역시 1694년 갑술환국으로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나 직첩을 빼앗긴 채로 사망하였으며, 사후 1706년 직첩을 돌려받았다.

이 3대의 문집은 저자 사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만년에 당쟁으로 고초를 겪은 저자들의

신원(伸冤)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복권과 위상 제고를 위한 후손의 노력이 계속되어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문집이 간행되었다. 이 유물은 20세기 이후의 것이지만,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보관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3대의 문집 판목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제목으로 문집 등을 인쇄한 책판들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2. 문화유산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7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2024.06.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63.6	감) 52.8	491,110.8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라.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63.6	감) 52.8	491,110.8	100.0	· 도로· 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308,771.2	증) 371.9	309,143.1	62.9	
상업업무용지		6,111.3	-	6,111.3	1.3	
주거복합용지		6,624.0	-	6,624.0	1.3	
종교용지		1,599.0	-	1,599.0	0.3	· 존치교회 2개소
기 반 시 설 용 지	소계	168,396.2	감) 424.7	167,971.5	34.2	·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76,657.7	감) 557.5	76,100.2	15.5	·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535.0	-	535.0	0.1	
	공원	45,272.6	증) 294.3	45,566.9	9.3	
	녹지	1,140.7	감) 155.3	985.4	0.2	
	하천	23,990.4	증) 60.4	24,050.8	4.9	·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440.0	-	2,440.0	0.5	· 119 안전센터 · 삼성동 주민센터
	공공공지	397.5	감) 66.6	330.9	0.1	
	학교	14,216.0	-	14,216.0	2.9	·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복지시설	2,986.3	-	2,986.3	0.6	· 사회복지시설 2개소 · 성민종합복지관 존치 1개소
	주차장	1,309.0	-	1,309.0	0.3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 기정 : 22,048인/7,594호 (변경없음)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94	-	7,594	22,048	-	22,048	-
촉진 구역	소 계	6,191	-	6,191	16,716	-	16,716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 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654	-	654	1,766	-	1,766	
	40㎡~50㎡	42	-	42	113	-	113	
	50㎡~60㎡	2,063	감) 3	2,060	5,570	감) 9	5,561	
	60㎡~85㎡	2,602	증) 3	2,605	7,026	증) 9	7,035	
	85㎡ 초과	830	-	830	2,241	-	2,241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준치관리구역	1,403	-	1,403	5,332	-	5,332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7	-	7	19,636.8	감) 66.6	19,570.2	
초등학교	1	-	1	13,543.0	-	13,543.0	· 기설치 1개소(신우초교)
유치원	1	-	1	673.0	-	673.0	
공공청사	2	-	2	2,440.0	-	2,440.0	· 119안전센터 1개소
복지시설	2	-	2	2,583.3	-	2,583.3	·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기존 설치 1개소 존치)
공공공지	1	-	1	397.5	감) 66.6	330.9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2	-	12	46,413.3	증) 139.0	46,552.3	
공원	소계	10	-	10	45,272.6	증) 294.3	45,566.9	
	근린공원	1	-	1	4,319.8	감) 150.8	4,169.0	
	수변공원	3	-	3	32,030.5	증) 451.6	32,482.1	
	소공원	5	-	5	6,730.6	감) 6.5	6,724.1	
	어린이공원	1	-	1	2,191.7	-	2,191.70	
녹지	소계	2	-	2	1,140.7	감) 155.3	985.4	
	경관녹지	2	-	2	1,140.7	감) 155.3	985.4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491,163.6	감) 52.8	491,110.8	-	
촉진구역(4개구역)	-	396,817.6	감) 52.8	396,764.8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23,168.7	-	223,168.7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24-25일대	95,797.5	감) 52.8	95,744.7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136.4	-	35,136.4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06 일대	42,715.0	-	42,715.0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존치지역	-	94,346.0	-	94,346.0	-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3-19일대	3,884.8	-	3,884.8	-	
신림3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5-43일대	5,230.7	-	5,230.7	-	
존치건축물	신림동 1726	4,879.1	-	4,879.1	-	
	신림동 1721	5,351.0	-	5,351.0	-	
	신림동 1698	2,986.0	-	2,986.0	-	
	신림동 1699, 1733	9,868.7	-	9,868.7	-	
	신림동 1724, 1729	6,180.0	-	6,180.0	-	
	신림동 300-1	400.0	-	400.0	-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0	-	1,547.0	-	
	신림동 300-6	950.0	-	950.0	-	
	신림동 289-3 외	39,525.7	-	39,525.7	-	
	신림동 315 외	13,543.0	-	13,543.0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5,797.5	감) 52.8	95,744.7	100.0	
주거지역	소계	66,283.2	감) 473.4	65,809.8	68.7	
	1종	60.0	-	60.0	0.1	
	2종	66,223.2	감) 473.4	65,749.8	68.6	
자연녹지		29,514.3	증) 420.6	29,934.9	31.3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역명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0%이하	60%이하	-/25층	2종
					50%이하	-/20층	3종
		주거복합			60%이하	-/18층	준주거
		상업·업무	300%	300%이하	60%이하	-	준주거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52%이하	60%이하	20층/28층	2종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0%	236%이하	60%이하	15층/17층	2종(7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 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168.7	49,929.6	14,796.3	9,140.7	673.0	25,319.6	11.3%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7.5	40,513.4	5,478.9	8,191.7	2,619.0	24,223.8	25.29%
변경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44.7	40,088.7	5,478.9	8,191.7	2,619.0	23,799.1	24.86%
기정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36.4	12,673.1	2,921.0	3,886.0	-	5,866.1	16.7%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전체세대수	임 대 주 택				
			합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6,691	912	512	42	348	10
	변경	6,191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4,185	631	413	-	208	10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435	183	57	-	126	-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1	98	42	42	14	-

※ 조합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적용

※ 전체세대수 오기로 인한 정정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5,797.50	감) 52.8	95,744.7	-

(나)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기정]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95,797.5	100.0	338.1㎡ 미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894.4	39.4	
	도 로	5,434.8	5.7	하천 338.1㎡ 포함
	공 원	22,977.5	23.9	
	공공공지	397.5	0.4	
	녹 지	1,105.7	1.1	
	하 천	7,978.9	8.3	도로 338.1㎡ 포함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택 지 (획 지)	소 계	58,241.2	60.6	
	2-1	34,912.8	36.3	공동주택
	2-2	12,607.9	13.1	공동주택
	2-3	4,885.5	5.1	공동주택
	2-4	1,156.0	1.2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2-5	1,335.0	1.4	공공청사
	2-6	1,284.0	1.3	사회복지시설
	2-7	2,060.0	2.1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 도로 및 공원의 하천 중복결정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95,744.7	100.0	338.1㎡ 미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469.7	39.4	
	도 로	4,877.3	5.7	하천 338.1㎡ 포함
	공 원	23,271.8	23.9	
	공공공지	330.9	0.4	
	녹 지	950.4	1.1	
	하 천	8,039.3	8.3	도로 338.1㎡ 포함
택 지 (획 지)	소 계	58,613.1	60.6	
	2-1	35,445.2	36.3	공동주택
	2-2	12,347.7	13.1	공동주택
	2-3	4,985.2	5.1	공동주택
	2-4	1,156.0	1.2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2-5	1,335.0	1.4	공공청사
	2-6	1,284.0	1.3	사회복지시설
	2-7	2,060.0	2.1	부대복리시설(종교시설)

※ 도로 및 공원의 하천 중복결정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 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337)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 198호 ('71.4.17)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73)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 121호 ('08.4.10)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206 (60)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 121호 ('08.4.10)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6	6~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 121호 ('08.4.10)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8~12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62)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서고시 207호 ('73.12.24)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 121호 ('08.4.10)	

□ 공 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	공원	신림동 산85-25일대	1,880.0	감) 150.8	1,729.2	건고시 369호 ('80.11.15)	
변경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16.1	감) 59.4	1,456.7	서고시 121호 ('08.4.10)	
변경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증) 511.0	19,897.4	서고시 121호 ('08.4.10)	
변경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0	감) 6.5	188.5	서고시 121호 ('08.4.10)	

□ 녹 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1699일대	1,105.7	감) 155.3	950.4	서고시 121호 ('08.4.10)	

☐ 공공공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서고시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신림동 302-8 일대	397.5	감) 66.6	330.9	제2024-191호 (`24.04.11)	

☐ 공공청사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 변경	②	공공 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0	-	1,335.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삼성 동사무소(통합) 삼성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신림동 301-3일대	1,284.0	-	1,284.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 하 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 B : 15~18m - L : 350m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소로2-29 중복결정 ※ 독마루 3m 확보를 위한 하천선형 변경

☐ 유수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1,765.79	감) 852.02	913.77	
	주민복지시설		3,956.40	증) 1,568.38	5,524.78	
	문고		464.02	증) 263.34	727.36	
	보육시설		1,052.08	감) 20.57	1,031.51	
	경로당		660.00	감) 24.29	635.71	
	경비실		148.91	감) 4.65	144.26	
	어린이놀이터		2,749.92	-	2,749.92	
	주민운동시설		1,057.12	-	1,057.12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95,797.5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466	-	-	466	-	-
변경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95,744.7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466	-	-	466	-	-

□ 건축시설계획
[기정]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97.5	2-1	34,912.80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0,769.52	공동주택	22 이하	260.0	23/28
			2-2	12,607.9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31,008.45	공동주택	25 이하	246.0	17/18
			2-3	4,885.5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2,203.26	공동주택	26 이하	250.0	14/15
			2-4	1,156.0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1,043.19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2,060.00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3,314.13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1% 이상 (1,351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69.3% 이상 (994세대) ● 건립예정세대수 : 1,435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95,744.7	2-1	35,445.20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92,155.53	공동주택	22 이하	260.0	23/28
			2-2	12,347.70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30,373.96	공동주택	25 이하	246.0	17/18
			2-3	4,985.20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11,671.88	공동주택	26 이하	250.0	14/15
			2-4	1,156.00	관악구 신림동 320-33번지 일대	1,977.67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00이하	-
			2-5	1,335.00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920.00	공공청사	60 이하	200이하	-
			2-6	1,284.00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2,568.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이하	-
			2-7	2,060.00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4,119.11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60 이하	23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1% 이상 (1,351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69.1% 이상 (991세대) ● 건립예정세대수 : 1,435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58,241.2	증) 371.9	58,613.1	2-1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34,912.8	증) 532.4	35,445.2	공동주택
					2-2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12,607.9	감) 260.2	12,347.7	공동주택
					2-3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4,885.5	증) 99.7	4,985.2	공동주택
					2-4	관악구 신림동 320-21번지 일대	1,156.0	-	1,156.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2-5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335.0	-	1,335.0	공공청사
					2-6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1,284.0	-	1,284.0	사회복지시설
					2-7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2,060.0	-	2,06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기정]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55,622.2	-	25,660.23 (9,650.19)	공 급 : 13,866.95 공 유 : 1,157.55 주차장 : 10,635.73 계 : 25,660.23	57(31.1%) 126(66.9%) - 183(12.8%)	40 ㎡이하 50 ~ 60㎡이하 60㎡초과 계	

※ 주)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서울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2.12.)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10%를 적용하였으며 연면적 항목의 ()는 전용면적을 기입한 사항임

[변경]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55,994.1	-	25,898.88 (9,673.04)	공 급 : 13,786.59 공 유 : 1,218.32 주차장 : 10,893.97 계 : 25,898.88	57(31.1%) 126(66.9%) - 183(12.8%)	40 ㎡이하 50 ~ 60㎡이하 60㎡초과 계	

※ 주)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서울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2.12.)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10%를 적용하였으며 연면적 항목의 ()는 전용면적을 기입한 사항임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림2주택정비형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5,797.5	감) 52.8	95,744.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5,797.5	감) 52.8	95,744.7	100.0
주거 지역	소 계		66,283.2	감) 473.4	65,809.8	68.7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60.0	-	60.0	0.1
		제2종	66,223.2	감) 473.4	65,749.8	68.6
자연녹지			29,514.3	증) 420.6	29,934.9	31.3

■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337)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시 198호 ('71.4.17)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73)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 121호 ('08.4.10)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206 (60)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 121호 ('08.4.10)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6	6~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 121호 ('08.4.10)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8~12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62)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서고시 207호 ('73.12.24)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 121호 ('08.4.10)	

나) 공 원 : 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관악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880.0	감) 150.8	1,729.2	건고시 369호 ('80.11.15)	
변경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16.1	감) 59.4	1,456.7	서고시 121호 ('08.4.10)	
변경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증) 511.0	19,897.4	서고시 121호 ('08.4.10)	
변경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0	감) 6.5	188.5	서고시 121호 ('08.4.10)	

※ ()는 구역내 면적

다) 녹 지 : 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1699일대	1,105.7	감) 155.3	950.4	서고시 121호 ('08.4.10)	

라) 공공공지 : 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신림동 302-8 일대	397.5	감) 66.6	330.9	서고시 제2024-191호 ('24.04.11)	

마)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 변경	②	공공 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0	-	1,335.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삼성 동사무소(통합) ----- 삼성동 주민센터

바)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신림동 301-3일대	1,284.0	-	1,284.0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 121호 (‘08.4.10)	

사) 하 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15~18m L: 350m ·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소로2-29 중복결정 ※ 독마루 3m 확보를 위한 하천선형 변경

아)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서고시 121호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58,241.2	증) 371.9	58,613.1	2-1	관악구 신림동 325-28번지 일대	34,912.8	증) 532.4	35,445.2	공동주택
					2-2	관악구 신림동 304-7번지 일대	12,607.9	감) 260.2	12,347.7	공동주택
					2-3	관악구 신림동 309-6번지 일대	4,885.5	증) 99.7	4,985.2	공동주택
					2-4	관악구 신림동 320-21번지 일대	1,156.0	-	1,156.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2-5	관악구 신림동 301-8번지 일대	1,335.0	-	1,335.0	공공청사
					2-6	관악구 신림동 301-1번지 일대	1,284.0	-	1,284.0	사회복지시설
					2-7	관악구 신림동 341-8번지 일대	2,060.0	-	2,060.0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획지	주용도	비고
기정	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종교집회장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기정	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기정	2-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정	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종교집회장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다) 용적률계획 : 변경

구 분	획지	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2-1	190	-	260	
기정	2-2	190	-	246	
기정	2-3	190	-	250	
기정	2-4	190	-	200	
기정	2-5	190	-	200	
변경	2-5	200	-	200	법적용적률 적용
기정	2-6	190	-	200	
변경	2-6	200	-	200	법적용적률 적용
기정	2-7	190	-	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2-5, 2-6획지 오기 정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 해당없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2-1, 2-2, 2-3	62%	-	총 62%
변경	2-1, 2-2, 2-3, 2-4, 2-7			

라)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획지	높이기준	비고
기정	2-1	28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2	18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3	15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2-4	관계법령에 따름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기정	2-5	관계법령에 따름	공공청사
기정	2-6	관계법령에 따름	사회복지시설
기정	2-7	관계법령에 따름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1m	획지 2-3	소로 2-29번, 소로3-3번	
건축한계선 2m	획지 2-1, 2-2, 2-3	중로 3-453번, 도림천변	
건축한계선 3m	획지2-1, 2-2, 2-3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호암로변, 2-7획지변	

■ 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도림천 인접지역 (획지2-1)	• 수변공간과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수변공원과 도로변 인접지역 (획지2-2, 2-3)	•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주동의 유형 및 형태	전구역	• 자연과 도시의 연계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 • 주동의 다양한 층수변화,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1. 테라스형 Terrace type 산책로 및 하천에 인접한 테라스형 주동 2. 판상형 Stream type 하천과 수변에 면한 판상형주동 3. 판상형+탑상형 Collabo type 산책로, 산책가도, 하천, 하천변, 하천변에 인접한 판상형과 판상형+탑상형 4. 경관형 Hyper type 수변과 도시를 연결한 경관형주동	

다)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개방감	획지2-1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열린 도시경관 조성 • 저층부 일부 필로티 계획을 통한 단지 내 외부의 공간 연계	
특화거리	획지2-1, 2-2, 2-3	• 수변공원 및 도림천 보행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주민의 활동 공간 조성 • 연도형 주거 및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통한 활력있는 가로경관 조성	

■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생태 환경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III, 내부연결성 I, 외 부연결성III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 계강화 실시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일부 2, 3, 4등 급), 개별비오톱은 대부분 평가제외지역 및 일부 2등급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토지 환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 환경	물순환 (수리수질)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0.06%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 영하여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 예상 ·생활오수 발생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대기 환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예상(풍하 방향 풍속증가, 외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 높이 계획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를 최소화할 계획임.	
	대기질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발 생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지율 35%	○	·조경녹지 및 가로녹지 조성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지율 상승계획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 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지구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조 성 필요	·경관녹지, 공원, 확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 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 수립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 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 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 공공주택(의무)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무)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으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기정]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주택 (의무)	공공주택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계	1,435	100.0	183	183	-	12.8	100.0	-
40㎡이하	82	5.7	57	57	-	4.0	31.2	-
40~50㎡	-	-	-	-	-	-	-	-
50~60㎡	912	63.6	126	126	-	8.8	68.8	-
60~85㎡	357	24.9	-	-	-	-	-	-
85㎡초과	84	5.9	-	-	-	-	-	-

[변경]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주택 (의무)	공공주택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계	1,435	100.0	183	183	-	12.8	100.0	-
40㎡이하	82	5.7	57	57	-	4.0	31.2	-
40~50㎡	-	-	-	-	-	-	-	-
50~60㎡	909	63.3	126	126	-	8.8	68.8	-
60~85㎡	360	25.1	-	-	-	-	-	-
85㎡초과	84	5.9	-	-	-	-	-	-

※ 공공주택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호수 선정시 함께 추첨하도록 한다.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63.6	감) 52.8	491,110.8	•서고2006-357호 (2006.10.19)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63.6	감) 52.8	491,110.8	100.0
주거 지역	소 계		444,276.5	감) 473.4	443,803.1	90.4
	일 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7,749.8	-	87,749.8	17.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7,429.6	-	57,429.6	11.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33,752.1	감) 473.4	233,278.70	47.5
		제3종일반주거지역	42,407.0	-	42,407.0	8.6
	준주거지역		22,938.0	-	22,938.0	4.7
자연녹지지역			46,887.1	증) 420.6	47,307.7	9.6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	26~32	보조 간선도로	203	신림동 298-4	신림동 345-2	-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588)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198호 (71.4.17)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73	15~23	보조 간선도로	2,590	신림1교	서울대 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도림천 좌안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71	신림동 341-38	신림동 1704-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456	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2008-121 (’08.4.10)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457	13	국지도로	85	신림동 36-8	신림동 315-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37	신림동 1528	신림동 808-142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13	신림동 1721-5	신림동 832	서고시2008-121 (’08.4.10)	·도로폭 및 노선 축소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1	신림동 1527	신림동 1513-4	서고시2008-121 (’08.4.10)	·선형변경 및 노선 축소
기정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35	신림동 394-21	신림동 394-19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5	신림동 306-63	신림동 310-14	관악구고시 제92-7호 (’92.4.15)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314	신림동 315-10	신림동 144	서고시2008-121 (’08.4.1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31	신림동 1726-1	신림동 산134-1		·양지공원 진입도로

○ 주차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신림동 306-59일대	1,309	-	1,309	관악구고시제97-70호 (‘97.9.25)	

(나) 공간시설 : 변경

○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	공원	신림동 산85-25일대	1,880.0	감) 150.8	1,729.2		신림2
변경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0	감) 6.5	188.5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2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191.7	-	2,191.7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191.7	-	1,191.7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11.9	-	3,911.9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변경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16.1	감) 59.4	1,456.7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2
변경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증) 511.0	19,897.4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2 (저류시설 중복결정)
기정	⑤		소공원	신림동 1513-7일대	1,001	-	1,001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기정	⑤		수변공원	신림동 808-498	11,128	-	11,128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기정	⑥		소공원	신림동 299-17일대	443	-	44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 녹지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	신림동1694-14	35	-	35	서공고93-235호 (‘93.12.30)	신림3
변경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1699일대	1,105.7	감) 155.3	950.4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2

○ 공공공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신림동302-8일대	397.5	감) 66.6	330.9	서고시2024-191호 (‘24.04.11)	신림2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 변경	②	공공 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	-	1,335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삼성 동사무소(통합) ----- 삼성동 주민센터
기정	③	공공 청사	-	신림동 296-11일대	1,105	-	1,105	50% 이하	250% 이하	-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119안전센터

○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 학교	신림동 315	13,543	-	13,543	서고시 165호 (‘79.7.15)	신우초교 점유 (사용) 부지
기정	②	학교	유치원	신림동 299-32 일대	673	-	67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복지시 설	신림동 301-3일대	1,284	-	1,284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②	사회복지시 설	신림동 산69-16일대	1,299.3	-	1,299.3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 하천 : 변경없음☐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19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 15~18m L : 350m ●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 소로2-29 중복결정

☐ 유수지 : 변경없음☐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	2,644.0	서고시2008-121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 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	2,544.5	서고시2008-121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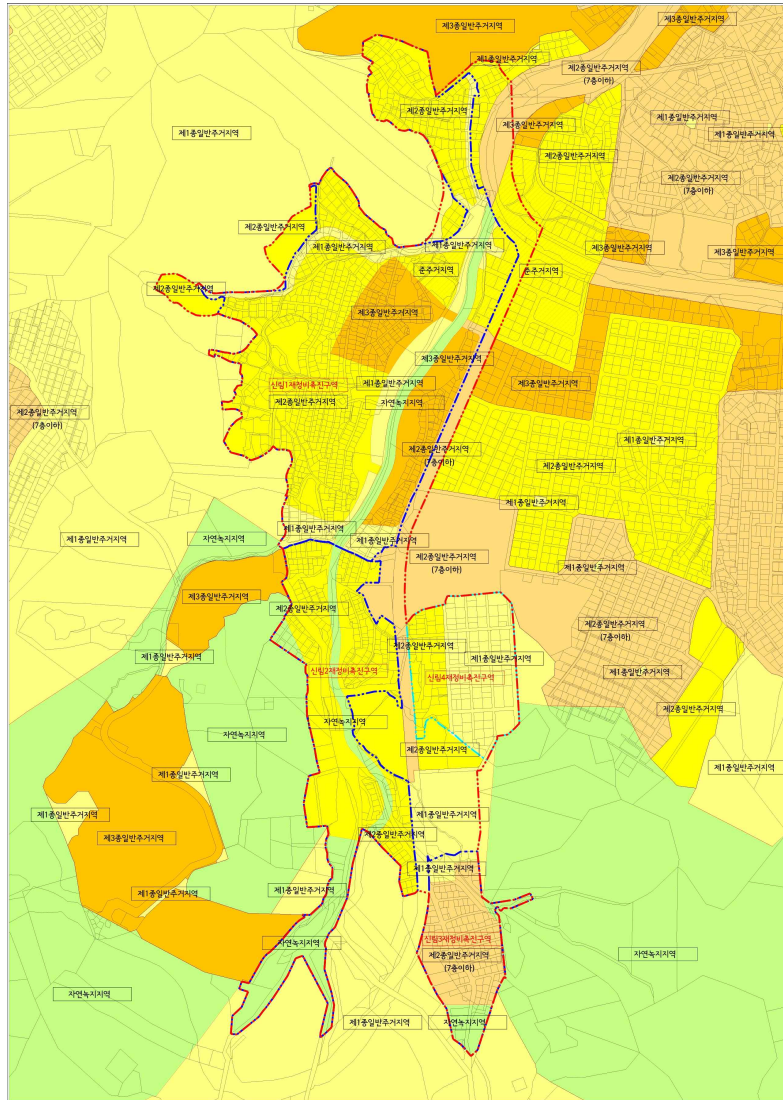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7)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8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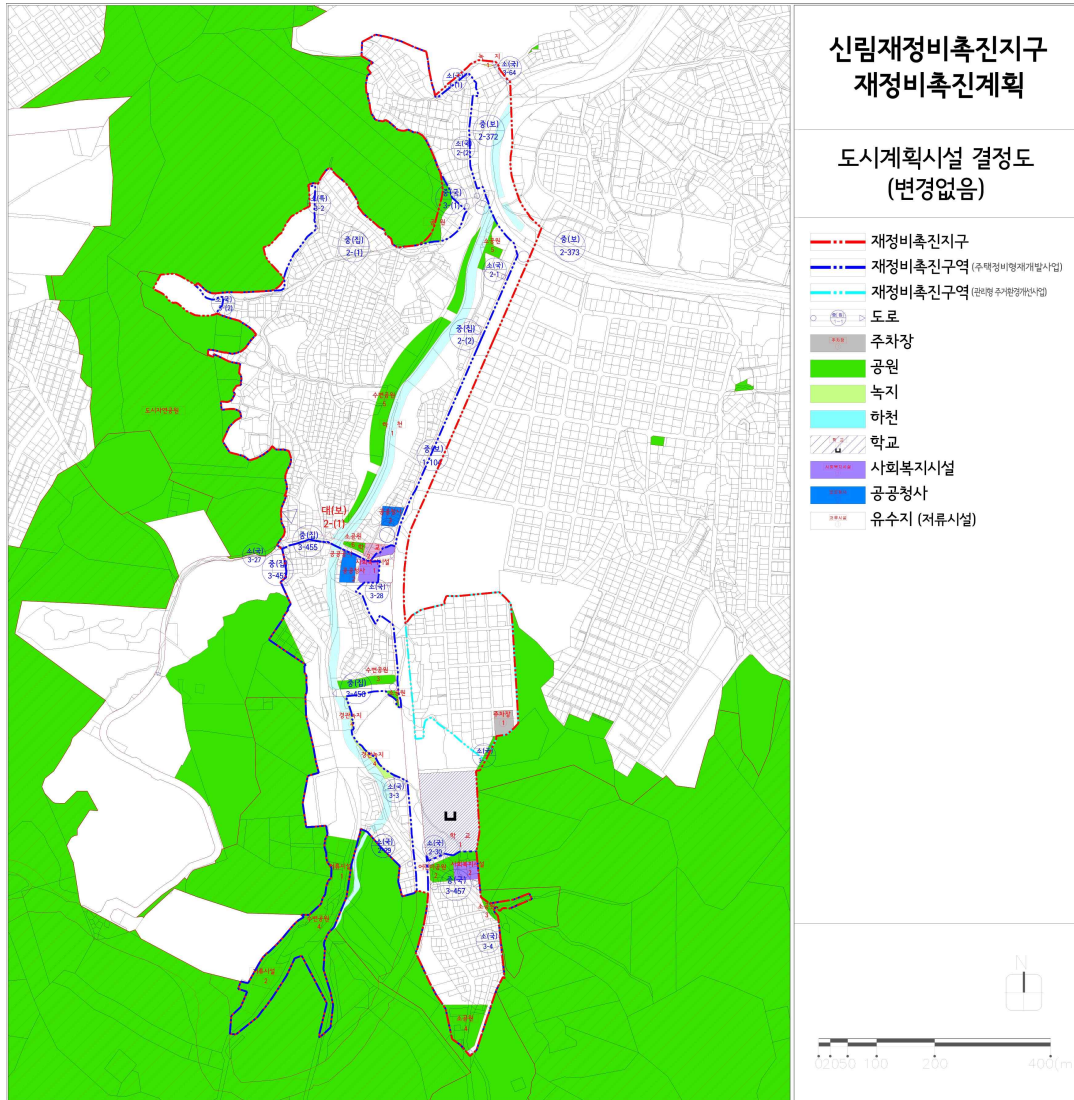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사업)
- 재정비촉진구역 (관리형 주택정비사업)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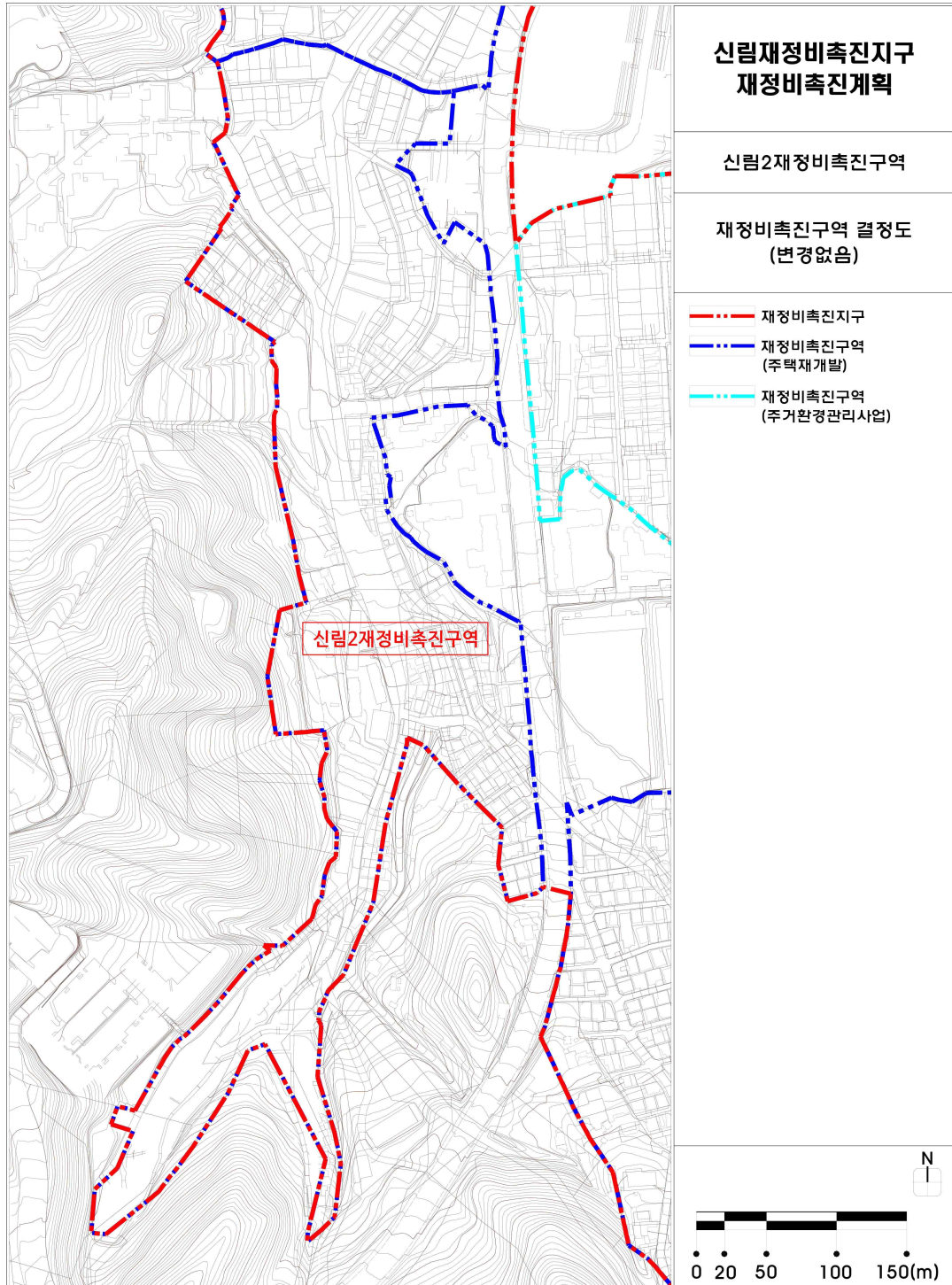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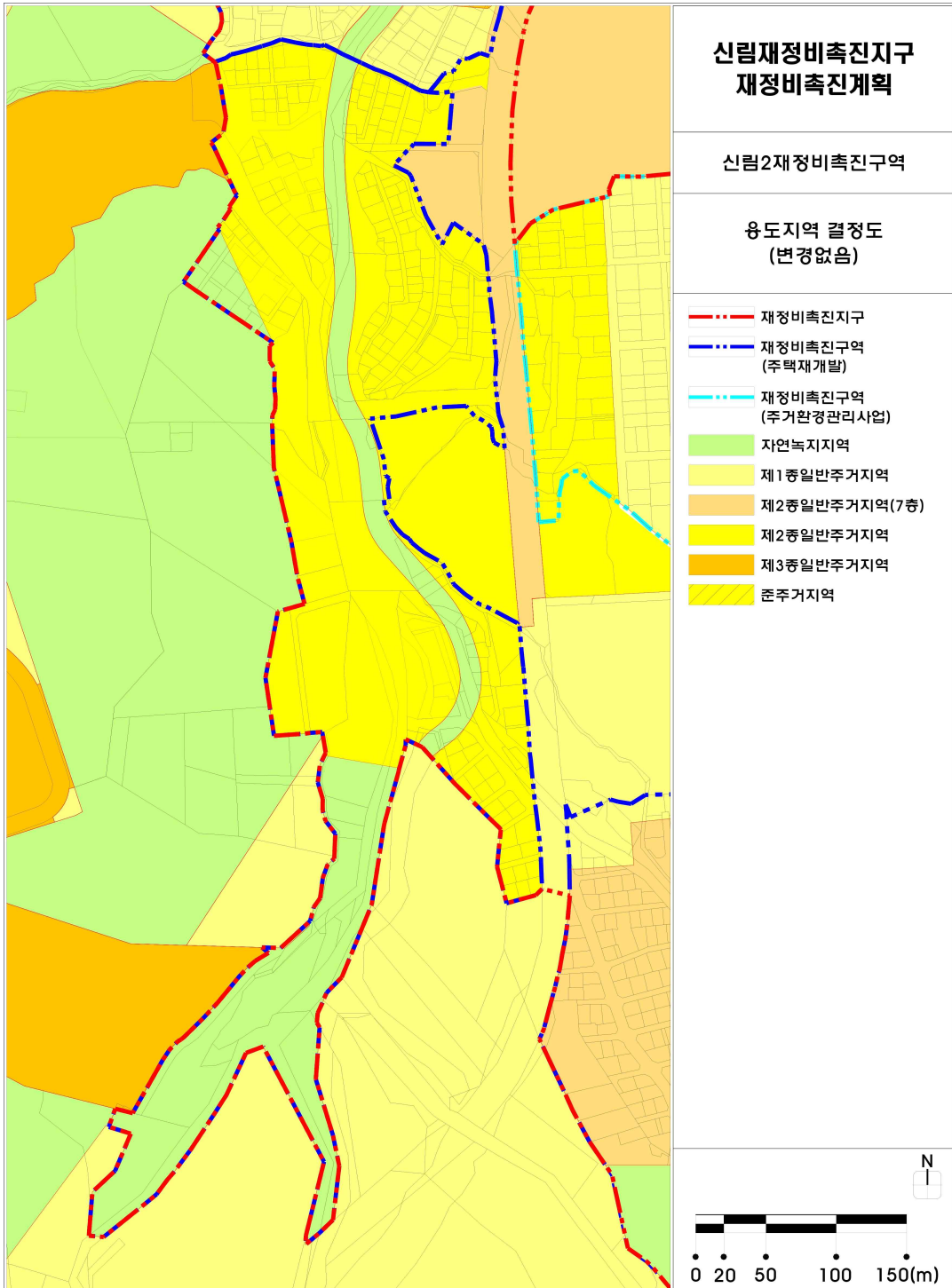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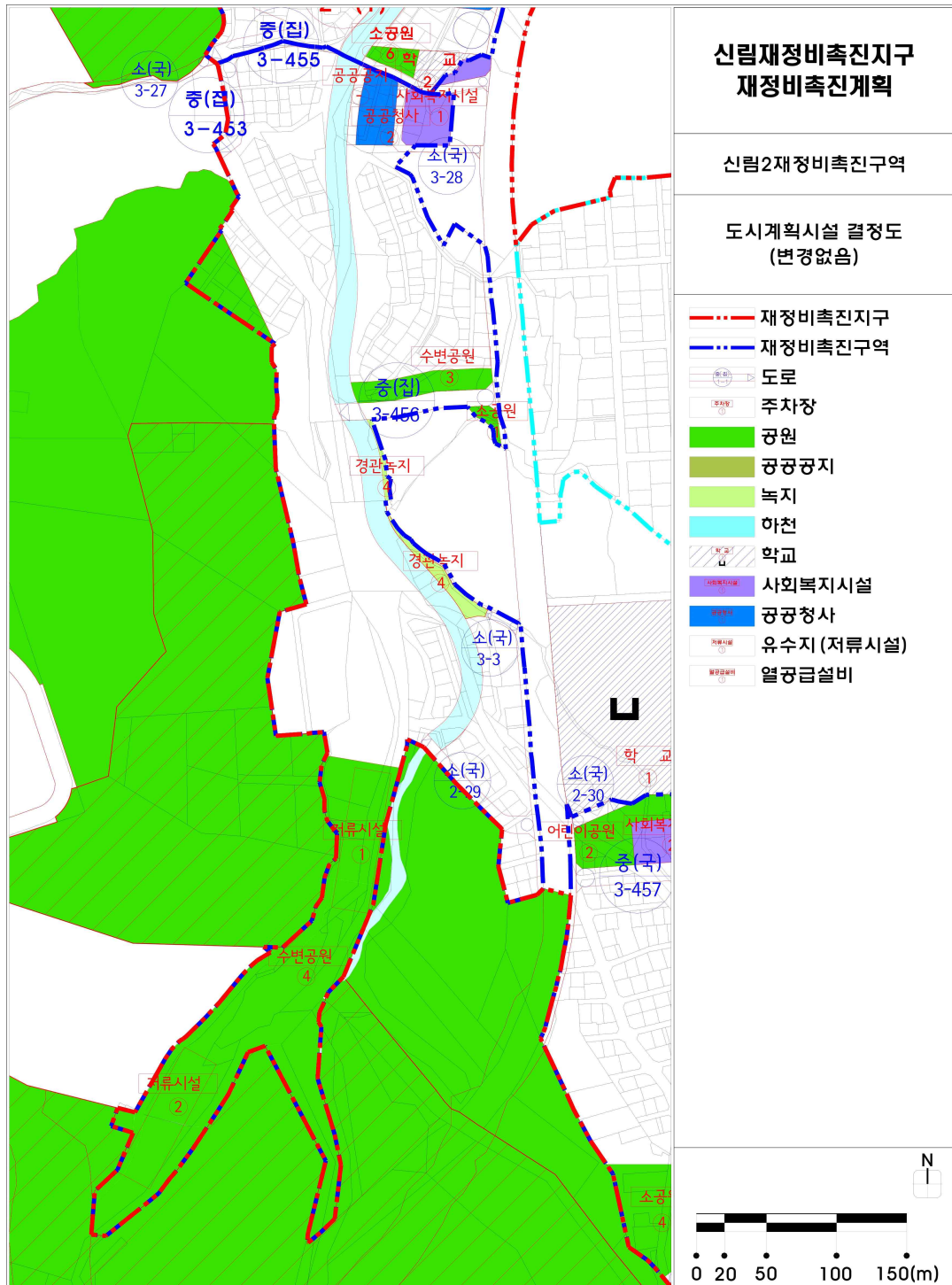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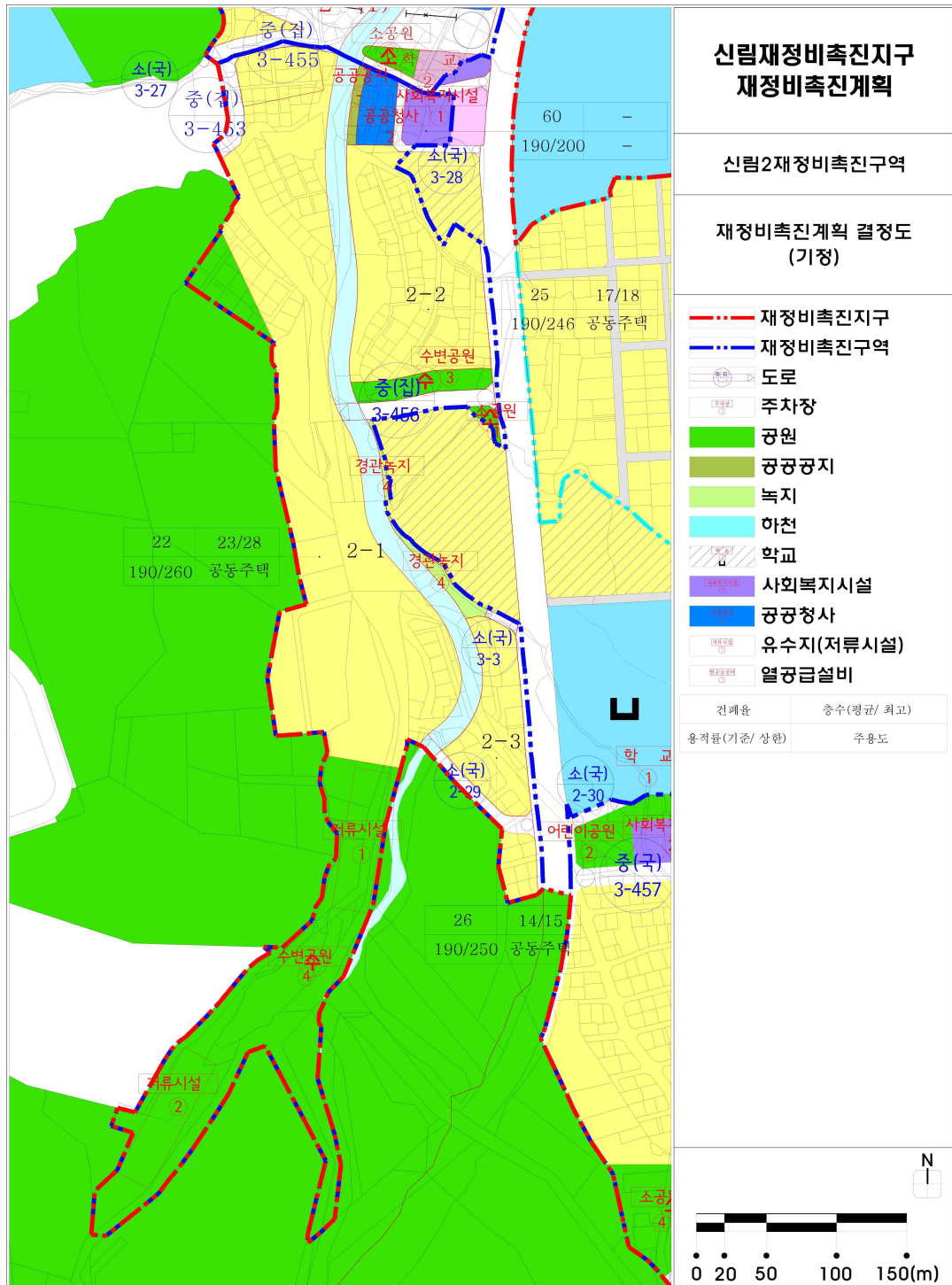
[신림2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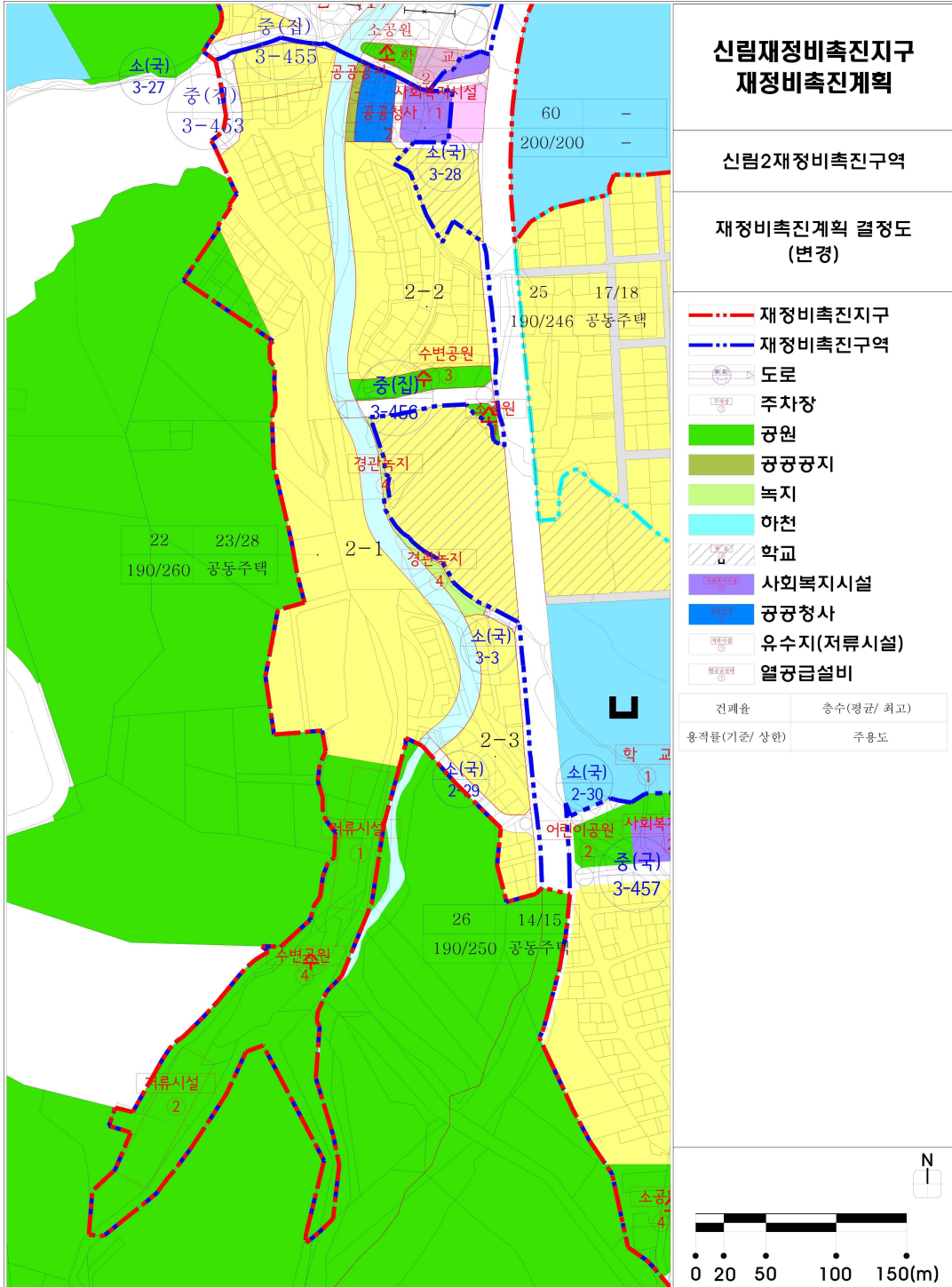
[신림2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신림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호-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52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2022.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5호(2022.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63호(2022.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5호(2023.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4호(2023.6.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90호(2023.12.28.)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 5) 교통계획(변경없음)
- 6) 경관계획(변경없음)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1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K	망우동 508-1 일원	508-2~5 / 508-11~14, -18 / 508-27, -28, -65 / 508-37, -67 / 508-47, -51 / 508-56, -57 각각 획지선 지정	기정 (존치관리 9구역)
		508-15, -16 공동개발 지정	
		508-7, -8 / 508-10, -52, -55 / 508-17, -58 / 508-20~24 / 508-35, -3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변경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K	망우동 508-1 일원	508-2~5 / 508-11~14, -18 / 508-27, -28, -65 / 508-37, -67 / 508-47, -51 / 508-56, -57 각각 확지선 지정	변경 (존치관리 9구역)
		508-15, -16 공동개발 지정	
		508-10, -52 / 508-17, -58 / 508-20~24 / 508-35, -3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지번	변경내용	변경사유
K	망우동 508-1 일원	- 공동개발 권장 변경 - 508-7, -8 / 508-55 삭제	단일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권장) 변경

☐ 대지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제어요소	제어지침	제어구역	적용기준	비 고
보차혼용도로	보행 및 차량을 위한 도로 개설로 지구 교통개선	간선가로 직접 진출입이 예상되는 블록내 주차 진출입 및 이면도로 확보지역	최소 폭 6m 이상	
공공보행도로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수립으로 보행환경개선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 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	- 최소 폭 3m 이상 - 필로티형 공공보행도로 조성시 유효높이 6m 이상	
입체공공보행도로	역사, 건축물간 보행연결이 필요 하거나 시설 이용집적이 대규모인 경우 설치	- 역사주변 - 대형필지	최소 폭 6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	- 망우로에서 이면부로 이어지는 보행동선 조성 - 차량진출입 금지 -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간선도로변에 접속되어 있는 소로	최소 폭 4m 이상	중앙공원 폐지에 따라 이면부로의 보행동선 조성으로 변경

- 변경

제어요소	제어지침	제어구역	적용기준	비 고
보차혼용도로	보행 및 차량을 위한 도로 개설로 지구 교통개선	간선가로 직접 진출입이 예상되는 블록내 주차 진출입 및 이면도로 확보지역	최소 폭 3m 이상	존치관리 9구역 추가 (도면 참조)
공공보행도로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수립으로 보행환경개선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 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	- 최소 폭 3m 이상 - 필로티형 공공보행도로 조성시 유효높이 6m 이상	
입체공공보행도로	역사, 건축물간 보행연결이 필요 하거나 시설 이용집적이 대규모인 경우 설치	- 역사주변 - 대형필지	최소 폭 6m 이상	

제어요소	제어지침	제어구역	적용기준	비 고
보행자 전용도로	• 망우로에서 이면부로 이어지는 보행동선 조성 • 차량진출입 금지 •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 간선도로변에 접속되어 있는 소로	• 최소 폭 4m 이상	중앙공원 폐지에 따라 이면부로의 보행동선 조성으로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계획내용	결정사유	비고
-	망우동 508-54	• 보차혼용통로 신설(1개소) - 폭 : 3m - 연장 : 14m - 기점 : 망우동 508-52 - 종점 : 망우동 508-53	봉우재로57길의 원활한 보행 및 차량 동선 확보	도면 참조

-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17)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가구 결정 조서(변경)

☐ 가구 계획(변경없음)

□ 획지 결정 조서(변경)

- 기정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K	망우동 508-1 일원	508-2~5 / 508-11~14,-18 / 508-27,-28,-65 / 508-37,-67 / 508-47,-51 / 508-56,-57 각 각 획지선 지정	기정 (존치관리 9구역)
		508-15,-16 공동개발 지정	
		508-7,-8 / 508-10,-52,-55 / 508-17,-58 / 508-20~24 / 508-35,-3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변경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비고
K	망우동 508-1 일원	508-2~5 / 508-11~14,-18 / 508-27,-28,-65 / 508-37,-67 / 508-47,-51 / 508-56,-57 각 각 획지선 지정	변경 (존치관리 9구역)
		508-15,-16 공동개발 지정	
		508-10,-52 / 508-17,-58 / 508-20~24 / 508-35,-36 각각 공동개발 권장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지번	변경내용	변경사유
K	망우동 508-1 일원	- 공동개발 권장 변경 - 508-7,-8 / 508-55 삭제	단일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권장) 변경

(3)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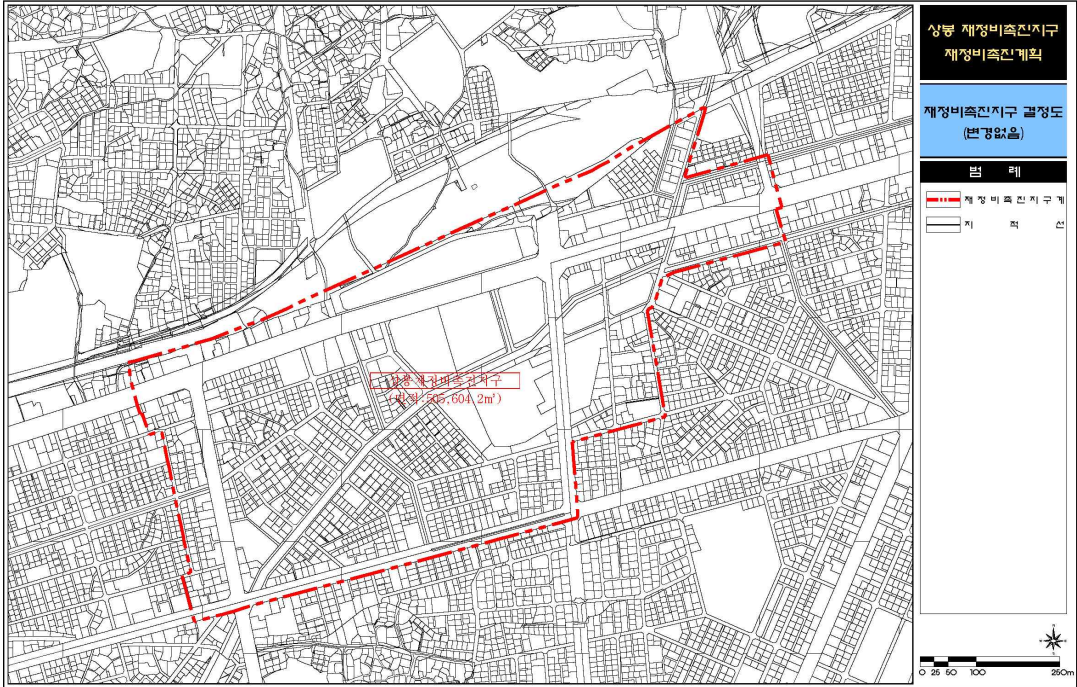
II.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III. 관련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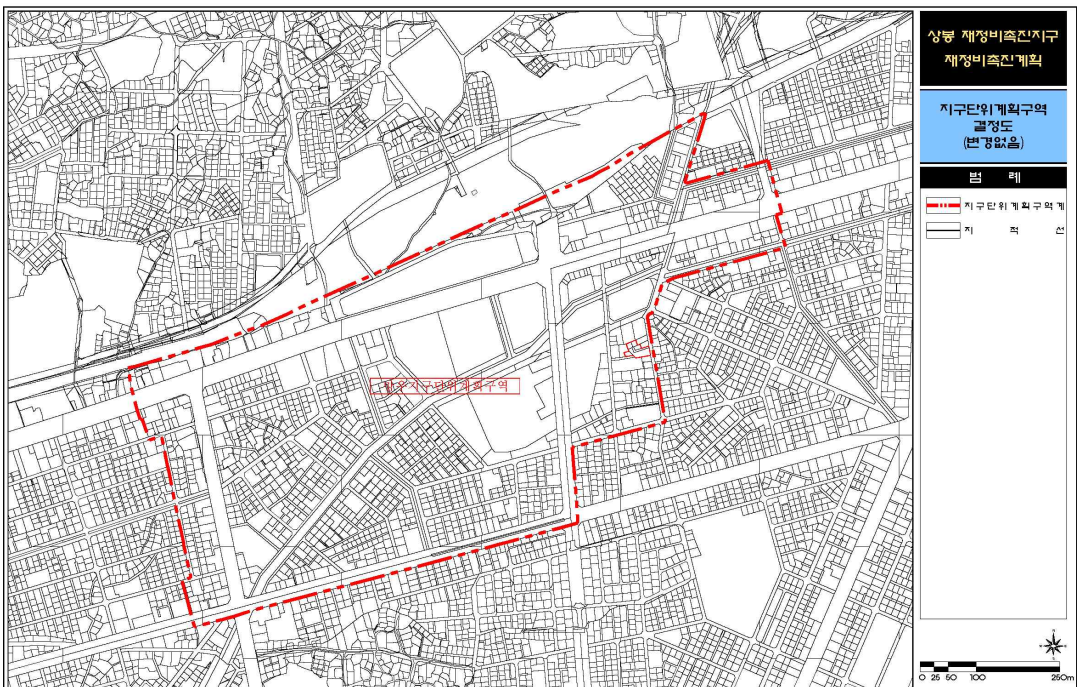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14),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02-2094-21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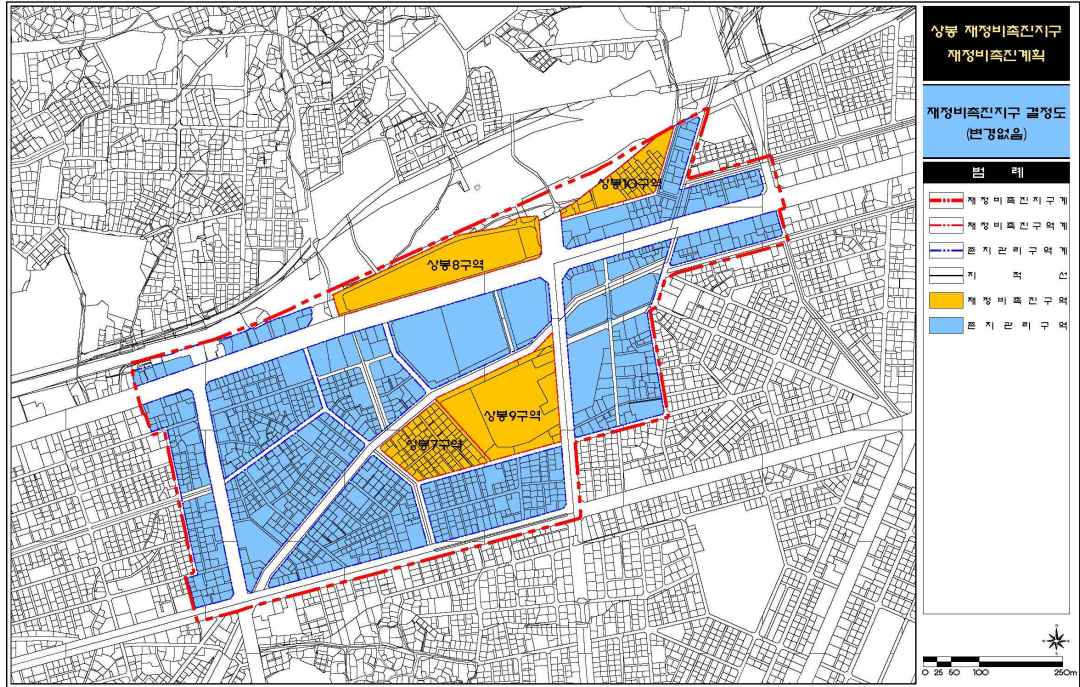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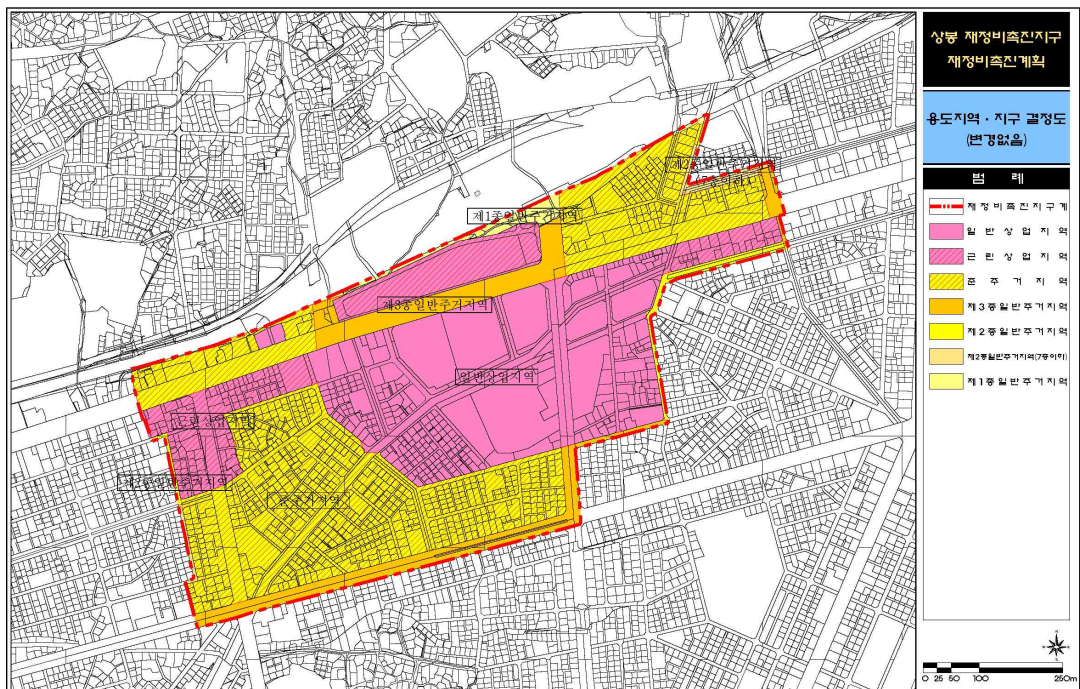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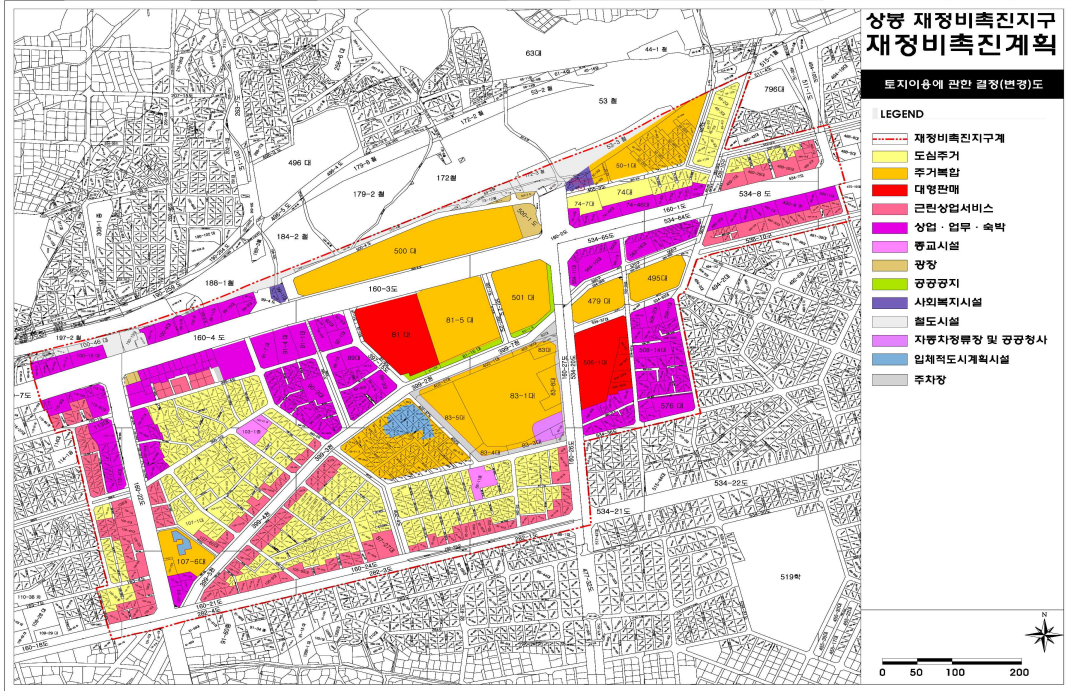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준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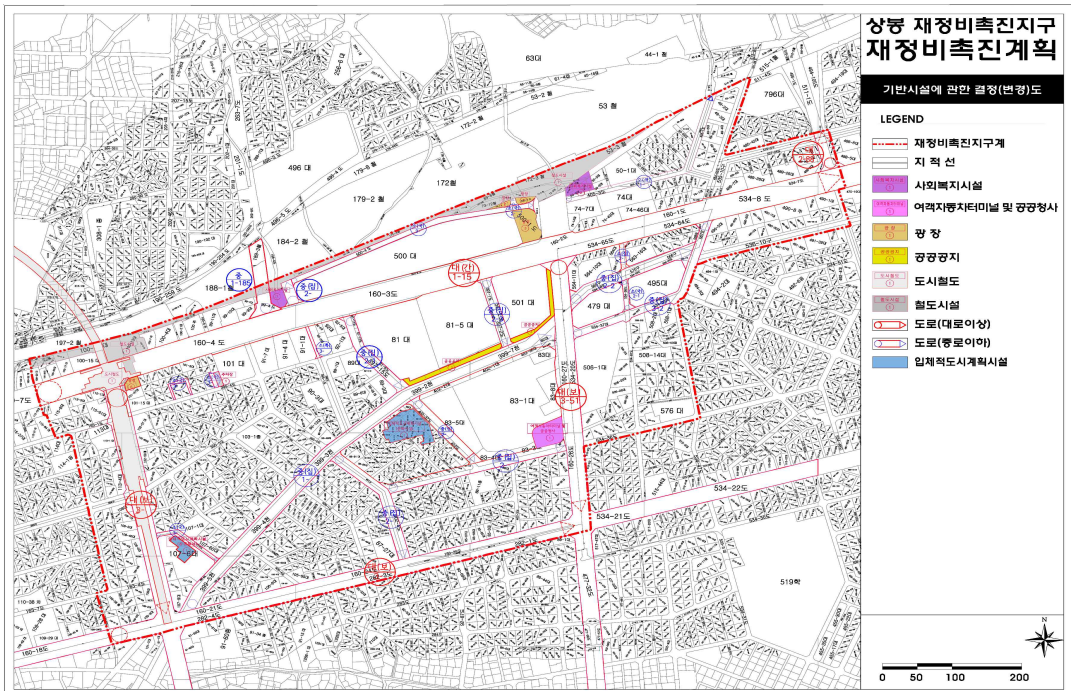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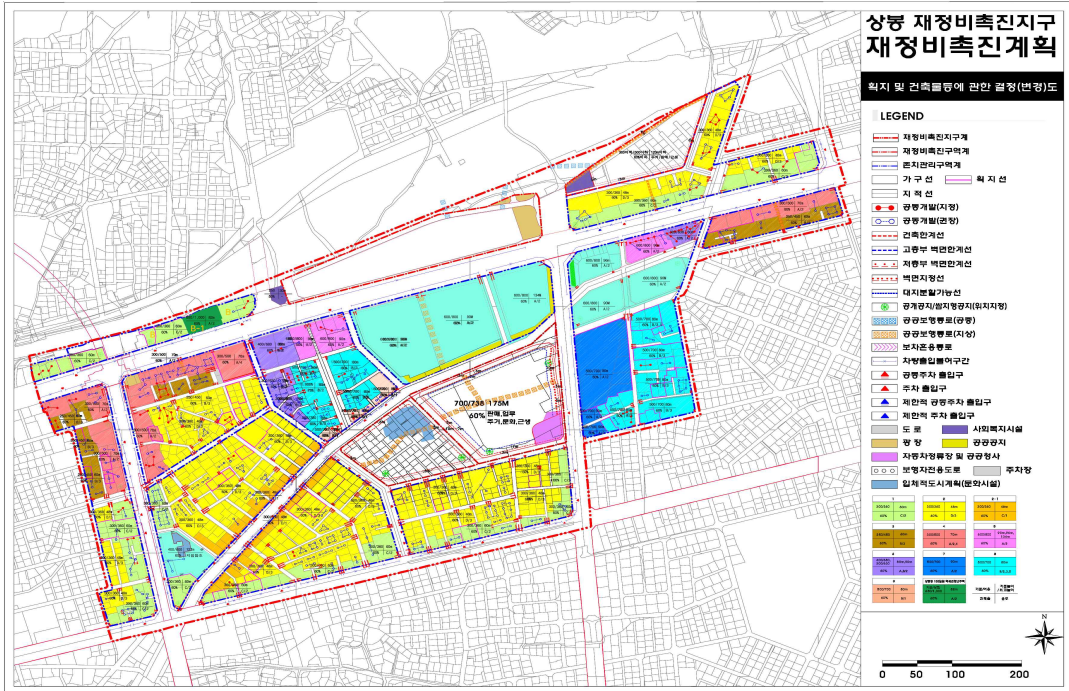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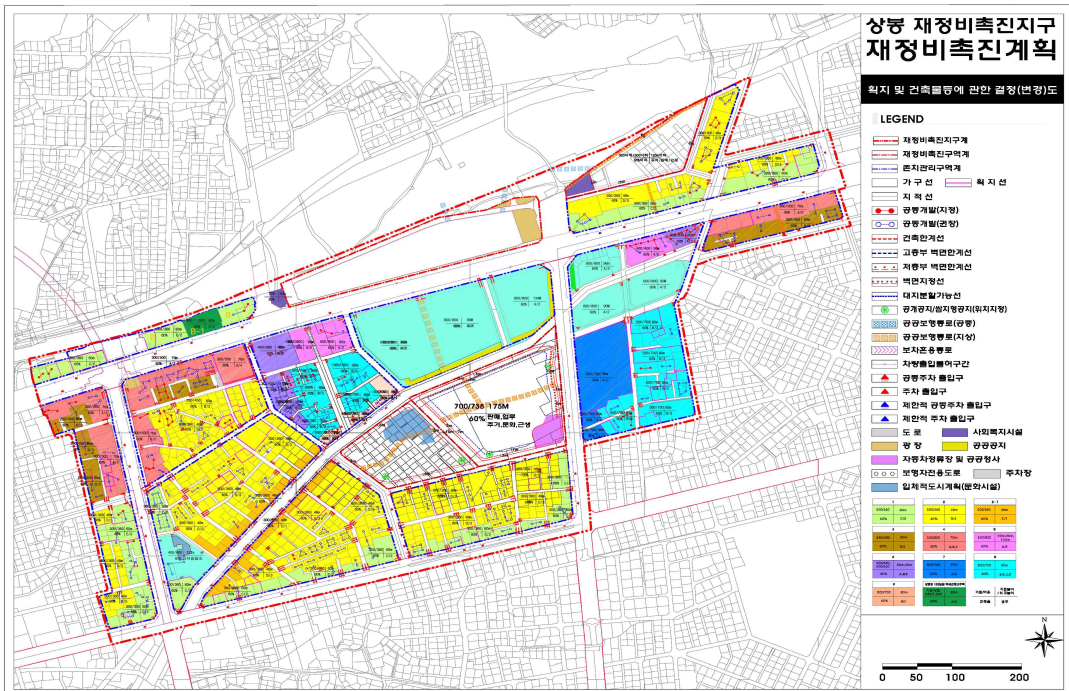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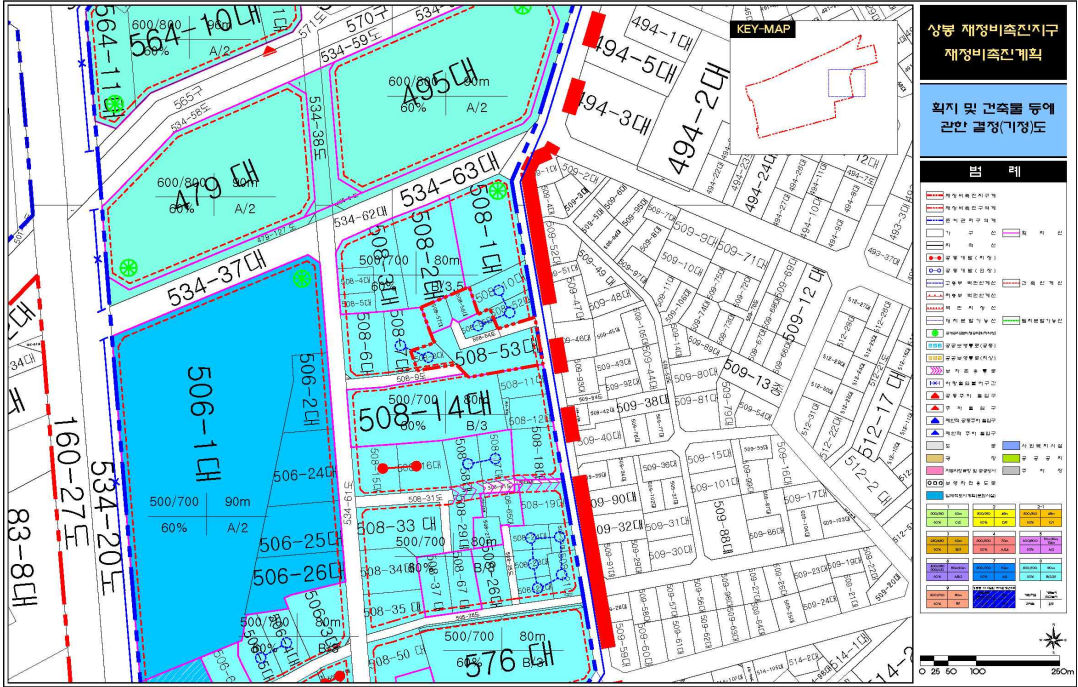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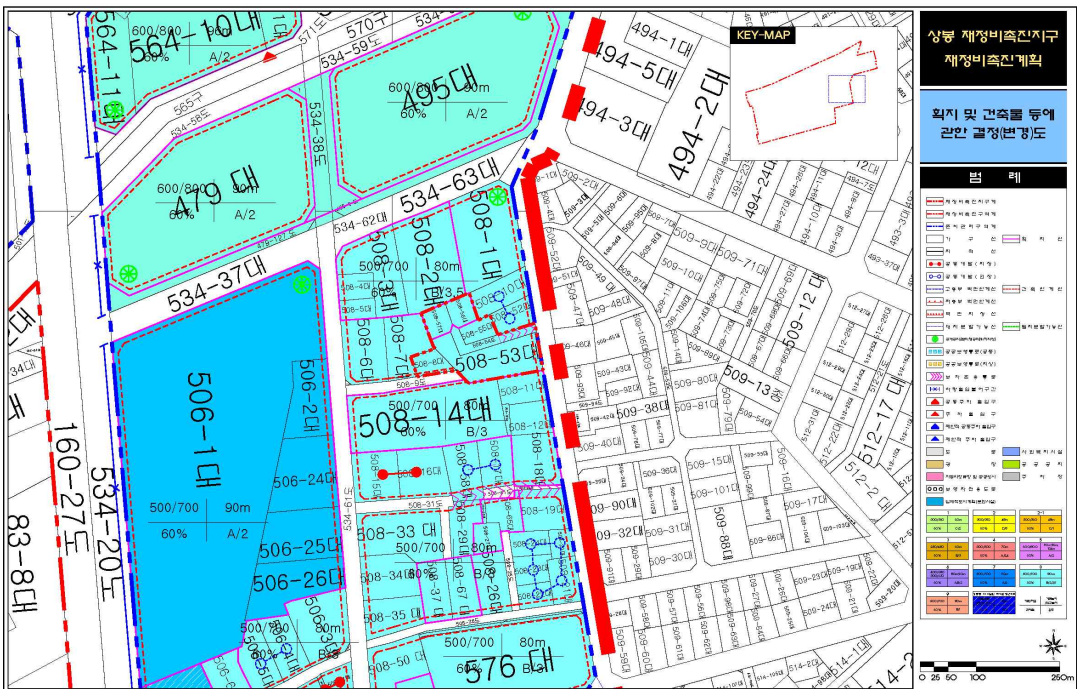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상봉9촌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상봉9촌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3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5. ~ 2024. 8. 7.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8. 21.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40403-003	11-21-10258	전국화	김*윤	2024-06-20 08: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창신6길	100,000
2	봉안	19940404-003	12-20-13358	장봉규	장*기	2024-06-20 12: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37길	100,000
3	봉안	19940423-008	12-20-13300	김후임	이*화	2024-06-20 10: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가람로	100,000
4	봉안	19940427-001	11-09-03867	김해준	이*훈	2024-06-20 10: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가평군 구청평로	100,000
5	봉안	19940428-001	11-16-09576	이병익	임*홍	2024-06-19 09: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솔뚝로	100,000
6	봉안	19960511-011	11-03-02790	이문자	최*분	2024-06-20 09: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번3동	200,000
7	봉안	19990401-015	41-01-05933	윤화자	김*수	2024-06-19 08:1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금천구	100,000
8	봉안	19990401-019	41-01-05937	김안종	이*학	2024-06-19 14:2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부천시 중동로71번길	45,000
9	봉안	19990401-022	41-01-05939	원광명	이*주	2024-06-19 10:04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03번길	25,000
10	봉안	19990402-005	41-01-05949	어인강	김*민	2024-06-20 09: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조남길	180,000
11	봉안	19990402-009	41-01-05953	지종식	김*주	2024-06-20 10: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백범로	180,000
12	봉안	19990402-014	41-01-05958	박승환	원*원	2024-06-20 10: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마루들길	50,000
13	봉안	19990403-002	41-01-05966	윤석만	이*희	2024-06-20 11: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한천로115길	100,000
14	봉안	19990403-005	41-01-05969	김양옥	어*대	2024-06-20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현신로	100,000
15	봉안	19990403-017	41-01-05981	함중환	지*집	2024-06-18 10:2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100,000
16	봉안	19990407-010	41-01-06076	김종육	박*양	2024-06-20 11: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7	봉안	19990407-013	41-01-06079	오경숙	김*원	2024-06-20 15: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1517번길	100,000
18	봉안	19990407-014	41-01-06080	이춘엽	윤*훈	2024-06-19 14: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000
19	봉안	19990407-023	41-01-06089	우관제	김*호	2024-06-19 13: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5,000
20	봉안	19990408-005	41-01-06093	문태경	오*주	2024-06-20 09: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25,000
21	봉안	19990409-001	41-01-06104	이춘례	함*묵	2024-06-20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100,000
22	봉안	19990409-003	41-01-06106	장춘심	김*주	2024-06-20 11: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동교로3길	100,000
23	봉안	19990409-009	41-01-06112	이기호	김*곤	2024-06-18 11:5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문산읍	100,000
24	봉안	19990409-010	41-01-06113	우순례	김*옥	2024-06-20 15: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부흥로	45,000
25	봉안	19990409-018	41-01-06121	김정묵	우*진	2024-06-20 10: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고암길	100,000
26	봉안	19990409-023	41-01-06124	이정부	권*숙	2024-06-19 13:11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00,000
27	봉안	19990410-002	41-01-06134	김진희	강*윤	2024-06-19 09:4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부천시 옥산로	180,000
28	봉안	19990410-010	41-01-06142	홍금옥	김*영	2024-06-19 14:0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연천군 전곡읍	45,000
29	봉안	19990411-002	41-01-06158	정심순	이*진	2024-06-20 10: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2로	100,000
30	봉안	19990412-011	41-01-05720	오응선	김*현	2024-06-19 12:5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김포시 대장로	100,000
31	봉안	19990412-017	41-01-06193	허덕림	김*수	2024-06-20 14: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방산길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2	봉안	19990412-021	41-01-06197	박명원	염*영	2024-06-20 09: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해밀에당3로	180,000
33	봉안	19990413-010	41-01-06210	이계식	김*운	2024-06-20 16: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000
34	봉안	19990415-001	41-01-06247	손창균	양*열	2024-06-19 13: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80,000
35	봉안	19990415-004	41-01-06250	안순이	홍*섭	2024-06-20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180,000
36	봉안	19990415-014	41-01-06260	임동섭	이*남	2024-06-19 10:5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0,000
37	봉안	19990415-015	41-01-06261	오씨	오*식	2024-06-20 14: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52번길	50,000
38	봉안	19990415-020	41-01-06266	김덕선	이*원	2024-06-19 12: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100,000
39	봉안	19990415-039	41-01-06281	이원용	송*산	2024-06-19 13:0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구암길	180,000
40	봉안	19990416-011	41-01-06292	김자아	이*범	2024-06-26 12:2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19길	100,000
41	봉안	19990416-014	41-01-06295	유정식	손*국	2024-06-20 12: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100,000
42	봉안	19990417-014	41-01-06312	조삼순	박*식	2024-06-20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180,000
43	봉안	19990420-009	41-01-06369	김점순	곽*철	2024-06-20 15: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귀전로154번길	100,000
44	봉안	19990420-014	41-01-06373	최근한	임*택	2024-06-20 10: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중앙로15길	180,000
45	봉안	19990420-025	41-01-06383	강창흠	임*택	2024-06-20 13: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부흥로	180,000
46	봉안	19990421-015	41-01-06398	최근항	김*원	2024-06-19 09:0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오금동	100,000
47	봉안	19990422-010	41-01-06416	김복녀	이*익	2024-06-20 12: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00,000
48	봉안	19990422-026	11-10-04101	조금운	김*규	2024-06-20 09: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19나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9	봉안	19990424-006	41-01-06464	김영하	유*희	2024-06-19 14: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검단로768번길	180,000
50	봉안	19990424-011	41-01-06469	김화월	윤*익	2024-06-20 11: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고리울로28번길	100,000
51	봉안	19990424-028	41-01-05237	고병학	안*화	2024-06-20 11: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경명대로706번길	90,000
52	봉안	19990426-008	41-01-06510	오혜숙	오*순	2024-06-20 12:4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솔매로	180,000
53	봉안	19990426-020	41-01-06522	정은주	최*성	2024-06-20 10: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100,000
54	봉안	19990427-006	41-01-06527	배종탁	강*훈	2024-06-19 09:0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충북 제천시 내제로5길	180,000
55	봉안	19990428-003	41-01-06549	이심득	최*일	2024-06-18 09:18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상도로33길	100,000
56	봉안	19990428-024	41-01-06566	김남중	김*훈	2024-06-20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45,000
57	봉안	19990428-025	41-01-06567	장석분	김*부	2024-06-19 14:4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장제로	180,000
58	봉안	19990429-009	41-01-06582	최정혜	박*	2024-06-20 13: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0,000
59	봉안	19990429-020	41-01-06593	조순자	김*주	2024-06-20 09:1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0,000
60	봉안	19990430-008	41-01-06611	박군채	이*환	2024-06-19 12:2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100,000
61	봉안	19990430-015	41-01-06618	이경선	임*례	2024-06-20 11:0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노원로32길	100,000
62	봉안	20000804-034	62-01-07038	김봉찬	김*훈	2024-06-20 09: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480,000
63	봉안	20000915-002	62-01-06948	김오출	이*수	2024-06-19 13:29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삼전로4길	2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64	봉안	20010830-048	66-01-29953	이득래	배*영	2024-06-19 10:3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음암동	50,000
65	봉안	20011021-001	60-01-27352	조귀례	이*상	2024-06-19 10:0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길	200,000
66	봉안	20011108-038	60-01-28234	장익현	김*종	2024-06-20 09: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200,000
67	봉안	20020324-005	71-02-01056	이종순	신*철	2024-06-20 11: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1길	200,000
68	봉안	20040404-011	73-04-23504	방금순	김*훈	2024-06-19 09:4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75,000
69	봉안	20040407-003	73-04-23511	김귀덕	강*식	2024-06-19 09:1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75,000
70	봉안	20040407-005	73-04-23512	박승호	김*성	2024-06-20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중구 목동로	75,000
71	봉안	20040410-004	73-04-23522	김삼수	정*원	2024-06-20 10: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75,000
72	봉안	20040413-019	73-04-23532	최수창	박*선	2024-06-19 10:52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75,000
73	봉안	20040415-001	73-04-23537	박순자	이*일	2024-06-20 15: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송정12바길	75,000
74	봉안	20040421-008	73-04-23564	김정옥	장*엽	2024-06-20 13: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장제로	75,000
75	봉안	20040428-002	73-04-23585	박종길	김*범	2024-06-18 14: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75,000
76	봉안	20040428-007	73-04-23587	남태평	김*곤	2024-06-20 12: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75,000
77	봉안	20040428-008	73-04-23588	김순애	손*호	2024-06-20 16: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꿈나무로	75,000
78	봉안	20090403-002	71-04-02741	김선옥	이*수	2024-06-20 09: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9	봉안	20090403-004	71-04-02753	박화선	이*국	2024-06-19 09:5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목2동	75,000
80	봉안	20090411-004	71-05-03052	권중호	장*철	2024-06-20 10: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100,000
81	봉안	20090413-003	71-05-03097	한화영	도*수	2024-06-20 09: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도산로	75,000
82	봉안	20090415-004	71-05-03215	성옥기	안*근	2024-06-18 10:2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엘지로	75,000
83	봉안	20090415-007	71-05-03217	박한섭	정*교	2024-06-19 11:23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행운1라길	75,000
84	봉안	20090419-001	71-05-03373	주용선	편*범	2024-06-19 13: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덕송3로	75,000
85	봉안	20090421-005	71-05-03489	고길환	박*서	2024-06-19 11:5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8길	75,000
86	봉안	20090422-006	71-05-03544	최환	김*복	2024-06-20 12: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울산 남구 대암로	75,000
87	봉안	20090426-003	71-05-03682	김광섭	최*우	2024-06-18 14: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75,000
88	봉안	20090426-006	71-06-03741	이숙봉	유*록	2024-06-19 09:5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75,000
89	봉안	20140402-001	62-01-11255	이귀심	박*수	2024-06-20 12: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경인로8길	25,000
90	봉안	20140404-006	62-01-11493	박상일	송*옥	2024-06-20 10: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남 여수시 화산2길	50,000
91	봉안	20140405-015	62-01-11591	문상태	최*영	2024-06-20 11: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중구 유천로18번길	25,000
92	봉안	20140412-002	62-01-12082	김종녀	고*남	2024-06-19 10:3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5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93	봉안	20140413-001	62-01-12222	주계환	정*택	2024-06-20 09:3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가길	25,000
94	봉안	20140417-005	62-01-12616	윤영봉	유*호	2024-06-20 13: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장군봉7길	25,000
95	봉안	20140419-002	62-01-12764	금오득	박*수	2024-06-20 10: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0길	25,000
96	봉안	20140419-003	62-01-12785	김정순	윤*숙	2024-06-20 15: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3길	25,000
97	봉안	20140420-002	62-01-12874	김종임	권*민	2024-06-19 08:5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13번길	50,000
98	봉안	20140420-003	62-01-12880	윤필례	한*순	2024-06-20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금호로	25,000
99	봉안	20140422-002	62-01-13101	김영한	김*환	2024-06-21 12: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000
100	봉안	20140422-003	62-01-13116	서정녀	박*배	2024-06-19 09: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9길	25,000
101	봉안	20140425-005	62-01-13289	김분이	김*석	2024-06-20 11: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57길	25,000
102	봉안	20140425-009	62-01-13322	고순임	주*희	2024-06-20 09: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21길	25,000
103	봉안	20140427-004	62-01-13524	박춘길	김*	2024-06-19 09: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5,000
104	봉안	20140427-006	62-01-13546	신경연	고*별	2024-06-19 08:53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광진구 자양로45길	25,000
105	봉안	20190402-007	62-01-07577	김명희	최*	2024-06-20 10: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금하로24다길	25,000
106	봉안	20190404-008	62-01-08644	이용희	한*자	2024-06-19 09:2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북구 솔매로49길	25,000
107	봉안	20190406-005	73-02-17533	조춘식	김*록	2024-06-20 09: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21길	25,000
108	봉안	20190413-003	62-01-11912	김병임	방*환	2024-06-20 09: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언주로150길	25,000
109	봉안	20190413-006	11-15-09484	이옥순	이*준	2024-06-20 10: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00번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10	봉안	20190417-004	62-01-13206	양진주	박*웅	2024-06-20 12: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118번길	25,000
111	봉안	20190418-009	62-01-13394	이민화	문*섭	2024-06-20 09: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5,000
112	봉안	20190421-009	62-01-14609	정례영	박*석	2024-06-20 08: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78길	25,000
113	봉안	20190421-011	62-01-14648	박한규	주*희	2024-06-20 08: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보문로26길	25,000
114	봉안	20190422-008	63-01-15231	신치우	이*영	2024-06-19 10:3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5,000
115	봉안	20190423-002	63-01-15313	권옥희	김*동	2024-06-20 12: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25,000
116	봉안	20190429-010	63-01-17687	양효준	최*수	2024-06-20 11: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동해시 신당2길	25,000
117	봉안	20211015-004	66-01-31946	이명주	손*성	2024-06-20 08:1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9길	25,000
118	분묘	19940402-007	16040083	오복자	한*주	2024-06-18 13:46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나길	181,500
119	분묘	19940409-014	2011155	박오병	하*수	2024-06-20 11:2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신원동	228,250
120	분묘	19940411-004	16040124	조복순	김*동	2024-06-19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대덕구 우암동로7번길	181,500
121	분묘	19940416-004	16050005	김오순	김*수	2024-06-20 11: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181,500
122	분묘	19940418-005	16050013	권화자	위*희	2024-06-20 11: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81,500
123	분묘	19940422-001	16050029	권천만	신*준	2024-06-20 13: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80길	181,500
124	분묘	19940422-004	16050032	이정진	허*성	2024-06-20 12: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181,500
125	분묘	19940423-011	2011157	서분님	박*지	2024-06-20 13: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110번길	228,250
126	분묘	19940426-002	16050049	장재면	나*영	2024-06-20 12: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길	181,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27	분묘	19940428-007	16050067	장형규	문*주	2024-06-19 14:36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81,500
128	분묘	19940428-016	2021213	주영일	김*경	2024-06-19 09:4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28,250
129	분묘	19990409-004	18190031	이학분	조*규	2024-06-20 13: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	137,500
130	분묘	19990411-001	18190032	김영식	장*진	2024-06-21 14: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평군 식곡길56번길	137,500
131	분묘	19990421-001	2008154	김창환	도*만	2024-06-20 12: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행당로	228,250
132	분묘	19990424-003	2007331	이유기	양*동	2024-06-20 09: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228,250
133	분묘	19990425-004	18190046	김종식	이*	2024-06-20 11: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상계5동 금호아파트	137,500
134	분묘	19950105-004	18010058	정현모	엄*준	2024-06-20 09: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1로	610,5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170098	㈜인하통신 /이춘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가길 14, 2층(목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능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2	202732	대주정보통신(주) /박진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65, 1층(한강로1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3	202499	㈜아이라이즈 /성승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1차 806호(구로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4	201134	㈜소망아이엔티 /서창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41-1, 2층(등촌동, 삼영빌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5	202045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아이씨티 /박성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 302호(동교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6	201847	㈜스마트메카 /이명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602호(문래동6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7	203655	주식회사 아이티로 /김도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914호(문정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능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8	202583	㈜달루선 /정우석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36, 2층(논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3,기능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9	112392	㈜에이브이아트 /이병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6차 5층 505호(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3,기능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10	120321	㈜세계아이티씨 /김황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502호(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능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11	203583	트리허브 주식회사(treehub) /조병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1709호(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24.07.19.)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과, 담당자: 김수환(☎(02)2133-2897, 전자우편 kimswan040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4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02로2473	윤*덕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04-09 18:41	금천05_금천교(법안로)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48수4454	문*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4-10 18:25	강서02_개화역 3차로	"	"
3	91소7536	서*건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4-11 11:17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	"
4	70누5888	박*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04-12 7:26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	"
5	80누4820	김*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4-04-16 18:11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	"
6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4-18 14:40	인천광역시 송도5교사거리 송도5교사거리 5차로	"	"
7	09모48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4-20 10:52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4-20 7:50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9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4-04-24 15:30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2차로	"	"
10	01너3943	서*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4-30 10:43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2차로	"	"
11	01보6885	(주)*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4-30 10:13	은평02_통일로 2차로	"	"
12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4-04-30 14:54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13	04고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4-30 14:18	서초01_올림픽대로(공향) 2차로	"	"
14	07머1737	김*양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4-30 04:18	은평07_증산로(DMC) 1차로	"	"
15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4-30 14:20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2차로	"	"
16	43조8020	양*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04-30 18:31	노원03_북천초(한천교방향) 4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 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010-9615
-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끝.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illegibl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44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602)	올하ENG (897-31-00451)	원영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16층 1615호(변동, 가든타워빌딩)	2024. 7.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4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009	'24. 6. 27.	주식회사 유틸렉스(Eutilex Co.,Ltd) 유연호, 권병세 285011-028795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408호(가산동, 에이스한솔타워)
2	204010	'24. 6. 28.	에스비엠정보통신 한성욱 108-07-848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라길 6, 신길프라자 201-1호
3	204011	'24. 7. 11.	주식회사 삼무개발 박상희 110111-158040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0, 3층(서초동)
4	204012	'24. 7. 11.	나눔인프라 한아름 497-73-00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801호 (등촌동, 가양역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5	204013	'24. 7. 11.	주식회사 엠비에프 이윤규 110111-42746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54, 2층(신계동)
6	204014	'24. 7. 11.	주도정보통신 오병준 111-26-833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16층 1616호(천호동, 힐담프라자)
7	204015	'24. 7. 11.	주식회사 플래티어 (Platter Inc.) 이상훈 110111-3175969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디동 제6층(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8	204022	'24. 7. 16.	주식회사 로그프레소 양봉열 120111-06502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9층(도화동)

연번	비밀번호	비밀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9	204021	'24. 7. 16.	주식회사 잡매니아 신종철 110111-23226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4길 45, 3층(동자동)
10	204020	'24. 7. 16.	주식회사 디아이씨티 권원종 110111-45220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510호(성수동2가)
11	204019	'24. 7. 16.	레드파인웍스 주식회사 이강민 110111-74631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디동 601-603(문정동)
12	204018	'24. 7. 16.	주식회사 이음넷정보통신 김미정 110111-89726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비동 10층 1001호(진관동)
13	204017	'24. 7. 16.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 김대일 110111-56488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 1층 101호, 2층, 3층(서초동, 원일빌딩)
14	204016	'24. 7. 16.	아주큐엠에스 주식회사 강학동 110111-180104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청남빌딩(서초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52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자	140497	주식회사 동행이엔지 김동애 110111-396566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윗다락골길 2-3	'24. 7. 18.	분할 합병
	양수자	-	주식회사 미루이엔씨 홍영지 110111-89273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길 46, 1층(오류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54호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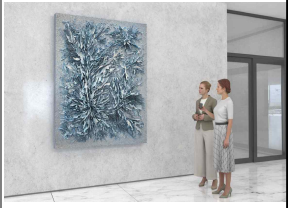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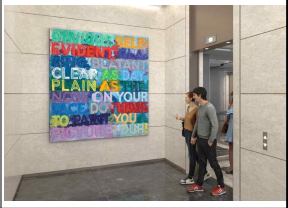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심의일시: 2024. 7. 18.(목), 14:00
2. 심의장소: HJBC 세미나룸 A
3. 심의대상: 일반안전 9건(17작품)
4. 심의결과: 승인 14작품, 부결 3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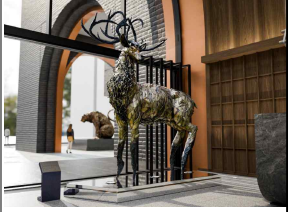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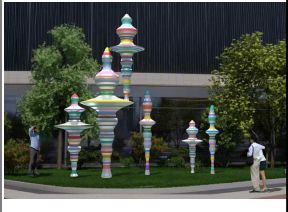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1	중구 입정동 97-8번지 일원	회화	ERSTERMÖRZZWEITAUSENDUND EINUNDZWANZIG		○	
1-2		회화	Iceberg blue inside skyblue22-50	○		
2-1	중구 산림동 275-3번지	회화	Verbena		○	
2-2		회화	Obvious	○		
3-1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외 6필지	조각	Querencia-연리지	○		
3-2		조각	Querencia-별호랑이	○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3-3		조각	Querencia-Tiger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조명 추가하여(상단부 등) 야간에 있을 수 있는 위압감 중화할 것						
3-4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외 6필지	조각	Querencia-Red deer	○		
3-5		조각	Querencia-당신의 안식을 위하여	○		
4	강동구 길동 367-1	조각	부가		○	
5-1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조각	Harmony(조화)	○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5-2		조각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		
5-3		조각	숲-바람의 메아리	○		
6	서초구 방배동 750-20, 22번지	조각	Resilience-만월	○		
7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조각	크리스탈(Crystal)	○		
8	은평구 진관동 144	조각	음률을 품은 LINE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작품의 위치가 주차장 출입구 앞이어서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놀이공간의 기능을 포함' 하였다는 설명 내용 삭제할 것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9 철거	은평구 진관4로 17	조각	물방울의 꿈	○ (조건부)		
조건부 내용 : 작가의 철거 서면동의서 제출 시에만 철거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55호

마곡지구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마곡지구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하여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심의안건: 마곡지구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미술작품 공모
2.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

심의결과	작품번호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당선작	24	구축, 재구축 - 순환구조		심*욱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7.26.(금)까지
- 제출자격: 미술작품 응모작가 및 유사작품 원작자
- 제출대상: 선정된 작품에 대한 작품표절 및 허위사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bmkim24@seoul.go.kr)
 -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방법을 미준수한 자료는 검토 불가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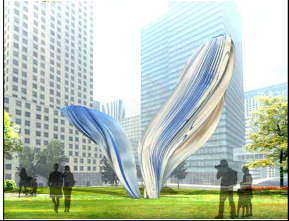
인의동 48-25 나라키움 복합청사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 심의결과 공고

인의동 48-25 나라키움 복합청사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하여 ‘2024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심의안건: 인의동 48-25 나라키움 복합청사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
2.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

심의결과	작품번호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당선작	9	새싹-깃털 Sprout-Feather		오*일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7.26.(금)까지
- 제출자격: 미술작품 응모작가 및 유사작품 원작자
- 제출대상: 선정된 작품에 대한 작품표절 및 허위사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bmkim24@seoul.go.kr)
 -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방법을 미준수한 자료는 검토 불가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5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7. 25. ~ 2024. 8. 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5건																
1	20224232	194하4456	카니발	000047339214201 20240525006220	수서역	0002:22	2024-04-10	08:01	2024-04-10	10:23	9,200	0	9,200	주식회사*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로227	수취인불명	2024-07-29
2	20224243	51거3543	쏘나타 (SONATA)	000047339214201 20240525006114	수서역	0000:17	2024-04-10	10:14	2024-04-10	10:31	1,200	0	1,200	이*재	서울특별시서초구호명로68길67	주소불명	2024-07-29
3	20224286	08고3385	티볼리	000047339214201 20240525005691	구파발역	0000:32	2024-04-26	17:59	2024-04-26	18:31	1,100	0	1,100	김*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24길17	수취인불명	2024-07-29
4	20224302	25아6606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40525005548	천호역	0001:34	2024-04-30	09:35	2024-04-30	11:09	2,400	0	2,400	유*열	서울특별시송파구미천로379	수취인불명	2024-07-29
5	20224343	329모7138	BMW 320i	000047339214201 20240525005166	종묘	0002:12	2024-04-21	15:41	2024-04-21	17:53	5,400	0	5,400	우*균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62길84	이사불명	2024-07-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64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 방향」 결정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일 시 : 2024. 8. 6.(화) 14:00 ~ 16:00
2. 장 소 : 창서초등학교 강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30-3)
3. 주요내용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따른 주변 상권 및 교통 흐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4. 발표자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관련 전문가
5. 의견제출 안내
 -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팩스(02-2133-1048), 전자문서(이메일 gy0810ms@seoul.go.kr), 우편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7층 교통정책과(우편번호 045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기후동행운영팀(02-2133-22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양식 1부. 끝.

의 견 서

의 견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견 내 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6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인셀덤 라헨스 8호점	서울 후 제2043호	SONG SHANYU (송선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10길 5-8, 501호(구로동)	소재지 (24.7.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2길 10, 202호(신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10길 5-8, 501호(구로동)
2	인셀덤 미리내	서울 후 제2256호	서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0길 28-8(북아현동)	상호 (24.7.9)	프리덤 꼬뽀소	인셀덤 미리내
3	인셀덤 미리내	서울 후 제2256호	서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0길 28-8(북아현동)	소재지 (24.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0길 12, 401호(북아현동, 수목빌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0길 28-8(북아현동)
4	자연생활	서울 후 제118호	곽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95, 6층 601호 (미아동, 무송빌딩)	폐업 (24.7.1)		
5	엑소바이옴 선릉지점	서울 후 제2626호	이안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6층 12호 (대치동, 상제리제센터)	폐업 (24.7.9)		
6	시투안서울 신정아아	서울 후 제2735호	윤상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5, 103동 702호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폐업 (24.7.10)		
7	시투안 서울서초 아아	서울 후 제2654호	정유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1506호 (신림동, 청암두산위브스튜디오)	폐업 (24.7.10)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8	아아코스메틱 (주)	서울 후 제2389호	김석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409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폐업 (‘24.7.10)		
9	시투안남현 더플러스	서울 후 제2653호	안동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 201호(남현동)	폐업 (‘24.7.10)		
10	시투안서울 신월아아	서울 후 제2733호	현왕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3, 1층 2호(신월동)	폐업 (‘24.7.10)		
11	홍제영업소	서울 후 제343호	강미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44, B101호(홍제동)	폐업 (‘24.7.11)		
12	아현 건강생활	서울 후 제113호	한경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20, 201호(연희동,대림상가)	폐업 (‘24.7.11)		
13	불광 건강생활	서울 후 제351호	양운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46-1, 2층(불광동)	폐업 (‘24.7.12)		
14	종로 건강생활	서울 후 제2820호	배수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12-1, 3층(홍제동)	폐업 (‘24.7.12)		
15	응암제일 건강생활	서울 후 제738호	차승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90, 5층(응암동)	폐업 (‘24.7.15)		
16	동작중앙 건강생활	서울 후 제772호	김동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6동205호(신대방동)	폐업 (‘24.7.15)		
17	방이 건강생활	서울 후 제549호	최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7가길 3-1, 201호 (오금동)	폐업 (‘24.7.15)		
18	응암 건강생활	서울 후 제774호	김우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15(응암동, 세명빌딩) 4층	폐업 (‘24.7.15)		
19	마포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2호	석해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23, 201호 (망원동, 두영빌딩)	폐업 (‘24.7.15)		
20	노원역 건강생활	서울 후 제108호	남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82, 7층(상계7동,덕영빌딩)	폐업 (‘24.7.15)		
21	이문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8호	박종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71, 6층(상봉동)	폐업 (‘24.7.15)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2	자연 건강식품	서울 후 제340호	신명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22 (도곡동)	폐업 (‘24.7.15)		
23	수서 건강생활	서울 후 제341호	김창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5, 301호(송파동)	폐업 (‘24.7.15)		
24	영등포 건강생활	서울 후 제114호	김광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6, 704호 (당산동6가)	폐업 (‘24.7.15)		
25	대치 건강생활	서울 후 제115호	김민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2길 21, 2층(대치동)	폐업 (‘24.7.15)		
26	송파 건강생활	서울 후 제107호	이운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2-9, 2층 (석촌동, 윤기빌딩)	폐업 (‘24.7.15)		
27	북서울 건강생활	서울 후 제2842호	이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83, 2층 212호(상계동,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폐업 (‘24.7.16)		
28	강동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9호	신양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5길 13, 2층(명일동)	폐업 (‘24.7.16)		
29	구산 생활건강	서울 후 제137호	구화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05, 3층(갈현동)	폐업 (‘24.7.16)		
30	가재울 건강생활	서울 후 제571호	이혜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10-1, 2층 (남가좌동)	폐업 (‘24.7.16)		
31	모래내 건강생활	서울 후 제117호	김광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28-3(남가좌1동)	폐업 (‘24.7.16)		
32	방배 자연식품	서울 후 제119호	신철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9, 202호(방배동)	폐업 (‘24.7.16)		
33	서울 건강생활	서울 후 제136호	박범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13, (잠실동)	폐업 (‘24.7.16)		
34	청담 건강생활	서울 후 제133호	이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9길 9-6, 302호(논현동)	폐업 (‘24.7.16)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35	삼성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6호	심영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36, 5층(상도동)	폐업 (‘24.7.16)		
36	폴길(건민) 생활건강	서울 후 제102호	노동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6길 10, 5층(성내동)	폐업 (‘24.7.16)		
37	종각 건강생활	서울 후 제134호	최영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609호(연지동)	폐업 (‘24.7.17)		
38	중계자연 건강식품	서울 후 제140호	임경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40, 601호(상계동, 정진빌딩)	폐업 (‘24.7.17)		
39	서초 건강생활	서울 후 제106호	황선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24, 5층(서초동, 서종빌딩)	폐업 (‘24.7.17)		
40	다나바이오 로직스(주)	서울 제938호	최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8층 806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폐업 (‘24.7.17)		
41	동작 건강생활	서울 후 제770호	신지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4호(상도동, 서현빌딩)	폐업 (‘24.7.17)		
42	창신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5호	양재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7(창신동)	폐업 (‘24.7.18)		
43	시투안 상암 k300	서울 후 제2619호	박영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103동 1405호(북가좌동, 북가좌삼호아파트)	폐업 (‘24.7.18)		
44	독산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7호	우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96, 401호(시흥동)	폐업 (‘24.7.31)		
45	목동 건강생활	서울 후 제665호	박우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77, 3층 304호(신정동)	폐업 (‘24.7.31)		
46	신대방 건강생활	서울 후 제124호	송혜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01, 2층(봉천동)	폐업 (‘24.8.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현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04 110동 40*호 (봉천동)	위반일시: 2024-06-06 10:21 위반장소: 용산구 청암동 168-24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25t, 초과값: 1.25t,서울06거728*)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김병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6* (상동)	위반일시: 2024-05-07 16:08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64m, 초과값: 0.14m,경기07교852*)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구진환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3 211동 240*호 (백석동)	위반일시: 2024-05-08 15:14 위반장소: 은평구 수색동 289-32 위반내용: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 4.15m, 초과값: 0.15m,97소547*)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현재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20 301동 30*호 (행신동)	위반일시: 2024-05-11 15:02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26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경기07교80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상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1길 10-10 에이동 60*호 (화곡동)	위반일시: 2024-05-14 10:02 위반장소: 서대문구 창천동 97-63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3t, 초과값: 1.3t, 006라616*)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장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3길 2* (신길동)	위반일시: 2024-06-03 10:13 위반장소: 덕양구 덕은동 425-97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25t, 초과값: 1.25t, 006가939*)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박희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99 2동 21*호 (연수동)	위반일시: 2024-06-04 06:00 위반장소: 마포구 아현동 267-3 (충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65t, 초과값: 4.65t, 서울06하73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박광호	경기도 평택시 신촌5로 20 309동 70*호 (철원동)	위반일시: 2024-06-06 06:15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1가 14-19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 서울07나729*)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6-27 납기일: 2024-08-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희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99 2동 21*호 (연수동)	위반일시: 2024-03-23 09:20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아현동 135-4 (충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05t, 초과값: 4.05t, 서울06하73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정성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1동 22*호 (원곡동)	위반일시: 2024-04-03 05:59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가좌동 488 위반내용: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19.9m, 초과값: 3.2m, 충남99사68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용권순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304동 110*호 (가정동)	위반일시: 2024-03-11 21:19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17(홍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6t, 초과값: 4.6t, 006가622*)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형찬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 97번길 69 107동 30*호 (외부읍)	위반일시: 2024-04-05 14:29 위반장소: 은평구 응암동 86-8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경기91자670*)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68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명: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연번	수취인명	영업표지	대표자	주소	부과금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1	(주)공유영웅	마라영웅	최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7길 10, - 이하생략 -	1,648,000	2023년도	기타
2	(주)더건강한식	달려커피& 베이커리	김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17,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이사불명
3	(주)로알그린	카드로에이치	유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수취인 불명
4	(주)삼삼데이블	곤카츠	이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96,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이사불명
5	(주)셀비오	셀비오	이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3, - 이하생략 -	1,236,000	2023년도	수취인 불명
6	주에프티 프렌즈	제주가정식초밥, 에프티프렌즈 파머스데이블	정00 박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1가길 14,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기타

연번	수취인명	영업표지	대표자	주소	부과금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7	(주)이이오오	포25(PHO25)	이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5길 27 1층,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기타
8	㈜제이에스 푸드빌	88옛날통닭	박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26길 20, - 이하생략 -	1,236,000	2023년도	이사불명
9	(주)투에스	리спек 체대입시	탁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31, - 이하생략 -	5,150,000	2023년도	기타
10	(주)포메이션투	스타덤PC, 노벨스타디카페	임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 이하생략 -	1,648,000	2023년도	폐문부재
11	국제수입식당	국제수입식당	신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62,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기타
12	르돌치 일구사(주)	르돌치1946	이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 - 이하생략 -	5,150,000	2023년도	기타
13	알지비 포토스튜디오	RGB 포토스튜디오	최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46, - 이하생략 -	1,442,000	2023년도	기타
14	에스와이씨 (SYC)	올리브 스타디카페	송00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15,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수취인 불명
15	㈜모앤에프앤씨	뉴트로치킨	한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7, - 이하생략 -	1,030,000	2023년도	기타
16	천사에듀㈜	토킹뮤즈	전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3, - 이하생략 -	2,060,000	2023년도	수취인 불명

4. 기 간 : 2024. 7. 25. ~ 2024. 8. 8.(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행정청은 공고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과태료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 02-2133-540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7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887호(2014. 5. 16.)로 주민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 7. 26.~2024. 8. 8.)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5),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3), 중구 도심정비과(☎3396-5953),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8), 성동구 도시계획과(☎2286-5554),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84),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중랑구 도시계획과(☎2094-2182), 성북구 도시계획과(☎2241-2763), 은평구 도시계획과(☎351-7403), 서대문구 도시계획과(☎330-1614),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7),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78),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55),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23),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96), 관악구 도시계획과(☎879-6353)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 방화지구 총괄표

구분	기정	공람(안)	재공람(안)	비고
계	107개소 (3,449,159㎡)	39개소 (283,745㎡)	18개소 (651,037㎡)	89개소 폐지
노선형	31개소 (1,187,052㎡)	-	-	전체 폐지
시장형	63개소 (288,361㎡)	37개소 (167,580㎡)	10개소 (50,805㎡)	53개소 폐지
집단형	13개소 (1,973,746㎡)	2개소 (116,165㎡)	8개소 (600,232㎡)	5개소 폐지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노선형 방화지구							
폐지		방화지구	아현동~신촌로타리간	내화구조 적용 등	67,440	건설부고시 제727호 (1963.12.13.)	
폐지		"	서울역앞~광희동간	"	55,464	"	
폐지		"	경운동~퇴계로간	"	32,040	"	
폐지		"	동대문~청량리간	"	84,720	"	
폐지		"	퇴계로~돈화문간	"	36,944	"	
폐지		"	서대문~마포간	"	85,752	"	
폐지		"	명륜동4가~성북동간	"	21,888	"	
폐지		"	퇴계로~원남동로타리간	"	29,088	"	
폐지		"	서대문~영천간	"	27,600	"	
폐지		"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	44,496	"	
폐지		"	광희동~동대문간	"	14,160	"	
폐지		"	시청앞~을지로6가간	"	41,400	"	
폐지		"	중앙청앞 ~원남로타리간	"	29,760	"	
폐지		"	서대문~종로~동대문간	"	68,040	"	
폐지		"	효자동~광화문간	"	26,760	"	
폐지		"	서대문~서울역간	"	12,720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서울역앞~한강교북단간	"	79,536	"	
폐지		"	한강교남단~노량진	"	34,320	"	
폐지		"	태평로2가~아현동간	"	28,980	"	
폐지		"	퇴계로~효제동간	"	27,960	"	
폐지		"	세종로~남대문간	"	15,000	"	
폐지		"	광희동~행당동로타리간	"	71,280	"	
폐지		"	영등포구청앞~당산동1가	"	36,480	"	
폐지		"	신촌로타리~합정동간	"	58,080	"	
폐지		"	을지로입구~안국동간	"	20,400	"	
폐지		"	남영동~원효로 1가 간	"	14,640	"	
폐지		"	원효로1가~삼각지 간	"	14,544	"	
폐지		"	영등포구청앞~영등포동	"	23,280	"	
폐지		"	신당동~약수동간	"	29,280	"	
폐지		"	길음교북단~식송리간	"	30,000	"	
폐지		"	오간수교~제2청계교간	"	25,000	건설부고시 제709호 (1967.10.25.)	
■ 시장형 방화지구							
폐지		"	구로구 구로동359외 4	"	1,666	건설부고시 제727호 (1963.12.13.)	구로시장
폐지		"	동대문구 답십리동 68	"	1,133	"	답십리시장
폐지		"	동대문구 답십리동56외16	"	32,571	"	양곡시장
폐지		"	동대문구 보문동4가	"	4,165	"	동구시장
폐지		"	동대문구 신설동117외 3	"	1,549	"	신설동시장
기정		"	동대문구 제기동27~7 외	"	3,213	"	경동시장
기정		"	동대문구 청량리동176외	"	26,995	"	청량리시장
변경		"	동대문구 청량리동176외	"	4,651	"	청량리시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동대문구 휘경동 321-21 외	"	4,033	"	휘경시장
폐지		"	동작구 노량진동 307-2	"	1,016	"	신노량진시장
폐지		"	동작구 본동 126-12외 1	"	1,103	"	노량진시장
폐지		"	동작구 상도동 38 우측	"	2,097	"	상도시장
폐지		"	동작구 상도동 389외 4	"	1,528	"	상도중앙시장
폐지		"	동작구 흑석동 95-1외 1	"	7,554	"	흑석시장
기정		"	마포구 공덕동 433외 4	"	1,193	"	공덕시장
기정		"	마포구 공덕동 426외3	"	8,510	"	한흥시장
폐지		"	마포구 아현동 496-5외 8	"	1,392	"	아현시장
폐지		"	종로구 교북동 101-7외16	"	844	"	관동공설시장
폐지		"	서대문구 대현동 57	"	1,419	"	신촌역전시장
폐지		"	서대문구 응암동 430-1외13	"	2,780	"	응암시장
폐지		"	서대문구 창전동 135	"	4,046	"	신촌시장
폐지		"	서대문구 충정로2가 55-3	"	847	"	서대문 공설시장
폐지		"	서대문구 합동 순화동 199외	"	30,350	"	합동시장
기정		"	서대문구 만리동2가 241-1	"	8,096	"	만리시장
폐지		"	서대문구 홍제동 266-2	"	5,280	"	홍제중앙시장
기정		"	성동구 금남동 57,62(일부)	"	5,369	"	금남시장
폐지		"	성동구 금호동 270-153	"	2,942	"	금호시장
폐지		"	성동구 성수동2가 339-6외3	"	7,991	"	뚝도시장
폐지		"	성동구 하왕십리 226외5	"	1,887	"	양지시장
폐지		"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1외1	"	3,441	"	돈암시장
폐지		"	성북구 미아동 535-4	"	3,064	"	길음시장
폐지		"	성북구 정릉동 404-2	"	1,474	"	정릉시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성북구 정릉동 139-3외 1	"	2,299	"	정릉 아리랑시장
폐지		"	성북구 종암동 3-75	"	3,343	"	종암시장
폐지		"	성북구 하월곡동 88-325외 1	"	3,540	"	미아리 공설시장
폐지		"	영등포구 신길동 221-1외 3	"	2,023	"	신길시장
폐지		"	영등포구 양평동 160	"	1,663	"	양평시장
기정		"	용산구 남영동 28 외 1	"	816	"	남영시장
폐지		"	용산구 보광동 260-8	"	1,564	"	보광시장
기정		"	용산구 용문동 42-1외 5	"	701	"	용문시장
폐지		"	용산구 용산동2가 8-25	"	1,005	"	용산중앙시장
기정		"	용산구 이태원동 56-16외 21	"	2,621	"	이태원시장
폐지		"	용산구 청파동 58 외 2	"	241	"	청파시장
폐지		"	용산구 한강로3가 196외 1	"	1,878	"	신용산시장
기정		"	용산구 한남동 522	"	1,392	"	한남시장
기정		"	용산구 후암동 103-6외13	"	15,635	"	후암시장
폐지		"	종로구 명륜동4가 188-4외 2	"	749	"	혜명시장
폐지		"	종로구 통인동 6외 2	"	807	"	통인시장
폐지		"	중구 신당동 299외 3	"	1,338	"	신당공설시장
폐지		"	중구 을지로6가 17 외	"	7,903	"	평화시장
폐지		"	동대문구 용두동 134-6	"	1,289	건설부고시 제783호 (1964.02.12.)	용두시장
폐지		"	동작구 상도동 120-1	"	2,645	"	강남시장
폐지		"	영등포구 신길동 116-1외 4	"	15,945	"	대신시장
폐지		"	동대문구 창신동 437	"	3,670	건설부고시 제120호 (1970.03.17.)	동문시장
폐지		"	성동구 송정동 61-8	"	3,131	"	화양시장
폐지		"	강서구 화곡동 368-50	"	1,980	건설부고시 제377호 (1970.08.06.)	화곡시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관악구 봉천동 13-1	"	2,804	"	봉천시장
폐지		"	동작구 노량진동 312-6	"	2,868	"	명상가시장
폐지		"	면목동 650	"	2,343	"	면목시장
폐지		"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천	"	10,858	"	뉴스타상가 아파트
폐지		"	동대문구 면목동 (망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 66구획)	"	2,632	건설부고시 제347호 (1972.08.14.)	면목시장 (동원시장)
폐지		"	영등포구 시흥동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 283구획)	"	1,650	"	시흥시장
폐지		"	금천구 시흥동 831-6	"	2,640	건설부고시 제215호 (1973.06.05.)	시흥중앙시장
폐지		"	성동구 금호동4가 548-1 부근	"	4,840	건설부고시 제78호 (1974.03.23.)	금호시장
■ 집단형 방화지구							
기정		"	종로구 예지동4의 수십필지	"	103,705	건설부고시 제727호 (1963.12.13.)	동대문시장
변경		"	종로구 예지동4의 수십필지	"	44,401	"	동대문시장
기정		"	중구 신당동 140-18외	"	62,654	"	성동시장
변경		"	중구 신당동 140-18외	"	23,744	"	성동시장
기정		"	중구 을지로5가 213외	"	53,511	"	중부시장
변경		"	중구 을지로5가 213외	"	29,932	"	중부시장
기정		"	중구남창동 283외	"	900,266	"	남대문시장
변경		"	중구남창동 283외	"	306,478	"	남대문시장
폐지		"	서대문구 서소문동	"	13,000	건설부고시 제216호 (1973.06.05.)	
기정		"	을지로2,3가, 저동1,2가, 초동	"	56,000	"	
변경		"	을지로2,3가, 저동1,2가, 초동	"	4,771	"	
기정		"	종로1가, 서린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	191,200	"	
변경		"	종로1가, 서린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	77,007	"	
폐지		"	중구 회현동2가	"	9,450	"	
폐지		"	서대문구 서소문동, 순화동 중구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	101,000	건설부고시 제317호 (1973.08.0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320,000	"	
변경		"	종로구 종로2가,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1가,삼각동,수하동, 장교동,수표동,입정동,을지로2,3가	"	98,549	"	
기정		"	종로구 종로2가,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1가,삼각동,수하동, 장교동,수표동,입정동,을지로2,3가	"	133,200	"	
변경		"	중구 저동1,2가, 초동 충무로 2,3가, 남학동, 필동1가	"	15,350	"	
폐지		"	중구 저동1,2가, 초동 충무로 2,3가, 남학동, 필동1가	"	8,730	서울시고시 제201호 (1975.12.09.)	
폐지		"	종로구 세종로 및 종로1가 일부	"	21,030	"	

■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화지구	- 방화지구 폐지 : 89개소 (총2,798,122㎡) - 노선형 방화지구 : 31개소 (1,187,052㎡) - 시장형 방화지구 : 53개소 (237,556㎡) - 집단형 방화지구 : 5개소 (1,373,514㎡)	도시 정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실효성을 상실한 방화지구 폐지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72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 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가.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정와선생문집 목판 (訂窩先生文集木板)	416장	28.2×52×5.3	1889 ~1905년 이후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노걸대신석언해 (老乞大神釋諺解)	1책	28.5×19.9	1763년 (영조 39)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 (白蓮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및 掛佛櫃)	1건 2점	(괘불도) 전체 602×345 (괘불궤) 390×34×38	1868년 (동치 7)	서대문구 (한국불교대교종 백련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淸涼寺 大雄殿 山神圖)	1점	120.5×150.4	1937년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淸涼寺 大雄殿 神衆圖)	1점	181.6×133.6	1937년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淸涼寺 大雄殿 阿彌陀佛會圖)	1점	198.0×205.5	1937년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 (淸涼寺 大雄殿 七星圖)	1점	192.4×200.5	1937년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유산

【정와선생문집 목판】

『정와집(訂窩集)』은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계승한 안동의 학자 김대진(金岱鎭, 1800~1871)의 문집이다. 그는 안동에 세거하며 영남의 명가로 자리잡은 의성 김씨 출신으로, 안동 호계서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대진은 조선 후기 학계의 쟁점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대해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호론(湖論)의 입장에 찬성하였으며,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대해서는 칠정이발설(七情理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퇴계 이황의 학설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유물은 김대진의 문집 『정와집』의 목판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원집의 목판은 1889년에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25%는 1905년 이후 제작된 것이다.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영남 지역 문집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사회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노걸대신석언해】

『노걸대(老乞大)』는 『박통사(朴通事)』와 함께 사역원(司譯院)에서 가르치고 역과(譯科)에서 과시용(科試用)으로 쓰인 대표적인 중국어 학습서다. 오랜 기간 한어본으로만 전해져 온 이 책은 조선왕조 대대로 중국인 응대에 필요한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 왕들의 관심과 사역원 및 역과에서의 소용 등을 배경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엔 세기마다 한글에 의한 중국어 주음과 번

역이 이루어져 그 활용의 양상을 새로이 해 왔었다.

따라서 한국어사, 중국어사, 외국어 교육사, 외국어 교재사, 외국어 번역사, 동아시아 상업 교류사 등의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조사대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국내외 통틀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간행사적인 의미가 충분하며 현존하는 판본에 대한 연구 가치도 높은 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 및 괘불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는 삼신불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앞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아래에 동자형 문수·보현보살이 결합된 도상으로 부처-제자-동자를 상·중·하단으로 배치한 서울경기 지역의 전형적인 괘불도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삼신불 도상은 1806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삼신패불도>(보물)를 시작으로 1832년 <서울 홍천사 비로자나불삼신패불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에서 계승되고 있다. 삼신불 중심의 이와 같은 괘불도 도상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는 아미타괘불도로 변형되며 서울경기지역을 대표하는 괘불도 도상으로 정착하였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는 삼신불 도상을 계승한 19세기 중반의 비로자나괘불도로서 당대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금곡영환과 경선운석이 주도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원형이 잘 보존된 유물이다. 또한 7위의 짜임새 있는 도상 배치와 인물 표현, 선명한 채색과 치밀한 문양 도안은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 지역 삼신불 괘불도의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괘불계의 ‘괘불곽’이라는 명문은 관련 유물로서 원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 괘불도와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문화유산자료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는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37년 춘담성한이 단독으로 그린 불화이다. 불화제작에 참여했던 비구니 신원삼을 통해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가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경위를 알 수 있어 불화의 내력이 확실하다.

불화에 보이는 청록산수의 표현과 호랑이 등을 그린 민화적인 표현기법은 19세기 후반의 전통적인 산신도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무속신으로 섬겨졌던 여성 산신의 등장은 새롭게 보이는 요소이다. 이 불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보이는 산신도의 범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간에서 유행했던 무속적인 신앙 경향을 불화의 도상에 투영하였다는 점에서 시대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37년 춘담성한이 그린 불화이다. 불화의 증명은 당대의 고승이자 청량사와 인연이 있었던 박한영이다. 불화 제작에 참여한 박한영과 신원삼 등을 통해 삼각산 삼불각과 근대기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청량사

와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립된 운영체계를 지닌 비구니 사찰의 면모와 불화의 이동 등에 관한 제반 상황들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보이는 초본을 활용하여 그렸다. 하지만 위태천의 협시로 자리 잡은 산신과 조왕신 도상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춘담성한은 전통적인 신중도 형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는 20세기 전반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춘담성한이 단독으로 조성한 불화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불화의 범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상을 공유함으로써 전통 불화의 특징을 잘 계승하고 있다. 또한 증명으로 당대의 고승이었던 박한영이 함께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민간에서 칠성신앙이 성행했던 당시 신앙경향을 반영한 불화로서 시대성을 잘 보여주는 불화로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불화 제작에 참여한 증명은 당대의 고승이자 청량사와 인연이 있었던 박한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삼각산 삼불각의 운영에 문부옥과 그 자손들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구니 김봉학과 신원삼과의 인연으로 현재의 청련사로 삼불각을 옮겨 모셔졌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전각 및 불화의 이동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기성은 물론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제작자의 역량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 ① 전화 : (02) 2133-2630
 -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정와선생문집 목판】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정와선생문집 목판 (訂窩先生文集木板)
수 량	416장	규 격 (cm)	28.2×52×5.3
재 료	나무	소유자	서울특별시
시 대	1889~1905년 이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5 서울역사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본 유물은 김대진(金岱鎭, 1800~1871)의 문집 『정와선생문집(訂窩先生文集)』의 목판이다.
- 김대진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태수(泰叟), 호는 정와(訂窩), 유계(西溪), 유산(西山)이다. 그의 가문은 김성일(金誠一)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김대진은 이상정(李象靖)의 문인 이병원(李秉遠, 1774~1840)에게 수학하였다. 187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866년 목릉 참봉(穆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향촌에서 생을 마쳤다.
- 김대진의 문집 『정와집』은 원집 20권 10책, 속집 4권과 부록 2권 3책, 도합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은 1889년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속집과 부록은 1905년 이후 역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 『정와집』은 권1에 시(詩), 권2에 시, 소(疏), 권3~7에 서(書), 권8~11에 잡저(雜著), 권12에 서(序), 기(記), 권13에 발(跋), 정문(正文), 상량문(上梁文), 고사(告辭), 축문(祝文), 권14에 애사(哀辭), 뇌문(誄文), 제문(祭文), 전(傳), 권15~16에 묘지명(墓誌銘), 권17에 묘갈명(墓碣銘), 비(碑), 권18에 시장(諡狀), 권19~20에 행장(行狀), 속집 권1에 시, 소, 서, 권2에 잡저, 권3에 서, 전, 기, 발, 고사, 축문, 애사, 제문, 권4에 묘지명, 행장, 부록 권1에 연보(年譜), 권2에 유사(遺事), 행장, 묘갈명, 만사(挽詞), 제문 등이 실려 있다.
- 『정와집』은 김대진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문인 김상수(金常壽), 김성진(金城鎭), 김진한(金鎭瀚), 김경진(金敬鎭) 등이 초고를 수집하고 베껴써서 1873년 18권의 초본(草本)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정리하여 12권이 되었다. 1883년 도연서원(道淵書院)에서 권연하(權璉夏)가 교정하여 10책으로 만들고, 몇 년 뒤 김흥락(金興洛)이 한 차례 더 교정하였으며, 간행 직전 김석락(金奭洛), 김진린(金鎭麟), 김양진(金養鎭)이 교정하였다. 1888년 간행에 착수하여 1889년 6월 원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1895년 속집과 연보의 초본이 완성된 사실은 연보에 실려 있다. 속집과 부록의 간행은 1905년 이후로 추정된다.

○ 『정와선생문집』 목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물번호	명칭	원본(면)	보유(면)	결락(면)	기타	수량(점)
서11776	정와집	1063	832	231		416

2. 원형유지정도

○ 일부 판목에 뒤틀림과 갈라짐이 있으나 일반적인 판목 보관 상태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하다. 약 20% 분량이 결락되었으나 10책 이상 대형 문집의 목판은 완벽히 보존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심각한 훼손이라 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정와집』은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계승한 안동의 학자 김대진의 문집이다. 그는 안동에 세거하며 영남의 명가로 자리잡은 의성 김씨 출신으로, 안동 호계서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 김대진은 조선 후기 학계의 쟁점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대해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호론(湖論)의 입장에 찬성하였으며,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대해서는 칠정이발설(七情理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퇴계 이황의 학설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권오영, 「김대진의 학통과 이학」, 『청계사학』 24, 청계사학회, 2022.)
- 이 유물은 김대진의 문집 『정와집』의 목판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원집의 목판은 1889년에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25%는 1905년 이후 제작된 것이다.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영남 지역 문집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사회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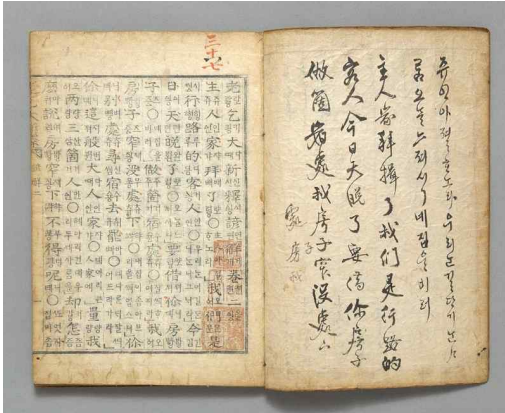


【노걸대신석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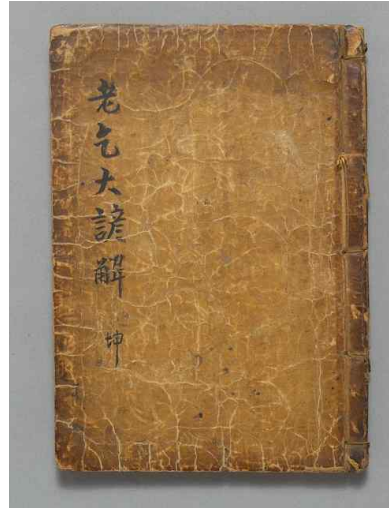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노걸대신석언해 (老乞大新釋諺解)
수 량	1책	규 격 (cm)	28.5×19.9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서울특별시
시 대	1763년(영조 39)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5 서울역사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조사대상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는 권2의 1책이다. 1763년(영조 39)에 교서관(校書館)에서 함께 간행한 한어본 중국어 학습 교재 『新釋老乞大』를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주음을 행한 책이다. 한어본은 1책으로 이루어졌지만 언해본은 권1, 2, 3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언해본들 중 어느 것도 전해지지 않다가 비교적 최근야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권1의 실체만이 소개된 바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권2는 현재 국내의 통틀어 구체적인 실체 파악이 가능한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는 고려 왕경(王京)에서 출발한 말 상인이 북경(北京)에 가 말을 판 후 고려에 돌아가 팔 물건을 사 가지고 다시 고려 왕경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행과 거래에 관한 내용이 대화체로 수록되어 있다. 1761년 홍계희(洪啓禧)의 서(序)에 의하면 전래의 『老乞大』의 내용이 시속(時俗)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할 필요가 제기된 상황에서 북경에 있는 역관(譯官) 변헌(邊憲)(1707~미상)에게 책의 수정을 행하도록 하여 간행되었는데 중국어 통화의 편리가 수정의 주요 방향이었지만 고본(古本)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매 과(課)가 끝날 때마다 한 자(字)를 낮춰 이전본인 平壤版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의 원문과 우측음(俗音)을 함께 실어 둠으로써 한어본에 비해 분량이 현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의 편찬은 영조의 독려를 배경으로 매우 힘을 들인 편찬이었는데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의 권말에 검찰관(檢察官) 김창조와 변헌, 교정관(校正官) 이천식 등 7명, 서사관(書寫官) 조동수 등 4명의 전현직 사역원 관료 다수가 관여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 조사대상본은 목판본으로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2.6cm 가로 16.5cm이다. 유계(有界) 10행에 1행 20자이고 주음과 번역은 쌍행(雙行)이다. 판심은 판심제로 ‘老乞大新釋’, 下向三葉花紋魚尾 그 아래에 ‘諺解’와 권차(卷次) ‘二’, 그리고 장차(張次)가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19.9cm이며 표지는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표지 서명은 ‘老乞大諺解’인데 표지 하단에 ‘坤’이라 표기되어 있다. 권수면 하단 오른쪽에는 판독이 어려운 인문(印文) 세 개가 찍혀 있다. 본문 난상(欄上)에 주		

	묵(朱墨)과 흑묵(黑墨)으로 과(課) 표시용 한문 숫자가 겹쳐 표기되어 있는데 주묵은 1권의 과 차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7부터 시작되어 있고 흑묵의 경우엔 조사대상인 2권의 과 차례만을 고려하여 1부터 시작되어 있다. 본문에 한 어구의 번역이 끝나면 부호 ㄴ을 두었는데 이는 고본 원문의 어구를 구별하는 데도 사용된 유용한 부호로 이후 간행된 중국어 학습서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譯解)』(1765년, 영조 41)에도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 조사대상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譯解)』는 국내외에 전혀 동일한 간본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老乞大』의 언해본은 세기마다 왕의 독려와 중국어 통화에의 필요에 부응하여 여러 이본들이 간행된 바 있는데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1510년경, 중종 연간), 『노걸대언해(老乞大謄解)』(1670년, 현종 11), 평양판(平壤版) 『노걸대언해(老乞大謄解)』(1745년, 영조 21),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謄解)』(1795년, 정조 19) 등이 현존하고 이들은 성암고서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미국 컬럼비아 대학 등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 조사대상 책은 본문에 결락된 것이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인쇄 상태 역시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노걸대(老乞大)』는 『박통사(朴通事)』와 함께 사역원(司譯院)에서 가르치고 역과(譯科)에서 과시용(科試用)으로 쓰인 대표적인 중국어 학습서다. 최초 편찬을 누가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은 분명하며 ‘老乞大’라는 서명은 중국인, 중국인 토박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오랜 기간 한어본으로만 전해져 온 이 책은 조선왕조 대대로 중국인 응대에 필요한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 왕들의 관심과 사역원 및 역과에서의 소용 등을 배경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엔 세기마다 한글에 의한 중국어 주음과 번역이 이루어져 그 활용의 양상을 새로이 해 왔었다. 전대본인 평양판(平壤版) 『노걸대언해(老乞大謄解)』가 간행된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조사대상본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譯解)』가 다시 새로이 간행된 것은 당시 통화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의 간행이 시급하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책은 평양판(平壤版) 『노걸대언해(老乞大謄解)』에 비해 한어 원문, 당시 중국 북방의 현실음을 반영한 우측음(俗音), 한글로의 대화 번역이 아주 새로워진 책이며 이후 이 책과 사주쌍변(四周雙邊)의 판식까지 동일한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謄解)』의 간행에 직접적인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 『노걸대(老乞大)』는 고려 시대부터 중국어 학습서로의 사용이 이루어진 오랜 사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글 창제 이후엔 세기마다 한국어와 중국어 구어(口語)와 음의 변화가 책에 반영되어 전해짐으로써 한국어사, 중국어사, 외국어 교육사, 외국어 교재사, 외국어 번역사, 동아시아 상업 교류사 등의 연구에 대단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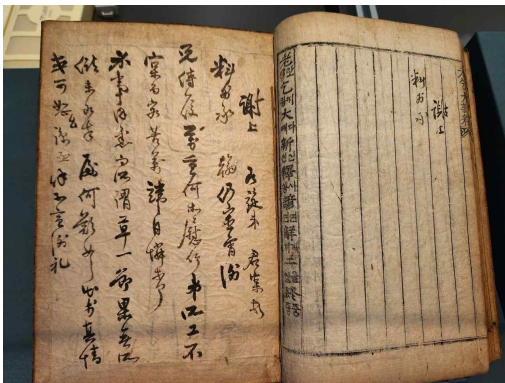
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조사대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국내의 통틀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간행사적인 의미가 충분하며 현존하는 판본에 대한 연구가치도 높은 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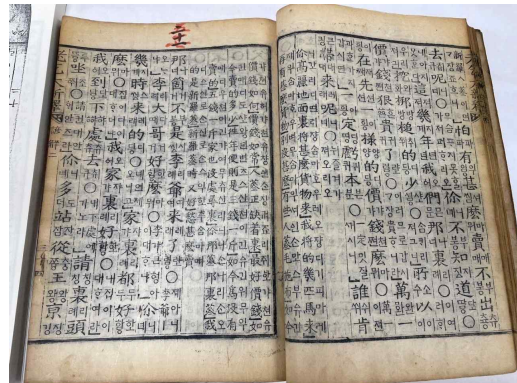
첫장



표지



마지막장



본문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케】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케 (白蓮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및 掛佛櫃)
수 량	1건 2점	규 격 (cm)	(괘불도) 전체 602×345, 화면 590×335 (괘불케) 길이 390, 폭 34, 높이 38
재 료	삼베	소유자	한국불교대교종 백련사
시 대	1868년(동치 7)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170-72 백련사 약사전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케>는 약사전 외부 동측벽에 모셔져 있다. 이 괘불도는 삼베와 후배지로 바탕을 구성하고 천간은 반달, 지간은 원형의 상하축으로 장황한 족자 형태이다. 바탕 화면은 총 8폭(41.6, 45.7, 38, 56, 47.7, 48.2, 47.8, 20cm)의 삼베를 연결해 구성하고 가장자리 사면에는 채질이 다른 면을 귀첩이용 보강재로 사용했다. 후배지에는 사면에 사방주(아마라하), 상부는 점안법자(옴아훔), 중앙은 출실지(아라바자나), 비밀실지(암바람함감), 입실지(아바라하카)를 주사로 적었다. 현재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면포를 넓게 연결하여 화면을 덮었다.

화면의 구성은 상부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등 삼신불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하부에는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 등이 대칭을 이루며 마주 보도록 했다. 화면 하부 좌우에는 2개의 화기란을 만들어 화기를 기록했다. 향우측에는 괘불도 조성에 시주한 신도 18명의 성씨와 법명이 적힌 시주질과 발원문, 향좌측에는 조성연대와 봉안처, 괘불도 조성에 관여한 승려들의 소임과 법명이 적힌 연화질이 적혀있다.

화기에 의하면 백련사 괘불도는 1868년(동치 7) 윤 4월 29일 삼각산 백련사에서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증명은 무공당지현(無空堂知玄), 정암당우○(淨菴堂于○), 설허당법문(雪虛堂法文)이 맡았으며, 조성화원으로는 금어 금곡당영환(金谷堂永環), 편수 경선당 응식(慶船堂應釋), 서익(瑞翊) 창은(彰殷), 봉감(奉鑑), 두삼(斗三), 원감(元鑑), 재은(在根), 공엽(巨燁), 춘만(春萬) 등 10명의 화승이 참여했다.

괘불케는 앞면과 뒷면, 바닥은 맞대고 좌우측 넓은 일자사개(수7, 암6)로 물린 후 사개측에 쇠못과 철물로 결구한 개폐형 껍데기이다. 경첩은 결실되었지만 들쇠, 감잡이, 자물쇠 철물 등 최소한의 철물을 갖춘 대형 불교 목가구이다. 또한 앞면에 점안법자와 괘불괘(掛佛櫃)이라는 명칭, 시주자, 발원문 등이 음각되어 있어 주목된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은 오랜 세월 야외 의식을 위해 사용한 흔적으로 전체적으로 꺾임과 습해로 인한 안료의 마모·오염이 다수 관찰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면 상부는 삼신불 상호를 중심으로 습해로 인한 안료 변색과 얼룩이 심하다. 또한 여러 곳에서 화면 수축과 접힌 부분 주변의 안료 박락이 후배지 노출과 함께 드러나 있으며, 특히 하부 우측면에는 축과 화면을 감싼 바탕천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 하측 장황 부분에는 굵힘과 바탕재 마모 등 괘불도를 말고 펴면서 무리하게 물리적 힘을 가해 손상된 곳이 확인된다.

습해로 인한 피해 중 염료를 사용한 곳에서는 착색에 따른 오염, 금박을 사용한 신광과 장신구에서는 접착제 약화로 인한 안료 분리 현상이 보인다. 후배지에는 습해로 인한 얼룩과 오염이 관찰된다. 습해로 추정되는 손상은 녹색과 황색 안료에서 일부 눈에 띈다. 화면 하부에는 바탕재와 후배지가 분리되면서 들떠 접힌 부분과 이물질, 기름얼룩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패불개 내부에는 패불도를 감싸는 감싸개 천이 한 벌 있으며, 패불도에는 화면 보호를 위해 넓은 면포로 화면을 덮었다. 전체 크기는 패불도 화면과 비슷하며, 상부에 습해를 입어 갈변된 흔적이 관찰된다. 패불개는 야외에 보관하고 있어 먼지의 침적과 철물의 부식이 진행 중이다. 앞면보다 뒷면이 굽힘과 판재 할렬, 단청 안료 오염 등이 있어 내부 보관 또는 보호 시설이 필요하다.

3. 내용 및 특징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는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보신(報身) 노사나불, 화신(化身) 석가모니불’로 구성된 삼신불 도상으로, 장방형의 화면 상부에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화면 가득 차게 배치하고 하부에 제자와 동자를 함께 배치한 군도 형식의 패불도이다. 세 여래는 별도로 두광을 가진 전통적 형태와 달리 원형 두광과 경계 없이 하나로 이루어진 광배를 갖춘 채 서 있다. 삼신불 가슴 부근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하부에는 원권 내부에 사자를 탄 동자형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이 패불도는 삼신불 도상의 패불도 가운데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제자, 동자를 차례로 배치해 위계에 따른 원근 효과를 자아내는 독특한 구도를 보여주며, 삼신불과 4위의 권속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는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으며, 노사나불은 설법인인, 석가모니불은 향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데, 신체에 비해 손을 크게 표현하여 비례가 맞지 않는다. 삼신불의 육계 주위로는 능화형의 광배에 화염이 서로 경계없이 하나로 이어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형식의 광배는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1735년, 보물) 외에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에서 처음 등장하는 특이한 형태로 주목된다.(참고 도판 1)

여래의 상호는 방형으로,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작고 중앙에 몰려 있어 정면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엄하고 원만한 모습이다. 두부는 육계가 솟아오른 형태로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다. 착의는 모두 통견의 대의로 복견의 색과 복식 끝단의 문양 변화만 있을 뿐 같은 형태이다. 양쪽 어깨를 감싼 통견의는 모두 붉은색 대의이며, 대의 문양은 원 문양을 찍어 내듯 원권을 그린 후 내부에 연화문과 초화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대의 끝단은 연화당초문과 결련녹화문, 갈모문 등 여러 문양을 연속으로 이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석가모니불의 복식의 문양은 변화를 주어 같은 삼신불이지만 비로자나불의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원권 안에 선묘와 채색,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문양이 아닌 다양한 모티브와 회화적 요소를 시문하는 양상은 19세기부터 나타나 20세기 불화 전반의 복식 문양으로 계승된다.

화면 중앙에는 삼신불보다 작게 그려진 지권인을 결한 가섭존자와 합장을 한 아난존자가 시립하고 있어 삼신불과의 위계를 보여준다. 녹색 두광에 흰 수염과 머리카락, 주름진 목주름을 한 노승으로 묘사된 가섭존자와 젊은 비구승의 모습을 한 아난존자는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 복식은 적색을 주조색으로 녹색, 청색이 내의와 외의에 다

양하게 구사되었으며, 각각 장신구와 세부 문양을 4~5가지 이상 다르게 시문하며 삼신불에서 볼 수 없는 금란 가사의 사실적 묘사가 돋보인다.

화면 하부에는 푸른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흰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대칭으로 배치했다. 두 동자는 각각 경계를 가진 원권의 광배를 크게 둘러 상부 영역과 분리시켰다. 두 동자는 두광과 신광, 얼굴, 자세, 착의법, 지물 등을 대칭으로 표현했지만, 원권의 색 구분, 연꽃과 여의의 지물 차이, 서수의 시선 처리 등 색상과 지물에서 차이를 두었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처럼 삼신불 또는 삼존불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동자형 문수·보현보살을 갖춘 7존의 도상은 19세기 괘불도 가운데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외에도 영산회·아미타괘불도에서도 등장한다. 특히 쌍계형(雙髻形) 머리에 미소년의 얼굴을 한 동자형 보살의 등장은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1806)를 시작으로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1832)에서 정형화되었다. 이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1868), <광서8년명 괘불도>(1882), <봉은사 괘불도>(1886), <봉곡사 아미타괘불도>(1892), <봉원사 아미타괘불도>(1901), <연화사 아미타괘불도>(1901), <고양 흥국사 아미타괘불도>(1902), <미타사 아미타괘불도>(1915) 등에서 확인된다.(참고도판 2)

따라서 여래 또는 보살형 삼신·삼존불과 가섭존자·아난존자, 승물(乘物)을 탄 문수·보현보살이 함께 하는 7존의 도상은 19세기 유행한 비로자나삼신괘불도를 시작으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미타정토신앙의 유행에 힘입어 아미타괘불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즉 삼존불을 제외한 나머지 권속들의 도상은 그대로 차용한 채, 주존인 비로자나삼신불 또는 석가삼존불을 아미타삼존불로 바꾸어 묘사하며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진 괘불도 도상의 표본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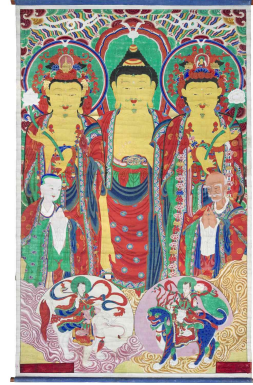
참고도판 1.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참고도판 2-1.
청룡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참고도판 2-2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참고도판 2-3
광서8년명 괘불도참고도판 2-4
봉은사 괘불도참고도판 2-5
봉국사 아미타괘불도(1892)참고도판 2-6
연화사 아미타괘불도참고도판 2-7
고양 흥국사 아미타괘불도참고도판 2-8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의 예술적 가치는 화면에 배치된 존상 7위의 짜임새 있는 배치와 삼신불 가운데 본존인 비로자나불을 확대한 위계성이다. 삼신불과 권속들은 상호와 신체 비례가 원만하며,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위계에 맞게 권속들을 크게 그려 괘불도를 바라보는 참배객의 편안한 시선을 유도한다. 경계 없이 연결된 화염 광배를 배경으로 원만한 상호로 참배객을 내려다보는 시선 처리, 화면 가득 채워진 7존의 구성은 의식과 행사에 나투신 삼신불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두광과 신광을 둘러싼 대형 원권문 안에 자리한 푸른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은 구름과 함께 하강하는 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정적인 화면에 동적인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

채색은 진사와 연단을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밝은 적색을 주조색으로 녹색과 청색, 황색, 백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대의의 적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진사연단 외에 염료인 연지를 연백과 혼합하여 구름, 장신구, 광배 등 여러 곳에 사용하였다. 녹색은 두광과 복견의에 주로 사용하였고 회청과 석청을 승각기와 내의에 사용해 다양한 색채의 조합을 보인다. 특히 옥색으로 채색한 황색은 곳곳에 변색과 얼룩

이 확인되는데, 유기염료인 등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수·보현보살 신광과 권속 장신구에 사용한 금박은 선명하고 밝은 채색과 복식의 섬세한 문양과 함께 특징적이다.

화면 하부 좌우 두 곳에는 적색 바탕에 먹선으로 테두리를 두른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화기를 묵서했다. 패불도의 증명을 맡은 무궁당 지현은 1861년 <화계사 칠성탱>, 1876년 <변산 칠성암 칠성탱>, 1879년 <위봉사 태조암 석가모니후불탱>에서 증명으로 참여하였는데, 1860년대 초에는 화계사, 백련사 등 서울 지역에 주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어 금곡 영환은 1856년 남양주 홍국사 만월보전 화소실에서 도감과 1858년 <남양주 홍국사패불도>에서 개금편수로 등장한다. 19세기 후반 제자 한봉당(漢峰堂) 창엽(昌曄), 경선당 응석 등을 주요 동참 화승으로 경기지역의 불화 양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영환은 1858년 홍국사 불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업을 시작하였으며, 1868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에서 수화승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풍은 당시 경기지역의 화승들이 도상의 다양화와 현실화를 모색하면서 화려함을 위해 적색을 많이 사용하는 조색법을 적극 수용했다. 또한 금박으로 화려함을 부각하고 각종 문양을 사용하는 채색기법을 계승하였다.

편수로 등장하는 경선당 응석 또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70여 점의 불화를 남겼다. 1853년부터 1912년까지 왕성히 활동하며 영환과 함께 여러 불사에서 불화 조성을 도맡았다. 특히 남양주 홍국사를 근거지로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를 주도하였다. 응석이 참여하거나 수화사가 되어 그린 패불은 석가모니불 패불도 2점, 삼신불 패불도 1점, 삼세불 패불도 1점, 아미타불 패불도 1점 등 총 5점으로, 그 가운데 3점을 영환과 함께 제작하였다. 1902년 삼존상의 도상을 바꿔 수화사로 조성한 <고양 홍국사 아미타패불도>를 볼 때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에서 실질적인 주역은 응석의 역할이 컸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응석 아래 기록된 서익, 창은, 봉감, 두삼, 윤감, 금엽, 춘만 또한 경기지역에서 화연을 맺으며 활동한 화승으로, 백련사 불사에는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을 소집하여 패불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향우측에 기록된 시주질에는 건명무진생이씨(乾命戊辰生李氏)와 곤명을축생권씨(坤命乙丑生權氏) 부부 외에 시주자 18명이 등장한다. 영환과 응선이 참여한 일련의 불사와 패불도 조성이 준비 엄씨와 관련 있어 백련사 불사 또한 조선 왕실 또는 종친과 관련된 불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書記

[향좌측] 同治七年戊辰閏四月十九日掛/佛幀奉安于三角山白蓮/寺 緣化秩/證明比丘無空堂知玄/比丘淨菴堂于○/比丘雪虛堂法文/誦呪比丘東月堂信定/比丘信月堂壯寬/金魚比丘金谷堂永環/片手比丘慶船堂 應釋/比丘瑞翊 比丘彰殷/比丘奉鑑 比丘斗三/比丘元鑑 比丘在根/比丘亘燁 比丘春萬/持殿比丘法性/都監比丘應峰堂宜閑/別座比丘鏡月堂法愼/化主比丘意悅 比丘德仁/鍾頭比丘永咸 比丘長淳/供司比丘智憲 比丘性允/別供比丘大雄 比丘鏡慧 比丘道允/老德比丘證月堂普燁/比丘玩虛堂勸愚/比丘龍潭堂祥念/比丘漢谷堂法淨/比丘金波堂戒溫/淨桶金男伊 來往李吉孫/比丘德峰堂玩基/性空堂坦弘/三綱 影雲堂妙璵/永○

	[향우측] 施主秩/乾命戊辰生李氏/兩住保體/坤命乙丑生權氏/清信女癸亥生郭氏金剛心保體/清信女辛巳生崔氏圓滿心保體/清信女丁丑生劉氏○佛心保體/清信女庚申生徐氏淨行華保體/清信女乙酉生申氏大行華保體/清信女癸未生金氏大德華○○/坤命辛未生片氏保體/清信女庚子生李氏白蓮花保體/坤命戊子生李氏保體/清信女戊寅生車氏華藏花保體/清信女丁卯生金氏寶蓮花保體/清信女庚申生宣氏天○花保體/坤命辛未生劉氏保體/清信女壬戌生金氏大覺心保體/坤命丙寅生金氏保體/清信女乙丑生朴氏九品行保體/以此功德法界咸靈/離苦登樂 한편,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와 함께 패불도를 보관하는 패불계가 남아있다. 패불계는 현재 약사전 외부 동측벽 기둥에 받침대를 끼워 보관하고 있다. 패불계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상자형 껍짝으로, 앞면과 뒷면, 바닥은 맞대고 좌우측 널은 일자사개(수7, 암6)로 결구한 방식이다. 경첩은 결실되어 수리되었지만 들쇠와 감잡이, 자물쇠 등의 철물을 갖추고 있으며, 앞면에는 점안범자와 패불괘(掛佛槓)이라는 명칭, 시주자, 발원문이 음각되어 있다. 패불계의 제작시기는 조성연대가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패불도 뒷면에 주서로 쓴 ‘옴아훔’이라는 점안범자와 동일한 서체, 1832년 <홍천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 패불계에도 기록된 ‘괘(廓)’이라는 보관상자 명칭, 조선 후기 제작한 장식을 통해 1868년 패불도 조성 시 함께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패불계 명문> 掛佛槓大施主/坤命癸卯生金氏/女息庚午生金氏/長子乙亥生金基宅/以此勝緣功德壹/生災難不復侵役/得無上菩提果然/得仗此身心奉塵/利是則名為報佛/恩摩訶般若波羅/蜜
조사 결과	4.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는 삼신불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앞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아래에 동자형 문수보현보살이 결합된 도상으로 부처-제자-동자를 상·중·하단으로 배치한 서울·경기 지역의 전형적인 패불도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삼신불 도상은 1806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삼신패불도>(보물)를 시작으로 1832년 <서울 홍천사 비로자나불삼신패불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에서 계승되고 있다. 삼신불 중심의 이와 같은 패불도 도상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는 아미타 패불도로 변형되며 서울·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패불도 도상으로 정착하였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는 삼신불 도상을 계승한 19세기 중반의 비로자나패불도로서 당대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금곡영환과 경선응석이 주도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원형이 잘 보존된 유물이다. 또한 7위의 짜임새 있는 도상 배치와 인물 표현, 선명한 채색과 치밀한 문양 도안은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 지역 삼신불 패불도의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패불계의 ‘패불괘’이라는 명문은 관련 유물로서 원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 패불도와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전도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부분도 1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부분도 2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부분도 3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부분도 4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1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2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3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4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5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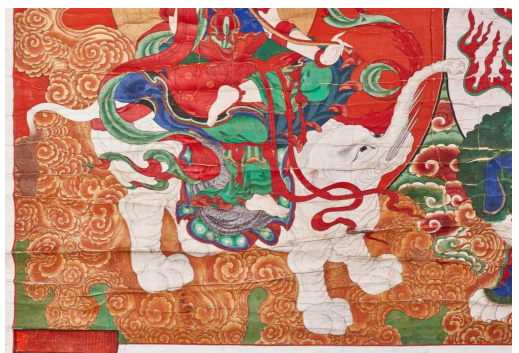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7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8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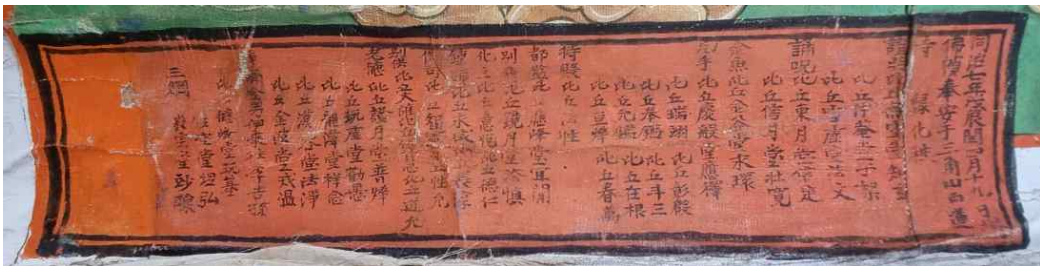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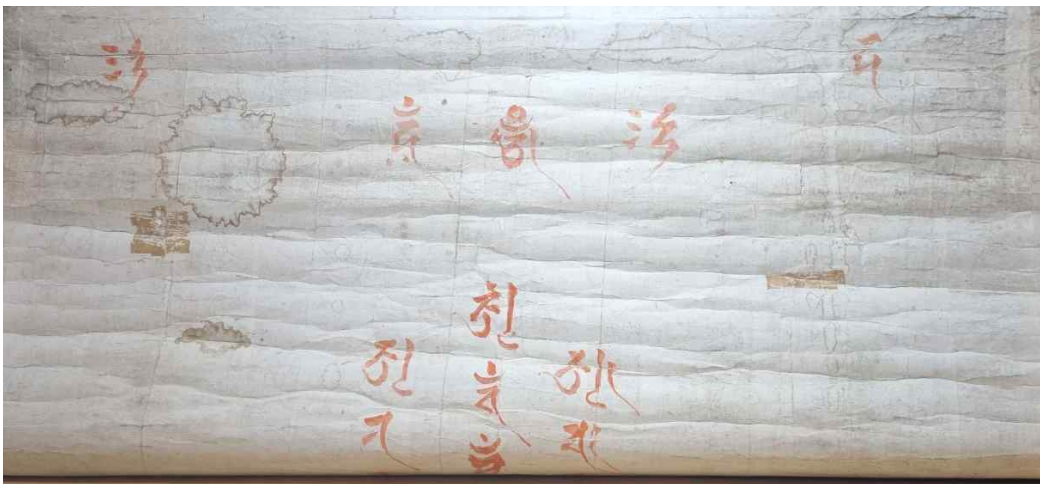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세부 11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화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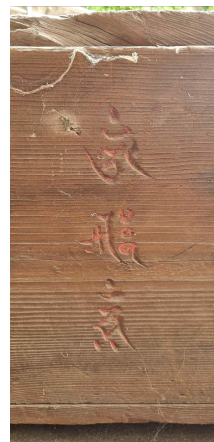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화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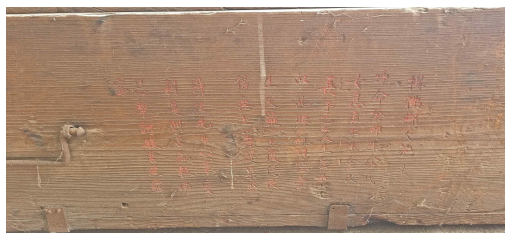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후배지 범자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괘불케 1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괘불케 2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괘불케 3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검토종별	서울시 문화유산자료	명 칭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清凉寺 大雄殿 山神圖)
수 량	1점	규 격 (cm)	120.5×150.4
재 료	면 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시 대	193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1길 10-3, 청량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는 대웅전 주불전의 좌측벽에 봉안되어 있다. 목재액자 틀에 유리를 씌워 놓은 상태로, 부분적으로 찢농 및 누수에 의한 오염 등이 보이지만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산신도>는 화면의 위쪽은 세로 약 102.5cm, 가로 150.4cm의 천 한 매로 하고, 아래쪽에 자투리 천 두 매를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아래쪽은 세로 길이는 약 30.2cm에 너비가 향좌로부터 약 81.5cm, 80.5cm의 천을 좌우로 이어 한 장으로 만들어 위쪽 천에 이어 붙였다. 산신도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緣畫所秩」 證明比丘朴漢英」 誦呪比丘華山」 持殿比丘香林」 片手比丘成漢春潭」 化主坤命戊子生文氏」 別供比丘尼申元三」 昭和十二年陰八月晦日」 三角山三佛閣山神幀一」 奉安于」 기록에 의하면 산신도는 삼각산 삼불각(三佛閣)에 봉안되었다. 증명을 한 사람은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중 한 분인 석전 박한영(石顚 朴漢永, 1870~1948)이고, 비구니 신원삼(申元三)이 공양을 책임지는 별공(別供) 및 별좌(別座)의 소임을 맡았다. 그림을 그린 편수는 김춘담[成漢 春潭]이며, 화주는 무자생문씨로 되어 있다. 신원삼은 1924년에 건립한 삼불각의 서별당을 1935년에 중수하고 1967년에 청량사로 이전하여 건립한 비구니이다. 1924년 당시 삼불각은 법당 할머니라고 불렸던 문부옥이 운영하던 곳으로 화주를 맡았던 무자생 문씨이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의 오염 및 찢농, 얼룩 등이 보이지만 화면의 도상과 색채 등은 잘 보전되어 있다. 3. 내용 및 특징 산신도는 대개 청록의 산수를 배경으로 신선형의 노인이 호랑이에 기대어 앉아있거나 호랑이에 탄 모습을 그린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제왕형, 장군형, 문관형, 여성형 산신 등도 간혹 제작되었다. 여성형 산신은 인자해 보이는 중년, 혹은 노년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머리에 족두리와 같은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있다. 여성형의 산신은 ‘윗산신’으로 불리며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령한 존재로 인식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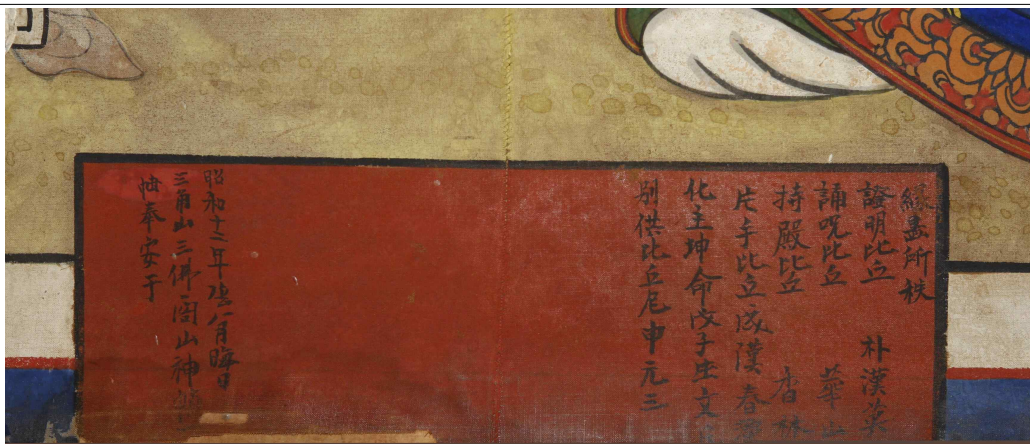
	다고 한다.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남녀 산신 각 1위를 함께 그린 점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큰 소나무와 청록산수를 배경으로 부부산신이 앉아있고, 주변에 호랑이와 3명의 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부부산신도로 추정되는 이 형식은 무속산신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기존의 산신도 형식에 여성형 산신을 더함으로써 득남, 득녀 등을 간절히 기원하는 대상으로 신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산신은 모두 정면향의 의좌상으로 표현되었고, 그 사이로 호랑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남성형의 산신은 투명한 판을 쓰고 청색의 옷에 부리부리한 인상이고, 여 산신은 쪽을 진 단정한 머리에 붉은색의 옷을 입고 가는 눈의 다소곳한 인상이다. 두 산신의 옷 색상과 인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호랑이 뒤에는 각기 지물을 든 두 명의 시동이 있으며, 여 산신 옆 시내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는 시동은 일반적인 산신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무속화를 연상시키는 여성형 산신을 제외하면 정면향을 한 남성 산신의 모습은 서울 지역 <산신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산신은 투명한 판모를 쓰고 한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손에는 흰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다. 유사한 사례로 강북구 <화계사 산신도>(1920), 동대문구 <연화사 산신도>(1923), <원흥사 산신도>(1930) 등이 있다.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에도 다른 불화와 마찬가지로 금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청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소나무의 표현과 청록의 산수의 평면성,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표정 등은 민화와 공통되는 표현기법이다. 불화를 제작한 화승 춘담성환은 속성은 김씨이고, 192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활동하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불화를 제작하였고 30여 점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다. 춘담성환은 1924년에 충남 태안 <홍왕사 치성광여래도>를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그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충청, 전라, 경상, 경기 지역의 불화 불사에도 종종 참여하였고, 서울시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1930)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화 4점은 춘담성환의 화업 활동 중 단독으로 담당하여 금어로서 일괄 제작한 큰 불사 중 하나이다. 4점 모두 큰 편차 없이 화풍이 일관되고, 단정하고 정제된 솜씨를 잘 발휘하여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하다.
조사 결과	4.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는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37년 춘담성환이 단독으로 그린 불화이다. 불화제작에 참여했던 비구니 신원삼을 통해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가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경위를 알 수 있어 불화의 내력이 확실하다. 불화에 보이는 청록산수의 표현과 호랑이 등을 그린 민화적인 표현기법은 19세기 후반의 전통적인 신신도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무속신으로 섬겨졌던 여성산신의 등장은 새롭게 보이는 요소이다. 이 불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보이는 산신도의 범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간에서 유행했던 무속적인 신앙 경향을 불화의 도상에 투영하였다는 점에서 시대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화기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산신 부분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검토종별	서울시 문화유산자료	명 칭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淸涼寺 大雄殿 神衆圖)
수 량	1점	규 격 (cm)	181.6×133.6
재 료	면 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시 대	193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1길 10-3, 청량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대웅전 주불전의 우측에 봉안되어 있다. 목재액자 틀에 유리를 씌워 놓은 상태로,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찰농 및 누수에 의한 오염 등이 보인다. <신중도>는 향좌로부터 너비 약 105.0cm, 34.0cm인 두 매의 천을 좌우(左右)로 이어 화폭을 마련하였다.

신중도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緣畫所秩」 證明比丘朴漢英」 誦呪比丘華山」 持殿比丘德翁」 片手比丘金春潭」 別座比丘尼申元三」 化主」 坤命戊子生文氏」 昭和十二年陰八月」 三角山三佛閣神衆」 幀一秩奉安于」

기록에 의하면 신중도는 삼각산 삼불각(三佛閣)에 봉안되었다. 증명을 한 사람은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중 한 분인 석전 박한영(石顚 朴漢永, 1870~1948)이고, 비구니 신원삼(申元三)이 공양을 책임지는 별공(別供) 및 별좌(別座)의 소임을 맡았다. 그림을 그린 편수는 김춘담(金漢春潭)이며, 화주는 무자생문씨로 되어 있다. 신원삼은 1924년에 건립한 삼불각의 서별당을 1935년에 중수하고 1967년에 청량사로 이전하여 건립한 비구니이다. 1924년 당시 삼불각은 법당 할머니라고 불렸던 문부옥이 운영하던 곳으로, 화주를 맡았던 무자생 문씨이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의 오염 및 얼룩, 찰농 자국이 있지만 도상과 색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3. 내용 및 특징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의 화면 중앙에는 두광을 갖춘 위태천이 금강저를 양손으로 짚고 서 있으며, 그 주위에 6위의 무장한 권속이 배치되었다. 그 위로는 역시 원형의 두광을 갖춘 범천과 제석천이 중앙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으며, 천부(天部)의 권속인 일월천자와 천동, 천녀를 함께 그렸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작되던 신중도의 주요한 형식이다. 즉 위태천을 중심으로 범천과 제석을 화면 위쪽에 배치하면서 V자 구도를 형성하고, 그 주변으로 무장을 한 위태천의 권속과 천부의 권속들을 구름으로 구획하여 상하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채색은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였고, 군데군데 근대기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발트블루를 사용하였다. 위태천과 그 권속들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등 금속제 부분에 넓게 금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불화를 제작한 화승 춘담성한은 속성은 김씨이며, 192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활동하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불화를 제작하였고 30여 점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다. 그는 충청권의 불모(佛母)인 금호약효(錦湖若效, 1846~1928)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불사에 함께 참여하며 도상과 화풍을 공유했다. 실제로 현전하는 춘담성한의 가장 이른 작품인 충남 논산 <쌍계사 삼세불화(三世佛畵)> 조성 시(1923년) 금호약효 계열인 수화승 호은정연(湖隱定淵) 및 보응문성(普應文性)과 함께 제작에 참여하였다. 춘담성한은 1924년 충남 태안 <홍왕사 치성광여래도>를 단독으로 제작하였으며, 1927년 서울 <미타사 금보암 아미타회상도>를 단독으로 제작하며 화기에 처음으로 금어(金魚)로 기재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충청, 전라, 경상, 경기 지역의 불화 불사에도 종종 참여하였고, 서울시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1930)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화 4점은 춘담성한의 화업 활동 중 그가 단독으로 담당하여 금어로서 일괄 제작한 큰 불사 중 하나로, 4점 모두 큰 편차 없이 일관된 화풍과 단정하고 정제된 솜씨를 잘 발휘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서울 지역에서 빈번하게 제작되었던 신중도를 참고하여 춘담성한이 출초하여 그린 불화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중엽이 되면 위태천의 양 옆에 산신과 조왕신을 마치 협시처럼 자리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불화에서는 산신과 조왕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춘담성한이 서울, 경기지역의 전통적인 신중도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4.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1937년 춘담성한이 그린 불화이다. 불화의 증명은 당대의 고승이자 청량사와 인연이 있었던 박한영이다. 불화 제작에 참여한 박한영과 신원삼 등을 통해 삼각산 삼불각과 근대기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청량사와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립된 운영체계를 지닌 비구니 사찰의 면모와 불화의 이동 등에 관한 제반 상황들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보이는 초본을 활용하여 그렸다. 하지만 위태천의 협시로 자리 잡은 산신과 조왕신 도상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춘담성한은 전통적인 신중도 형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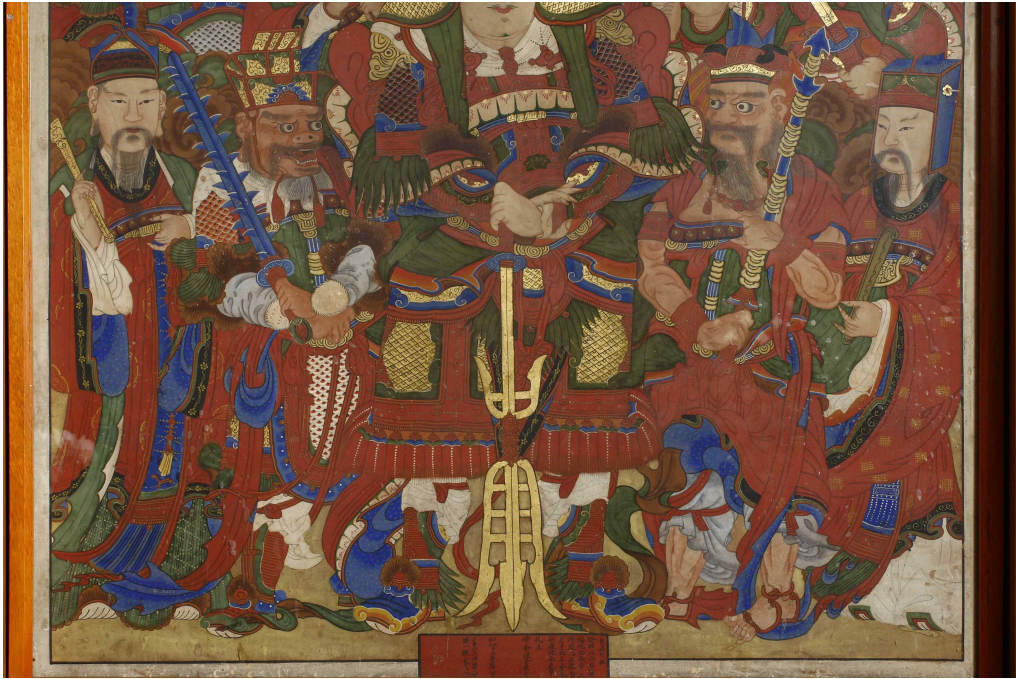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화기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상단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하단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검토종별	서울시 문화유산자료	명 칭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淸涼寺 大雄殿 阿彌陀佛會圖)
수 량	1점	규 격 (cm)	198.0×205.5
재 료	면 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시 대	193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1길 10-3, 청량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1번지(동대문구 제기로31길 10-3)에 위치한 청량사 대웅전에 같은 해에 조성된 칠성도, 신중도, 산신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청량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비구니사찰로 원래는 홍릉 영휘원 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에 능을 조성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사전(寺傳)에 의하면 신라 말엽에 창건됐다고 전해지지만, 창건연대와 창건주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권3 漢城府 佛宇條)(1481)에는 ‘청량사가 삼각산(三角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고려의 이자현(李資玄)이 청평산(淸平山)으로부터 불러와서 머물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따르면 고려 예종 12년인 1117년 예종이 이자현을 불러 이 절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예종 이전에 이미 청량사가 창건되어 사찰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세종 5년(1423)에 태조의 원종공신(原從功臣)들이 청량사에서 세종의 탄신(誕辰) 축수재(祝壽齋)를 올리기를 청한 기록이 있으나(『世宗實錄』 20,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조)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15세기 후반에는 이미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량사는 조선 후기에 다시 중창되었던 듯, 정조 17년(1793) 4월 3일에는 경종의 능인 의릉(懿陵)의 조포사(造泡寺)(『承政院日記』 1716책, 정조 17년 4월 3일 을축조), 순조 23년(1823)에는 순조의 모친 수빈 박씨(綏嬪 朴氏, 1770~1823)의 묘소인 휘경원(徽慶園)의 조포사가 되는 등(『顯穆綏嬪喪葬謄錄』, 「嘉順宮葬禮日記」) 청량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순조 때 대흥사(大興寺)의 초의(草衣)가 청량사에 기거하면서 추사와 교류하기도 했다.

청량사는 원래 지금의 홍릉 영휘원(永徽園) 자리에 있었지만, 「천장산청량사중수기(<天藏山淸涼寺重修記>)」에 따르면, 고종 33년(1896) 겨울에 천장산 아래인 청량사터를 명당정혈(明堂正穴)이라 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홍릉을 현 임업연구원 자리에 조성하면서 완허보순(翫虛普淳)·월해화진(越海和眞)·계은봉법(啓恩奉法)·운학법안(雲鶴法眼)이 그 뜻을 내어 지금의 천장산 남쪽 자락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청량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서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들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청량사를 찾았던 인물로는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안중원(安鍾元, 1874~1951), 이도영(李道榮, 1884~1934), 고희동(高義東, 1886~1965), 김관호

(金觀鎬, 1890~1959), 박한영(朴漢永, 1870~1948) 등이 확인된다. 1921년, 1922년 조선불교회 1주년, 2주년 기념식을 청량사에서 했을 때 청량사 불화의 증명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한영이 축사를 했다고 한다(이병기, 『가람일기』)

현재 청량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극락보전이며, 이외 관음전, 무량수전, 대웅전, 대방채, 설선당, 적묵당 등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는 두 폭의 면(103.6cm, 100.3cm)을 상하로 길게 이어 화폭을 마련하고 채색을 가하였다. 가로로 긴 화면의 중앙에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춘 아미타불이 청색의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고,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과 사천왕, 10대 제자, 타방불, 팔부중 2위와 제왕형의 인물, 공양물을 든 여인 1인이 배치되었다. 아미타불은 일견 향마촉지인을 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작된 불화 가운데 아미타불의 수인을 향마촉지인 혹은 유사한 수인을 결한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 이 불화 역시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타불과 8대보살을 함께 그린 화면 구성 역시 청량사 근처의 사찰들에 봉안되어 있던 도상으로, 특히 성동구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1887)와는 초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며 크기도 큰 차이가 없다.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는 20세기 전반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 보살 및 권속들은 상호가 원만한 점 등 전통 불화의 도상을 충실하게 계승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후불도로 주요 전각의 가장 중요한 불화인 만큼 함께 봉안된 칠성도, 신중도, 산신도와 달리 지물 등 금속제 부분과 군데군데 금박이 사용되었고 섬세하게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은 보응문성 등 금호약효(錦湖若效, 1846~1928) 계열의 화승들이 주로 구사했던 표현을 사용하였다. 채색은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였으나 채도가 높은 코발트 계열의 청색을 사용하는 등 시기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를 비롯하여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화 4점은 춘담성한의 화업 활동 중 그가 단독으로 금어로서 일괄 제작한 큰 불사 중 하나로, 4점 모두 큰 편차 없이 일관된 화풍과 단정하고 정제된 솜씨가 잘 드러나 있어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불회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화기가 적혀있다.

緣畫所秩 證明朴漢英 誦呪華山 持殿香林 片手比丘 金成漢春潭 化主坤命 戊子生文氏 別供比丘尼 申元三 童子庚午生 朱禹眞 童子己巳生 朴永福 壽命長遠 福德具足 昭和十二年 陰八月晦 三角山三佛 閣上塹幀 一軸奉安 于」

화기에 의하면 <청량사 아미타불회도>는 무자생 문씨(戊子生 文氏)의 시주로 박한영이 증명, 비구니 신원삼이 別供으로 참여하였으며, 화승 성한춘담(成漢春潭)이 단독으로 조성하여 소화 12년(1937년) 8월에 삼각산 삼불각 상단탱으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 불화가 봉안되었던 삼각산 삼불각은 성북동(삼청터널 근처 대사관 밀집지역)에 있던 작은 절이었다. 1924년 법당 할머니라고 불렸던 문부옥의 시주로 비구니 김봉학이 대웅전(서별당)을 창건하였으며, 1935년에 김봉학과 신원삼(대웅전 불화 4점의 別供)이 삼불각의 서별당을 중수하고 1937년에 현재 대웅전에 봉안된 불화

4점을 조성, 봉안하였다. 문부옥 사망 후 1967년에 대웅전(서별당)을 청량사로 이전하였는데, 삼불각 대웅전(서별당)은 1979년경까지는 청량사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청량사에서 경내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없어졌으며, 현재 대웅전은 1980년에 새로 건립하였다. 불화의 화주로 이름을 올린 坤命 戊子生文氏가 바로 삼불각을 창건한 문부옥이다.

증명 박한영(朴漢永, 1870~1948)은 근대의 저명한 승려로서 1870년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나 주로 전주, 김제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본명은 정호(鼎鎬), 호는 석전(石顚)이며, 후일 당호(堂號)를 영호(映湖)라 하였다. 19세기의 불가(佛家) 지식의 계보를 잇는 한편으로 20세기 근대 불교학 동향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진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1908년 박한영은 쇠퇴한 불교를 혁신하려는 뜻을 품고 교단의 유신(維新)에 힘을 기울였으며, 1913년 『해동불교(海東佛敎)』를 창간하여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고 불교인의 자각을 촉구하였다. 1914년에는 고등불교강숙(高等佛敎講塾), 1916년에는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의 강사가 되었으며, 1926년에는 서울 안암동 개운사(開運寺)에 강원을 개설하여 불교계의 영재들을 배출하였다. 1929년 조선불교 교정(敎正)에 취임하여 불교계를 지도하였고, 1931년에는 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8·15해방 이후 조선불교중앙총무위원회 제1대 교정으로 선출되어 불교계를 이끌다가 1948년 내장사에서 입적하였다. 박한영은 청량사 대방에 걸린 ‘清凉寺’ 편액(扁額)과 주련(柱聯)을 쓰는 등 청량사와 밀접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는데, 1939년 7월 12일 청량사에서 한용운 선생의 회갑연이 열렸을 때 청량사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불화는 춘담성한이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성한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충청, 전라, 경상, 경기 지역의 불화 불사에도 종종 참여하였다. 불화뿐 아니라 서울시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1930) 등 불상 조성에도 참여하였다. 성한은 청량사 작품을 제작하기 10년 전에 <미타사 금보암 아미타불도>(1927)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수화승을 맡았는데,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와 삼존의 모습을 유사하게 그렸다. 또한 7년 전인 1930년에는 약효의 제자인 보응문성(普應文性)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성복구 <개운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를 함께 제작하였는데, 개운사의 작품은 화폭이 가로로 더 길 뿐 청량사의 작품과 도상이 동일하다. 아마도 성한이 개운사 불화 불사에 참여하면서 이 도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후 작품을 제작하면서 참고했던 것 같다.

2. 원형유지정도

- 아미타불회도는 함께 조성된 3점의 불화와 함께 목재액자 틀에 유리를 씌워 놓은 상태로,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찢농 및 누수에 의한 오염 등이 일부 확인된다.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는 20세기 전반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춘담성한이 단독으로 조성한 불화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불화의 범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상을 공유함으로써 전통 불화의 특징을 잘 계승하고 있다. 또한 증명으로 당대의 고승이었던 박한영이 함께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부분도



부분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

검토종별	서울시 문화유산자료	명 칭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 (淸涼寺 大雄殿 七星圖)
수 량	1점	규 격 (cm)	192.4×200.5
재 료	면 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시 대	193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1길 10-3, 청량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대웅전의 주불단 좌측에 봉안되어 있다. 목재액자 틀에 유리를 씌워 놓은 상태로,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찢농 및 누수에 의한 오염 등이 보인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세로 길이 약 102.2cm, 102.5cm인 두 매의 천을 상하로 이어 바탕천을 만들어 그렸다.

화기는 다음과 같다.

緣畫所秩」 證明比丘朴漢英」 誦呪比丘華山」 持殿比丘香林」 片手比丘金春潭」 化主坤命丁未生金氏」 坤命庚戌生金文永」 坤命甲寅生金文奉」 童子乙亥生金應天」 乾命丙午生朴氏」 乾命癸丑生朱氏」 乾命戊戌生韓永錫」 乾命丁巳生韓觀壽」 乾命丙辰生文孝成」 坤命丙辰生朱鏡郭」 童子己巳生朴永福」 童子庚午生朱禹眞」 童子辛未生朴英喆」 童子癸酉生朴永壽」 童子甲戌生朱友年」 童子乙亥生朱命眞」 童子乙亥生朴永眞」 童子丙子生韓聖壽」 童子乙卯生朴鍾烈」 壬子生竹中正夫」 坤命丁巳生朴鍾順」 坤命甲午生文面玉」 坤命甲午生文德富」 童子丁丑生朱仁命」 昭和十二年陰八月晦三角山」 三佛閣七星幀一 奉安」

기록에 의하면 이 칠성도는 1937년 음력 8월 그믐에 삼각산 삼불각(三佛閣)에 봉안되었다. 삼각산 삼불각은 범당할머니라고 불렸던 문부옥이 운영했던 암자이다. 증명은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중 한 분인 석전 박한영(石顥 朴漢永, 1870~1948)이고, 화주는 정미생 김씨이다. 화주를 맡았던 김씨와 김문영, 김문봉은 문부옥의 세 딸이며, 이외에 사람들은 사위 등 가족들이다(청량사 스님과의 인터뷰). 아미타회상도, 신중도, 산신도의 화주는 삼성산 삼불각을 운영하던 문부옥이 맡아서 하였는데, 이 불화만이 김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화주를 맡았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세 점의 불화와 달리 유난히 동자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자손의 수명과 건강,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모셨던 칠성신에 대한 민간신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다른 불화들과 마찬가지로 김춘담(춘담성환)이 단독으로 그렸다 화기상에는 이 불화를 ‘칠성탱’ 이라고 명기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의 오염 및 얼룩, 찢농 자국이 있지만 도상과 색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3.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부터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불경화하여 표현한 칠성도의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어린아이의 단명을 막아주고 재물과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칠성신앙이 민간에서 매우 성행하였다. 이러한 민간 신앙이 불교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사찰 내에 칠성각 혹은 삼성각의 건립도 크게 늘었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춘 치성광여래가 청연화대좌 위에 앉아있고, 양손에는 금륜(金輪)을 들고 있다. 그 앞에는 지면에서 솟아오른 연화대좌 위에 일광·월광보살을 앉은 모습으로 배치하였으며, 불보살의 양 옆에는 칠원성군과 두광을 갖춘 칠여래를, 그리고 그 뒤 쪽으로는 자미대제와 수성노인, 그리고 28수를 열을 맞춰 가지런히 배치하였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아미타회상도>와 마찬가지로 당시 주변 사찰에 봉안된 작품들과 유사하여 그 불화 들을 참고하여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춘담성한은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를 제작하기 2년 전인 1935년에 이미 성북구 <개운사 삼성각 칠성도>를 제작하면서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와 동일한 구성으로 제작하였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에서 보이는 화면 구성의 불화는 19세기 말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빈번하게 제작되었는데, 남양주 <홍국사 칠성도>(1868), 안성 <칠장사 칠성도>(1888), 파주 <보광사 칠성도>(1898), 여주 <홍왕사 칠성도>(1901), 서울 동대문구 <연화사 칠성도>(1901) 등이 있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불, 보살 등 각 존격들의 상호가 원만하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코발트블루를 사용하였고, 치성광여래의 금륜과 칠원성군의 관모 등 부분적으로 금박을 사용하였다.

불화를 제작한 화승 춘담성한은 속성은 김씨이고, 192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활동하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불화를 제작하였고 30여 점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다. 충청권의 불모(佛母)인 금호약효(錦湖若效, 1846~1928)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불사에 함께 참여하며 도상과 화풍을 공유했다. 춘담성한은 1924년 충남 태안 <홍왕사 치성광여래도>를 단독으로 제작하였으며, 1927년 서울 <미타사 금보암 아미타회상도>를 단독으로 제작하며 화기에 처음으로 금어(金魚)로 기재된 바 있다. 청량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화 4점은 춘담성한의 화업 활동 중 그가 단독으로 담당하여 금어로서 일괄 제작한 큰 불사 중 하나로, 4점 모두 큰 편차 없이 일관된 화풍과 단정하고 정제된 솜씨를 잘 발휘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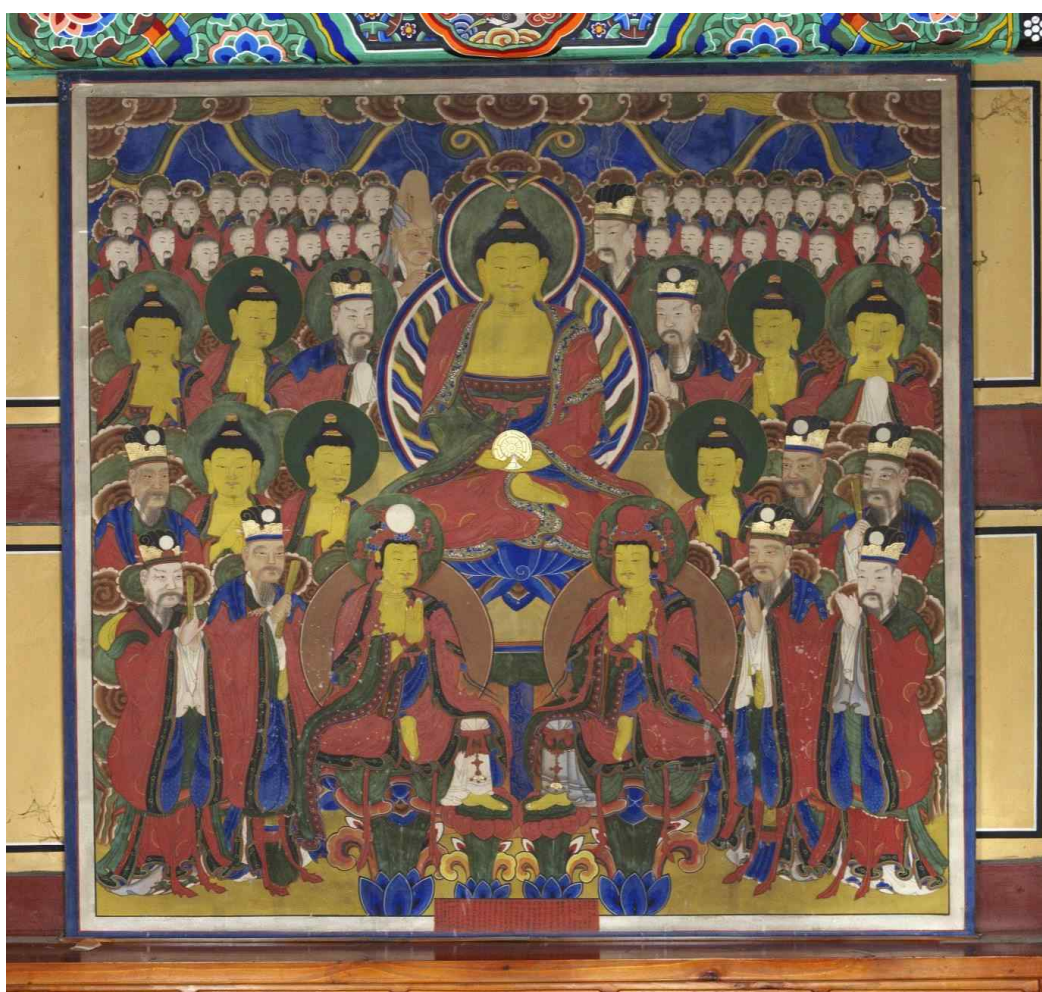
조사 결과

4.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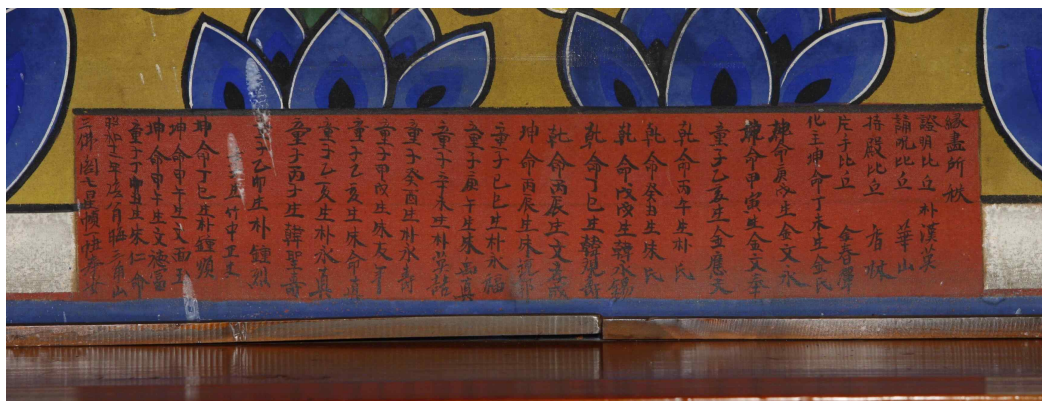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민간에서 칠성신앙이 성행했던 당시 신앙경향을 반영한 불화로서 시대성을 잘 보여주는 불화로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불화 제작에 참여한 증명은 당대의 고승이자 청량사와 인연이 있었던 박한영이라

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삼각산 삼불각의 운영에 문부옥과 그 자손들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구니 김봉학과 신원삼과의 인연으로 현재의 청련사로 삼불각을 옮겨 모셔졌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전각 및 불화의 이동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기성은 물론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제작자의 역량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화기에 기록된 화주 및 동참 인연을 통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불화의 이동 등 당시 서울 지역의 불화 제작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자료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



화기



치성광여래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6호

2024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신규(2024.4.11.)

소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직위	의원	성명	김규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51,170			
모	답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106-6번지 2,990.60㎡ 중 927.00㎡		51,170			
▶ 건물(소계)				1,605,000			

본인	상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대지 1.91㎡ 건물 14.96㎡	65,000 (65,000)	
본인	상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대지 3.10㎡ 건물 24.27㎡	100,000 (10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 114.79㎡	565,000 (500,000)	
부	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건물 26.71㎡	10,000	
부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 114.79㎡	565,000	
모	상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대지 2.38㎡ 건물 18.65㎡	80,000 (80,000)	
모	상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건물 10.47㎡	50,000 (50,000)	
모	다세대주택(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 47.49㎡	17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200
부	자동차	2019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37,200 (37,200)	
▶ 예금(소계)				224,668
본인		(주)카카오페이증권 2, 농협중앙회 9,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3,139	13,150	
배우자		신한은행 35,87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443, 한국투자증권 10	37,330	

부		(주)KB손해보험 379, 국민은행 10,115, 농협중앙회 9, 메리츠증권 1	10,504	
모		(주)KB손해보험 4,236, (주)KEB하나은행 17,834, 국민은행 71,214, 세미증권고용회 9, 우체국 50,790, 중소기업은행 175, 토스뱅크(주) 18,276	162,534	
장남		신한은행 1,150	1,150	
▶ 증권(소계)			90	
배우자	상장주식	HLB 1주	90	
▶ 채무(소계)			211,700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24,200	24,200	
배우자	금융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 187,500	187,500	
▶ 보석류(소계)			7,100	
본인		다이아몬드반지	7,100 (7,100)	
총 계			1,713,528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위	의원	성명	윤석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19번지 1,527.00㎡ 중 763.50㎡			108,219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116번지 14,678.00㎡ 중 7,339.00㎡			476 (476)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116번지 14,678.00㎡ 중 7,339.00㎡			4,536 (4,536)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118번지 28,463.00㎡ 중 14,231.00㎡			8,795 (8,795)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126번지 5,256.00㎡ 중 2,628.00㎡			1,624 (1,624)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136번지 7,041.00㎡ 중 3,520.50㎡			2,176 (2,176)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31-1번지 15,868.00㎡ 중 7,934.00㎡			4,950 (4,950)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45번지 99.00㎡ 중 49.50㎡			27 (27)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6번지 298.00㎡ 중 149.00㎡			95 (95)		
본인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7번지 298.00㎡ 중 149.00㎡			94 (94)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 66번지 130,413.00㎡ 중 21,735.60㎡	9,151 (9,151)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 67번지 14,479.00㎡ 중 2,413.00㎡	1,853 (1,853)	
본인	대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3-28번지 334.00㎡ 중 55.60㎡	68,666 (68,666)	
본인	임야	충청남도 보령시 청리면 장현리 산 99번지 4,187.00㎡ 중 232.00㎡	1,005 (1,005)	
본인	대지	충청남도 보령시 청리면 장현리 572번지 572.00㎡ 중 33.00㎡	1,122 (1,122)	
본인	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225번지 3,015.00㎡ 중 251.20㎡	3,592 (3,592)	
본인	답	충청남도 보령시 청리면 장현리 568번지 92.00㎡ 중 5.10㎡	57 (57)	
▶ 건물(소계)			901,465	
본인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건물 56.71㎡	163,000 (163,000)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대지 32.29㎡ 중 16.14㎡ 건물 66.54㎡ 중 33.27㎡	159,000 (159,000)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대지 28.25㎡ 중 14.12㎡ 건물 66.54㎡ 중 31.00㎡	148,151 (148,151)	
본인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대지 334.00㎡ 중 55.66㎡ 건물 161.70㎡ 중 26.95㎡	2,657 (2,657)	
본인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대지 334.00㎡ 중 55.60㎡ 건물 341.70㎡ 중 30.00㎡	2,657 (2,657)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대지 32.29㎡ 중 16.14㎡ 건물 66.54㎡ 중 33.27㎡	159,000 (159,0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대지 186.40㎡ 중 17.53㎡ 건물 357.13㎡ 중 26.70㎡	137,000 (137,000)	
장녀	다가구주택(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건물 323.93㎡ 중 33.00㎡	1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7년식 QM6 dci 2WD 배기량(2,000cc)	14,962 (14,962)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i30 배기량(1,582cc)	5,900 (5,900)	
장남	자동차	2023년식 아반테(AVANTE) 배기량(1,598cc)	21,870 (21,870)	
▶ 예금(소계)				
본인		(주)KEB하나은행 268, 국민은행 4,063, 세미금융조합양회 1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1, 신한은행 109, 우리은행 66, 중소기업은행 201	4,928	
배우자		DB손해보험(주) 339, KB증권 108, 국민은행 1,327, 농협은행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083, 신한은행 4, 우리은행 895	13,757	
장남		DB손해보험(주) 731, KB증권 19, 국민은행 6,555, 농협은행 2,459, 중소기업은행 5,611, 토스뱅크(주) 2	15,377	
차남		(주)KEB하나은행 64, DB손해보험(주) 674, KB증권 60, 국민은행 2,360, 우리은행 1,459, 중소기업은행 3,039	7,656	

장녀		KB증권 582, 국민은행 1,970, 신한은행 5,011, 우리은행 183, 토스뱅크(주) 11,357, 한국산업은행 2,200	21,303	
▶ 증권(소계)				
본인	상장주식	아미노로직스 7주	10	
배우자	상장주식	에이일엠홀딩스(ADR) 49주	8,702	
장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1주, 에이일엠홀딩스(ADR) 419주, 엔비디아 42주	126,045	
차남	상장주식	에이일엠홀딩스(ADR) 299주	53,103	
장녀	상장주식	LG에너지솔루션 1주, LG유플러스 17주, LG화학 1주, NAVER 6주, POSCO홀딩스 3주, 대한항공 14주, 삼성전자 5주, 아모레퍼시픽 1주, 이마트 3주, 카카오 4주, 한국전력 15주, 현대차 4주	5,739	
▶ 채무(소계)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29,050	129,05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임대보증금	25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건 임대보증금	5,167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지동 임대보증금	132,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임대보증금	230,000	
▶ 가상자산(소계)			21	
장남		KRWG 1개	21	
총 계			562,840	

서울특별시교육청**[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74호****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대상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4조 관련) 변경

-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제1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직위명’에서 ‘업무명’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629, FAX 02-6973-9945

○ 이메일 : kimo120@sen.go.kr

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붙임 1. 입법안**2. 의견제출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4조 관련)

기관의 명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 재무관 회계책임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회계관리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각 과장 및 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각 과장 <개정 2017.10.1.> 교육재정과장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사무관 각과담당관의 회계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장학관 회계관리담당 주무주사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재정지원과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재정지원과장 각 과장 각 과장 <개정 2017.10.1.>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회계관리담당주사. 회계관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장학사. 회계관리담당주사.

기관의 명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관서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다만, 제1관서 중 부장 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리담당 부장 ○ 학생교육원의 분원 및 야외교육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일상경비에 한함)
			분임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다만, 제1관서 중 부장 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리담당 부장
			분임지출원	○ 제1관서 중 직속기관의 회계관리담당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회계관리담당주사 또는 회계관리담당주무자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회계출납원으로 하고,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 ○ 관서는 회계관리담당주사 또는 회계관리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회계출납원으로 하고,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 ○ 학생교육원의 분원 및 야외 교육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 ○ 관서는 회계관리담당주사 또는 회계관리담당자 ○ 학생교육원의 분원 및 야외 교육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칭(제4조 관련)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칭(제4조 관련)				
기관 의 명칭	회계 기관 의 구분	회계직 의지위	회계 직명	지정관직	기관 의 명칭	회계 기관 의 구분	회계직 의지위	회계 직명	지정관직
본청 ~ 교육 지원 청	명령 기관 ~ 출납 기관	(생략)	(생략)	(생략)	본청 ~ 교육 지원 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서 (제1 관서 와 제2관 서 포함)	명령 기관	분임직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다만, 제1관서 중 총무 부장이 있는 경우 에는 총무부장	관서 (제1 관서 와 제2관 서 포함)	명령 기관	분임직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다만, 제1관서 중 부장 직제가 있는 경우 에는 회계관리담당 부장
			분임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 학생교육원의 분원 및 야외교육장은 원장이 정하는 자 (일상경비에 한함)				분임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 학생교육원의 분원 및 야외교육장은 원장이 정하는 자 (일상경비에 한함)
	출납 기관	주임직	(생략)	(생략)		출납 기관	주임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 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월 일

구 공 고

◆ 강서구공고 제2024-1535호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24. 7. 26. ~ 2024. 8. 8.(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서구청 도시계획과(화곡로 301, 원풍빌딩 2층)

다. 열람내용: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	증 5,237	5,237	-	-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계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2600-6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1374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72호(2004.11.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9호(2014.11.27.)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구로구 천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현황

가. 시설명 : 천왕근린공원

나.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6

다. 면적 : 33,677.10㎡

2. 공고내용 :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가. 목적 : 천왕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어린 아이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변경내역 :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면적 반영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33,677.10	33,677.10	-	6,642.60	7,364.65	증)722.05

- 기반시설 : 5,328.00㎡ → 5,265.76㎡ (감 62.24㎡)
- 조경시설 : 628.90㎡ → 321.00㎡ (감 307.90㎡)
- 휴양시설 : 359.70㎡ → 256.40㎡ (감 103.30㎡)
- 유희시설 : 0.00㎡ → 1,195.15㎡ (증 1,195.15㎡)
- 운동시설 : 73.60㎡ → 73.60㎡
- 편의시설 : 0.00㎡ → 61.90㎡ (증 61.90㎡)
- 관리시설 : 252.40㎡ → 190.84㎡ (감 61.56㎡)
- 녹지 : 27,034.50㎡ → 26,312.45㎡ (감 722.05㎡)

3. 열람기간 : 2024. 7. 25. ~ 8. 8.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02-860-3088)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영등포구공고 제2024-1348호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72호(1982.4.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26호(2018.1.25.)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문래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 원 명: 문래근린공원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번지 일원
3. 면 적: 23,611㎡
4. 변경내용: 친수시설 설치, 어린이놀이기구 및 운동시설 설치 등
 - 기반시설: 5,064.6㎡ (증 530.8㎡)
 - 조경시설: 251.6㎡ (감 354.6㎡)
 - 휴양시설: 669.4㎡ (증 199.4㎡)
 - 유희시설: 626.3㎡ (증 87.3㎡)
 - 운동시설: 962.2㎡ (증 117.9㎡)
 - 편익시설: 1,536.0㎡ (증 31.6㎡)
 - 녹지 및 기타: 14,171.95㎡(감612.4㎡)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8)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6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변경				비 고		
	전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응답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응답 (기)			
기 반 시 설	계	23,611.0	8,826.65	2	354.95	351.80	2	354.95	351.80	194	증 612.4㎡
	소 계	4,533.8	4,533.8								증 530.8㎡
		도 로	3,357.6	3,357.6							
조 경 시 설	광 장	1,176.2	1,176.2								증 46.6㎡
		606.2	606.2							6	감 354.6㎡
휴 양 시 설		470.0	470.0							84	증 199.4㎡
유 희 시 설		539.0	539.0							9	증 87.3㎡
운 동 시 설		844.3	844.3							40	증 117.9㎡
교 양 시 설		9.0	9.0								
편 익 시 설		1,504.4	1,504.4	1	35	35	1	35	35	3	증 31.6㎡
관 리 시 설		319.95	319.95	1	319.95	316.8	1	319.95	316.8	52	
녹 지 및 기 타		14,784.35									감 612.4㎡
시 설 을 (법정 40%)	(8,826.65㎡ / 23,611.0㎡) x 100% = 37.38%				(9,439.05㎡ / 23,611.0㎡) x 100% = 39.98%						
건 폐 을 (법정 20%)	(354.95㎡ / 23,611.0㎡) x 100% = 1.5%				(354.95㎡ / 23,611.0㎡) x 100% = 1.5%						

나. 시설조서

구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고지물 응급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응급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합계			23,611.0	8,826.65		2	354.95	351.80	175			23,611.0	-		2	354.95	351.80	194	
기반시설	소계		4,533.8	4,533.8								5,064.6	5,064.6						증 530.8㎡
	도로	-	전지역	3,357.6	3,357.6					-	전지역	3,841.8	3,841.8						증 484.2㎡
	광장	가	5개소	1,176.2	1,176.2					가	5개소	1,222.8	1,222.8						증 46.6㎡
	모임광장	가-1	문래동66-392 필지	(731.5)	(731.5)	고무침				가-1	문래동66-392 필지	(507.1)	(507.1)	고무침					
	진입광장	가-2	문래동66	(31.8)	(31.8)	화강석													
	다목적광장1									가-2	문래동66 외 2필지	(302.8)	(302.8)	인조화강석 블럭					
	휴게광장1	가-3	문래동61	(95.0)	(95.0)	점토 블럭				가-3	문래동61	(95.0)	(95.0)	점토 블럭					
휴게광장2	가-4	문래동61	(28.9)	(28.9)	점토 블럭				가-4	문래동61	(28.9)	(28.9)	점토 블럭						
다목적광장2	가-5	문래동66-392 필지	(289.0)	(289.0)	소형고압 블럭					가-5	문래동66-392 필지	(289.0)	(289.0)	고무침					
조경시설	소계		606.2	606.2					5			251.6	251.6					6	감 354.6㎡

구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방지습지	나	문래동66외 2필지	360.6	360.6								나	문래동66	32.0					감 360.6㎡
																			증 32.0㎡
	다	문래동66	149.6	149.6															감 149.6㎡
												다	문래동66 외 2필지	219.6					증 219.6㎡
	①	아-5.채널단편 장			STS +막				1	①	라.휴게소				STS +막				1
	②	가-3.휴게광장 1			목재				1	②	가-3.휴게광장 1				목재				1
	③	라-2.휴게소			목재				1										폐지
										③	하-1.휴게소				STS +목재				1
	④	라-1.휴게소			목재				1	④	하-2.휴게소				목재				1
수경파교라									④	가-2.다목적광 장1				STS				1	
목교1	⑤	문래동66			목재				1										폐지
다리										⑤	가-2.다목적광 장1								1

구분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데크로드	㉔	문래동66외1필지	96.0	96.0															감 96.0㎡
	소 계		470.0	470.0					101			699.4	699.4					84	증 199.4㎡
휴게소	라	문래동66-3외2필지	349.0	349.0	점토블럭					라	문래동66-3외2필지	349.0	349.0	점토블럭					
	하	4개소	121.0	121.0	점토블럭					하	4개소	320.4	320.4						증 199.4㎡
	하-1	문래동66-3	(30.0)	(30.0)	점토블럭					하-1	문래동74외1필지	(119.6)	(119.6)	인조하강석블럭					
	하-2	문래동66	(49.0)	(49.0)	점토블럭					하-2	문래동74외1필지	(54.5)	(54.5)	인조하강석블럭					
	하-3	문래동66	(21.0)	(21.0)	점토블럭					하-3	문래동66외1필지	(125.3)	(125.3)	목재					
	하-4	문래동66-3	(21.0)	(21.0)	점토블럭					하-4	문래동66	(21.0)	(21.0)	목재					
	㉔	가-2.진입광장			목재+석재				2	㉔	파-1.음수장			목재+석재				1	
	조경양묘坪	문래동66외1필지			목재+석재				2	㉕	문래동66외1필지			목재+석재				2	
등의자	㉖	전지역			목재				83	㉖	전지역			목재				68	
편의자	㉗	전지역			목재				12	㉗	전지역			목재				6	

후
양
시
정

구분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관찰데크	㉔	문래동74와1필지			목재				1																									
	㉕	문래동68와1필지			목재				1																									
	아워테이블세트									㉔	전지역			목재					7															
소계																						539.0	539.0					626.3	626.3				9	증 87.3㎡
어린이놀이대	마	문래동60와1필지	364.0	364.0	고무칩					마	문래동66-39와2필지	274.9	274.9	고무칩						감 89.1㎡														
	카	문래동66	175.0	175.0	모래					카	문래동66	351.4	351.4	모래						증 176.4㎡														
	조합놀이대									㉕	마.어린이놀이터									1														
단풍놀이대										㉕	마.어린이놀이터									2														
	경사미끄럼대	㉔	마.어린이놀이터		STS+PE				2	㉔	카.모래놀이터			STS+PE						2														
	네트오르기	㉔	마.어린이놀이터		목재+로프				1																									
유아미끄럼틀	㉔	마.어린이놀이터			STS+PE				1																									
	모험놀이대	㉕	마.어린이놀이터		목재+로프				1	㉕	카.모래놀이터			목재						1														

유한시설

안희시설

구분	변경						경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흔들놀이									㉔	카.모래놀이터							2	
	4인시소									㉔	카.모래놀이터							1	
	소 계			844.3	844.3				8			962.2	962.2					40	증 117.9㎡
안민도시정	배드민턴장	사	문래동73-1	430.0	430.0	우레탄				사	문래동73-1	430.0	430.0	마사토					
	체력단련장	아	4개소	74.3	74.3	점토블럭				아	4개소	192.2	192.2	점토블럭					증 117.9㎡
	체력단련장	아-1	문래동76-9	(18.5)	(18.5)	점토블럭				아-1	문래동76-9	(18.5)	(18.5)	점토블럭					
	체력단련장	아-2	문래동66-3	(17.7)	(17.7)	점토블럭				아-2	문래동66-3	(17.7)	(17.7)	점토블럭					
	체력단련장	아-3	문래동74	(18.6)	(18.6)	점토블럭				아-3	문래동74외 1필지	(100.0)	(100.0)	인조화강석블럭					
	체력단련장	아-4	문래동66-3	(19.5)	(19.5)	점토블럭				아-4	문래동73-1	(56.0)	(56.0)	인조화강석블럭					
	게이트볼장	타	문래동60-1외2 필지	340.0	340.0	인조잔디				타	문래동60-1외2 필지	340.0	340.0	인조잔디					
농구대									㉔	가-5 다목적광장2							1		
오버턴 스트레칭	㉔	아-4,체력단련장			철재				1										

구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영구적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체어웨이트	㉘ 아-2.체력 단련장			철재				1										
	트리플 트위스트	㉙ 아-1.체력 단련장			철재				2										
	크로스컨트리	㉚ 아-1.체력단련 장			철재				1										
	트윈버디싱업	㉛ 아-2.체력단련 장			철재				2										
	트윈워밍업	㉜ 아-3.체력단련 장			철재				1										
체력단련시설										㉜	전지역								39
소 계				9.0	9.0								9.0	9.0					
등상		자	문래동73-1	9.0	9.0	방정히 대통령 상					자	문래동73-1	9.0	9.0	방정히 대통령 상				
소 계				1,504.4	1,504.4		1등	35	35	3			1,536.0	1,536.0					증 31.6㎡
주차장(기존)		차	문래동60-2외4 필지	1,418.0	1,418.0	아스콘					차	문래동60-2외4 필지	1,418.0	1,418.0	아스콘				
화장실		1	문래동60-2	75.4	75.4	슬라브 위조 적조	1등	35	35		1	문래동60-2	75.4	75.4	슬라브 위조 적조	1등	35	35	
음수장		파	2개소	11.0	11.0						파	2개소	42.6	42.6					증 31.6㎡

구 분	변경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파-1	카.모래놀이터	(7.0)	(7.0)						파-1	문래동74	(38.6)	(38.6)						
	파-2	문래동73-1	(4.0)	(4.0)						파-2	문래동73-1	(4.0)	(4.0)						
	음수대	㉔			석재				3	㉔					석재				3
관리사무소	2	문래동73-1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종합안내관	㉔	문래동61		목재				1	㉔	문래동61			목재				1	
	조명등		전지역		STS				36		전지역			STS				36	
휴지통	㉔	전지역			목재				5	㉔	전지역			목재				5	
표지판																			
동상보호책					철재									철재					
볼라드	㉔	문래동66-39외2필지			석재				9	㉔	문래동66-39외2필지			석재				9	

관리
시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영구적 (기)	
								비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형담장	㉟	문래동74외1필지			석재									1	
노지 및 기타	소 계			14,784.35						14,171.95						감 612.4㎡
	녹지		전지역	14,784.35						14,171.95						
	문래상징 조형물	㉟	문래동74			목재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389.3	3,357.6				
변경					1,618.0	3,841.8				
당초	소로	계			483.0	928.2				
변경					519.1	942.5				
당초		3	1	7.0	8.5	59.5	부진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1	
당초		3	2	3.0	21.0	63.0	부진입로	산책로5	산책로4	
변경		3	2	2.0	10.3	21.0	부진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5	
당초		3	3	2.5	2.0	5.0	연결로	산책로5	소로3-4	
변경		3	3	2.0	38.9	77.8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4	
당초		3	4	2.5	73.0	182.5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4	
변경		3	4	2.0	3.3	6.5	연결로	가-2.다목적광장	소로3-13	
당초		3	5	2.0	36.0	72.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4	
변경		3	5	2.0	25.8	51.6	연결로	하-6.휴게소	하-3.휴게소	
당초		3	6	2.0	5.0	10.0	산책로	가-2.진입광장	산책로5	
변경		3	6	2.0	5.7	11.4	연결로	소로3-5	산책로5	
당초		3	7	3.2	15.0	48.0	산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5	
변경		3	7	2.0	6.7	13.4	산책로	산책로5	가-2.다목적광장	
당초		3	8	1.5	8.5	12.8	산책로	소로3-9	산책로5	
변경		3	8	2.0	12.4	24.8	산책로	가-2.다목적광장	소로3-13	
당초		3	9	1.5	32.5	48.8	연결로	소로3-4	소로3-2	
변경		3	9	2.0	15.2	30.4	연결로	산책로5	소로3-13	
당초		3	10	1.5	44.0	66.0	산책로	가.모임광장	마.청소년농구장	
변경		3	10	1.5	44.0	66.0	산책로	가-1.모임광장	가-5.다목적광장	
당초		3	11	1.5	15.0	22.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2	1.5	33.0	49.5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신설		3	13	2.0	115.0	230.0	산책로	하-1.휴게소	산책로5	
당초		3	14	1.5	53.3	80.0	산책로	산책로1	아-5.체력단련장	
변경		3	14	1.5	53.3	80.0	산책로	산책로1	라.휴게소	
당초		3	15	1.5	51.0	76.5	산책로	소로3-12	라.휴게소	
당초		3	16	1.5	27.5	41.3	산책로	가-4.휴게광장2	소로3-19	
당초		3	17	1.5	20.0	30.0	산책로	소로3-19	가-3.휴게광장1	
당초		3	19	1.5	33.5	50.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당초	소로	3	21	2.5	4.2	10.5	연결로	산책로1	소로3-3	
폐지		3	21							
당초	산책로	계			906.3	2,429.4				
변경					1,098.9	2,899.3				
당초			1	2.5	168.5	421.3	산책로	차.주차장	가-1.모임광장	
당초			2	2.5	150.5	376.3	산책로	차.주차장	바.청소년농구장	
변경			2	2.5	150.5	376.3	산책로	차.주차장	가-5.다목적광장	
당초			3	2.5	9.5	23.8	산책로	바.청소년농구장	가-1.모임광장	
변경			3	2.5	9.5	23.8	산책로	가-5.다목적광장	가-1.모임광장	
당초			4	3.0	201.0	603.0	산책로	가-1.모임광장	산책로5	
변경			4	3.0	179.7	539.2	산책로	가-1.모임광장	사.배드민턴장	
당초			5	3.0	208.0	624.0	산책로	가-1.모임광장	북측경계부	
변경			5	3.0	185.7	557.2	산책로	가-1.모임광장	산책로4	
당초			6	2.0	21.5	4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변경			6	3.0	7.5	22.5	부진입로	산책로4	서측경계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7	1.5	49.0	73.5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6	
변경			7	2.0	185.6	373.7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8	
당초			8	2.0	1.5	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변경			8	2.0	2.4	4.9	연결로	산책로7	산책로5	
당초			9	2.0	15.5	31.0	산책로	산책로7	소로3-7	
변경			9	2.0	48.1	96.3	산책로	산책로5	북측경계부	
당초			10	3.0	14.5	43.5	산책로	산책로5	2.관리사무소	
변경			10	2.0	13.2	26.4	연결로	산책로9	2.관리사무소	
당초			11	4.0	28.0	112.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당초			12	2.0	3.5	7.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1	
변경			12	2.0	6.7	13.5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1	
당초	산책로		13	1.5	10.0	15.0	산책로	소로3-2	산책로11	
변경			13	2.0	24.7	49.4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4	
당초			14	1.5	5.3	8.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1	
변경			14	2.0	7.8	15.6	부진입로	산책로4	서측경계부	
당초			15	1.2	12.5	15.0	산책로	산책로4	서측경계부	
변경			15	1.9	27.5	82.5	산책로	파-1.음수장	수국원	
당초			16	4.0	7.5	30.0	산책로	산책로1	소로3-10	
신설			17	3.0	46.0	154.7	산책로	산책로5	가-1.모임광장	

조성계획도(변경전)

하
문
리
리
아
리



☐ ㄷ
☐ ㅌ
☐ ㄴ

세월		세월비율	비고
인원수	826265	(77.35%)	
조리·요리	4333.8	19.2%	
조식사원	460.2	2.6%	
주방사원	4700	2.0%	
유아사원	339.0	2.6%	
운동사원	984.3	3.9%	
교양사원	9.0	0.1%	
관리사원	1,504.6	1.3%	
간사사원	319.95	6.4%	
기타	14,784.35	(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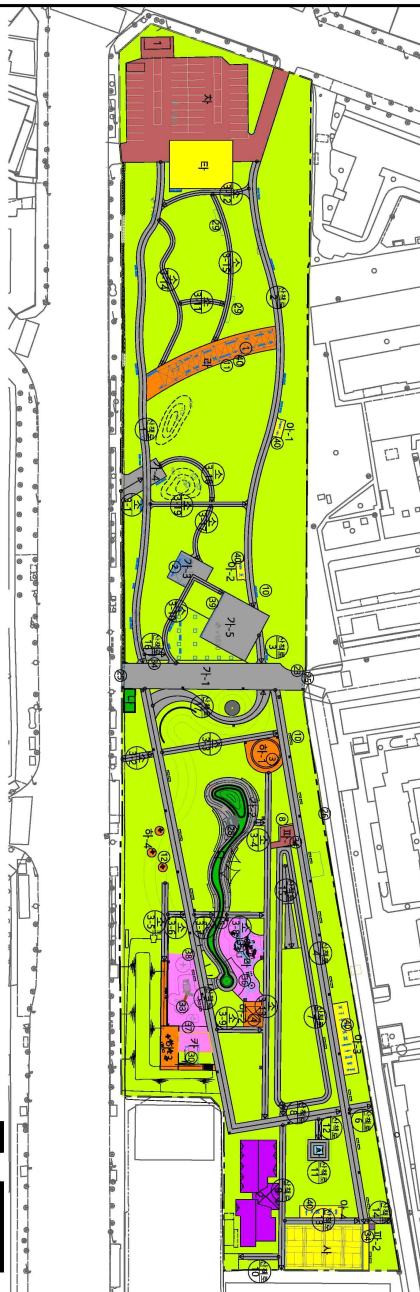
번호	명칭
가-1	모형광상
가-2	전일광상1
가-3	광기광상1
가-4	광기광상2
가-5	다핵석광상
나	암지층지
다	생체지층
라	류기조
마	여편이동터
바	배드민턴장
사	채석단광상
아-1	채석단광상
아-2	채석단광상
아-3	채석단광상
아-4	채석단광상
자	종상

[illegible][illegible][illegible]

SCALE=1/600

전 세계 한 (표어)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 口
☐ 口
☐ 口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구분	인원	인원비	비율
남자	1,252	100%	남자
여성	2	0.16%	여성
연령	2	0.16%	연령
연령	4	0.32%	연령
연령	4	0.32%	연령
연령	5	0.40%	연령
연령	6	0.50%	연령
연령	7	0.56%	연령
연령	7	0.56%	연령
연령	9	0.72%	연령
연령	9	0.72%	연령
연령	12	0.96%	연령
연령	12	0.96%	연령
연령	13	1.04%	연령
연령	14	1.12%	연령
연령	15	1.20%	연령
연령	16	1.28%	연령
연령	17	1.36%	연령
연령	18	1.44%	연령
연령	19	1.52%	연령
연령	20	1.60%	연령
연령	21	1.68%	연령
연령	22	1.76%	연령
연령	23	1.84%	연령
연령	24	1.92%	연령
연령	25	2.00%	연령
연령	26	2.08%	연령
연령	27	2.16%	연령
연령	28	2.24%	연령
연령	29	2.32%	연령
연령	30	2.40%	연령
연령	31	2.48%	연령
연령	32	2.56%	연령
연령	33	2.64%	연령
연령	34	2.72%	연령
연령	35	2.80%	연령
연령	36	2.88%	연령
연령	37	2.96%	연령
연령	38	3.04%	연령
연령	39	3.12%	연령
연령	40	3.20%	연령
연령	41	3.28%	연령
연령	42	3.36%	연령
연령	43	3.44%	연령
연령	44	3.52%	연령
연령	45	3.60%	연령
연령	46	3.68%	연령
연령	47	3.76%	연령
연령	48	3.84%	연령
연령	49	3.92%	연령
연령	50	4.00%	연령
연령	51	4.08%	연령
연령	52	4.16%	연령
연령	53	4.24%	연령
연령	54	4.32%	연령
연령	55	4.40%	연령
연령	56	4.48%	연령
연령	57	4.56%	연령
연령	58	4.64%	연령
연령	59	4.72%	연령
연령	60	4.80%	연령
연령	61	4.88%	연령
연령	62	4.96%	연령
연령	63	5.04%	연령
연령	64	5.12%	연령
연령	65	5.20%	연령
연령	66	5.28%	연령
연령	67	5.36%	연령
연령	68	5.44%	연령
연령	69	5.52%	연령
연령	70	5.60%	연령
연령	71	5.68%	연령
연령	72	5.76%	연령
연령	73	5.84%	연령
연령	74	5.92%	연령
연령	75	6.00%	연령
연령	76	6.08%	연령
연령	77	6.16%	연령
연령	78	6.24%	연령
연령	79	6.32%	연령
연령	80	6.40%	연령
연령	81	6.48%	연령
연령	82	6.56%	연령
연령	83	6.64%	연령
연령	84	6.72%	연령
연령	85	6.80%	연령
연령	86	6.88%	연령
연령	87	6.96%	연령
연령	88	7.04%	연령
연령	89	7.12%	연령
연령	90	7.20%	연령
연령	91	7.28%	연령
연령	92	7.36%	연령
연령	93	7.44%	연령
연령	94	7.52%	연령
연령	95	7.60%	연령
연령	96	7.68%	연령
연령	97	7.76%	연령
연령	98	7.84%	연령
연령	99	7.92%	연령
연령	100	8.00%	연령

◆ 관악구공고 제2024-1470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93-1번지

나. 계약면적 : 68,342㎡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 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관악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93-1	임야	68,342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 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관악구청장 (인)

◆ 서초구공고 제2024-160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1호(2016.4.7.)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24-2호(2024.1.11.)로 실시계획인가 된 반포동 19-2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여객자동차터미널 편익시설 설치사업(강남주유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변경 전 (‘24.1.11. 고시)	변경 후	비 고
대지면적	484.0㎡	484.0㎡	변동없음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6층	지하 2층 ~ 지상 6층	지하1층 → 지하2층
주 용 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추가
건축면적	290.13㎡	290.30㎡	▲ 0.17㎡
건 폐 율	59.94%	59.98%	▲ 0.04%
연 면 적	1,605.78㎡	1,685.97㎡	▲ 80.19㎡
용 적 률 산정연면적	1,077.67㎡	1,226.89㎡	▲ 149.22㎡
용 적 율	222.66%	253.49%	▲ 30.83%
주차대수	5대	5대	변경없음

- 세부 내용

구 분		변경 전 (‘24.1.11. 고시)		변경 후		비 고
		면적(㎡)		면적(㎡)		
영구채권 편익시설	부대시설	-	-	-	-	
	편익시설	-	-	지하2층 (주차장)	263.63	▲ 263.63㎡
		지하1층 (충전소)	307.02	지하1층 (급속충전소)	195.45	▼ 111.57㎡
		지상1층 (충전소)	34.88	지상1층 (완속충전소)	61.63	▲ 26.75㎡
		지상2층 (사무소, 충전소)	252.78	지상2층 (완속충전소)	242.49	▼ 10.29㎡
		지상3층 (충전소)	252.78	지상3층 (완속충전소)	242.49	▼ 10.29㎡
		지상4층 (충전소)	252.78	지상4층 (전시장)	242.49	▼ 10.29㎡ (충전소 → 전시장)
		지상5층 (사무소)	252.78	지상5층 (사무소)	202.35	▼ 50.43㎡
		지상6층 (주차장)	252.78	지상6층 (휴게음식점)	235.44	▼ 17.34㎡ (주차장 → 휴게음식점)
		계	1,605.78		1,685.97	▲ 80.1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명 : ㈜대성산업 (대표 김영대, 이은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11층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6.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2	주	484㎡	㈜대성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11층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설정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7)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서초구공고 제2024-16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023-354호(23.08.17)로 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서리풀지구단위계획구역(구.정보사부지)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선 공사
- 3) 사업의 규모
 - 도로

시설명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도로	광로	3	64	40~47	4,150 (349)	서초대로
	중로	2	101	8~18	910 (161)	동광로
	중로	1	95	20~30	1,500 (198)	명달로
	소로	1	A	10	79 (79)	신설도로 (동광로 인접)

※()는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에스비씨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이동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5, 14층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내
-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치도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5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8-1 등 7필지
 - 면 적 : (당초) 영구 1,667㎡, 일시 3,197㎡ (변경) 영구 1,667㎡, 일시 3,3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6공구) 터널 환기구조물 1식
5. 점용기간 : 2019.7.31.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19.7.31.~ 2024.7.30./ 변경 2019.7.31.~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5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8-1번지 일원, 강남구 압구정동 374번지 일원,
강남구 청남동 148번지 일원
 - 면 적 : 영구 50,018㎡(지하구간)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6공구)터널 건설
5. 점용기간 : 2022.3.29.~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2.3.29.~ 2024.7.15./ 변경 2022.3.29.~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5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3-1
 - 면 적 : 일시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6공구)현장 계측기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21.7.5.~ 2024.7.4./ 변경 2021.7.5.~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9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가철도공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44-2
 - 면 적 : 일시 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경의중앙선 응봉역 지반조사
 - 내 역 : 지반조사 1공
5. 점용기간 : 2024.07.19. ~ 2024.08.05.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9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07.18.)로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가. 정정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결정(변경)도 상 도시계획시설 철도 선형 착오

※ 이 외 정정사항은 없음

나. 정정내용 : <정정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의 철도 선형은 2024년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안)이며, 심의 의견에 따라 관리주체(서울교통공사)와 협의 후 2014년 정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 내용으로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착오로 누락

다.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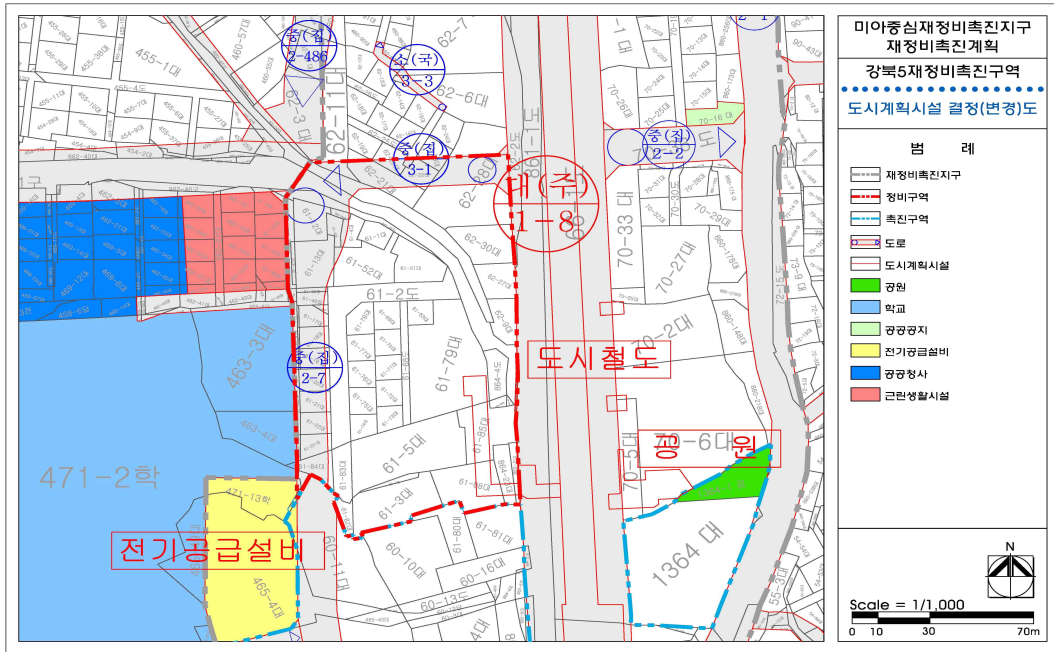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6) 및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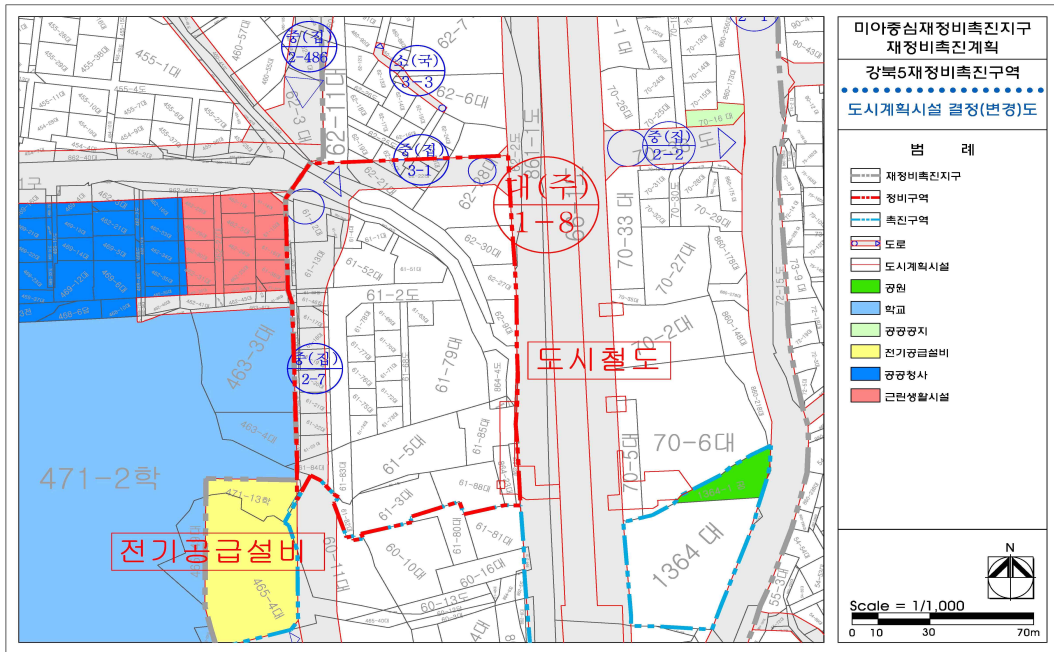
<정정 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정 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7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658호 (2024.5.30.)로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1. 허가구역 지정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기정	정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29,665	29,665	구역 정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6월 4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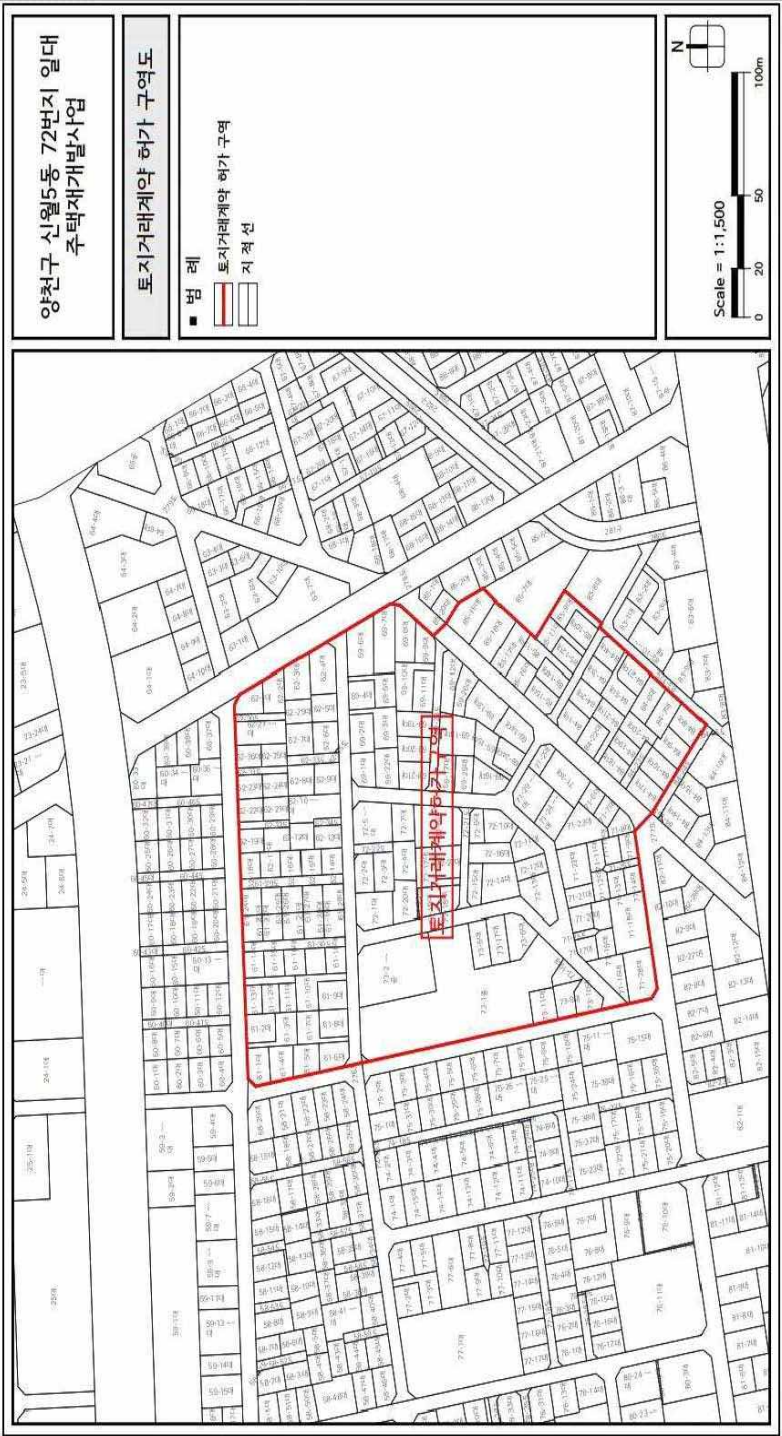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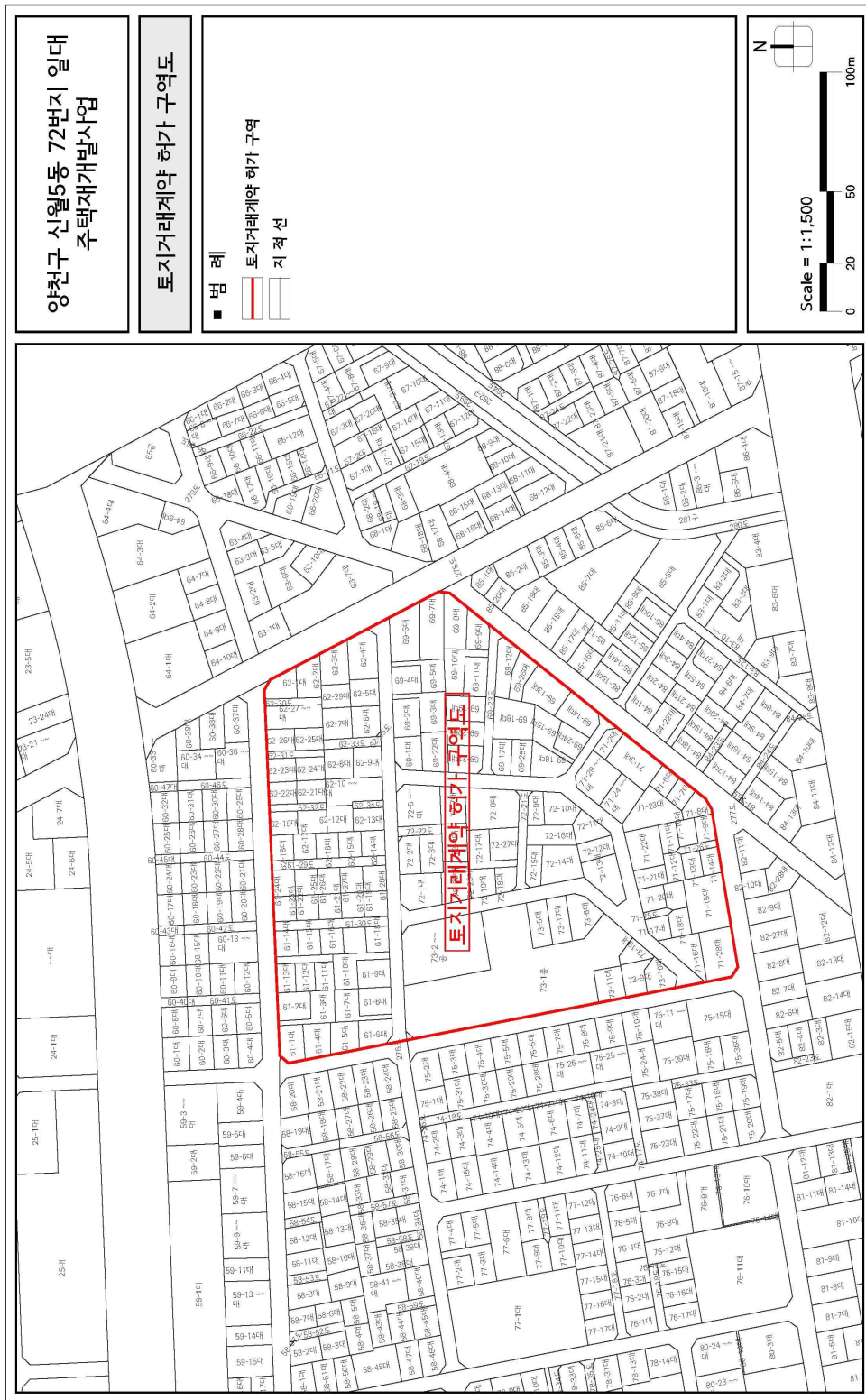
별첨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기정)



©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정정)



◆ 강동구공고 제2024-15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정정)

강동구보 제1783호(2024. 7. 17.)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475호(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21호(2013. 12. 12.)로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2.)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475호(2024. 7. 17.)로 열람공고하고 강동구보 제1783호(2024. 7. 17.) 및 서울시보 제3993호(2024. 7. 18.)에 게재하였으나,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의 변경(오기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96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천호 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2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소공원 조성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공 원	소공원	천호동 423-96 일원	2,30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강동빌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2026. 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5필지		3,042.0	2,306.0						
1	천호동	422-1	대	356.0	295.0	천호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				
2	천호동	422-11	대	63.0	63.0	상동	상동				
3	천호동	423-285	대	211.0	211.0	상동	상동				
4	천호동	423-86	대	106.0	28.0	상동	상동				
5	천호동	423-91	대	123.0	25.0	상동	상동				
6	천호동	423-92	대	96.0	35.0	상동	상동				
7	천호동	423-93	대	96.0	49.0	상동	상동				
8	천호동	423-94	대	109.0	71.0	상동	상동				
9	천호동	423-95	대	119.0	119.0	상동	상동				
10	천호동	423-96	대	129.0	129.0	상동	상동				
11	천호동	423-97	대	126.0	126.0	상동	상동				
12	천호동	423-98	대	165.0	165.0	상동	상동				
13	천호동	423-100	대	157.0	157.0	상동	상동				
14	천호동	423-132	대	116.0	116.0	상동	상동				
15	천호동	423-133	대	89.0	24.0	상동	상동				
16	천호동	423-134	대	96.0	16.0	상동	상동				

연번	등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	천호동	423-135	대	86.0	86.0	상동	상동				
18	천호동	423-136	대	86.0	86.0	상동	상동				
19	천호동	423-137	대	96.0	6.0	상동	상동				
20	천호동	423-138	대	96.0	1.0	상동	상동				
21	천호동	423-139	대	182.0	159.0	상동	상동				
22	천호동	423-142	대	99.0	99.0	상동	상동				
23	천호동	423-143	대	106.0	106.0	상동	상동				
24	천호동	423-144	대	126.0	126.0	상동	상동				
25	천호동	423-250	도	8.0	8.0	강 동 구	-				

사. 열람 기간: 2024. 7. 22. ~ 2024. 8. 5.

아. 열람 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